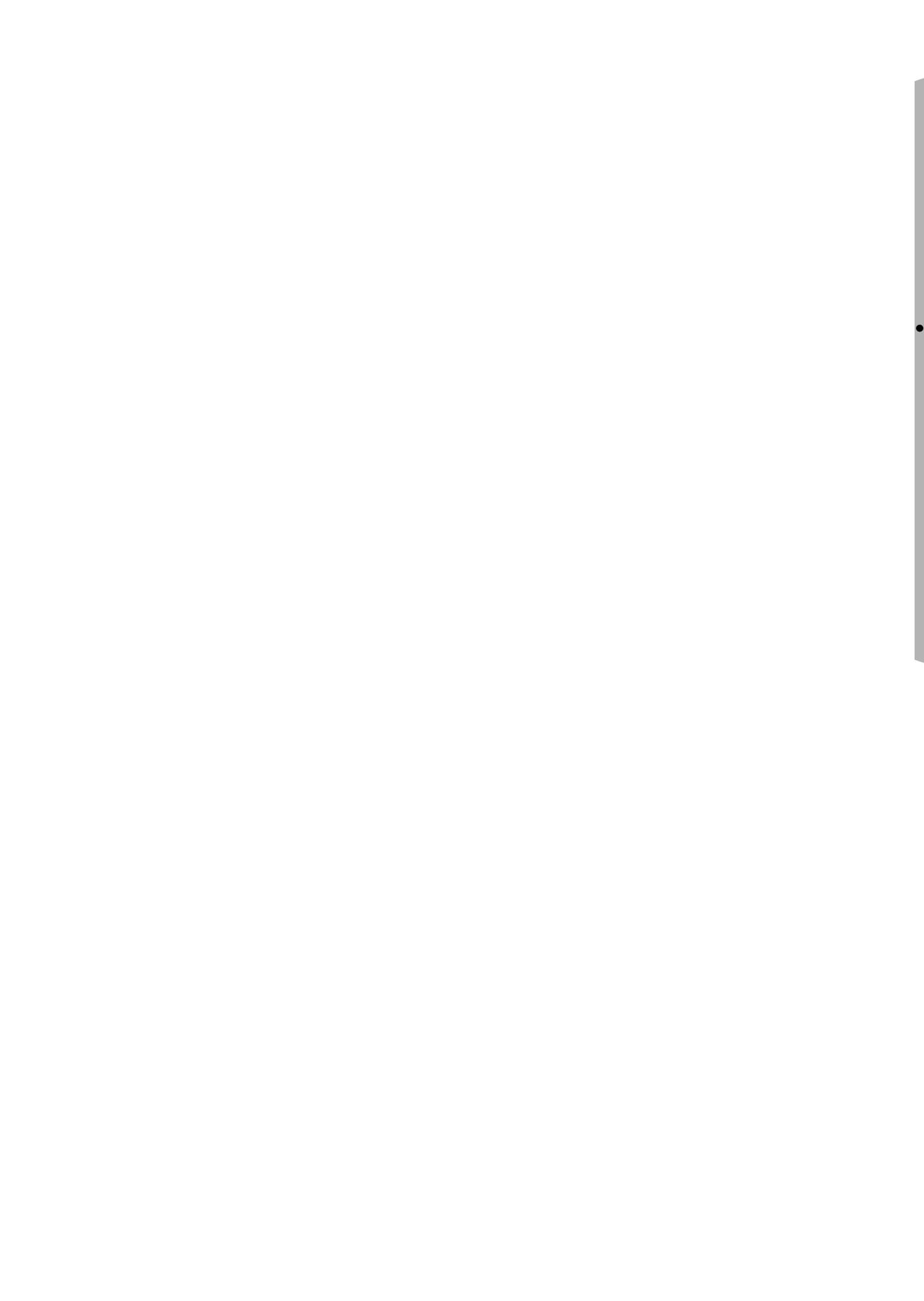


# 시대의소리

제6호

2004 · 12 · 1

||| 교양사회



## 특 집 동북아의 영토분쟁

### 한-일

- 6 한국측 / 독도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 호사카 유지  
16 일본측 / '竹島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權原 - 塚本 孝

### 한-중

- 25 한국측 / 간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과제 - 이정남  
42 중국측 / 朝鮮不等同高句麗 - 張俊峰 / 이정남 역  
(관련자료) 1. 백두산 정계비문 2. 간도에 대한 청·일협약

### 중-일

- 53 중국측 / 中日間的釣魚島群島爭端 - 王生/나영주 역  
96 일본측 / 국제법이 시험을 받는 尖閣의 귀속 - 尾崎重義

### 러-일

- 106 일본측 / 북방4도 반환문제 - 丹波實  
(관련자료) 1. 러-일공동선언(1956) 2.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 슈말리나 T

### 중-러

- 120 아무르강 국경획정을 둘러싼 갈등 - 윤영미  
(관련자료) 1. 푸틴-후진타오 공동성명 2. 중국에서의 푸틴의 혼동 - 유리 크리프노프

### 특집부록

- 147 국경으로 읽는 아시아 분쟁 - 편집실  
세계 국경분쟁 일람 - 송종호

### 시대논단

- 192 근대화가 결과한 인간학적 과제 - 조태훈

### 포커스

- 214 미국 대통령선거의 논리 - 송종호



## 특 집

# 동북아의 영토분쟁

### 한-일

한국측 / 독도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일본측 / '竹島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權原

### 한-중

한국측 / 간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과제

중국측 / 朝鮮不等同高句麗

<관련자료> 1. 백두산 정계비문 2. 간도에 대한 청·일협약

### 중-일

중국측 / 中日間的釣魚島群島爭端

일본측 / 국제법이 시험을 받는 尖閣의 귀속

### 러-일

일본측 / 북방4도 반환문제 - 丹波實

<관련자료> 1. 러-일공동선언(1956) 2.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

### 중-러

아무르강 국경획정을 둘러싼 갈등

<관련자료> 1. 푸틴-후진타오 공동성명 2. 중국에서의 푸틴의 혼동

### 특집부록

국경으로 읽는 아시아 분쟁

세계 국경분쟁 일람



# 독도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 국제법상의 논쟁을 중심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교수 정치학 · 한국인)



## 독도영유권을 바라보는 시각

흔히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라고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상의 논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한 이후 맥아더 사령부가 낸 SCAPIN 제677호 문서와 1952년에 시행된 대일강화조약 제2조를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1945년 8월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몇 가지 문서가 연합국 사령부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 중,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1946년 1월29일에 일본 정부에 보낸 ‘일부 주변 구역들을 통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이다. 이것을 흔히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라고 부른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문서는 포츠담선언 및 항복문서에 적힌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보낸 문서이다.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일왕 및 일본정부의 국가 통치 기능은 항복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 아래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 보낸 이 각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sup>1)</sup>

그리고 이 문서는 제3항에서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들을 명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1)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해맞이, 2003), p.177.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sup>2)</sup>

(번역)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와 그리고 약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 - 여기에는 쓰시마제도와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 南西)제도(쿠치노시마<口之島>제외)가 포함된다 -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 리양쿠르 열암(다케시마: 竹島)와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난세이)제도(口之島포함), 이즈(伊豆), 난포(南方), 보닌(오가사와라 섬: 小笠原島)과 볼케이노(이오: 琉黃) 군도, 그리고 다이토(大東) 제도, 파레세 벨라(오키노토리: 沖島)도, 마르쿠스(미나미토리: 南島)도, 간제스(나카노토리: 中島)도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주변의 태평양 제도; 그리고 (c) 쿠릴(千島)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수이쇼: 水晶, 유리: 勇留, 아키유리: 秋勇留, 시보츠: 志奏, 타라쿠: 多樂) 그리고 시코탄(色丹)도 등이다.<sup>3)</sup> 이 3항의 (a) 그룹 두 번째로 나타나는 리양쿠르 열암(다케시마: 竹島)이 바로 독도이다. 당시 서양에서 독도를 '리양쿠르 열암'이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1905년의 시마네(島根)현 편입 이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리양쿠르 열암(다케시마: 竹島)이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명백히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한국의 주장은 이 SCAPIN 제677호의 조문이 대일강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 SCAPIN 제677호에 대한 일본측 주장

그런데 이 각서의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sup>4)</sup>

2)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11scapin677.html](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11scapin677.html)

3) 김학준, 전계서, pp.178-179.

4)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11scapin677.html](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11scapin677.html)

일본 정부는 줄곧 이 부분을 들어서 SCAPIN 제677호 제3항의 내용은 일본영토의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1945년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일왕 및 일본정부의 국가통치 기능은 항복조항을 실시하기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 아래 속하였고 당시에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트에는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 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라고 강조한 다음에 SCAPIN 제677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해 놓았다.

대일 평화 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가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 ... <후략>)에 관한 문서는, 모두 그 문서 속에서 일본 영토 귀속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명기되고 있으므로,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시킨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sup>5)</sup> 이처럼 일본정부는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 한국정부의 SCAPIN 제677호 유효론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정부의 반론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SCAPIN 제677호 제6항은 연합국이 절대로 일본 영토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제소도(諸小島)의 귀속을 명백히 했으면서 다만 앞으로의 연합국의 이러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간의 제소도(諸小島)가 일본에 반환됐으며 약간의 도서에 대한 잔존주권도 인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리가 확정된 독도에 대해서는 그 뒤 어떠한 조치도

5) 일본 외무성 공식사이트 :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원문 : 對日平和條約前の一連の措置(1946年1月29日付連合軍總司令部覺書第677號が日本が竹島に對して政治上又は行政上の權力を行使すること及び行使しようと企てることを暫定的に停止したこと(後略))に關するは、いずれもその文書の中で日本の領土歸屬の最終的決定に關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明記しており、竹島を日本の領土から除外したものである)

취해진 바 없다. 일본령으로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결정도 없고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잔존주권을 인정한다는 선언도 없었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령으로부터 분리된 그대로의 상태 아래서 대일(對日) 평화조약의 체결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일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역시 독도는 대일 평화 조약에서도 일본령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제6조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령 제5조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령 제5조를 보면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해 다른 특별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지령이 있으면 이 지령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영역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영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6조와 함께 해석하면 ‘이 지령이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지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즉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해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들 중 하나를 다시 일본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명시적인 별도의 지령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이후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지령을 내린 바가 없으므로 이 지령에 의해 독도는 한국에 영원히 반환된 것이다. 7)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 독도가 명백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견해로서 주목된다. 결국 일본은, SCAPIN 제677호가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최종적인 문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SCAPIN 제677호 제5항을 거론하면서 SCAPIN 제677호에서 규정한 독도영유권을 변경한다는 새로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한 독도는 SCAPIN 제677호가 규정한대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한국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 대일강화조약 제2조와 일본의 미국정부 비밀문서

1952년 4월에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의 제2조 (a)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6)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대 출판부, 1969), p.266. (김학준 저 <독도는 우리 땅>에서 재인용.)  
7) 김병렬, <독도나 다케시마냐>(다다미디어, 1997), pp.207-208.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d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sup>8)</sup>

일본은 이 조문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서 독도의 이름이 빠진 것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땅으로 남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환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이 내세운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1) 1949년11월14일, 도쿄의 시볼트(W.J.Salt) 주일정치고문이 미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속에 다음과 같은 일문이 포함되었다.

리양콜 열암(다케시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정당하다고 사료된다.<sup>9)</sup>

(2) 1950년 미국정부 북동아시아과 로버트·A·히알리의 날짜가 없는 비밀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문이 있다.

(독도 등이 열거되어 있다) 모두 오래전부터 일본영토로 인정되어 온 것들이고, 이것들은 일본이 영유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sup>10)</sup>

(3) 1951년7월19일, 미국정부의 조선담당관 에몬즈에 의한 회담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문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무인도인 이 암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쯤부터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지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이 섬은 옛날부터 조선영토라고 주장된 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sup>11)</sup>

이상과 같은 문서를 근거로 일본 측은 대일강화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오히려 일본영토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문서는 결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고문이나 조선담당관들의 말은 참고의견이지 결정적 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돌려준다는 징조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후술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합국이란 미국 일국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

8) <대일강화조약> 제2조(a).

9) FRUS1949년7권, p.898, p.900.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에서 인용.

10) FRUS1950년6권, p.1327, p.1328. 상계사이트에서 인용.

11) FRUS1951년6권, pp.1202-1203. 상계사이트에서 인용.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대한 일본의 주장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평화조약의 조약 규정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에 착안하고, SCAPIN 제677호에서는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나열됐던 독도가 평화조약에서는 빠졌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부터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도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한다는 별도의 문서가 없는 한 독도는 여전히 한국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우에다 하야오(植田捷雄) 교수나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 교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제주 거문 울릉 3도는 한국 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는 한반도의 최외측(最外側)에 있으며 일본에 가깝다. 따라서 만약 독도가 이러한 섬들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내측(內側)에 있으면 그 명칭을 대일 평화조약에 특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반해 독도는 이러한 3도의 외측(外側)에 있으며 일본에 보다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상기(上記)의 3도와 더불어 독도의 명칭을 조약에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조약에 독도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독도가 여전히 일본 영토의 일부로 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sup>12)</sup>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국 측 반론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견해를 소개한다.

제주도와 거문도 및 울릉도는 일본 학자들의 말과 같이 ‘한국근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도서’인 것이 분명하나 절대로 ‘한반도의 최외측’에 있는 도서도 아니고 또한 일본에 가깝다기보다 한국에 가까이 위치한 섬들이다. 만약 전기(前記) 3도의 외측에 있는 섬이 평화조약에 한국령으로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한국령이 아니라는 논법 아래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는 마라도(馬羅島)는 똑같은 이유로 일본령이 돼야 마땅하다는 묘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에 나열된 도서는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도서’에 국한된 것이고 독도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12) 김학준, 전게서, pp.190-191에서 재인용.

날날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sup>13)</sup>

**SCAPIN 제677호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를 중심으로 독도영유권문제는 결론적으로 한국측 견해가 일본측 견해보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가를 생생히 볼 수가 있다. 우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한국의 최외측의 섬이 아닌데 이를 최외측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보다 외측에 있는 마라도나 거문도보다 외측에 있는 목포 앞바다의 모든 섬들이 일본의 섬이라는 이야기인가? …(중략) 결론적으로 대일 강화조약에 표기된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으로 표기된 것이지 이들만이 전부라는 의미로 표기된 것이 아니며, 또 이들이 최외측의 섬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독도를 누락시킨 사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이다.<sup>14)</sup>

## 한국측 주장의 근거

그러면 한국측 주장, 즉 만일 미국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시켜 한국에 부속시킨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각서가 있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SCAPIN 제677호 제5항이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SCAPIN 제677호 제5항이 없었다고 해도 현대 국제법에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서 SCAPIN 즉, 점령군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에 속한 것으로 취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의 정당한 일방당사자인 연합국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상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주장이나 암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1951년 San Francisco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독도는 울릉도나 제주도과 똑같이 일본이 아니고, 한국에 속

13) 이한기, <한국의 영토>, p.269. (김학준, 전계서, p.191에서 재인용).

14) 김병렬, <독도나 다케시마나>, pp.214-215.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어떤 사실이나 기준에 관해서 한번 주장한 쪽이 그러한 주장을 믿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바꾸어서 다른 내용의 사실이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조리(條理)상의 원칙. 옛날 유럽의 관습법에서 유래하는 현대법의 기본원칙이다.<sup>15)</sup> 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면, 연합군이 일본점령기간 동안 줄곧 한국영토로 취급해 온 독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일본영토로 바꾸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문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돼 미국의 관할 하에 두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는 후에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그 때는 새로운 조약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한 바 있다. 독도에 관해서도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독도의 이름이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서 누락된 배경

전술한 미국정부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연합국 중에서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5차까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독도는 미국에서 작성한 제6차 초안에서는 반대로 '일본영토로' 기재되기도 했다.<sup>16)</sup>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는 일본영토로서 기재되지 않았다. 즉 다른 연합국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1951년 봄에 영국이 독자적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 영국의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 속에 명기되어 있었다. 호주가 제출한 초안도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sup>17)</sup> 미국과 영국 등은 오래 의논한 결과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최종적 초안을 결정했고 그 초안 속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어졌다.<sup>18)</sup> 그것은 암묵적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초안 작성 관계자들은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금반언의 원칙도 숙지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들은 국제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는

15) 김영구, '독도문제의 진실', <The Pursuit of Truth in the Dokdo Island Issue>(법영사, 2003), p.181.

16) 김영구, 상계서, p.160.

17) 김영구, 상계서, p.160.

18) 김영구, 상계서, p.160.

한 독도는 한국영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추측이지만 연합국은 일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1950년에 중국이 대일강화 조건으로 일본영토에서 류큐(琉球), 북방 4도, 대마도, 독도 등의 분리를 요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 외무성의 문서 공개로 밝혀졌다.<sup>19)</sup>

이 문서는 ‘미제국주의가 군사기지를 적극적으로 확장 중’ 이라고 말하면서 ‘미제국주의 지원 하에서 일본이 다시 영토확장에 대한 야심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대외침략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모든 섬들을 되도록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 라는 방침을 제기하고 있다.<sup>20)</sup>

중국은 대일강화조약 기초와 조인에 중국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만과의 대립을 이유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중국의 입장을 생각할 때 중국의 영향을 받고 독도에 대해 중국과 같은 견해를 가진 나라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미국 측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 맺음 말

지금까지 SCAPIN 제677호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를 중심으로 독도영유권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 견해가 일본 측 견해보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일부 허용했고 일본에 자위대가 만들어 졌다. 미국은 일본에 공산권에 대한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독도영유권문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았듯이 독도영유권은 냉정한 국제법의 이론에 의해서도 한국의 것이라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19) 요미우리(讀賣) 신문, 2004.8.1.

20) 동상.

## ‘竹島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權原

塚本 孝 (일본국회도서관 참여 · 일본인)



### 분쟁의 발생

‘竹島’를 둘러싼 일-한양국간의 영유권분쟁은 1952년에 현재화됐다. 동 년 1월, 한국이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 소위 ‘李承晩 라인’을 설정하여 죽도를 그 가운데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은 竹島로 알려져 있는 일본해의 작은 점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나, 일본정부는 한국의 그러한 僭? 또는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것이 양국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응수가 행해진 최초의 일이다.

李承晩라인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는 2백 해리 규제와 같은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점령 하에서, 일본어선이 출어할 수 있는 해역은 연합국최고사령부(GHQ)의 지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이것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부른다. 평화조약이 발효하자 일본은 주권을 회복, 점령당국의 조치로서 맥아더 라인도 소멸한다. 그렇게 되자 한국정부는 어장에서 일본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선수를 쳐 대통령선언을 발표, 해상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내에 竹島를 포함시킨 후, 상당기간 양국에 의한 영토표시 조치, 철거논쟁이 이어졌다. 1953년7월, 일본 순시선이 竹島에 상륙해 있던 한국인 으로부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다음해부터는 무장요원을 상주시키게 되고, 양 국간에 영토주장의 근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口上書가 건네졌다. 1954년9월, 일본은 竹島영유권분쟁의 국제사법재판서에의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동년10월 이를 거부했다.

## GHQ지령과 竹島

한국은 왜 이승만 라인 설정 때 竹島를 여기에 포함 시켰을 가. 이것의 발단이 된 것은 1946년1월에 나온 ‘약간의 외곽지역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라고 하는 총사령부의 지령(GCAPIN 677)과, 앞에서 본 맥아더 라인이었다.

‘SCAPIN 677’은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지령, ‘이 지령의 목적에서 일본이라는 것은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고 하면서 ‘鬱陵島, 竹島, 濟州道’를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했다. 또한 이 지령은 ‘이 지령 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는 총사령부의 점령통치와의 관계로 일본정부의 행정권을 정지한 것으로, 영토의 처분은 아니었다. 국제법상에서도 영토의 처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점령군의 사령부 지령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지령에는 당초 伊豆諸島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를 크게 걱정했다. 또 齒舞, 色丹도 행정권 정지의 대상이었다. 법적으로 영토처리와 관계없다고는 하나, 소련이 이 지령이 나온 직후에 국내법을 개정하여 齒舞, 色丹을 포함한 지역을 영토로 편입한 것을 함께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

는 문제가 많은 지령이었다.

다음으로 맥아더 라인을 설정한 소화21년 6월의 총사령부지령(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된 지역에 관한 각서’에서는, “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은 竹島에서 12해리 이내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섬과는 일체 접촉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지령도 “일본국가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竹島는 다음에서 말하는 1905년의 영토편입 이래 島根縣에 속해 있으며, 동 현민들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竹島는 거리로 볼 때 한국의 울릉도에 가깝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 중에는, 竹島에서 고래를 잡는 일본인들에 고용돼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전후, 점령당국의 조치에 의해 일본인들의 竹島에서의 활동이 끊어진 사이, 한국인(울릉도 주민)은 竹島에서의 조업을 계속했다. 소화23년(1948년)6월에는 竹島를 표적으로 한 미군기의 폭격훈련으로 한국인 사상자가 생기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은 총사령부의 조치에 의해 竹島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된 것을 알고, 또 종전 까지 자국민들이 이 섬 주변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竹島를 자국 영토로 확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했다.

## 평화조약과 竹島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함에 있어 竹島를 포함시킨 배경으로,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평화조약과정에서 일련의 사건이다. 한국은 조약 초안을 준비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竹島를 한국 영토로 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평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동 년 봄까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초안을 작성, 그것을 조합하여 미영공동초안으로 연합국에 제시돼, 조인된 것이다. 한국은 전승 연합국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할 수 없었으나, 미국에 의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현재 미국의 공식문서 보관소에 있는 국무성기록에 의하면, 1951년 3월 23일자 미국 초안이, 동일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 국에 의견조회를 위해 송부됐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동 년 5월9일까지, 11항으로 된 요망 서를 미국에 문서로 제출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연합국

사람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하며, 對馬島는 한국에 반환해야 하며, 맥아더 라인은 평화조약으로 존속해야하며, 한국은 한국에 있는 일본

**李承晩라인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는 2백 해리 규제와 같은 것이다. 제2차대전 후 점령 하에서, 일본어선이 출어할 수 있는 해역은 연합국최고사령부(GHQ)의 지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자산을 예외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년 7월 9일, 梁祐燦 주미 한국대사가, 대일강화문제의 중심인물이었던 덜러스(John Foster Dulles)국무장관고문을 방문했다. 회담석상에서 덜러스는 한국대사에게 개정미영공동초안을 건네, 한국이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없음을 알렸다. 한국대사는 대마도가 한국에 주어지는가를 묻고, 이에 대해 덜러스는 이를 부정했다. 회담에서는 맥아더 라인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7월19일, 梁대사가 韓豹頊 일등서기관을 대동하고 덜러스를 다시 방문, 국무장관 앞으로의 편지를 건넸다. 편지는 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3항목의 요망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제1항은 조약초안의 조선포기조항에 대한 것으로, 초안은 ‘일본국은, 조선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波浪島를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權原 및 청구권을 1945년8월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로 교체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獨島라고 하는 것이 竹島다. 竹島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한다. 그러나 波浪島는 제주도의 남서쪽에 있는 수면 5미터 아래 있는 암초로, 해도상의 영어명칭은 스코트라록이라고 하는, 국제법상 영유권대상이 되는 섬은 아니었다. 요망사항의 제2항목은, 재한 일본자산의 한국 귀속, 제3항목은 어업협정체결까지 맥아더 라인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내용의 조약문수정요구였다.

그런데 7월 19일의 회담에서, 덜러스는 한국대사의 편지를 읽은 후, 제1항에 대마도가 없는 것을 지적, 한국대사는 대마도 영유의 취소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덜러스는 獨島와 波浪島의 위치를 물었다. 이에 대해 梁대사가 아니라, 韓 일등서기관이 대답, 이것들은 일본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대개 울릉도 근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덜러스는 이들 섬은 일본에 의한 조선병합 전에 조선 영이었는데를 묻고, 한

국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딜러스는 만약 그렇다면 조약 중에 일본에 의한 한국 영토의 포기에 관한 적당한 곳에 이들 섬을 포함시킬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대사의 편지 제2항에 대해서, 딜러스는 한국에 보호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셋째 항에 대해서는 딜러스는 미국은 다수의 국가나 국내의 어업 이익단체로부터 평화조약을 사실상 태평양의 어업조약으로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과 같이 조약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익단체를 자극, 조약 작성이 아주 복잡하게 되고, 또 한국의 요망사항을 받아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약안수정요구에 대한 미국의 정식회답은 동년(1951년)8월 10일자 서한에서 행해졌다. 이 서한에서 라스크(Dean Rusk)국무차관보는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독도의 영토요구를 포함한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미국정부는 유감스럽게도 당해 제안에 관한 수정에 찬성할 수가 없다. 미국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선언 수락이 동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竹島 내지 리안쿨 岩 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도의 돌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島根縣隱岐支廳의 관할아래 있다. 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주장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상의 국무성기록을 미국의 국립공문서보관서에서 확인했으나, 인용한 문서의 주요부분은 외교 문서집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4에 수록돼, 공간되고 있다. 어쨌든 이 평화조약기초과정에서 경험에 비춰보면, 한국은 외교교섭에서 획득되지 못한 것을, 이승만 라인 설정이라는 일방적인 국내조치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竹島의 영토편입

앞의 미국의 회답 가운데, 竹島가 1905년경부터 島根縣의 관할아래 있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명치38년(1905년) 1월 28일에 일본이 竹島 영토편입을 각의 결정, 이후 계속해 통치하여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각의 결정에 관한 기록은, 현재 국립공

문서보관소가 소장하는 ‘공문유취’에 수록되어 있다. 읽기 어려우나 기본적인 문서 이기에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별지 내무대신이 요청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위해 다음은 북위 37도9분30초 동경131도55분, 隱崎島 서북 85마일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고, 지난 36년, 本邦人 中井養三郎이라는 사람이, 魚畝를 만들고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가 어구를 구비하여 어업에 착수,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여를 출원함에, 차제에, 소속 및 섬의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 섬을 竹島라고 이를 붙여 지금부터 島根縣 소속 隱崎島司의 소관으로 할 것을 정한다. 따라서 심사하기 위해 명치 36년 이래 中井養三郎이라는 사람이 당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해 분명해 진다면,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 이를 본방 소속으로 島根縣 소속 隱崎島司의 소관으로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원대로, 각의 결정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국제법상,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는 ‘先占’이다. 국가가 주인이 없는 토지를 점유하고 그 토지를 영유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토지가 그 나라의 것이 된다. 주인이 없는 토지란 국가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 점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견했다거나 명명했을 뿐 아니라 實效的으로 점유를 행할 필요가 있다. (소위 實效支配). 선점은 국가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 사인이 행한 점유 행위를 국가가 추인하는 것도 좋다. 각의결정은 竹島를 이 선점의 법리에 의해 영토로 편입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섬(이때 竹島라고 명명한 섬)이, 당초 조선의 영토였던 것은 아닌가 - 그렇다면 無主地는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당초 일본의 섬은 아니었던 것인가 - 그렇다면 왜 다시 영토편입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삼국시대의 512년(智證王13년)에 ‘于山國’이 신라에 귀속한 이래 이 섬이 한국 영이었다고 하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출전인 <三國史記>에 오늘날의 竹島에 관한 기술은 없다. 한국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나오는 ‘于山島’가 竹島라고 말하기도 하나, 한국의 고문헌에는 于山島에 사람이 살고 있다던가, 토지가 광활하고 비옥하다는 기사가 있으며(竹島는 岩礁島), 고지도상의 于山島의 위치도 竹島에 합치하지 않는다. 于山島는 울릉도나 울릉도의 옆에 있는 竹嶼라고 불리는 작은 섬을 가르키든가, 또는 傳承上의 섬으로 竹島는 아니다.

또 일본의 영토편입보다도 4년 전인 1900년10월에 칙령으로 울릉도 군수의 관할구역으로 '石島'를 정했다, 이 '石島'가 '竹島'라는 주장도 있다. 石을 조선어로 '돌'이라고 하나, 방언으로는 '독'이라고도 해, 독도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독도라는 섬 이름이 한국 문헌에 나타난 것은, 1906년의 울릉도 군수의 보고서가 최초다. 竹島를 시찰한 島根縣의 부장이 울릉도에 들어가, 전년에 竹島가 일본에 편입된 것을 전했다. 군수는 강원도 관찰사(지사)에, "본군 소속 독도는 본군의 바깥바다 백여리 떨어져 있으나 ... 일본관인 일행이 관사에 이르러, 독도는 지금 일본영지가 되었다. 때문에 시찰차 내도했다고 스스로 했다"고 보고했다. 울릉도는 조선에서, 정세를 기치하여 이 섬으로 도망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하는 정책이 행해져 왔다. 명치유신이후, 일본인으로 멋대로 그 섬에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이에 대하여 19세기말부터 이 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만약 石島가 오늘날의 竹島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여 울릉도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竹島의 존재를 안 한국인가 이때부터 '독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 때 관할지로 편입, 후에 竹島의 일본편입을 보고한 군수가 보고서에 본군 소속이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竹島에서 한국인이 활동한 기록도 국가로서 지배권을 펼친 기록도 칙령의 전후에는 없고, 앞에서 본 국제법상의 선점의 요건인 실효적인 점유(실효지배)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면, 竹島는 일본에 의한 영토편입 시점에서 中井養三郎에 의한 활동이나, 편입 후의 행정권 행사의 많은 사례가, 江戸시대에도 일본인이 관청의 허가를 얻어 竹島에 실제로 건너가, 어업을 했던 기록이 있으며, 島取藩 池田家の 문서에는 정확한 지도도 남아있다.(島取縣立博物館所藏) 강호시대의 이 섬(강호시대에는 오늘날의 竹島를 松島라고 불렀다)에서 일본인의 활동은 울릉도의 개발과 관계가 있다. 17세기 전반부터 수십 년에 걸쳐 米子の 大谷, 村川 양가가 德川幕府의 허가를 얻어, 당시 무인도였던 울릉도(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에서 대나무의 벌채나 고래 사냥 등을 했다. 오늘날 竹島(당시 송도)는 米子에서 隱崎 경유로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으며, 이 섬에서도 고래 사냥이 행해졌다. 그리고 元祿 연간에 이르러 大谷家の 시종이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을 만났다. 일본과 조선에 교섭이 행해진 결과,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영인 것을 인정, 도항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때 오늘날의 竹島가 일본과 조선 간에 화제가 된 기록은 없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강호시대부터 竹島에 대해서 실제로 근거한 지식이 있고, 이

섬에서 발견이나 일본인들의 활동에 유래하는 역사적 權原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막말부터 명치에 걸쳐 서양의 지도나 해도, 수

정부는 자료수집 등의 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들도 또 竹島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그렇게 하여, 다양한 주장을 파악하고, 역사나 경과를 탐구, 자유롭게 활발한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로지등이 유입, 행정제도도 크게 변해가는 과정에, 섬의 이름을 포함, 구래의 지식이 혼란해 졌다. 명치10년(1877)에는, 右 대신이, 지적편찬에 관해 그때의 竹島(울릉도) 외에 一島(松島, 지금의 竹島)를 ‘본방무관계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시한 것도 있었다.(<太政類典>2편96권) 명치38년의 영토편입은 역사적 權原을 가진 섬에 대해,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선점에 의해 유효하게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 현상에 대해

竹島에는 앞서와 같이, 소화29년(1954년)경부터 한국의 무장요원(독도경비대원)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은 학술조사단의 파견, 지도 작성, 건물건설, 민간인 이주(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독도로 하는), 은행을 통해(이것도 주소로만)예금을 모으는 것 등을 행하고, 근년에는 헬리콥터 승강장, 5백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도를 만들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어도 행하고 있다. 竹島는 본래 초목이 자라지 않는 암초의 섬이었으나, 흙을 운반해서 녹화를 진척시키고 있다. 등대를 설치 각국에 수로통보를 하기도, 竹島를 도안화한 우표를 발행하여 외국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선전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竹島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문서로부터 사진집까지 많은 책이 출판돼, 교과서에서도 크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의한 竹島편입(1905년)이 일-러전쟁, 일-한보호조약 체결을 한 해인 것을 계기로, 일본인 조선합병의 일환으로 이 섬을 빼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전제에는 죽도가 오래전부터 한국 영이었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이 부정확한 사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앞서 본대로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업협정, 부두건설 때 등의 ‘사건’을 둘러싸고 竹島

의 영유분쟁이 화제가 되나, 관심이 계속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수뇌회담이 있다고 하면 북방영토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먼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일한양국의 수뇌회담을 할 때, 竹島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는 논조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종래 일년에 한번 이상 순시선을 竹島주변에 파견하여 해상에서 관찰, 그 결과에 근거하여 竹島의 점거를 한국정부에 항의해 왔다. 근년 이런 행동이라도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도 알수 없다. 이것은 '외교청서'의 기술에도 관계된다.

국제법상, 영유권분쟁이 현재화한 후, 한쪽 나라가 자기의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러 취한 조치는 국제재판이 열릴 경우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간, 竹島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하나, 실력지배, 기성사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기한 모든 행위는 법적인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실효지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항의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서면항의에 그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일본은 영유권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료수집 등의 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들도 또 竹島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그렇게 하여, 다양한 주장을 파악하고, 역사나 경과를 탐구, 자유롭게 활달한 논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간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과제

이 정 남 (고려대 연구교수 · 한국인)



### 왜 간도문제인가

1992년 수교이래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교류가 증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상황 하에 놓여왔다. 이른바 제4세대 지도자의 출현과 함께 중국은 한반도정책의 중심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시켜가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지나친 대미의존에 대한 경계와 함께 중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양국간의 관계는 수교 이래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그 친밀도 역시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동북공정(東北边疆歷史與現象系列東究工程: 약칭 ‘東北工程’)’을 통하여 중국의 한국고대사 왜곡문제가 거론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며, 이로 인해 한중간의 신뢰에도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 이 같은 한국내의 분위기를 간파하고, 현시점에서 이 문제가 국민적인 분노로 확산될 경우 중국에게 미칠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한 중국은 한국을 방문한 자칭린(賈庆林)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하여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문제는 미래의 갈등을 뒤로한 채 일단 잠정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하여 대대적인 동북지역의 고대사에 대한 왜곡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가? 그 배후에는 한반도의 통일이후 동북지역에 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국경이나 영토, 조선족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후 청·일간의 이른바 ‘間島協約’을 통하여 일본이 청에게 넘겨준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이 문제는 한중간의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문제와 결부되어 조선족의 분리독립과 같은 예기치 못할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 내의 다른 55개 소수민족에게도 일정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정세불안과 동요, 그에 따른 탈북자 처리문제와 연계되어 매우 민감한 정치, 외교, 안보분야의 현안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바로 이 같은 본질을 파악한 중국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지역 변방의 고대사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여,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명확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sup>1)</sup>

한편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곧바로 진행된 분단으로,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국경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당사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국경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동북지방에서의 중·북간의 국경에 북한과 중국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통일이후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동안 한·중 국경문제의 관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파트너에서 배

1) 중국의 社會科學院은 1996년 중국 학자들을 상대로 ‘고대중국 고구려역사’를 집필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2001년 이후엔 산하단체인 ‘중국 변방사 연구센터(中國邊疆史研究之中心)’을 앞세워 고구려사 관련 학술대회를 주도했다. 2002년 2월에는 中國邊疆史之研究中心이 ‘東北工程’추진을 선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대 중국의 동북쪽 지방에 자리를 잡았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에 대한 역사 연구는 물론 해당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재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협상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한중간의 영토분쟁은 통일이후에 중국과의 새로운 분쟁의 대상으로 등장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 이유는 분단된 한국의 재통일을 통하여 우리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비와 아울러 외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된 각종 영토협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통일된 한국의 영토적인 정체성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간도문제는 역사적으로 한중간의 오랜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는가? 간도문제를 둘러싼 한중간의 분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그리고 간도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상술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중간의 국경분쟁문제를 살펴 볼 것이다.

## 간도의 범위와 韓人의 이주

간도(間道)라는 명칭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다른 유래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동삼성정략(東三省政略)’에 따르면 간도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두만강 북안의 光霽岫과 함경북도 종성 사이에 있는 작은 모래섬(사이섬)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를 假江(假江)이라 하였고, 韓人들은 간도(間道 혹은 壘島)라 칭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간도는 공식적인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용어나 개념이 아니라 韓人들 사이에서 두만강 북쪽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명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韓人들은 두만강 북안일대를 지역별로 나누어 무산간도 혹은 회령간도, 종성간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2)</sup>

한편, 간도출신 한국인 심여추의 주장에 따르면, 간도지역 남쪽은 두만강, 북쪽은 목단강과 수분하(綏芬河), 동쪽에는 홍기하(紅旗河, 현재의 훈춘하)가 있어 4개 현의 주위를 둘러싸다 보니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섬같은 곳이라는 데서 간도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이곳은 두만강과 그 중국측 지류 그리고 험준한 장백산맥과 노야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이 고립된 지역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간도(間島)와 간도(壘島)가 구분되지 않고 쓰였다. 한중간에 영토 교섭이 있은 후, 한인들이 연변을 중국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명칭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중 양국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2) 장세운,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 『국회도서관보』, 2004년 10월, pp. 19-20.

지대임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sup>3)</sup>

그 명칭의 유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도의 지

**우리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비와 아울러서 외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된 각종 영토협약에 대한 재검토와 통일한국을 대비, 영토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사적 과제이다.**

리적 범위를 둘러싸고도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白頭山定界碑에 새겨진 “東爲土門”의 투먼강(土門江)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투먼강(土門江)은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지역은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헤이룽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sup>4)</sup> 일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분쟁시의 조선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며 조선인 소유의 경작지가 많은 오늘날의 간도지역 즉 黑山산맥 이남의 지역을 간도라고 하였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간도는 연길(延吉), 하룡(和龍), 왕청(王淸) 및 훈춘현(琿春縣)과 안투현(安圖縣)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일반적인 시각은 압록강의 건너편을 막연히 西間島라고 하고, 두만강 건너편은 東間島라고도 불러 왔다. 동간도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라 일컬으며, 두만강 지역을 동간도 동부라고 일컬어 왔다. 이 동간도 동부지역을 일명 북간도라 하는 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이 북간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불리우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나, 구한말 청·일간 논쟁의 결과 서쪽으로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서북으로는 노령산맥과 북쪽의 노야령산맥을 거쳐 太平嶺 서쪽의 훈춘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대략 41,000km<sup>2</sup>이며, 위도상으로는 북위 41도55분-동경 128도08분 내외의 지역으로 보고 있다.<sup>5)</sup>

간도지역에서의 우리민족의 역사는 고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 기록은 고조선이 백두산과 헤이룽강(黑龍江) 사이의 송화강(松花江) 일대에서 건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조선이 망한 후 건국한 고구려 역시 고조선의 정통 계승

3) 심여추, “연변조사실록”, 『20세기 중국 조선족 역사 자료집』 (서울: 중국조선족문화예술출판사, 2002), p. 9.

4) 오늘날 사용되는 만주는 라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소위 동북 3성을 포괄한 넓은 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5) 박동기,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p. 12-13.

자임을 자임하면서 舊土회복을 주장하였고, 연변지역 일대를 국방정책에서 매우 중요시 하였다. 688년 고구려가 망한 후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이 지역은 고구려의 뒤를 이은 우리민족의 영토로 자리하였다. 926년 발해가 遼에 의하여 망한 이후, 동북만주지역은 거란, 그리고 여진, 몽고족이 주인노릇을 하였다.

고려 역시 1107년에 윤관을 파견하여 여진을 축출하고 두만강 북쪽 칠백리 지점의 公儉鎭의 先春嶺에 비를 세워 국계를 세워 고려의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선 후에도 조선왕조는 간도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요시하였다. 그러다가 인조 5년 1627년 조선은 금(金)과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어 이 지역에 대하여 封禁政策을 실시토록 양국간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간도지역은 조선말까지 韓人들의 월경이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인지대로 존재하였다.<sup>7)</sup>

遼金시기로부터 광복이전까지의 한민족의 간도지역으로의 이주상황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제1시기(遼金과 원나라시기)에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수십만에 달한다. 예컨대 993년에서 1019년간 遼나라는 6차례나 고려의 변경을 침략하였고, 15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수많은 군민들을 납치하였다. 또한 고려후기(1230) 몽골군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말미암아 납치되어 요동으로 강제 이주해온 고려인도 수십만이나 된다.

제2시기인 명·청 시기에도 요동지역에는 수다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명 초에는 고려인과 명에 투항해 온 여진족이 전 요동지역 인구의 3할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납치되어 온 조선인은 더욱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3시기는 청말기부터 광복이전까지로, 이 시기는 또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860년대부터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를 구분하여 1단계시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조선과 청간에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국경사이에 무인지대를 설정하여 양국민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犯越者가 급격히 증가하여 청조간에 외교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단계는 한일 합방이후인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의 시기로, 일본의 한반도침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韓人들이 이주하여 간도지역은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비록 일본에 의해서 간도일대가 청에 영유되었지만, 韓人들은 자신

7)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한·중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일·청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1990년, pp. 21-27.

〈표-1〉 韓人和 중국인 간도지역 이주현황

년도	한국인	중국인	년도	한국인	중국인
1907	71,000	23,500	1921	307,806	73,748
1908	89,000	27,800	1926	356,016	86,349
1909	98,500	31,900	1933	673,794	
1910	109,500	33,500	1936	888,181	
1911	126,000	35,200			

· 출처: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한·중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일·청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1990년, pp. 27-39.

들의 古土에서 생존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제3단계는 1931년의 만주침략 이후의 시기로, 만주침략을 계기로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확고해지자 1936년부터는 일본의 국책에 의해 정책적으로 한인의 만주이주가 시도되었다. 국책회사인 총독부산하의 鮮滿拓植會社, 소위 만주국의 滿鮮拓植會社가 일본의 만주경영에 부응해서 일반적인 정착지 선정과 아울러 이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입주방식을 규제하였으며 이주자 모집이 강행되었다. 이 세시기 동안 韓人의 간도지역으로의 이전과 지역별 분포현황은 〈표-1〉과 같다.

## 백두산정계비 설립과 간도영유권분쟁의 등장배경

조선과 청간의 간도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같은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 양태진은 1881년 청이 간도지역의 개척에 착수하고 기존 거주민인 한인들의 철수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sup>8)</sup> 아래에서는 조선과 청(淸)나라 간의 간도지역을 둘러싼 갈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간도지역 영유권분쟁의 등장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원래 간도 영유권의 당사국인 조선과 청(淸)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은 대륙에서 원명(元明) 교체기에 두 나라의 대립이 격화되고, 다른 한편 한반도에서는 舊土回復정책을 추진해 여진 정벌에 나섰던 고려가 멸망하고,

8) 양태진, 『한국국경사 연구』, 법경출판사, 1992, p. 131. 이에 반하여 중국의 학계에서는 19세기 후반 이미 북간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산재한 한인들을 조선측에 쇄환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圖門江(土門江)·豆滿江 2 강설을 제기한 것이 국경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춘선, “압록강·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12, 고려사학회, 2002, p. 363.

조선이 건국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주일대의 여진족에 대한 공격과 견제가 느슨해지자, 이를 틈타 여진족의 일부인 만주족이 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그들과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청간의 국경이 처음으로 성립된 것은 1627년(인조5년)의 강도회맹(江都會盟)에 의해서이다. 강도회맹은 소위 정유호란의 강화조약으로, 이에 의하여 청과 조선은 형제의 의를 맺었으며 강도회맹에서 각수封疆(양국은 각각 경계를 封하여 온전히 지키다)이라 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경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1627년 당시에 청의 영역이 만주일대에 불과했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북방국경 전체에 걸치는 경계를 획정했음을 추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경계로 정하였는지는 강도회맹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사료에 의해서도 구체적인 국경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 직후의 자료에는 국경선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 17세기 말 청의 강희제의 명에 의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제작한 지도를 기초로 프랑수아 지리학자 D'Anville이 만든 신중국지도(Nouvel Atlas de la Chine)에는 조선과 청의 국경을 豆滿江의 하구로부터 두만강 북쪽의 흑산(黑山)산맥을 따라 남서향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다가, 백두산을 가로질러 압록강 상류의 모든 수계를 포함하는 동서 산맥을 따라 棍江의 북쪽에서 鳳凰城의 남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서쪽 大東溝에 이르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 하천이 아니라 조선의 영내 하천이 된다.<sup>9)</sup> 이 이후부터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될 때까지는 양국간에 국경문제에 관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간도지역은 청초기 1627년의 강도회맹에서 이미 양국간에 봉금(封禁)하여 무인지대로 남아 있었다. 청나라측에서 봉금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만주가 만주족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명을 공격하여 점차 대륙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북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발전이 저조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측의 이유는 형제관계 또는 군신관계에 있었던 청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변방에서 양국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적인 기능을 위하여 봉금정책을 썼던 것이다.<sup>10)</sup>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의 어느 쪽에 귀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지 양국의 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국이 공히 이 지역에 대하여 봉금정책을 실시하고 상호간에 이를 존중하였다.

이와 같이 청이 봉금정책의 실시이후 돌보지 않던 만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9) 박시우, “백두산 지역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년 12월, p. 9.

10) 박동기(1998), pp. 25-26.

〈지도-1〉 1709년 Pere Regis의 조선왕  
(Royaume de Coree)지도.



• 출처: <http://img.news.yahoo.co.kr/picture/15/20040830/1520040830-12237717.jpg>

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 하였으며, 무커덩이 말하기를 “鴨綠, 土門 양 강이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로 분류하였는 데 강북이 대국의 땅이 되고 강남이 조선의 땅이 되어, 歷年이 이미 오래되어 이론 할 여지가 없음으로 분수령에 碑石을 세우고, 土門江 水源에서 물이 잠류하여 백리를 가서야 큰물이 나타나므로, 이 표석을 세워 인민들로 하여금 변계임을 알고 범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커덩이 발견한 土門江의 水源이 동에서 발원하여 동북방향으로 흘러

은 러시아인의 헤이룽장연안 진출로 인한 청러간 분쟁이었다.<sup>11)</sup> 당시의 청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동북지방의 지도제작을 추진하는(〈지도-1〉 참조) 등 이제까지의 空虛地인 만주지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압록강 이북의 봉금지대를 일방적으로 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였다.

당시 조선은 숙종왕조시기로, 韓人들의 빈번한 월경사건으로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숙종 12년에는 犯越事件의 벌금으로 은 12만 냥을 청에 문 일도 있었다. 특히 숙종 36년 李萬建 외 8명이 월경하여 淸人 5명을 살해하고 蔘貨를 掠取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은 조선과의 국경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이 지역을 답사토록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청의 무커덩(穆克登)이 숙종 38년(1712년)에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정

11) 이 분쟁의 결과 1689년 청의 索額圖와 러의 페오도르(Feodor Alexivitch Golovin)간에 네르친스크(Nerchinsk)조약이 체결되어, 러시아는 外興安嶺과 額爾古納河(黑龍江 상류중의 하나)를 경계로 청과 국경이 접하게 된다.

### 〈사진-1〉 백두산 정계비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두만강의 상류인 紅土水·石乙水 兩水가 합류하는 것을 土門江의 원류가 兩水와 합류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러한 무커덩의 오인을 조선의 接伴使 朴權이 지적하였지만, 무커덩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권이 말하는 臨江臺로 흘러내리는 물은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고 大國地方의 衆水가 합류하여 흐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조선에서는 정계비로부터 土門江 발원지에 이르는 사이에 木柵, 石堆 土堆를 쌓아 국경을 표시하였다.<sup>12)</sup> 이것은 청과 조선 양국이 정계비로 국경을 정하였지만, 후일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로 보는 조선과 土門江이 豆滿江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

하는 청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정계비는 한국과 중국간에 국경에 관한 최초이자 마지막의 명문화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백두산정계비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선과 청간에는 압록강-백두산정계비-토퇴, 석퇴, 목책-(송화강 지류인)土門江선이 국경으로 확정된 것이다.<sup>13)</sup>

## 간도영유권분쟁의 전개과정과 ‘間島協約’

갑신정변부터 청일전쟁까지 10년간 조선에서는 청을 포함한 외세에 대한 반발로 민족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 민족주의 의식에 바탕을 둔 영토 의식도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事大關係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 조-청 관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조선이 국경분쟁에서 소극적이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청과의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조선과 청간에는 간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자기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12) 이일걸(1990), pp. 9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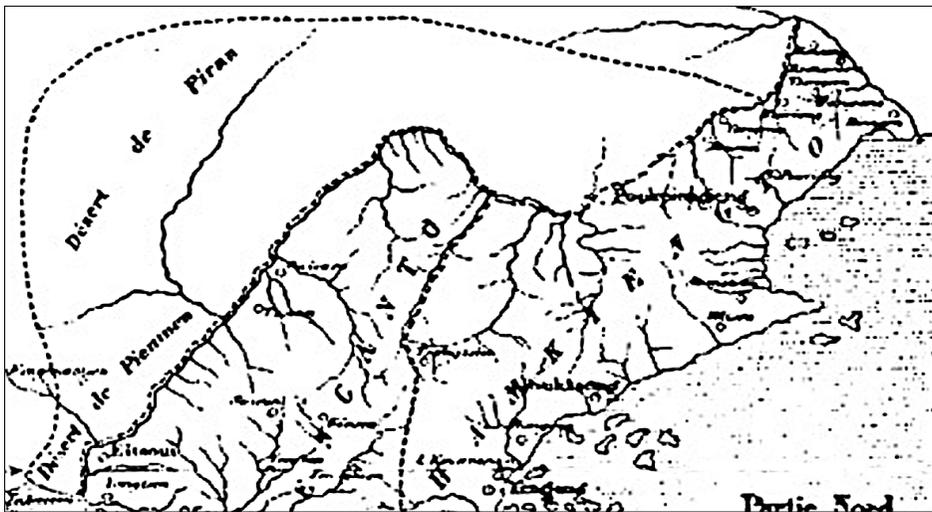
13) 박동기(1998), pp. 35-36.

1712년 백두산정계비의 설립이후에도, 무인지대를 둘러싼 조선과 청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간도지역은 기본적으로 朝

청과 조선 양국이 정계비로 국경을 정하였지만, 후일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로 보는 조선과 土門江이 豆滿江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는 청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와 淸間に 무인지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무인지대의 성격도 점차 변질되어 갔다. 1867년 청에 의한 일방적인 봉쇄의 파괴는 압록강 연안에 漢族의 유입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듬해 1883년에는 청의 敦化縣이 일방적으로 조선의 鐘城과 會零의 양 주민에게 土門江(즉 豆滿江) 이북에 사는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일년 이내에 추방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이에 같은 해 간도지방에 사는 조선주민들은 土門江 境界가 기록되어 있는 백두산정계비와 土門江의 江源을 답사하고 衆智를 모아 청나라의 고시의 부당함을 鐘城府使 李正來에게 호소하였다. 조선정부는 조선, 청간에 간도귀속문제와 주민보호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고 간도의 조선인이 간도영유권문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지자, 같은 해 魚允中을 西北經略使로 임명하여 사

〈지도-2〉 파리지리학회지 1885년 만주지도



·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life/200404/h2004041919474044390.htm>(검색일: 2004.10.29)  
 \*1885년 파리의 지리학회지에 실린 한반도 만주지도. 간도를 조선 내 행정구역 표시와 같은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실을 명백히 조사케 하였다.

그 결과 어윤중은 土門江은 송화강 상류로서 헤이룽강에 합류되어 바다로 들어가고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는 간도지역에서 청 정부와 청인이 조선인에게 광폭한 짓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종에게 토문강 이하의 간도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을 설명 보고하고 조선도 정식으로 간도지역의 봉금 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을 장려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土門江 이하가 조선 영토임을 淸에 공문을 통하여 정식으로 통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장차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조사를 하자는 요지의 통고를 하고, 무인지대에 대한 이주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는 조선이 청에 간도영유권문제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공문으로써, 조선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청외교정책을 펼쳤다. 이에 청은 리홍장을 통하여 1885년 회답공문을 보내고 조선은 外務督辦 金允植이 다시 공문을 보내어 조선 청 양국은 勘界會談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과 청은 1885년과 1887년 감계회담을 진행하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885년 조선정부는 답사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土門江을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하여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지방의 조선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정부는 다시금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이 시기 朝淸간 국경지도에는 간도지역이 조선에 속해있다. 참고<지도2>). 그 결과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서 제1차 국경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국경회담에서 조선측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국경획정의 근거는 백두산 정계비이므로, 비의 내용에 따라 土門江이 국경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것이므로, 백두산 정계비를 기점으로 토문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국경을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淸측은 土門江이란 豆滿江을 의미하며, 圖們江(豆滿江)이 역사적으로 지켜져 왔던 국경이므로, 豆滿江의 본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지류 중 어느 것을 국경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하고 답판은 결렬되었다.<sup>14)</sup>

14) 박시우(1992), pp. 14-17.

1차 회담 이후 1887년에 제2차 회담이 있었으나 조선과 청간에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간도의 소속이 조선과 청나라에 명확하지 않은 채로 양차의 회담이 결렬되자, 청은 紅丹水 국경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청은 이미 1880년에 珲春에 招墾局을 설치하였고, 1903년에 局子街에 撫民兼理事府(통칭 延吉廳)을 설치하는 등 간도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조선도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정부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임명(1903년 8월 북간도관리사로 승격), 간도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한인들의 가구수는 27,400여 호 인구 총수는 모두 10만 여 명에 달하였다. 이곳의 대부분의 한인들은 중국인들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농노와 마찬가지였다. 또한 부패한 청의 관리들의 행패나 지주, 마적 등의 박해도 심했다. 그러나 이범윤이 조직한 사포대(私砲隊)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한-청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1904년 6월 대한제국과 청의 지방관리 사이에 한청변계선후장정(韓淸邊界善後章程)이 체결되어 분규는 일단 진정되었다.<sup>15)</sup>

이같은 조선과 청간의 간도분쟁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간도 문제의 이해당사국으로 개입하면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1905년 11월 일본의 강요와 협박으로 소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구 한국정부는 외교권을 강탈당하였다. 이에 1906년 11월 참정대신 박제순(朴齊淳)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8월 통감부는 연변의 용정촌에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한인들을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간도정책은 대륙정책의 전초기지로서 간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간도영유권의 희생의 대가로 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6)</sup> 이에 따라 1908년 9월부터 일본은 간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청과의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이것이 1년 가까이 난항에 부닥치자, 일본정부는 방향을 전환하여 간도영유권 희생을 통한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라는 방향에 따라 1909년 9월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통칭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협약에서 일본은 간도지방을 넘겨주는 대신 안봉선(安奉線) 등 철도부설과 탄광채굴권 등 만주에서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침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

15) 장세윤(2004), p. 21.

16) 박시우(1992), pp. 18-19.

다. 간도협약의 제1조는 청일양국은 투먼강(圖們江)을 국경으로 하고,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스이수이(石乙水)를 경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약 2세기 동안 무인지대로 존재해오다가 19세기 초반부터 조선과 청간의 영유권분쟁지역으로 존재해 오던 간도지역은,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강탈돼 당사국인 조선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본간의 조약을 통하여 청에게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영유권분쟁의 당사자가 배제된 채 강행된 불법조약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시기에 열강들 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 특히 1952년 4월 28일 중·일간에 체결된 조약 등에 의해 이전에 맺은 조약의 효력이 부인되었다는 점에서 간도협약자체의 유효성도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간도영유권문제는 여전히 한중간의 분쟁의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 북·중 국경조약과 간도영유권분쟁

일제 식민지가 종식된 이후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가 다시 분쟁의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한국측은 중국과의 간도 및 국경지역문제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실질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대신 중국과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및 영토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간도영유권문제가 한중간의 분쟁의 쟁점으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북중간 국경회담 및 간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모두 3건의 영토분쟁을 안고 있다. 중국과는 지금까지 살핀바와 같이 간도 및 백두산 지역 영토분쟁이, 구소련과는 두만강 하구의 鹿屯島의 귀속과 관련된 영토분쟁이 있어 왔다. 이외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의 航行權과 河上島嶼의 귀속문제, 수풍댐과 교량의 관할문제가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 상술한 국경분쟁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백두산지역 국경선에 대하여 수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국경선획정에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과의 백두산지역 영토분쟁은 첫째, 백두산 천지, 둘째, 천지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 셋째, 천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 등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천지의 현재 국경은 중국측의 자료에 의하면, 천지 남서쪽 靑石峰(2,662m)과 梯云峰 사이의 濕雪崖 부근으로부터 북동쪽 紫霞峰과 望天吼(2,

712m) 사이 지점의 천지 주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삼고 있다. 둘째, 천지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은 중국이나 북한 모두 천지로부터 대략 북위 42도 3분 동경 128도 24분 지점까지를 직선으로 잇는 선을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 직선의 동쪽 선단은 두만강의 세 지류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紅土水線의 최북단 지점이다.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이 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양측이 잠정적이든 확정적이든 합의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천지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상기 濕雪崖로부터 천지 남서쪽 주변 2,600m이상의 고지의 분수령을 연하여 남행하면서, 리명수와 압록강의 주류가 만나는 지점까지의 압록강 수계를 북한에 포함한 선을 국경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국경선에 대하여, 북한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마다 상이한 국경 표시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들이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잠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국경이라고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1977년과 1978년 북한과 중국이 각각 백두산지역 국경선의 표시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참고<지도-2>).<sup>17)</sup>

북한과 중국의 상술한 국경획정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타이완이나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1970년 1월 29일 압록강 두만강 운항협정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영토분쟁은 일단락되고, 1970년 8월 13일에 백두산천지에 비석을 세워 국경표식을 하였다는 설이 있다.<sup>18)</sup> 한편 이종석은 1962년 10월 평양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64년 3월 북경에서 천이(陳毅) 중국외교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외상간에 '중조변계의정서'를 체결하여 국경선 획정문제를 종결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이같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처리는 그 근거가 모호하다. 백두산 정계비의 효력이 인정되면 천지에 대한 국경협정이 있어야만 하는 데, 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간도협약이 유효하면, 압록강-정계비-스이수이선(石乙水線)이, 반대로 그것이 무효이면 압록강-정계비-토문강선이 국경이 되어야 하는 데, 현재의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은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이 모두 배제되어 있는 제3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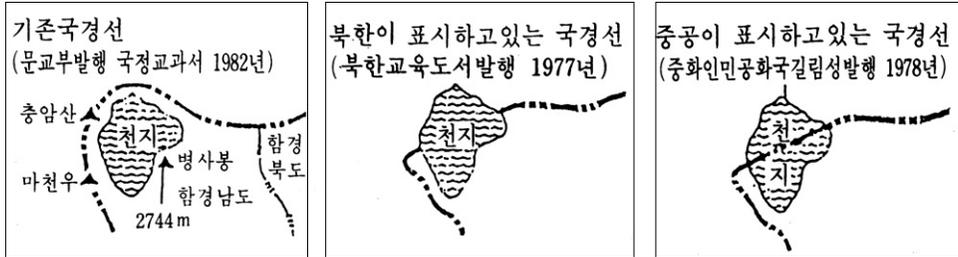
그러므로 현재 국경선은 수차에 걸쳐 양국의 이해를 절충, 조정하여 잠정적으로 획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에

17) 박시우(1992), pp. 22-24.

18) 박시우(1992), p. 24.

19)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pp. 232-236.

〈지도-3〉 백두산 일부 割讓圖



· 출처: 『북한의 실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6, p.94.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들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양국간에는 국경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중국에 대해 국경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도 있다. 추후 남한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국경조약이 논란거리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 현안과 쟁점

상술한 바와 같이 朝淸간에 오랜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던 간도지역을 청에게 양도한 것은, 분쟁의 당사국인 청 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협약자체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간도문제는 최근 동북공정의 배경을 둘러싸고, 또 다시 한중간의 중요한 외교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09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이른바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는 무효하지만, 간도의 영유권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sup>20)</sup> 답변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리적으로나마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도지역이 한중간의 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못하며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사료에 기반해 충실히 조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우선, 간도의 지리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누구도 간도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모르며, 이 문제에 대하여 한중간에 명확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한중 국경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토문강(土門江)이 豆滿江이나, 아니면 별개의 강이나 하는 점이다. 즉 정계비문 가운데 동위토문(東爲土門)을 둘러싼 논쟁이 한중 국경분쟁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측은 줄곧 土門江은 豆滿江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은 이를 적극 부인하며 오히려 백두산 전체와 천지는 周, 秦 이후 중국에 귀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백두산정계비의 설치로 백두산 동남부 산기슭을 조선측의 속임수에 속아 빼앗긴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그리고 명초부터 한중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圖門江(土門江, 豆滿江)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圖門江과 土門江, 豆滿江이 같은 강이라는 것이 중국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처럼 간도에 대한 지리적인 범위조차도 명확치 않으며, 이는 아직 양국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土門江과 豆滿江이 별개의 강이라는 자료도 많지만, 동일한 강이라고 파악한 자료도 적지 않다.<sup>21)</sup>

이는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사료에 기반해 충실히 조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중간의 국경회담을 통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 천지를 양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간도문제의 제기는 북한과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20) 『동아일보』 2004년 10월 22일.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제약 요인이다. 물론 북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중국에 대해 국경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도 있다. 추후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국경조약이 논란거리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셋째, 중국과 간도 영유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백두산지역에 있어서의 국경은 백두산정계비-土堆,石堆,木柵-土門江선이 된다. 이 경우 우리 민족의 성지로 인식되는 백두산의 천지 전부가 중국에 귀속되게 된다. 국경회담에서 스이수이(石乙水)국경을 주장한 청은 1909년 간도협약으로 정계비와 스이수이를 국경으로 확정하였고, 이로써 백두산 천지는 청의 영토가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북한과 중국간에 국경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1962년 조중 국경조약으로 백두산천지의 중양과 홍투수이를 국경으로 확정하였다.<sup>21)</sup> 만약 이러한 북한의 성과를 무시하고 간도협약을 무효로 할 경우 현재 북한이 영유하고 있는 백두산 천지의 절반 및 홍투수이에서 스이수이에 이르는 영역이 분쟁지로 될 위험도 있다.

이처럼 간도문제의 제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과 연계되어 있어, 선불리 제기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영토문제에 특히 민감한 중국에게 선불리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은 비록 간도협약에 대한 법리적인 무효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리와 외교적인 현실을 분리하여, 법리에 근거하여 중국을 상대로 정부가 간도 영유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의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장세윤(2004), p. 24.

22) 이 때문에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 주장인 주더하이(朱德海)는 백두산천지를 북한측에 팔아넘긴 매국노로 몰려 수난을 당하였다.

# 조선은 고구려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 朝鮮不等同高句麗

張俊峰 (언론인·중국인)

今年七月，中朝兩國同時申報高句麗遺址爲世界遺產。朝方的朝鮮高句麗遺址項目申請獲得通過後，中國高句麗遺址的申報隨後獲得了通過。但隨後發生的事，卻讓這本來令人欣喜的會議變得有些不愉快：朝鮮申辦代表團向與會各國人士分發一本書籍：《高句麗的古墓壁畫》。此舉意圖證明中國歷史上高句麗是今天朝鮮民族的祖先；那麼，高句麗歷史就成爲了朝鮮的而非中國的歷史。也就是說，中國無權把中國歷史和高句麗歷史放在一起闡述。

中國有沒有權利把中國歷史和高句麗歷史放在一起談呢？

以學術態度來探討的話，不妨來看一看歷史文獻。在司馬遷的《史記》中就已經有關於「朝鮮」的記載。《史記》卷一百一五〈朝鮮列傳〉云：「朝鮮王滿者，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朝鮮，爲置吏，築鄣塞。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涓水爲界，屬燕。」張守節《史記正義》引用《括地志》來注解這段話：「高驪都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朝鮮地也。」大意是：戰國時期，北方的燕國會攻略真番和朝鮮，在當地建立了政權機構，主要用作邊塞。秦國統一天下，則這兩處地方仍然屬於遼東的邊塞。漢朝時，其地屬於諸侯燕國，邊界在涓水，涓水頭在遼東，從西南流經樂浪縣進入黃海。流域在今天的朝鮮半島。也就是說，從戰國到漢朝，朝鮮都是與中原王朝有着緊密聯系的地方政權。其國王衛滿也是從燕國流亡出去自立爲王的。其政權中心是王險，也就是平壤。

到了衛滿的孫子右渠統治朝鮮時，因爲壓迫當地的其他族群，並且與漢朝廷發生了齟齬，漢朝天子先後以囚徒組成的軍隊和正規軍征伐右渠，最終在漢武帝元封三年時，右渠被大臣尼溪相參派人殺死，而另一大臣成巳占據王險城（平壤），被誅滅，朝鮮遂定。漢朝將其地分爲真番、臨屯、樂浪、玄菟四郡。也就是說，西漢時期，朝鮮是中央王朝按郡縣制管轄的地方政權。

### 东汉记述渐渐详细

这是《史记》中的记载，其核心是朝鲜与中原在西汉时的关系。班固的《汉书》基本沿袭了司马迁的说法。到了范曄写《后汉书》，也就是东汉的历史时，记载更具体了：

「高句骊，在辽东之东千里，南与朝鲜、濊貊，东与沃沮，北与夫余接。」如果范曄不是凭空捏造的话，那么，在东汉人的眼中，高句丽和朝鲜并不完全相等，高句丽在朝鲜的北面，也就是现在的辽东一带。

应该注意的是，在范曄的描述中，今天的朝鲜半岛还有另外三个区别于句骊的政权：马韩，辰韩，弁辰。马韩的北面是汉朝乐浪郡，辰韩北面是濊貊，弁辰在辰韩的南边。这是所谓的「三韩」。其中辰韩「自言秦之亡人，避苦役，适韩国」。所以，且不论朝鲜和中原的关系应当怎样定性，至少到东汉为止，高句骊不等于朝鲜，二者间是有一段距离的——它与朝鲜半岛的「三韩」，中间还隔着一个濊貊。但在《后汉书》中又提到：「濊及沃沮，句骊，本皆朝鲜之地也。」而这个朝鲜，来源是「昔武王封箕子于朝鲜」，也就是常说的「箕子朝鲜」。而上文说到的被燕人卫满占领后来又西汉分为四郡的政权，通常被称为「卫氏高丽」。

到这里，我们或许会发现古人正史中的矛盾之处，为什么一会儿高句丽「南与朝鲜接」，一会儿又「濊貊及沃沮，句骊，本皆朝鲜之地也」呢。其中原因，或许是「朝鲜」一词来源较古，涵义较广，概指今日的朝鲜半岛一带；高句丽则指涉较具体，主要指朝鲜西北部区域而言。正史叙述的矛盾，正反映了这对概念的复杂关系。

### 隋唐东征 设立安东都护府

西汉灭掉了卫氏高丽并分四郡治之后，高丽时附时叛。它北边有另外一个少数民族政权夫余。历史记载，夫余王的一个妻子无端有了身孕，生下的孩子被夫余王厌恶，长大之后，得到了一个名字叫朱蒙。朱蒙和夫余君臣发生了矛盾，于是往东南方向逃到纥升骨城，建立了自己的势力，号「高句丽」，而且给自己取了一个姓氏为「高」，这就是历史上的高句丽政权。

中国的南北朝时，高句丽王为高汤。周武帝封他为上开府仪同大将军、辽东郡公、辽东王。隋文帝夺取了周的政权后，改封高汤为高丽王。隋朝统一南边的陈以后，高句丽害怕成为隋的下一个目标，开始着手防备。其后因为率靺鞨族骚扰辽西，隋文帝大怒，开始征伐高句丽。一直到隋炀帝，因为中原内部发生变乱，所以东征告停。

当时朝鲜半岛共有三个政权，除了高句丽外，还有百济和南部的新罗。唐朝开国后，唐太宗决定彻底结束来自高句丽的侵扰，他说：「辽东故中国地，而莫离支贼杀其主，朕将自行经略之。」还说：「今天下大定，唯辽东未宾，谋臣导以征讨，丧乱方始，朕故自取之，不遗后世忧也。」于是发兵征伐。最后于唐高宗干封三年攻克高句丽，在其地设立安东都护府，薛仁贵担任都护。唐朝仍然保留高氏贵族治理其地。

### 始于篡终于篡

唐末中原多事，朝鲜半岛内部也发生了变乱，后唐长兴三年，王建逐渐控制了朝鲜半

岛。后唐明宗讓他担任玄菟州都督，封号爲高丽王。從此「王氏高丽」時期开始，每一任高丽王都由中央王朝册封。

据清朝张廷玉的記錄，明朝高祖开國時，王颯爲高丽王。洪武六年，王颯被權臣李仁人所弑，李仁人立王颯義子王。洪武二十一年，高丽內亂，王被將軍李成桂囚禁。二十二年，李成桂自立，請求朱元璋允許他更改國号，朱元璋命采用古号「朝鮮」。至此「王氏高丽」結束，「李氏朝鮮」开始。

此唐非彼唐

單從历史文獻來看。朝鮮在历史上曾經有過不同的政權形态：箕子朝鮮的阶段；衛氏高丽和三韩并存的阶段；高氏高句丽政權和百濟、新罗并存的阶段；王氏高丽统一的阶段；李氏重新被册封以「朝鮮」爲國号的阶段。它們之間並沒有直接的聯系。「朝鮮」这个名词，不同時期，其所代表的政權、地域位置、地理范围都有不同，需做具体分析。例如，中國历史上李渊建立了唐朝，后来唐朝灭亡，沙陀族人李克用也建了一个國号爲「唐」的政權（史称「后唐」）。我们能說此唐是彼唐吗？

何况，朝鮮半岛有朝鮮人，吉林省也有朝鮮人，同一个民族，分布在不同的國家是常见的。不能因此而不准別人研究有關的历史。

交集还是子集？

有一些對中國帶着偏見的人說，中國研究自己吉林省境内的高句丽遗迹，是對朝鮮半岛有野心。例如哈佛大學的拜因頓說，今日南北韩民族的历史地理传统意義可以追溯到公元七世纪。那么，中國吉林省集安市发现的高句丽好太王碑，是公元四一四年所立。是不是拜因頓又要据此把论点往前推三百年呢？在今年七月一日，在苏州舉行的第二十八届世界遺產委員會會議上，中國吉林省集安市的高句丽王城、王陵及贵族墓葬被列入世界遺產名錄。從这个遗迹，我們可以遙想到公元九世纪爲止，共存在了七百多年的高句丽曾經繁盛一時的图景。中國並沒有把高句丽文化和中原汉族文化混爲一谈，只是對自己國家土地上一个曾經存在过的文化进行保护和研究，这究竟触到了谁的逆鱗呢？

记得曾經在媒体上看到<FONT color=#0938f7>韩国前總理李汉东接受记者访问，问及作爲總理，他最大的理想是甚么。李先生說，是讓韩国成爲世界的中心。所谓「欲亡其國，先亡其史」，反过來看，欲成其勢，先造其史。</FONT>中國的學者從历史的角度來探讨在自己國家出现的高句丽民族历史文化，却有人把历史上的高句丽文化和今天的朝鮮民族混在一起爭论。这實在令人費解。

(출처: <http://www.blogbus.com/blogbus/blog/diary.php?diaryid=437657>)

전문 번역

조선은 고구려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번역 / 이 정 남 (고려대 연구교수)

올 7월, 중국과 조선 양국이 동시에 고구려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조선 측의 고구려 유적지에 관한 세계문화유산지정에 관한 신청이 통과된 이후, 곧이어 중국의 고구려유적지에 대한 신청도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 회의는 원래 매우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지만, 그 후에 발생한 일에 의하여 유쾌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의 신청대표단이 회의에서 각국의 인사에게 <고구려의 고분벽화>라는 하나의 문서를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이 문서를 배포한 이유는 중국 역사상의 고구려가 오늘날의 조선민족의 선조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는 바로 고구려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이지 중국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를 함께 서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를 함께 거론할 수 없는가?**

학술적인 태도에 근거하여 논의를 한다면, 역사적인 문헌을 검토해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사마천의 <史記>에 이미 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사기>의 {朝鮮列傳}에 따르면, “朝鮮王滿者, 故燕人也。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 朝鮮, 为置吏, 筑鄣塞。秦灭燕, 屬辽東外徯喊。汉兴, 为其远难守, 复修辽東故塞, 至累沮水为界, 屬燕。張守节는 <史記正義>에서 <括地志>을 인용하여 이 단락을 “高驪都平壤城, 本汉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라고 해석하였다. 상술한 단락의 대략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戰國시기 북방의 燕나라가 진번(眞番)과 조선을 공략하고 그 지역에 정권기구를 건립하여 국경의 요새로 삼았다. 秦나라가 통일한 이후에도 이 두 지역은 여전히 요동의 변방지역에 속하였다. 漢나라 때, 그 지역은 제후국 연나라에 속하였는데, 경계지역에는 沮水가 있었다. 패수의 본류는 요동지역에서 출발하여, 서남쪽의 낙랑현(樂浪縣)을 거쳐서 황해로 흘러들어갔다. 그 유역이 오늘날의

조선반도이다.” 다시 말하면, 전국시기부터 漢나라 시기까지, 조선은 모두 중원의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방정권이었다. 그 국왕인 위만(卫满) 역시 燕나라로부터 도망 나와서 스스로 왕조를 설립하였으며, 그 정권의 중심은 왕험(王險), 즉 평양이었다.

위만의 손자 우거(右渠)가 조선을 통치할 때, 그 지역의 기타 민족들을 억압하였고, 또한 漢나라 조정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漢나라 천자는 죄수로 조성된 군대와 정규군을 통하여 우거(右渠)를 정벌하였다. 최종적으로 漢무제 3년에 우거가 대신(大臣) 니계상참(尼溪相參)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리고 왕험성(평양)을 점거하고 있던 또 다른 대신인 成己가 죽임을 당하면서 조선이 안정되었다. 한나라는 기타 지역을 眞番과 임둔(临屯), 낙랑(樂浪), 현토(玄菟) 등 4군으로 분할하였다. 다시 말하면, 西漢시기에 조선은 중앙왕조가 군현제에 근거하여 관할하였던 지방정권이었다.

### 東漢시기에 이르면 관련된 서술이 점점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기〉 중의 기록이다. 그 핵심은 조선과 中原의 西漢시기의 관계이다. 반고(班固)의 〈漢書〉는 기본적으로 사마천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범엽(范曄)이 쓴 〈後漢書〉에 이르러서, 즉 東漢의 역사에 이르러서, 서술은 더욱 더 구체화되었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걸쳐서 있고, 남쪽으로는 조선과 예맥(濊貊), 동으로는 옥저, 북으로는 부여와 접해있다.” 범엽이 터무니없이 조작하지 않았다면, 東漢 사람의 눈에는 고구려와 조선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고구려는 조선의 북쪽 즉 바로 현재의 요동일대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범엽의 서술 속에 오늘날의 조선반도에는 句驪와 구별되는 마한(馬韓), 진한(眞韓), 변진(弁辰)이라는 3개의 정권이 있다는 점이다. 마한의 북쪽에는 漢나라의 낙랑군이, 진한의 북쪽에는 예맥이, 변진은 마한의 남쪽에 있었다. 이것이 소위 ‘3韓’이다. 그중 진한은 진나라의 유민들이 노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에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원과 조선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띠어야 하던, 최소한 東漢에 이를 때 까지 고구려는 조선과 달랐다. 둘 사이에는 공간상으로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즉 고구려와 조선반도의 3한, 그 중간에는 예맥이 존재하면서 이들 간에 공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후한서〉에서는 또한 예맥과 옥천, 句驪는 원래 조선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선은 석무왕(昔武王)

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책봉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기자조선(箕子朝鮮)이다. 앞에서 언급한 燕나라 사람 위만(卫滿)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나중에 西漢에 의해서 4군으로 분할된 정권은 통상 ‘위씨 고려’라 불리 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마도 고대인이 쓴 정사(正史)에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고구려가 남쪽으로는 조선과 접해 있다고 잠시 동안 얘기했다가, 잠시 후에는 또 예맥과 옥천, 구려는 조선의 땅이라고 서술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아마도 조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비교적 오래 되었고, 함의가 비교적 넓어, 대개 오늘날의 조선반도 일대를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고구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로 조선의 서북부지역을 가르치는 말이다. 정사(正史) 서술의 모순은 바로 이러한 개념상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 수나라와 당나라는 동쪽을 정벌하여 安東都護府를 설립하였다

西漢이 “위씨 고려”를 무너뜨리고 4군으로 분할통치를 한 후, 고려는 어떤 때는 복속되었다 어떤 때는 배반했다 하였다. 그것의 북쪽에는 또 다른 소수민족 정권인 부여가 있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왕의 부인 무서(無瑞)가 임신을 하여 낳은 아기가 부여 왕에 의해 미움을 받았고, 성장 이후에 주몽(朱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몽과 부여의 군신들과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에 그는 동남방향으로 도주하여 자신의 세력을 길러서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을 고씨로 하였고, 이것이 바로 역사상의 고구려 정권이다.

중국의 남북조시기에, 고구려왕은 고탕(高湯)이었다. 수나라의 무제(武帝)는 그를 상개부의동대장군(上開府儀同大將軍), 요동군공(遼東郡公), 요동왕(遼東王)으로 봉하였다. 수나라의 문제가 주의 정권을 탈취한 후에, 고탕을 고려의 왕으로 바꾸어 책봉하였다. 수나라가 남쪽의 진(陳)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는 수나라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방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고구려가) 말갈족을 이끌고 요서(遼西)에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문제가 크게 분노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기 시작하였다. 수 양제에 이르러, 중원의 내부에 변란이 발생하면서 동벌정책은 중단되었다.

당시에 조선반도는 모두 3개의 정권이 있었다. 고구려 외에, 백제와 남부의 신라가 있었다.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 당 태종은 고구려로부터의 침략의 우려를 철저히 깨닫지을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결국 당 고종 3년

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그 자리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립하였고, 설인귀(薛仁貴)가 도호(都護)를 맡도록 하였다. 당나라는 여전히 고씨 귀족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 찬탈로 시작해서 찬탈로 끝나다

당 말기에 중원의 사정은 매우 복잡하였고, 조선반도 내부에도 변란이 발생하였다. 後唐 장흥(長興) 3년, 왕건이 점차 조선반도를 통제해 갔다. 後唐 명종은 그에게 현토주(玄菟州) 도독(都督)을 맡도록 하였고, 그를 고려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때부터 왕씨 고려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고려의 왕들을 모두 중앙왕조가 책봉하였다.

청조의 장연옥(張延玉)의 기록에 근거하면, 명나라 고조의 개국시에 왕전(王覲)이 고려왕이 되었다. 홍무(洪武) 6년 왕전(王覲)은 권신 이인인(李仁人)에 의해서 살해되고, 이인인은 왕전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홍무 21년 고려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왕이 장군 이성계에 의해 감금을 당하였다. 22년 이성계는 자립하여 국호변경을 허락해 줄 것을 주원장에게 요청하였고, 주원장은 옛날 명칭인 조선을 채용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씨 고려’가 끝나고 ‘이씨조선’이 시작되었다.

### 唐과 後唐은 다르다

역사 문헌상으로만 보면, 조선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정권형태들이 존재해 왔다. 기자조선의 단계, 위씨 고려와 3한 병존의 단계, 고씨 고구려정권과 백제, 신라병존의 단계, 왕씨 고려의 통일단계, 이씨가 조선이라는 국호로 새롭게 책봉된 단계이다. 이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조선이라는 단어는 상이한 시기에 그것이 대표하는 정권과 지역적 위치, 지리적인 범위 등이 모두 달랐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역사에서 이연(李淵)이 당나라를 건립하였고, 그 후 당나라가 망하였으며, 그 후에 사타족(沙陀族) 이극용(李克用)도 국호를 당나라로 하는 정권(역사적으로 후당이라고 칭함)을 설립하였다. 우리가 이 당(後唐)을 곧 저 당(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물며 조선반도에는 조선인이 있고, 길림성에도 역시 조선인이 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 함께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독으로 존재하는가?

중국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이 자신의 길림성내의 고구려 유적을 연구하는 것이 조선반도에 대하여 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하바드대학의 바잉턴은 오늘날 남북한민족의 역사 지리적 전통의 의의는 기원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호태왕(好太王)비는 414년에 만들어 졌다. 그렇다면 바잉턴은 또한 이에 근거하여 논점을 3백년을 더 당기려고 할 것인가?

올해 7월 1일, 수저우(蘇州)에서 거행된 2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상에서 중국의 지린성 지안시의 고구려 왕성과 왕릉 및 귀족 묘가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갔다. 이 유적으로부터 우리는 기원 9세기까지를 추정할 수 있고, 모두 7백여년 동안 존재하였던 고구려가 번성했던 시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은 고구려의 문화와 중원의 한족문화를 하나로 혼합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 국토 상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에 대하여 보호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역린을 건드렸는가?

한국의 이한동 전총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리로서 그의 최대의 이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는 것을 기억한다. 소위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역사를 먼저 망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그 세력을 번성하게 하려면 우선 그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학자들이 역사적인 시각으로부터 자기 국가에서 출현한 고구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의 고구려 문화와 오늘날의 조선민족을 함께 놓고 논쟁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자료 ①

## 백두산 정계비문

백두산이 청조(淸朝) 발상의 영산(靈山)이라 하여 그 귀속을 주장하던 청은, 1712년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자선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參判) 권상유(權尙游)를 접반사(接伴使)로 보내었으나, 청의 사절이 함경도로 입국함에 따라 다시 참판 박권(朴權)을 접반사로 출영(出迎)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 자신이 조선측의 접반사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 감사군관(監司軍官) 조태상(趙台相), 통관(通官) 김응현(金應緝) 등만을 거느리고 산정에 올라가 거의 일방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그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km, 해발 2,200m 지점이었으며, 비면(碑面)에는 위에 대청(大清)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烏喇總管 穆克登, 奉旨查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 이라 각서(刻書)하고 양쪽의 수행원 명단을 열거하였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砮)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자, 1783년 조선 측은 어윤중(魚允中)·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 뒤 9월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종사관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土門)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넘겨 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백두산 정계비 탁본



● 백두산 정계비문

大清  
烏喇總管 穆克登, 奉旨查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

오라 총관 목극등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변방의 경계를 직접 조사하고자 이 곳에 이르러 살펴 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나뉘는 고개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관련자료 ②

##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1909년 9월 4일 조인(調印)

대일본제국 정부와大清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辦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 제 1 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 제 2 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 제 3 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 제 4 조

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

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5 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產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 제 6 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결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 제 7 조

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

대청국 흙명외무부상서회변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辨大臣) 양둔언(梁敦彥)

# 中日间的钓鱼岛群岛争端

(중·일간 釣魚群島 분쟁)

王生 (중국 길림성 동북아연구센터 부연구원 · 중국인)

钓鱼岛群岛问题, 是中日之间悬而未决的领土主权争议问题. 要解决中日钓鱼岛群岛问题领土纠纷, 首要前提是还钓鱼岛群岛问题以领土纠纷的本来面目。

在本文中, 笔者就钓鱼岛群岛究竟是一个怎么样的岛屿? 有什么经济和军事价值? 为什么中国和日本两国都主张是自己的领土, 各自的主张和理由是什么? 同时对围绕着钓鱼岛群岛领有权问题的历史背景, 中日两国的研究现状做一考察. 结论部分对本文的中心内容做一总结并提出自己的见解。

## 一, 钓鱼岛群岛概况

### 1. 钓鱼岛群岛地理

钓鱼岛, 全称“钓鱼台群岛”, 日本称其为“尖阁列岛”<sup>1</sup>. 钓鱼岛自古以来就是中国的领土. 它位于中国东海大陆架的东部边缘, 在地质结构上附属于台湾的大陆性岛屿. 钓鱼岛等岛屿位于东经123°—124°; 北纬 25°—26°之间. 距中国台湾省东北的基隆大约 92海里, 距日本琉球群岛约73海里, 但相隔一条深1000至2000米的海沟, 该海沟成为中国和琉球群岛之间的天然分界线. 钓鱼岛列岛由钓鱼岛(4.3平方公里)、黄尾屿(1.08平方公里)、赤尾屿(0.154平方公里)、南小岛(0.463平方公里)、北小岛(0.302平方公里)和3块小岛礁即大北小岛、大南小岛、飞濑岛等组成, 总面积约6.344平方公里. 在钓鱼岛群岛中, 钓鱼岛的面积最大, 岛上有九个山峰, 主峰海拔363米. 东南侧山岩陡峭, 呈鱼叉状, 东测岩礁颇似尖塔. 这些岛屿在地质上和花瓶屿、棉花屿、彭佳屿一起, 都是台湾北部近海的观音山、大屯山等海岸山脉延伸入海后的突出部分, 为台湾岛的附属岛屿。

因为在地质上, 钓鱼岛等岛屿处于台湾海盆之内, 是中国东海海床的边缘, 与台湾本岛及东海岸之间, 同属一个地质单元, 海深仅及200公尺之内; 而琉球群岛则是千岛群岛、日本群岛、菲律宾群岛等等构成的“花旗列岛”的一环, 钓鱼岛等岛屿与琉球群岛之间, 却横亘着深达1000—2719公尺的“琉球海沟”(Ryukyu Trench), 二者在地质上互不相干。

<sup>1</sup>센카쿠, 센카쿠 열도.

## 2. 钓鱼岛群岛的经济价值

钓鱼岛列岛及其周围海域具有巨大的经济开发价值。1966年联合国亚洲及远东经济委员会经过对包括钓鱼岛列岛在内的中国东部海底资源的勘查，得出结论：东海大陆架可能是世界上最丰富的油田之一，钓鱼岛附近水域可能成为“第二个中东”。据资料统计，目前全世界已开发的石油资源，主要是从新生代第三纪（6500万年~200万年前形成的）岩层中发现的。钓鱼岛列岛的海底是新生代第三纪的沉积盆地，具有理想的生成和储藏石油的地质构造条件。据中国科学家1982年估计，钓鱼岛周围海域石油储量约在737至1574亿桶之间。同时，岛上海鸟栖息，鸟类资源相当丰富；岛上盛产山茶、棕榈、仙人掌、海芙蓉等作物及药材。钓鱼岛周围海域的渔业资源也十分丰富，盛产飞花鱼等多种鱼类。自古以来钓鱼岛海域即为中国渔民的主要渔场和避风港。每年渔季，由中国台湾省的基隆、宜兰等地和福建省前往作业的渔船有三千多艘。年可捕量高达15万吨。渔民在赤尾屿上还建有土寮。一些渔民一年有两三个月在岛上居住。

钓鱼岛群岛在海洋划界中将起着至关重要的作用。众所周知，《联合国海洋法公约》的批准生效，将不可避免地使各国在划分管辖海域时出现一些重叠和矛盾。按《公约》规定，两国如按中间线划分，那么钓鱼岛主权归属哪一方将极大地影响大陆架的划分。如果日本占有钓鱼岛，并以此为基础划分东海的专属经济区范围，那么日本将多占7—20万平方公里海域。日本海洋产业研究会编著的《迈向海洋开发利用新世纪》一书中，公然将一些位置重要、有主权争议的岛屿，作为“扩大与俄罗斯、朝鲜、韩国、中国等邻国海洋经济区间的边界起到重要作用”的关键所在。日本一些官员曾透露：日本如果失去钓鱼岛和北方四岛，日本管辖海域将减少110万平方公里以上。

## 3. 钓鱼岛群岛的军事价值

众所周知，在中国大陆国土的海洋方向，形成一道大陆外缘天然的屏障。在这一串岛屿的中段，靠近东海方向的正面，正好是琉球群岛和台湾岛，它们加上日本九州岛使靠近中国的东海海区与太平洋分隔。琉球国曾与中国有2000年的历史渊源和500的藩属关系。后者是广泛存在于中国与周边邻国关系史上的一种特殊的国家形态，在19世纪80年代之前，琉球国一直向中国中央政府呈进贡品。但在1879年，一直企图实现海上南下扩张政策的日本实现了它对琉球的覬覦已久的吞并野心。琉球一失，台湾、澎湖列岛的安全即显危象：完全暴露于日本南下扩张征途的正面。终于，在甲午之战以后，台湾、澎湖列岛成为了日本的殖民地。虽然二战之后日本将台湾归还给了中国，但时至今日，日本国内的一些右翼势力仍然叫嚷“台湾归属未定”。如果日本军国主义势力全面复活，日本再次成为世界军事大国，台湾和中国大陆的东部必将首先受到威胁。

这样，处在台湾东北92海里，介于琉球群岛和中国大陆及台湾省之间的小小钓鱼岛，其潜在的军事价值必定会令世人瞩目。事实上，在今后钓鱼岛的军事价值将会日益突出。在战略意义上，该列岛可以为日本利用、作为日再次侵略台湾的桥梁或前进基地；也可以成为中国保卫国家东海方向安全、遏制日本扩张势力南下的前哨。对日本来说，由于它是一个地形狭窄的岛国，因此防御纵深十分短浅。其内陆任何地方距海岸都不超过120公里。在战争爆发时极易受到来自各个方向空中与海上的袭击，故日本基本上属于一个无纵深可资防守的国家，在二战后期，日本就已吃过这种国土地形之苦，盟军利用它给日本本土以沉重的打击。因此，从一方面来说日本急欲扩大其军事防御的范围，使其军事力量前出四岛建立前沿，才可对其海上安全更加有利。从另一方面讲，日本占领和控制钓鱼岛可以将其所谓防卫范围从冲绳向西推远300多公里。这正符合日本一些人企图推行海上扩张政策的政治意图。以此日本军队可以对沿海地区和台湾省的军事防御实施舰、机的抵进侦察与监视、从而使中方的防御活动陷入被动。同时，正如日本著名军事评论家小山内宏所指出的，钓鱼岛既适合建立电子警戒装置，也可设置导弹。这意味着日本可在此建立一个本土以外的军事基地，而这毫无疑问是针对中国、并对中国产生重大威胁的一种结局。可以说，日本方面正是认识到了上述军事价值，所以早在70年代就将钓鱼岛及其附近海域划入其警戒范围，并将钓鱼岛列入了日本的军事控制圈内。

对中国而言，钓鱼列岛处在台湾岛东北最远端，直接与琉球诸岛相对，在地理位置上，它正处于中国大陆与日本冲绳之中，东西各距200海里，其前沿位置距基隆大约92海里不仅对台湾岛的军事防御意义重大，而且对中国东南沿海方向的安全也有重要影响。从国土防卫的角度上讲，岛屿是大陆的前沿，在战争中具有重要的屏障作用。琉球群岛距离中国东部沿海一般仅300—500海里。二战后，美国已将它建成美军西太平洋军事“岛屿锁链”的中心环节之一，战后美海军一直在冲绳中城湾基地驻扎着包括5个分队的太平洋舰队第一两栖大队。美国一直注视这里为战争期间进攻远东地区的“桥头堡”，已经对中国东部沿海地区的安全构成巨大威胁。如果钓鱼岛再被日本永久霸占，为美日安保体制下迅速发展的日本军事力量得以据此向西扩张，在可预见的将来，很难说其不对中国的安全构成潜在或现实的威胁。从国家利益的长远发展看，大陆与台湾一定会统一。台湾回归中国之后，台湾海峡对中国国防建设所起的作用将会大大改观，中国军队将有可能利用台湾岛和台湾海峡优越的地理位置，加强国防实力，甚至将其作为中国沿海实施作战的依托，相反，如果日本依托距台湾岛仅92海里的钓鱼岛对海峡进行监视，甚至对中国利用海峡进行军事行动实施干扰，将严重削弱海峡军事功能的发挥，也将大大不利于中国东南沿海的安全，同时也会对中国跨出第一岛链的未来海上发展受到更大的制约。在大洋中追逐潜艇费力不讨好，有效策略是利用地利加以堵截。日本南端的冲绳负责了整个日本的南线的反潜任务，这条反潜监视区最特别的是沿冲绳群岛以西，中国大陆架以东之间有个小海沟。这条海沟北浅南深，由于基隆是台湾繁忙港

口之一，北部的钓鱼岛群岛附近还有个渔场，北方冷流经过南下，在这里与北上的暖流相遇，形成一个相对较复杂的水文情况。所以在台湾岛以北，冲绳群岛以南的区域就成为中国潜艇突破反潜区最好的隘口。钓鱼岛群岛正巧座落在中国大陆架突出部上，距冲绳和中国海岸大约都是400公里，离台北最近，也有大约200公里。一旦中国控制钓鱼岛，那么潜艇向东可进入这条小海沟范围，向南可以躲入基隆港口外繁忙水面船只的噪音区内隐蔽进入太平洋。相反驻守在冲绳那霸的日本的反潜飞机就不能经常深入这一海域投放声纳浮标，不能提前调查相对较稳定的地磁基础值以便侦察位于大陆架内的中国潜艇运动踪迹。

## 二. 钓鱼岛群岛问题争端的由来

### 1. 地图上的小岛屿为何酿成一场轩然大波？

早在1961年，美国伍兹霍尔海洋研究所海洋地质教授埃默里( She p a r d E m e r y )，同日本东海大学地质教授新野弘合作，根据二次大战期间美国海军为反潜艇战而进行的海底研究有关资料，提出了《中国东海及南海浅水区的沉积物》的初步报告，暗示上述海域海床可能蕴藏着石油。<sup>2</sup>

五年之后，他们根据中国东海大陆架周围陆地上的地质构造，参考当时苏联海洋学家有关中国北部地区的考察资料，又对新采集自大陆架的岩样、化石标本进行比较综合，于1967年初发表了《朝鲜海峡及中国东海的地层与石油展望》一文，首次明确地提出：中国东海是“世界上石油远景最好而未经勘探的近海地区之一”，“只要对东海进行周密的地球物理和地质勘探，成功的机会看来是很好的”；预言从台湾往东北方向，经过钓鱼岛等岛屿至日本九州间，“沿大陆架外缘的一条宽阔地带，是今后最有希望找到海底油气田的地方”。<sup>3</sup>稍后，美国航空地磁实测的结果，证实了上引论断的正确性。

1968年秋，为了进一步收集确凿的资料，埃默里等在联合国亚洲及远东经济委员会( E C A F E )所属亚洲近海地区矿产资源勘测协调委员会( C C O P )的主持下，会同美国海军的海洋局，与日本、韩国、台湾等方面的专家合作，组成联合调查队，乘坐研究船亨特号( R : V , F . V . H u n t )，自中国黄海、东海延伸至台湾纵深，进行实地地球物理勘测，测得7450海里以上的连续地震剖面和相应的地磁剖面，雄辩地肯定：“台湾与日本之间的大陆架，很可能是世界上油气藏最丰富的地区之一。”据美国麻省理工学院海洋研究所一位权威学者的估计，在台海盆地约20万平方公里的大陆架上，至少蕴藏

<sup>2</sup> 《美国地质学会会刊》1961年第72卷，第731—762页，转引自 [美] 塞利格·哈里森著：《中国近海石油资源将引起国际冲突吗？》，石油化学工业出版社1978年版。

<sup>3</sup> 《地球物理勘探报告》1967年第1卷，第249—263页，转引自同上书。

着如整个波斯湾同样巨量的石油，最保守的估计为800亿桶<sup>4</sup>。

由于上述未经证实的东海蕴藏巨大石油储量的假设，在中日韩以及台湾之间引发了一场关于钓鱼岛主权归属及东海大陆架划界问题的巨大争端。日本政府于1974年5月向国会提交关于海底采矿特别法提案。1978年日本国会又最后正式通过了《日韩大陆架共同开发案》。对此，韩国著名海洋法学家朴春浩在其《东亚与海洋法》一书中写道：“令人啼笑皆非的是，自1969年海底石油争端在东北亚发生之日起的十多年间，各有关沿海国都对属于子虚乌有的东西进行争论，日本和南韩在共同开发区内进行的钻探到目前为止只打出一些干洞（dry holes）。除非确实发现了大量石油，否则他们共同努力的实际成就，将不能得到验证。”

## 2. 《联合国海洋法公约》加剧了钓鱼群岛主权归属问题的复杂性

日本对钓鱼群岛的长期霸占，本已使该群岛的主权归属问题复杂化，再加上新的海洋法公约关于大陆架和专属经济区的规定，使钓鱼群岛的重要性远远超出了它本身的价值。

这是因为按照《联合国海洋法公约》的规定，岛屿在大陆架划界上起着十分重要的作用。上述美国学者哈里森对此写道：“日本对东海这些区域的要求，是以它对尖阁列岛（钓鱼群岛）是否拥有主权为转移的。由于这一群岛位于大陆架上，承认日本对尖阁列岛（钓鱼群岛）的主权就会使日本成为一个大陆架强国，从而有权要求在划定中间线时以尖阁列岛（钓鱼群岛）为最东边的基点，”连接成一条直线基线，把它的大陆架越过冲绳海槽，延伸到中国整个东海海域，与中国平分这一地区。这显然是极不公平的，而这正是问题争论的核心。

### (三) 中日两国对钓鱼岛群岛的研究概况

#### 1. 研究成果

无论在中国还是在日本，从钓鱼岛等岛屿的所有权问题发生以来，都在各自的立场上发表了许多的论文和著作。

##### 1). 中国方面的研究

周兆锐《钓鱼岛等岛屿问题的来龙去脉——钓鱼岛等岛屿是中国的》（《武汉师范学院学报》1978年第2-3期），概述了钓鱼列岛的历史、主权归属以及有

<sup>4</sup> 黄养志等：《钓鱼岛千万丢不得》，载香港《明报月刊》1971年5月第65期。

关中日间的争端。于福顺、刘耀祖编的《钓鱼列岛历史资料》(《中国边疆史地研究报告》第1辑,1987年)摘录中外文献63种,叙述了钓鱼列岛的地理形势、主权归属和中日交涉等问题。吴天颖《甲午战前的钓鱼列岛归属考》(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4年版)列有专章论述了1885-1895年日本觊觎、侵占中国钓鱼列岛的始末,指出钓鱼岛等岛屿是中日甲午之战签订《马关条约》后被日方侵占的中国领土。杜继东《钓鱼岛等岛的历史和现状》(《中国边疆史地研究报告》第5辑,1990年)论述了钓鱼列岛历史上的主权归属和当今的中日争端。王乃昂等《略论中日钓鱼诸岛之争》(《中国边疆史地研究》1996年第4期),依据大量的历史文献,从国际法的原始发现、行政管辖、经济活动、自然延伸等原则,论证了钓鱼诸岛主权属于中国。此外,吕一燃《历史资料证明:钓鱼岛列岛主权属于中国》,(《抗日战争研究》,1996年第4期),林琳《从国际法论中国对钓鱼岛群岛无可争辩的主权》(《中国边疆史地研究》1999年第4期),许森安《东海大陆架划界中的一些问题》(《中国边疆史地研究》1999年第4期),吴辉《从国际法论中日钓鱼岛争端及其解决前景》(《中国边疆史地研究》2001年第1期),刘文宗《石油资源与钓鱼岛争端》,李国强《近10年来钓鱼岛问题研究之状况》(《中国边疆史地研究》2002年第1期),《日本有关钓鱼列岛问题研究评述》张植荣(《中国边疆史地研究》2002年第1期),张植荣 蒋苏晋《美国与中日钓鱼台列岛争端》(《中国边疆史地研究》2002年第3期)等都是近年来,在钓鱼岛问题研究方面有权威性的论文。

马英九《从新海洋法论钓鱼台列岛与东海划界问题》,中正书局,1986年、吴天颖《甲午战前钓鱼列岛归属考》,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4年。王晓波《尚未完成的历史——保钓二十五年》,台湾海峡学术出版社,1996年,米庆余《琉球历史研究》,天津人民出版社,1998年。程家瑞主编《钓鱼台列岛之法律地位》,东吴大学法学院,1998年等都是近年来出版的研究钓鱼岛问题的著述。

最新的研究成果是,鞠德源著《日本国窃土源流——钓鱼列岛主权辩》首都师范大学出版社2001年5月出版。这是一部详细而且丰富地介绍了目前保存在中国与日本的史料、图版的巨著,可以说是论述这一问题时是必须要阅读的。全书分上中下三篇,上篇《日本国窃土源流》,系统论述日本军国主义长期以来窃土、侵略和扩张的历史进程;中篇《钓鱼列岛主权辩》,主要是对以钓鱼岛为核心主岛的中国台湾附属岛屿东北诸岛领土主权、历史与地理,作全面论证,揭露日本篡改历史与地理的具体事实;下篇《铁案如山证据说》,专门以钓鱼列岛为中心着重阐释中国固有领土主权的各项历史证据,剖析日本军国主义在窃土历程中形成的各种图籍与实证,破解了日方制造的“尖阁列岛”、“南西诸岛”之谜。该书长达110万字,图文并茂,史料丰富,光收录的珍贵图籍资料就达80种126篇,包括中国、琉球、日本及西洋法、英、美等国所绘的各式地图,以及相关的辅助参考图。另外,作为国家图书馆的北京图书馆也编辑出版了所藏的有关琉球的档案资料。即:《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上、

中、下冊，2000年10月。《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續編》上、下冊，2002年10月。這也是很重要的原始數據集。

## 2) 日本方面的研究

1900年，沖繩縣師範學校教師黑岩恒到釣魚島探險調查，把釣魚、赤尾兩島及其中間的岩礁群總而稱之，取名為“尖閣列島”，並在《地學雜誌》第12集第140-141卷發表了題為《尖閣列島探險記》，從這以後，日本才稱這些島嶼為“尖閣列島”。

國士館大學的國際法副教授奧原敏雄，在1971年9月號《中國》雜誌上發表的《“尖閣列島”的領有權》他主張釣魚島等島嶼是無主地。

著名歷史學家井上清曾於1972年撰寫了一部專著，題為《“尖閣”列島--釣魚島的歷史解析》。他在書中指出，作為一個歷史學家，他經過查閱歷史文獻而斷定：釣魚島在日本染指之前並非“無主地”，而是中國的領土。但是這個出版社已經不存在了。而第三書館在1996年10月刊行的《“尖閣”列島——釣魚島的歷史的解明》一書中只收錄了井上清先生的《釣魚諸島的歷史與所有權》一文，所以現在還可以利用。

浦野起央編《釣魚台群島（尖閣諸島）問題 研究資料彙編》，刀水書房，2001年9月。浦野起央著《尖閣諸島，琉球，中國與日中關係史》，三和書籍，2002年12月。另外，與領土問題沒有直接關係的中國福建省琉球列島交涉史研究調查委員會編《中國福建省與琉球列島交涉史研究》（第一書房，1995年2月）是關於福建與琉球的交涉史的日中共同研究報告書。

與此同時，日本官方和學者還組成了形形色色的研究機構，諸如，外務省設置了“尖閣列島領有紛爭檢討研究機關”<sup>5</sup>；南方同胞援護會設置的“尖閣列島研究会”，等等。這類機構中，規模大者，最盛時擁有教授六十名之多，所出版備忘錄式的《尖閣列島》特集為數眾多，有的厚達四百餘頁，可謂洋洋灑灑，蔚為大觀。

## 2. 研究的現狀與方法論的選擇

自從1970年代初釣魚島爭端凸出之時，中日兩國學者對該領土爭端進行了廣泛的研究。基本方法論主要集中於兩個領域：歷史學與法律學。當然，這兩種研究方法並非完全分開。而是交相並用，或以誰為主，兼用其他。歷史學者倚重歷史學的方法，搜集大量歷史資料，以證明釣魚島的歸屬，而兼用國際法的原理批駁對方的觀點站不住腳；國際法學者則倚重國際法，對歷史資料進行

<sup>5</sup> 《每日新聞》1970年8月11日第14版有關外務省設置檢討研究機關的報道。

分析,并得出有利于本国立场的结论。纵观中国学界钓鱼台问题的研究现状,主要有如下几个特点与问题:

第一,能够从历史地理依据和法理依据等多个角度入手,为维护中国对钓鱼岛的主权地位辩护。历史学方面主要在于从微观、具体的方面寻找与钓鱼岛争端相关历史文件、民间资料、以及历史地图等,借以论证钓鱼岛的归属权。微观角度研究钓鱼岛之类的领土争端,是非常重要的。它为钓鱼岛争端提供了基本的历史材料。但是,如果比较中日两国学者的立场,因为立场迥异,其研究所选材料自然偏向本国立场。这也使得某些资料的取舍具有一定的民族主义取向。从而失去客观公正的学术态度。而日本学者对中国古代资料特别是“使琉球录”相关钓鱼台的记载,予以曲解,显得十分牵强附会:认为使琉球录中关于钓鱼台的记载,只是航向的针路,并非领有权的“明示”。此外,日本学者还认为中国方面所引用的历史资料和档案文件诸如《顺风相送》、《使琉球录》、《中山传信录》等多为民间资料,较之日本方面所引的历史资料多为官方文件(如1895年日本内阁决议),在说服力上有所欠缺。

在法律学的研究方面,主要在于利用国际法相关原则,结合有利于本国无论中国还是日本的历史资料,论证钓鱼岛的归属权问题。但是,在国际法原则的适用上,日本学者更多地选用近代国际法的原则,例如所谓“无主地占”、“有效控制”、“时效”等。因为钓鱼岛的实际控制权在日本手中,近代西方殖民者侵略亚非拉殖民地国家与人民的一系列国际法原则,都被日本学者选择用以论证日本对尖阁列岛的领有权。

第二,研究方法多局限于从历史资料出发,论证钓鱼岛领土归属问题,认为中国人民的“原始发现”了钓鱼岛,因此钓鱼岛自然属于中国。这些研究成果或以大量的历史资料为基础、证明自明清以来中国就享有对钓鱼岛的主权,或是证明钓鱼岛主权属于中国符合国际法的“原始发现”原则。但是,对日本方面的“先占”与“实际控制”的方面的法理驳斥不力。

第三,两岸中国人的钓鱼台研究缺乏充分的沟通,“鹬蚌相争”的局面在钓鱼台问题上表现出来。

因为政治因素的干扰,如何使海峡两岸在钓鱼岛问题上协调合作,共同维护国家主权完整,一直难以达成。相反,日本在战后初期利用远东国际关系的巨变,特别是两岸关系与事实上“两个中国”的出现,从战败国一越成为日美同盟关系下的卒子。中美战时同盟变成了日美同盟,琉球的前途成为问题,钓鱼岛争端的前景自然也是如此。最具代表性的就是日本学者认为战后美国在占领冲绳时虽然没有列出“尖阁列岛”的名字,却把钓鱼岛包括在了它统治的经纬度范围之内,中国方面对此并无异议,直到1969年美日在商讨归还冲绳问题时指出钓鱼岛也一并归还日本才激起中国的抗议。美国在钓鱼岛问题上对日本的巧妙“偏袒”与对中国的貌似“中立”。也成为日本领有权的重要证据。

总之,在中日钓鱼岛争端的论战中,中日两国学者的交锋尚处于各说各话,

交集不多的状态。钓鱼岛争端自上个世纪70年代算起历时已久，双方在主权归属上相争，客观地说，尽管双方都提出了自认为有力的证据证明钓鱼岛主权归属己方，但任何一方都不能完全说服对方取得法理上的优势。

#### (四) 各方对钓鱼岛群岛问题的看法

##### 1. 日本国际法学会的观点

日本国际法学会也卷入了这场争论。1980年由日本国际法学会编辑出版的《国际法辞典》（岩波版），在“尖阁列岛”（即钓鱼群岛）条目内写道：“日中双方关于尖阁列岛归属问题的主张，其要点大体如下：中国方面主张，从历史上看，尖阁列岛是中国的领土，但在中日战争中清朝战败，日本迫使清政府签订马关条约，割让台湾，与此同时，且把本来属于中国的领土尖阁列岛片面地划入了日本领土。因此该列岛同台湾一样，应归还中国。日本方面则主张，尖阁列岛属冲绳县管辖，1895年1月4日，日本内阁会议通过决定，在当地设立标桩，该列岛便正式编入日本领土。在此之前，这些列岛在国际法上是不属于任何国家的无主地。而且，通过日本政府编入日本领土的措施和其后对该列岛进行有实效的统治，根据先占之法理，该列岛在国际法上便有效地成为日本领土。”

“日中双方的分歧，下列两点是重要的：第一，在1895年时，从国际法角度看，尖阁列岛究竟是中国领土还是无主地？第二，日本通过1895年编入领土的措施和其后具有实效的统治，是否在国际法上已有效地取得了对该列岛的领有权？”以上是迄今所能看到的日方关于钓鱼岛问题的比较正式的见解。<sup>6</sup>但是，随着1982年《联合国海洋法公约》的生效，中日等国分别批准《公约》后，日方为了加强未来在东海海域与中国划界争论中的地位，纵容日本一些右翼分子在钓鱼群岛建立灯塔和气象设施，驱赶中国大陆和台湾渔民在该地区从事捕鱼活动等，妄图以既成事实确立对钓鱼群岛的领有权，抹杀两国之间对该群岛的既存争议，不能不引起中国政府和人民的严重关切。

<sup>6</sup> 日本外务省称“从历史和国际法的观点，日本政府的一贯立场是钓鱼岛乃日本的既有领土”。钓鱼岛所有权应属于日本冲绳县。日本政府的依据主要集中在4个方面：1、日本方面声称，明治政府于1885年通过冲绳县当局调查后，发现其是无人岛，而且没有清国的统治痕迹，于是在1895年编入日本领土。因此，钓鱼岛列岛不包括在清政府割让的台湾、澎湖列岛之内。2、日本方面还称，钓鱼岛列岛未包括在旧金山和约中要求日本放弃的领土之内，而是置于该条约有关美国行政管理的条文中。而中国政府对此从未提出异议，表明中国并未认为钓鱼岛列岛是台湾的一部分。3、日本方面认为，根据国际法“先占”原则行事，先占的条件是该地区是无主地；国家明确宣布该地区是本国领土；实际有效统治。

## 2. 美国学者哈里森的见解

哈里森对中日两国关于钓鱼群岛争端的回顾提出了自己的看法。他写道：“尖阁列岛(钓鱼台)争端一触即发的敏感性，可能成为中日关系冲突的一个爆点，这种情况主要是对大陆架资源争夺的副产物。……日本提出它对这个群岛的主权要求，一直追溯到1894年第一次中日战争，在清朝战败后，日本就曾占领这个群岛。日本的论点是，1895年马关和约规定割让台湾给日本时，没有将尖阁列岛(钓鱼台)算作台湾的一部分，从而默认尖阁列岛(钓鱼台)是日本的领土。日本还争辩说，随后，美国已经确认日本对尖阁列岛(钓鱼台)的主权要求，因为第二次世界大战后，美国对该群岛作为琉球群岛的一部分行使行政管辖权，而且美国又把该群岛作为冲绳归还协议内容的一部分而还给了日本。中国对日本的论点提出异议说，尖阁列岛(钓鱼台)在日本控制前五个世纪左右就已经是中国东亚藩属的一部分。

中国认为，该群岛虽无人居住，但为中国所发现，且一直被视为台湾的一部分。”必须指出，从国际法关于领土取得的规定看，哈里森无视了许多重要事实和法理依据。

首先，在日本于1894年侵占钓鱼群岛以前许多世纪，中国历代政府就已将该群岛划入中国版图并行使主权管辖。这有大量官方典籍和客观史实为证，任何人都不能否认。

其次，第二次世界大战期间《开罗宣言》明确规定，必须剥夺“日本所窃取于中国之领土，例如满洲、台湾、澎湖列岛等，归还中国”。钓鱼群岛属中国台湾省管辖，当然应该与台湾一起归还中国。二战结束后，钓鱼群岛不是作为日本本土由盟军占领，而是根据旧金山和约第3条所称“南西诸岛”(即琉球群岛等)的组成部分由美国对其行使“行政权”。这说明钓鱼群岛原本就是《开罗宣言》所称“日本……以暴力或贪欲所攫取的土地”，中国要求归还钓鱼群岛是完全合理合法的。

第三，当美国决定将钓鱼群岛交给日本时，中国政府及台湾当局都曾提出抗议。对此，美国国务院发言人麦克洛斯基声称：“根据对日和平条约第3条美国对‘南西诸岛有行政权。该条约中的这句话是指，第二次世界大战结束时，在日本统治下并在该条约中未特别提及的北纬29度以南的所有岛屿。和约中的这句话的意思就包括尖阁列岛在内。”这是美国有意在未来中日关系中埋下的钉子。

## 3. 中国学者的基本主张

1. 中国史料为证：中国最早发现钓鱼群岛、将其命名、纳入国家版图并行使主权管辖

中国国家海洋局海洋发展战略研究所高级工程师许森安认为，中国关于钓鱼岛的最早记载可追溯到千年前的隋朝，那时中国的台湾和钓鱼岛邻近着另一个独立的国家叫琉球，隋炀帝曾派使臣朱宽召其归顺，又曾派陈棱、周镇州等率军攻打，行军途中便有经过钓鱼岛。至明朝，中国人杨载在1372年首先驻足钓鱼岛。1884年日本人贺辰四郎才发现钓鱼岛，比杨载晚了500多年。事实确是如此，中国早在明朝就有关于钓鱼岛的历史文献记载，著名历史学家鞠德源写道：“台湾附属岛屿东北诸岛，包括钓鱼列屿在内，统称‘中华海山’，或称‘中华外山’，自古以来就是中国历代相承的国土，是由中国人最早发现，最先命名，最先经营、统辖和控御的”，鞠德源介绍，“早在汉代，台湾岛周围之‘国’即已向汉朝进献贡物，表示臣服，汉朝称之为‘东隅之二十国’。三国时钓鱼列屿海域曾为中国官兵航海必经之地。到了隋代，钓鱼屿及附近岛屿被命名为“高华屿”，这是该地最原始的命名。”现藏于英国牛津大学鲍德林图书馆的明朝永乐年间(公元1403至1424年)出版的《顺风相送》一书所记《福建往琉球(针路)》，“是中国古代隋、唐、宋、元各代至明初福建沿海军民历次往返福建至琉球所形成的航海针路，福建沿海的大小岛屿及琉球沿海的大小岛屿，皆为中国人最早发现，最先命名，且又最先最明确地加载中国官私文献之内。”<sup>7</sup>《顺风相送》中记载有“福建往琉球”针路(航海指南)一节清楚地标出了“钓鱼屿、赤尾屿”等名称和海上方位。此后，明、清历朝政府皆使用“钓鱼屿、黄尾屿、赤屿”等名称。而日本称钓鱼岛属其冲绳县管辖，但日本的冲绳县在距今约125年前曾是独立的琉球国。历史上的琉球王国(即现在日本冲绳)自明朝初年起就一直臣属于明朝皇帝。12世纪琉球群岛出现南山、中山、北山三国，分别在琉球群岛的南部、中部和北部。1372年明太祖朱元璋给琉球的中山王察度下达诏谕后，琉球的北山、中山、南山三王遂开始向明政府朝贡。从此琉球成为中国的藩属。1402年，中山王尚巴志征服北山、南山，形成统一的琉球王国(第一尚氏王朝，据考证琉球王国的尚姓也是中国皇帝御赐的)，1404年明太祖的册封使来到琉球。以后的每一代国王都需要由中国中央政府册封任命。明、清王朝向琉球共派出过24回册封使，这些册封使都要将派遣的经过和琉球的现状写成《使琉球录》等报告向皇帝提出。册封使从当时与琉球间唯一窗口的福建省福州(最初为泉州)出发，前往琉球的那霸。当时的船是帆船，利用夏至前后的西南风在海上航行。钓鱼屿、黄尾屿、赤尾屿这些位于大陆架(又称大陆棚或大陆礁层)边缘的一个个岛屿是保证安全航海的重要目标，所以在《使琉球录》中多次出现关于这些岛屿的记载。而在这些记载中，值得注意的是都认识到：过了赤尾屿，就到了“古米山”(现在的久米岛)，开始进入了琉球的境内。1534年5月，明朝第十一次册封使陈侃出使琉球。后来，他在《使琉球录》一书写道：“……十日南风甚迅，舟行如飞。然顺流而下，亦不甚动。过平嘉山(今彭佳屿)，过钓鱼屿，过黄毛屿(今黄尾

<sup>7</sup> 鞠德源著《日本国窃土源流 钓鱼列屿主权辨》上册 首都师范大学出版社,2001年5月,39页。

屿),过赤屿(今赤尾屿),目不暇接,一昼夜兼三日之程。……十一日夕,见古米山(今久米岛),乃属琉球者,夷人歌舞于舟,喜达于家。”<sup>8</sup>古米山又称姑米山(岛),即现在冲绳的久米岛;夷人指当时船上的琉球人。文中琉球人见古米山而“歌舞于舟”的归家之喜清楚地表明,当时的琉球人认为只有过了钓鱼岛,到达久米岛后才算回到了自己的国家,由此不难看出,直到古米山才属琉球国,而在此之前的钓鱼屿、黄毛屿、赤屿显然不属琉球而在中国疆域之内。明代以来各种各样的中国的地图和文献都把钓鱼屿、黄尾屿、赤尾屿标注在中国的版图内,关于钓鱼屿的中国舆图不计其数,并最先被西洋诸国出版的中国地图、亚洲地图、世界地图所采用和承认。英国海图中的Pinnacle Islands,就是明代以来中国地图中的橄榄山,我国最早译为“凸列岛”、“众尖岛”,早于日本“尖阁群岛”、“尖头诸屿”的译名。<sup>9</sup>明、清两朝均将钓鱼诸岛划为中国海防管辖范围之内,并非“无主地”。特别是明代为防备倭寇和海盗侵入,政府实施海禁,即禁止非官方贸易,发布了将福建、广东的沿海一带的居民强制性地迁移到内陆的“迁界令”,对沿海的海防相当注意。<sup>10</sup>确保沿海的安全是国家的重要的任务,在应当保卫的沿海岛屿中,也包括钓鱼屿、黄尾屿、赤尾屿。1556年,胡宗宪被擢升为浙江省提督,节制7省海域边防,负责讨伐日益猖獗的倭寇,守卫包括钓鱼岛、黄尾屿、赤尾屿等岛屿在内的中国海区。1561年左右,胡宗宪的幕僚、明代地理学鼻祖郑若曾编纂了《筹海图编》。该书详细说明了防卫倭寇的战略战术,配置要塞哨所的方法,以及如何制造战舰、兵器等。《筹海图编》卷一“沿海山沙图”的“福七”至“福八”中,曾标有鸡笼山、彭佳山、钓鱼屿、黄毛屿、赤屿等。《筹海图编》卷一收录的《福建沿海山沙图》和卷二收录的《福建使往日本针路(梅花东外山至大琉球那霸)》。这两幅图在前述鞠德源著《日本国窃土源流 钓鱼列屿主权辩》的下册中收录了,为图5和图6。与此相同的还有施永图编纂的《武备秘书》卷二中有《福建海防图》(1621年—1628年),在鞠德源的著作中收录为图10。

此后,1562年的册封使郭儒霖所著《重编使琉球录》中又称,“闰五月初一日过钓鱼屿,初三日至赤屿焉。赤屿者,界琉球地方山也。再一日之风,即可望姑米山(久米岛)矣。”这段话更清楚地证实,当时中国已将钓鱼岛列岛中最靠近琉球的赤屿,即现在的赤尾屿作为与琉球分界的标志。1606年作为册封使的夏子阳所写的《琉球录》中也说,看到久米岛后,琉球人认为到家了而特别高兴,久米岛上的头领出来迎接,奉献了几只海螺。<sup>11</sup>到清

<sup>8</sup> 陈侃:《使琉球录》,《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上册,27页。

<sup>9</sup> 鞠德源著《日本国窃土源流 钓鱼列屿主权辩》上册 首都师范大学出版社,2001年5月,41页。

<sup>10</sup> 关于中国的海防政策参照卢建一着《闽台海防研究》,方志出版社,2003年3月出版。

朝，中国与琉球的界线在钓鱼岛南面海槽一带已成为中国航海家的常识。1621年，明朝的茅元仪撰写的《武备志》中也标有钓鱼山、黄毛山、赤屿等岛。现存于中国科学院图书馆的《武备秘书》卷二（明末施永久）中更为明确地画出“钓鱼台”、“黄尾山”、“赤屿”等岛。

清朝第二次册封史汪楫1683年赴琉球，并写下《使琉球杂录》。更明确地谈到冲绳海槽的地理位置。该书第五卷中记载了他途经钓鱼岛、赤尾屿后为避海难而祭祀时，船上人告诉他船所经过的海槽（当时称为“过郊”或“过沟”）即是“中外之界”。他写道，“薄暮过郊（或作沟，即‘冲绳海槽’），风涛大作，……问郊之义何取？曰：中外之界也。顷者恰当其处，非臆度也。”1719年赴琉球的清朝康熙册封使徐葆光所著《中山传信录》<sup>12</sup>当时对日本及琉球影响极大。该书是经徐葆光在琉球潜心研究，与琉球地理学家、王府执政官等人切磋后写成的，十分严谨可靠。它被译成日文，成为日本人了解琉球的重要资料来源。该书指出册封使赴琉球的海上航路是：从福州出发，经花瓶、彭佳、钓鱼各岛北侧，自赤尾屿达姑米山。书中注出姑米山乃“琉球西南方界上镇山”，即镇守琉球边关之山，而将现八重山群岛的“与那国岛”称为“此琉球极西南属界”。另外还记载“福州五虎门至琉球姑米山共四十更船”。很明显，这是将久米岛作为与琉球的分界。

周煌的《琉球国志略》（1756年）<sup>13</sup>中描绘了一张《琉球国全图》，清楚地画了从琉球最南端的“由那姑呢”（与那国岛）到最北端的“奇界”（喜界岛）的各个岛（本岛及附属《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的36岛），西端是“姑米山”，而钓鱼屿、黄尾屿、赤尾屿等这些不属于琉球的岛屿都没有被画进去。在介绍琉球地理的“舆地”部分，对“姑米山”的记载是：“由福州至国必针取此山为准”。<sup>14</sup>

清朝乾隆年间的，记录了1756年全魁、周煌的航程的潘相的《琉球入学见闻录》（《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下册361页）卷首有“琉球国全图”，图内将琉球大小岛屿尽数绘出，并标示岛名，但其中并无钓鱼屿。书中写道：“十二日见赤洋（可能是赤尾屿）。是夜过沟祭海。十三日，见姑米山。姑米人登山举火为号。舟中亦举火以应之。十四日，姑米头目率小舟数十，牵挽至山西，下旋”。这里记载了靠近久米岛时琉球方面出迎的情况。潘相于1764年著有《琉球入学见闻录》。刻印于清朝同治二年（即1863年）的《皇清中外一统舆图》，图中卷六、卷七、卷八的中国福建台湾部分，不仅包括钓鱼屿诸岛在内，而且注文全用中国文字，并无琉球、日本等国文字。

<sup>11</sup> 夏子阳：《琉球录》，《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上册，425页。

<sup>12</sup> 《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2000年10月，中册，36页。

<sup>13</sup> 周煌

<sup>14</sup> 《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汇编》2000年10月，中册，838页。

1808年清嘉庆年间出使琉球的使节齐鲲，写过《航海八咏》（北京首都图书馆藏有）写出国界实情。第七咏，诗名《姑米山》，律诗八句：“忽睹流虬状，西来第一山，半天峰断续，八岭路回环。海雾微茫里，船风瞬息间，球人欣指点，到此即卿关。”诗的题目，原有注：“此山入琉球界”。充分表明琉球国人士皆从姑米山开始，才进入琉球国境。姑米山以西，属中国而不属琉球。

清朝乾隆年间修《台湾府志》，在府志中列举“台湾港口”，已明确包括“钓鱼台岛”。直到光绪四年（1879年）日本吞并琉球十年之后，清朝廷仍十分明确钓鱼台岛属我国不属琉球。

从这些事实看出，从明代到清代，中国的册封使前往琉球之际，很清楚以钓鱼屿、黄尾屿、赤尾屿作为航道上的目标，琉球的领域是从久米岛开始。越过存在于赤尾屿与久米岛之间的海沟，就开始进入琉球了。对此，中国方面和琉球方面都是很清楚的。

清光绪十九年（1893年）十月，即甲午战争的前一年，慈禧太后还曾下诏书，将钓鱼岛赏给邮传部尚书盛宣怀，作为采药用地。事情的经过是这样的，1893年，慈禧太后因太常寺正卿盛宣怀所献治风湿病丸药大为有效，欣喜之下，特别诏谕将丸药原料产地钓鱼群岛赏赐给盛宣怀，供采药之用。1960年代后期，中日因钓鱼岛主权发生争执时，盛宣怀的孙女盛毓真（后改名徐逸，已入美籍），曾将慈禧上述诏书复印件交给美国夏威夷州参议员邝友良于1971年在美参议院听证会上宣读，并加载美国第92届国会第一期会议记录（1971年11月9日出版）。诏谕内容原文如下：

“皇太后慈谕：太常寺正卿盛宣怀所进药丸甚有效验据奏原料药材采自台湾海外钓鱼台小岛灵药产于海上功效殊乎中土知悉该卿家世设药局施诊给药救济贫病殊堪嘉许即将该钓鱼台黄尾屿赤屿三小岛赏给盛宣怀为产业供采药之用其深体皇太后及皇上仁德普被之至意欽此光绪十九年十月”

此诏书中写道：“盛宣怀所进药丸甚有效验。据奏，原料药材采自台湾海外钓鱼台小岛。灵药产于海上，功效殊乎中土。知悉该卿家世设药局，施诊给药，救济贫病，殊堪嘉许。即将钓鱼台、黄尾屿、赤屿三岛赏给盛宣怀为产业，供采药之用。”<sup>15</sup>

## 2. 日方声称钓鱼群岛属日本所有缺乏历史事实根据

日本人一直认为钓鱼岛是琉球群岛的一部分。那么我们首先看一下，琉球方面数据所记载的琉球范围是怎样的呢？

作为记载历代琉球国王治世的历史书，蔡铎1701年编纂，由其子蔡温1724年改订的《中山世谱》中明确记载了琉球的范围。据其记载，琉球本岛由三府五州十五郡（应为25郡）组成，所谓三府是中头的中山府五州十郡，岛尾的山南府十五郡，国头的山北府九郡，另外有36岛。即“明以来，中华人所称琉球

三山六六岛者也”。<sup>16</sup>

其次,看看日本方面数据所记载的琉球范围又是如何呢?

众所周知,1768年,林子平在其《三国通览图说》(这里的三国指虾夷地、朝鲜、琉球)中收录了一张《琉球三省并三十六岛之图》,其中把琉球与日本、中国,以及台湾分别着色表示。在图中绘有钓鱼台、黄尾山、赤尾山,而与福建、浙江是同一种颜色。

德川幕府在统一全国后,于正保年间(1644年—1647年)命令各藩以六寸为一里的比例尺绘制各地地图以制作全国地图。作为萨摩藩的岛津私家文书保存下来的萨摩国地图和琉球国地图保管在东京大学史料编纂所中。东京大学史料编纂所史料集发刊100周年的纪念活动时,2001年12月在东京国立博物馆中公开展览了这一地图的原尺寸临摹品。琉球国地图由奄美诸岛、冲绳本岛、先岛诸岛三张组成,都是边长3米到6米的巨大的手绘图。这幅地图连位于先岛诸岛的宫古岛北边的珊瑚礁都清晰地画了出来,因此不能不感叹当时测量的精度。1609年岛津藩进攻琉球以来,琉球国开始从属于中国与日本两国,琉球国与清国的境界不能不清晰。这一绘图描写的无疑是当时琉球及附属的36岛。<sup>17</sup>属于琉球的岛屿是36个,而其中不包括钓鱼岛、黄尾岛、赤尾岛,这是当时琉球、中国和日本共同的认识。

最后,看看日本的史料关于钓鱼岛群岛的记载情况是如何的。

正如井上清教授所云,日本明治维新开始(1868年)以前,在日本和琉球,离开中国文献而独立言及钓鱼岛的文献,实际上一个也找不到。日本最早有钓鱼岛记载的书面材料是上述提及的1785年林子平所著《三国通览图说》的附图“琉球三省并三十六岛之图”。然而,他也是以中国清朝康熙册封使徐葆光的《中山传信录》为依据的,该图也是采用中国的“钓鱼台”为岛名,并将钓鱼岛和中国福建、浙江用同一淡红颜色标出,而久米岛则同琉球一样为黄褐色,并照引徐葆光的话称,久米岛是“琉球西南方界上镇山”。1719年日本学者新井君美所著《南岛志》<sup>18</sup>一书中提到琉球所辖36岛,其中并无钓鱼岛。日本文献《琉球地理志》,表明日本官方在十九世纪七十年代并不认为钓鱼岛属琉球范围。《琉球地理志》一书是清朝驻日使馆人员姚文林译,是日本人19世纪70年代有关琉球地理的文章。其中包括日本明治八年(1875年)官方编撰的地理书籍,日本文部省所编小学教科书,并参考日本海军省实例图说,其中罗列琉球群岛各岛的名称,但完全没有“尖阁列岛”或“钓鱼岛”等在内,表明

<sup>15</sup> 香港。

<sup>16</sup> 蔡温:《中山世谱》,《国家图书馆藏琉球数据续编》下册,19—20页。

<sup>17</sup> 东京国立博物馆 东京大学史料编纂所:《超越时间的故事》,2001年。

日本官方在十九世纪七十年代，并不认为钓鱼岛“属于”琉球范畴。日本在1895年侵占台湾之前，所刊日本国地图中，未曾将钓鱼岛列入“日本版图”之中，如美国哈佛大学温莎纪念图书馆收藏以下：1875年出版的《府县改正大日本全国》和19世纪出版的《大日本地理全图》，其中琉球部份并无钓鱼岛等岛。

甚至直到1879年，中国清朝北洋大臣李鸿章与日本就琉球归属谈判时，中日双方仍确认，琉球是由36岛组成的，其中根本不包括钓鱼岛等岛屿。琉球王府权威史书——向象贤的《琉球国中山世鉴》（1650年）也采用了中国明朝册封史陈侃的记述，称久米岛是琉球领土，而赤屿及其以西则非琉球领土。向象贤系当时琉球的宰相和最权威的学者，其观点自然代表了当时琉球统治者的立场。其后，琉球学者程顺则于1708年所写《指南广义》中称姑米山（久米岛）为“琉球西南界上之镇山”，即镇守国界之意；琉球国当年献给康熙皇帝的《中山世谱》的图谱中也无钓鱼岛等岛屿。日本原国际贸易促进协会常任理事高桥庄五郎经考证认为，钓鱼岛等岛名是中国先取的，其中黄尾屿、赤尾屿等固有岛名，明确无误是中国名，与台湾附属岛屿——花瓶屿、棉花屿、彭佳屿等相同。日本没有用“屿”的岛名，而福建、澎湖列岛、台湾省以“屿”为名的岛有29个，中国古代地图则更多。赤尾屿在中国的古书上写为“赤屿”，据说这是因为该岛系水成岩所构成，故人们根据岛上岩石的颜色称其为赤屿或赤尾屿。

日本有人指出，中国出版的地图也曾使用过“尖阁列岛”或未标明钓鱼岛，以此作为日本领有主权的根据。在中国历史地图册上，清朝时钓鱼岛曾标明为钓鱼台，为今台湾沿用。在日军占领时期中国出版的地图上，钓鱼岛曾被迫改为“尖阁列岛”或未加以注明，例如当时上海《申报》出版的中国《新地图》便是如此。战后乃至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一个时期印制的中国地图，有的仍沿用或受其一定影响。例如，《中国分省地图》1956年第一版和1962年第二版均在地图集最后附加了一段说明：是根据抗战时期或解放前申报地图绘制。正是由于上述日军占领中国的历史原因，造成中国地图中关于钓鱼岛记述有不尽相同之处。这些只是近代中国半殖民地历史的遗痕，而决不能证明日本对钓鱼岛等岛屿拥有主权。

日本的地图及官方文件中均曾正式使用中国的岛名。据不完全统计，从1935年至1970年日本出版的21种地图及大百科事典中，2/3没有记载所谓的“尖阁列岛”，有的称“鱼钓岛”。日本方面关于钓鱼岛所属各岛的称呼更为混乱。据说日本最早提出叫“尖阁列岛”，是1900年5月冲绳师范学校教喻黑田岩恒根据英国人称呼的“尖头诸岛”演化而来的。1921年7月25日，日本政府将该岛作为“国有地”编入日本地籍时，才将赤尾屿改为“大正岛”，但长期以来日本

<sup>18</sup> 《南岛志》，一书收于《甘雨亭丛书》，存中国科学院图书馆。

政府并未正式使用。直到第二次世界大战后，日本向盟军司令部提交材料时，日本海上保安厅水路部的海图仍使用中国命名的黄尾屿、赤尾屿；1969年，美军占领下的琉球政府的正式文件和告示牌上也使用黄尾屿、赤尾屿等岛名。1969年5月钓鱼岛海域有石油的消息传出后，冲绳地方政府收到石油公司大量要求勘探的申请，此时根据琉球石垣市市长命令，日方开始在钓鱼岛上建标桩，并再次将黄尾屿改为“久场岛”，将赤尾屿改称“大正岛”。然而，由于这些岛屿的名称并未经敕令（天皇的诏令）命名，所以1972年以前，日本政府未曾举出各岛详细的岛名来强调主权，而是一直笼统地称为“尖阁列岛”或“尖阁群岛”。时至今日，日本一些地图对这些岛屿仍使用中国名，例如，1984年日本平凡社出版的《世界大地图帐》便清楚地写有汉字并标注了日语发音：鱼岛（Uotsuri jima）、黄尾屿（Kobisho）、赤尾屿（Sekibisho）。而且现在冲绳县地方政府和日本政府在正式文件中，也都使用黄尾屿、赤尾屿这一称呼。直到1995年2月防卫厅向众议院预算委员会提出的“防卫厅资料”中，还在使用中国的岛名，即黄尾屿、赤尾屿。<sup>19</sup>

### 3. 钓鱼群岛当时是无人居住岛屿而非“无主地”，日本对钓鱼岛的非法“占有”是侵略行为

按照国际法，当无主地被一国发现并实施主权管辖后，就成为该国的领土；除非后者自动放弃，其它任何国家不得重新占领，否则就构成对该国的侵略行为。

事实上，中日甲午战争以前，日本政府早已知道钓鱼群岛是中国领土。据日本史书记载，1884年日本福冈人古贺辰四郎发现“久场岛”（黄尾屿）有大量信天翁栖息，可销往欧洲，便于1885年要求冲绳县令允许其开拓，并在岛上树立标记，上写“黄尾岛古贺开垦”，日本政府以此为据，称钓鱼岛是“无主地”，是由日本人先占的，而非甲午战争时从中国夺取的。

关于这些岛屿的领有权问题的关键之一，在于是不是“无主地”的问题。日本方面有意把“无人居住岛屿”和“主地”加以混淆。按照国际法，“无人居住岛屿”并不等于“无主”；国际法要求对“无人居住岛屿”和“有人居住岛屿”行使管辖权的程度是不一样的。通常，对“有人居住岛屿”的管辖权必须是连续不断的。对无人居住岛屿，关键在于主权属谁；至于管辖，特别是对于海洋气候恶劣、不适于人类居住的边远岛屿，则可以断续行使，如定期派军用船只巡逻等。例如，1928年美、荷关于“帕尔马斯岛案”的国际仲裁裁决，就确立了这项原则，并得到国际上的普遍认同。因此，明清时期，在钓鱼群岛这样的边远小岛上是否有中国人定居，并不影响中国对这些岛屿的主权。

<sup>19</sup> 日本《政治经济总览》1996年，《前卫》月刊5月临时增刊，第109页。

那么,历史事实又是如何呢?根据日本官方档案《日本外交文书》第十八卷的记载,1885年9月22日冲绳县令西村根据日本内务省命令所作调查称:“有关调查散在本县与清国福州之间的无人岛事宜,依先前在京本县大书记官森本所接秘令从事调查,概略如附件。久米赤岛、久场岛及钓鱼岛为古来本县所称之地方名,……隶属冲绳县一事,不敢有何异议,但该岛与前时呈报之大东岛(位于本县和小笠原岛之间)地势不同,恐无疑,系与《中山传信录》记载之钓鱼台、黄尾屿、赤尾屿等属同一岛屿。若属同一地方,则显然不仅为清国册封原中山王使船所悉,且各附以名称,作为琉球航海之目标。故是否与此番大东岛一样,调查时即立标仍有所疑虑。”<sup>20</sup>此秘密调查说明,日本明治政府已了解到这些岛屿并非无主地,至少是可能同中国发生领土争议的地区。但内务卿山县有朋等仍不甘心,要求再做调查,以利建立日本的“国标”。其理由是,这些岛屿虽与《中山传信录》所述相同,但清国只是借助这些岛屿作为识别航海方向之用,“并未发现其他清国所属证迹”;关于岛名,日、中有所不同,故无关宏旨;且这些无人岛靠近八重山群岛。当时日本表面上提出的琉球两分方案虽曾表示将八重山划归中国,实则早存得寸进尺之心。然而,调查结果反使山县不敢轻举妄动了。

1885年10月21日,日外务卿井上馨致内务卿山县有朋信中称:“经详查熟虑,该等岛屿也接近清国国境。与先前完成勘查之大东岛相比,发现其面积较小,尤其是清国对各岛已有命名,近日清国报章,刊载我政府拟占据台湾附近清国所属岛屿之传闻,对我国抱有猜疑,且屡次引起清政府之注意。此刻若公然建立国标,必遭清国疑忌,故当前宜限于实地调查及详细报告其港湾形状、有无可待日后开发之重要物产等,而建国标及着手开发等,可待他日见机而作。”<sup>21</sup>井上还叮嘱山县,不宜将日方秘密调查公诸报端,而要暗中进行,以免引起中国及国际上的异议或反对。同年11月24日,冲绳县令西村将奉命调查结果禀报内务卿,要求给予指示:“建立国标一事,如前呈文,未必与清国完全无关,万一发生纠纷,如何是好。”翌日,内、外务两卿联名下令:“切记目前不可建(国标)。”<sup>22</sup>显然,当时日本帝国正在加紧扩军备战,伺机侵吞朝鲜,并最终与清政府决一雌雄,而不愿过早地“打草惊蛇”。

直到1893年,即中日甲午战争的前一年,日本冲绳县知事要求将钓鱼岛等划归冲绳县时,日本内、外两卿还将此拖了一年。甚至到甲午战争那年,因日本尚无获胜的把握,故政府仍以“该岛究竟是否为帝国所属尚不明确”为由而加以拒绝。然而,1894年11月底,日军占领旅顺口,将清军北洋水师封锁在威海卫内,日本明治政府确信对清一战胜券在握。同年12月27日,日本内务大臣野村靖发密文给外务大臣陆奥宗光称:关于在“久场岛”(黄尾屿)“鱼钓

<sup>20</sup> 《有关八重山群岛、鱼钓岛所辖决定》,《日本外交文书》第23卷。

<sup>21</sup> 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 外务省记录1门政治/4类 国家及领域 1项 亚细亚帝国版图关系杂件。

岛”建标桩一事，虽已下令暂缓，“但今昔形势已殊”，对这些岛屿“需加管理”，故应重视此事。这次外务省未表异议，并称“请按预定计划适当处置”。从1895年1月下旬，进攻威海卫的战斗开始，日本预测到将以日本陆海军的压倒性的胜利而告终。

对于日本天皇政府来说，这时是夺取钓鱼诸岛的极好的机会，政府和大本营的决定是根据首相伊藤博文战略，在决定占领台湾方针的同时做出的。1885年的时候，政府害怕在钓鱼诸岛上公开树立国标会引起清朝的疑虑乃至纷争，而现在日本在钓鱼诸岛上树立航标，清朝无力表示抗议。即使抗议也不过是形式上的事。政府已经决定进行占领台湾的作战，讲和之际肯定是要清朝把台湾割让出来的。盛气凌人的明治政府认为对于台湾和冲绳县之间钓鱼岛那样的小的无人岛屿都无需实行军事占领，只要宣布归冲绳县管辖，建立一个航标就可以了。<sup>23</sup> 结果，1895年1月14日，日本政府不等战争结束，便通过“内阁决议”，将钓鱼列岛划归冲绳所辖，建立标桩。<sup>24</sup>

1972年3月8日，日本外务省发表的《关于尖阁列岛的领有权的基本见解》是这样说的：“1885年以来，政府通过冲绳县地方当局对尖阁列岛以各种方式进行再三调查，确认那里不仅是无人之岛，而且没有任何清国的管辖痕迹。在对此予以慎重确认的基础上，1895年1月14日的内阁会议上决定于岛上建立航标，以正式编入我国领土。”<sup>25</sup> 但是，从上面介绍的事实来看，日本政府的这种主张很明显是不成立的。关于冲绳（琉球）的归属，作为明治政府来说本来是没有与清朝之间解决的问题。但是日本已经以占领台湾为目标了，所以通过1894—1895年的战争，将琉球的问题一并解决了。

其实直到日本人统治台湾时期，日本自己也承认钓鱼岛属于台湾附属岛屿而不是琉球的附属岛屿。1940年，日本占领下的台北州渔民与日本冲绳县渔民为“尖阁群岛”（钓鱼岛）的捕鱼权问题发生争执，官司一直打到东京法庭；法庭很快作出裁决，台湾胜诉，冲绳县败诉，“尖阁群岛”仍归台北州管辖。

#### 4. 美日两国之间的任何条约或协议，均不具备决定钓鱼岛领土主权归属的法律效力

日本政府称，《旧金山和约》未将“尖阁列岛”（钓鱼岛）包括在根据该条约第二条日本应放弃的领土之中，而是根据第三条置于美国行政管理之下，所以美国将托管地区交给日本后，自然是日本的领土，而且中国对此从未提出任

<sup>22</sup> 参阅《日本外交文书》第18卷《杂卷》。

<sup>23</sup> 井上清著：《《“尖阁”列岛——钓鱼诸岛的历史的解明》》，现代评论社，119-121页，1972年10月发行。

<sup>24</sup> 《有关八重山群岛、鱼钓岛所辖决定》，《日本外交文书》第23卷。

<sup>25</sup> 《关于尖阁列岛的领有权的基本见解》，<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

何异议，因而表明中国并未认为“尖阁列岛”（钓鱼岛）是台湾的一部分，只是到1970年出现东海大陆架石油开发动向后，中国才提出拥有钓鱼岛主权问题。这显然不符合历史事实。1943年12月1日中美英三国《开罗宣言》中便明确规定，“要使日本所窃取于中国之领土，例如满洲、台湾、澎湖列岛等，归还中国。日本亦将被逐出于其以武力或贪欲所攫取之所有土地”。1945年7月26日中美英三国敦促日本投降之《波茨坦公告》强调，“开罗宣言之条件必将实施，而日本之主权必将限于本州、北海道、九州、四国及吾人所决定其他小岛之内”。既然日本接受了《波茨坦公告》，就意味放弃其所攫取的所有中国领土，这当然包括作为台湾所属岛屿的钓鱼岛。

美军占领琉球之后，曾于1946年1月29日发布的《联合国最高司令部训令第667号》，其中第三项中已明确规定了日本版图所包括的范围，即“日本的四个主要岛屿（北海道、本州、四国、九州）及包括对马诸岛、北纬30°以南的琉球诸岛的约1000个邻近小岛”，其中根本不包括钓鱼岛。

中华人民共和国政府历来认为，第二次世界大战后美国片面宣布对钓鱼岛等岛屿拥有所谓“施政权”是非法的。早在1950年6月当时的周恩来外长便强烈谴责美国的行径，声明中国人民决心收复台湾及一切属于中国的领土。《旧金山和约》是1951年9月8日美国在排除中华人民共和国的情况下一手包办的单独对日和约。同年9月18日，周恩来外长便代表中国政府宣布，这个所谓的和约因无中华人民共和国参加准备、拟制和签订，所以是非法的，无效的，中国绝不接受。为此，《人民日报》1953年1月8日在《琉球岛人民反对美国占领的斗争》中，把尖阁列岛包括在琉球群岛中，“琉球群岛散布在我国台湾东北和日本九州岛西南之间的海面上，包括尖阁诸岛、先岛诸岛、大东诸岛、冲绳诸岛、大岛诸岛、土噶喇诸岛、大隅诸岛等七组岛屿，每组都有许多大小岛屿，总计共有五十个以上有名称的岛屿和四百多个无名小岛，全部陆地面积为四千六百七十平方公里。”随着冷战局面的出现，美国于1953年12月25日发出一份美国民政府第27号令，即关于“琉球列岛地理界线”的布告。该布告称，“根据1951年9月8日签署的对日和约”，有必要重新指定琉球列岛的地理界线，并将当时美国政府和琉球政府管辖的区域指定为，包括北纬24°、东经122°区域内各岛、小岛、环形礁、岩礁及领海。

1971年6月17日，日美签署的归还冲绳协定（《关于琉球诸岛及大东诸岛的日美协定》）中宣布的日本领土范围，与1953年美国民政府第27号令完全相同。这样就将钓鱼岛切给日本的冲绳县。日本政府据此主张该岛属于冲绳县的一部分，并将钓鱼岛及其周围海域划入日本自卫队的“防空识别圈”内。美国将钓鱼岛私下擅自交给日本，结果引起70年代包括美国在内的世界各地华人保卫钓鱼岛运动的浪潮。对此，我国外交部于1971年12月30日发表声明，强烈谴责美日两国政府公然把我钓鱼诸岛划入“归还领域”，严正指出“这是对中国领土主权明目张胆的侵犯。中国人民绝对不能容忍。”“美日两国在‘归还’冲绳协定中，把我国钓鱼岛等岛屿列入‘归还区域’，完全是非法的，这丝毫不能改变中华

人民共和国对钓鱼岛等岛屿的领土主权”。<sup>26</sup>在此情况下，美国政府不得不于1971年10月表示：“美国认为，把原从日本取得的对这些岛屿的行政权归还给日本，毫不损害有关主权的主张。美国既不能给日本增加在它们将这些岛屿行政权移交给我们之前所拥有的法律权利，也不能因为归还给日本行政权而削弱其

---

<sup>26</sup> 声明的全文：《关于钓鱼岛所有权问题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声明》“近年来，日本佐藤政府不顾历史事实和中国人民的强烈反对，一再声称对中国领土钓鱼岛等岛屿“拥有主权”，并勾结美帝国主义，进行侵吞上述岛屿的种种活动。不久前，美、日两国国会先后通过了“归还”冲绳协定。在这个协定中，美、日两国政府公然把钓鱼岛等岛屿划入“归还区域”。这是对中国领土主权的明目张胆的侵犯。中国人民绝对不能容忍！”

美、日两国政府合伙制造的把冲绳“归还”给日本的骗局，是加强美、日军事勾结，加紧复活日本军国主义的一个新的严重步骤。中国政府和中国人民一贯支持日本人民为粉碎“归还”冲绳的骗局，要求无条件地、全面地收复冲绳而进行的英勇斗争，并强烈反对美、日反动派拿中国领土钓鱼岛等岛屿作交易和借此挑拨中、日两国人民的友好关系。

钓鱼岛等岛屿自古以来就是中国的领土。早在明朝，这些岛屿就已经在中国海防区域之内，是中国台湾的附属岛屿，而不属于琉球，也就是现在所称的冲绳；中国与琉球在这一地区的分界是在赤尾屿和久米岛之间；中国的台湾渔民历来在钓鱼岛等岛屿上从事生产活动。日本政府在中日甲午战争中，窃取了这些岛屿，并于1895年4月强迫清朝政府签订了割让“台湾及所有附属各岛屿”和澎湖列岛的不平等条约——《马关条约》。现在，佐藤政府竟然把日本侵略者过去掠夺中国领土的侵略行动，作为对钓鱼岛等岛屿“拥有主权”的根据，这完全是赤裸裸的强盗逻辑。

第二次世界大战后，日本政府把台湾的附属岛屿钓鱼岛等岛屿私自交给美国，美国政府片面宣布对这些岛屿拥有所谓“施政权”，这本来就是非法的。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不久，1950年6月28日，周恩来外长代表中国政府强烈谴责美帝国主义派遣第7舰队侵略台湾和台湾海峡，严正声明中国人民决心“收复台湾和一切属于中国的领土”。现在，美、日两国政府竟再次拿我国钓鱼岛等岛屿私相授受。这种侵犯中国领土主权的行为不能不激起中国人民的极大愤慨。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严正声明，钓鱼岛、黄尾屿、赤尾屿、南小岛、北小岛等岛屿是台湾的附属岛屿。它们和台湾一样，自古以来就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美、日两国政府在“归还”冲绳协定中，把我国钓鱼岛等岛屿列入“归还区域”，完全是非法的，这丝毫不能改变中华人民共和国对钓鱼岛等岛屿的领土主权。中国人民一定要解放台湾！中国人民也一定要收复钓鱼岛等台湾的附属岛屿”《战后中日关系文献集》，1971-1995,61-62页。

他要求者的权利。……对此等岛屿的任何争议的要求均为当事者所应彼此解决的事项。”<sup>27</sup> 1992年，中国人大常委会颁布《中华人民共和国临海及毗连地区法》，已宣布台湾及其附属岛屿包括钓鱼台列岛，位于中国临海基线之内。直到1996年9月11日，美国政府发言人伯恩斯仍表示：“美国既不承认也不支持任何国家对钓鱼列岛的主权主张。”<sup>28</sup>

### (五) 结论和展望

综上所述，作为历史事实，被日本称为尖阁列岛的岛屿本来是属于中国的，并不是属于琉球的岛屿。日本在1895年占有了这些地方，是借甲午战争胜利之际进行的趁火打劫，决不是堂堂正正的领有行为。这一历史事实是不可捏造的，必须有实事求是的认识和客观科学的分析态度。“读史使人明智”。我们研究钓鱼岛争端，就是为了从历史的经验教训中走出，“面向未来”，探索问题的解决之道。在领土问题这样的国家间的见解对立的情况下，需要倾听对立的意见，保持用冷静和平的方式解决问题的态度。不冷静地思考，立即用狭隘的民族主义，用伪装的爱国主义煽动情绪是绝对要不得的。在这一问题上，我们应当向周恩来和邓小平学习。1972年7月28日，周恩来在同当时公明党委员长竹入义胜会谈之际，他指出“不必触及尖阁列岛问题。与邦交正常化相比，这不是问题。”<sup>29</sup>最近，公布了竹入笔记中关于这一会谈记录更详细的内容，其中谈到：“不必触及尖阁列岛问题。到现在为止，竹入先生是不是也不关心呀？我也不关心。但是在那石油问题上，历史学者认为是问题。日本的井上清先生很热心。不要把那一问题看得那么重”。<sup>30</sup>周恩来在这里特意举出当时京都大学教授井上清的名字，是在促对方了解他的研究成果，这是值得注意的。

1978年10月下旬，为交换日中和平友好条约的批准书，邓小平副总理访问日本。25日在日本记者俱乐部会见各国记者的时候，记者团中有人针对尖阁列岛问题提出质疑。邓小平作了以下的回答：

---

入“归还区域”，完全是非法的，这丝毫不能改变中华人民共和国对钓鱼岛等岛屿的领土主权。中国人民一定要解放台湾！中国人民也一定要收复钓鱼岛等台湾的附属岛屿”《战后中日关系文献集》，1971-1995,61-62页。

<sup>27</sup> 美国参议院外交关系委员会听政会，第九十二届国会记录，1971年10月27日至29日，第91页。

<sup>28</sup> 香港《东方日报》1996年9月12日等。

<sup>29</sup> 关于日中邦交正常化问题周恩来总理与竹入公明党委员长会谈纪要《朝日新闻》1980年5月23日，（竹入笔记）《日中关系基本数据集1949年——1997年》，霞山会发行，第414页。

<sup>30</sup> 东京大学东洋文化研究所田中明彦研究室数据库《世界与日本》中日中关系资料集<http://www.ioc.u-tokyo.ac.jp/~worldjpn/>

“尖阁列岛我们叫做钓鱼岛，这个名字我们叫法不同，双方有着不同的看法，实现日中邦交正常化之际，我们双方约定不涉及这一问题。这次谈中日和平友好条约的时候，双方也约定不涉及这个问题。从中国人的智慧来看，现在只有考虑用这种办法处理。因为一旦触及了这个问题就说不清楚了。倒是有些人想在这个问题上挑些刺，来障碍中日关系的发展。我们认为两国政府把这个问题避开是比较明智的。这样的问题放一下不要紧，等十年也没有关系。我们这一代人的智慧还不够。我们这一代解决不了，但下一代比我们有智慧。那时也许可以找到大家都能接受的解决方法，邓小平所考虑的是“这样的问题是不是可以不涉及两国的主权争议，共同开发。共同开发的无非是那个岛屿附近的海底石油之类，可以合资经营嘛，共同得利嘛。不用打仗，也不用好多轮谈判。”<sup>31</sup> 他还指出，“世界上有许多争端，总要找个解决问题的出路。我多年来一直在想，找个什么办法，不用战争手段而用和平方式，来解决这种问题”，中日钓鱼岛问题就是其中之一。从邓小平以上论述中可以看出，“搁置争议，共同开发”的基本含义有二：第一，对领土争议，在不具备解决的条件，可以先不谈主权归属，而把争议搁置起来；搁置争议并不是要放弃主权，而是将争议先放一放。第二，共同开发的目的是，通过合作增进相互了解，为最终合理解决主权归属创造条件。邓小平的这一思想求实创新，是对和平解决国际领土争端的一大贡献。

总而言之，中国拥有钓鱼岛的主权有历史、地理、国际法等方面的确凿证据，但日本自恃持有实际控制这张牌，中国不会承认日本对钓鱼岛实际控制权，但也不希望钓鱼岛问题闹大影响中国和平崛起的形象。因此该问题的最终解决尚待时日。在目前阶段，中日两国遵守过去曾达成的共识，真正实现搁置争议，共同开发海域资源，则是积极、明智的选择。这要求日本也必须防止国内右翼势力借钓鱼岛问题做文章，同时中国方面也避免更多的中国公民到钓鱼岛宣示主权，“影响外交大局”。

<sup>31</sup> 前引《日中关系基本数据集1949年——1997年》，霞山会发行，第527页。

## 전문 번역

## 중·일간 釣魚群島분쟁

번역 / 나 영 주 (고려대 강사, 중국정치)

釣魚群島 문제는 중·일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토주권문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우선 釣魚群島 반환 및 영토분쟁의 원래적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釣魚群島는 어떤 섬이지를 알아보고, 그 경제, 군사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국과 일본이 각자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釣魚群島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중일 양국의 연구현황을 고찰하고, 결론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釣魚群島의 지정학

## 1) 釣魚群島 지리

약칭으로 釣魚島로 불리는 '釣魚群島'는 일본에서는 '尖閣列島'로 불리는 섬이며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중국 동해연안의 대륙붕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질구조상 대만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동경 123-1124도, 북위 25-26도에 위치한 釣魚群島는 대만섬으로부터 92해리, 일본 琉球열도로부터 약 73해리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琉球열도와 釣魚群島 사이의 수심은 1,000-2,000미터에 달한다. 釣魚群島는 釣魚島(4.3평방킬로미터), 黃尾島(1.08평방킬로미터), 赤尾島(0.154 평방킬로미터), 등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44평방킬로미터이다. 지질학적으로 釣魚島는 대만과 동일한 지질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만과 釣魚群島 사이의 수심은 200미터 안팎이다. 琉球열도는 千島群島, 일본 군도, 필리핀군도 등으로 구성된 '화기열도'의 일환으로서, 釣魚群島와 琉球열도는 지질구조상의 연관성은 없다.

## 2) 釣魚群島 경제적 가치

釣魚群島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개발가치가 있다. 1966년 UN아시아 및 극동아시아경제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동해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중의 하나이며, '제2의 중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釣魚島 주변에 매장된 석유는 신생대 제 3기 퇴적층으로서, 석유 생성과 저장에 가장 이상적인 지질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정 매장량은 737-1,574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풍부한 약재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장이 매우 풍부하다.

釣魚群島는 해양의 경계설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UN해양조약>이 발효된 이후, 각국간의 해양경계문제는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釣魚島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면, 일본은 7~2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본 해양산업연구회가 편찬한 <신세기 해양개발시대를 향하여>라는 책에서는 지리적 중요성과 영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러시아, 북한, 한국, 중국의 주변 해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관료의 언급에 따르면, 일본이 만약 釣魚島를 잃게 된다면 11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3) 釣魚群島 군사적 가치

중국의 동쪽은 긴 병풍처럼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국 연해의 많은 섬들 중에서 동해방향의 정면에 釣魚群島 대만섬이 있다. 이들 섬은 일본 九州島와 함께 중국 동해와 태평양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琉球국은 일찍이 중국과 2000년의 역사적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500년은 중국의 속국이였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속국으로서 특수한 국가형태를 유지했듯이, 188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였다. 그러나 1879년, 끊임없이 남하확장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이 琉球열도를 점령함으로써 그 야심을 실현하였다. 琉球열도가 넘어가자, 대만섬과 澎湖열도는 안보위기에 직면하였고, 일본 남하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비록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이 대만을 반환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우익들은 '대만반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만약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한다면 대만과 중국의 동부지역은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 대륙과 대만, 그리고 琉球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조그만 섬 釣魚群島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사실상 釣魚島의 군사적 가치는 앞으로 더 증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釣魚群島는 일본의 대만 침략의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중국으로서는 동해상의 안보와 일본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본토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외부의 해공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고, 해양 확장정책을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 小山內宏이 지적했듯이, 釣魚島는 전자경보체계와 미사일 설치에 매우 적합한 조

권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일본이 본토 외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釣魚群島의 군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1970년대부터 釣魚群島 및 인근 해역을 경계범위와 군사적 통제권 안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釣魚群島는 대만섬의 방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동남연해 지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국토방위의 측면에서 연해지역과 섬은 매우 중요한 방어막으로 작용하는데, 琉球열도는 중국동부 연해지역과의 거리가 불과 300-500해리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釣魚島를 일본이 영원히 점유한다면, 미일안보체제의 조건하에서 일본의 신속한 군사력 발전과 서진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요인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대륙과 대만이 통일이후, 대만해협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군은 대만섬과 대만해협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연해 지역의 군사작전이 사실상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 釣魚島에서 대만해협을 감시하거나, 모종의 군사행동을 실시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해군의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釣魚群島분쟁의 유래와 배경

### 1) 지도상의 작은 도서가 어떻게 큰 분쟁을 만들었는가?

일찍이 1961년 미국 우즈후어(伍茲霍爾) 해양 연구소의 해양지질 교수 애머리(埃默里: Shepard Emery)는 일본 東海대학 지질 교수 新野弘과 합작하여 이차대전 기간 미국 해군의 반잠수함전과 진행되고 있던 해저 연구 유관자료를 근거로 <중국 동해 및 남해 얕은 지역의 침적물>이라는 초보적 보고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상술한 해역의 해상에 석유의 매장 암시하였다.<sup>1)</sup> 오년 후에 그들은 중국 동해 대륙붕 주위의 육지 지질구조를 근거로 중국 북부지구와 관련이 있는 당시 소련 해양 학자의 연구자료를 참고 하였다. 또한 대륙붕의 암반 양태를 새롭게 채집하고 화석 표본 자료를 비교 종합하여 1967년에 <朝鮮해협 및 중국 동해의 지층과 석유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의 첫머리에 중국 동해는 '세계에서 석유 전망이 최고 좋으며 아직 탐사하지 않는 근해지구의 하나'로 '동해에서 세밀한 지구물리와 지질 탐사를 진행한다면 성공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대만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釣魚群島를 경과하여 일본 九州에 이르는 지역은 '대륙붕 가장자리 지역으로 광활한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후 해저의 석유와 가스를 찾을 수 있

1) <미국지질학회회간> 1961년 제72권, pp. 731-762, 서리크 해리슨(塞利格 哈里森), 『중국근해석유자원은 장차 국제적 충돌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석유화학공업출판사, 1978년판에서 재인용.

는 최후의 희망 지역이다'고 보고서는 예언하고 있다.<sup>2)</sup> 얼마 후 미국 항공은 지자기를 실측한 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견해의 정확성을 증명하였다.

1968년 가을 확실한 자료 수집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애머리 등은 유엔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 경제위원회(ECAFE)소속 아시아 근해지구 광산자원탐사협조위원회(CCOP)의 주관 하에 미국해군의 해양국과 회동하였으며,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전문가와 협조하여 연합조사대를 구성하였다. 연구선인 헌트(亨特; Hunt)호에 탑승하여 중국 황해와 동해로부터 대만 중심부까지 연장하여 실제 지구물리 탐사를 진행하였다. 탐사로 7,450해리 이상 연속적으로 지진단면과 상응하는 지자단면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웅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석유와 가스의 저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마성(麻省) 이공대학 해양 연구소의 권위 있는 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대만해의 분지 약 20만 km<sup>2</sup>의 대륙붕상에 적어도 페르시아(波斯)만과 동일한 거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적게 잡아 800억 갤런 정도이다.<sup>3)</sup>

위에서 기술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동해에 매장된 거대한 석유량의 가설로 말미암아 중국, 일본, 한국 및 대만 사이에 釣魚島의 주권 귀속 및 동해 대륙붕의 경계 문제라는 거대한 논쟁이 유발되었다. 일본 정부는 1974년 5월 국회에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특별법에 관한 안을 제출하였다. 1978년 일본 국회는 최후로 <일한대륙붕공동개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저명한 해양법학자인 박春浩는 <<동아시아와 해양법>>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1969년부터 동북아의 해저 석유논쟁이 발생하여 10년 동안 관련국 모두는 거짓말 같은 물건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일본과 남한은 공동 개발구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추탐사에서 지금까지 일련의 매마른 구멍만 판셈이다. 확실히 대량의 석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동 노력의 실제 성취는 검증받을 수 없다.'

## 2) <국제연합해양법조약>은 釣魚群島 주권귀속 문제의 복잡성을 격화

일본의 釣魚群島에 대한 장기간의 패권적 점유는 釣魚群島의 주권귀속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규정에 관한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은 釣魚群島의 중요성을 점차로 본래의 가치를 초과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국제연합해양법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자면 대륙붕 경계 상에 있는 도서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학자 해리슨(哈里森)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동해상에서 이 구역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釣魚群島(尖閣列島)의 주권소유가 변할 수 있

2) <지구물리 탐사보고> 1967년 제1권, pp. 249-263, 위의 책에서 재인용.

3) 黃養志 등, <釣魚島는 죽어도 잃을 수 없다>, 홍콩 <<明報月刊>>(1971, 5), 제65기.

기 때문이다. 釣魚群島가 대륙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釣魚群島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승인은 일본을 대륙붕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중간선을 획정할 釣魚群島도 동쪽 끝의 기점을 삼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직선기선과 연결되기에 그것의 대륙붕은 沖繩의 해역을 넘게 된다. 그것의 확장은 중국의 동해해역으로 연계되어 중국과 이 지역을 반분하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것으로 釣魚群島 문제의 논란의 핵심이다.

## 釣魚群島 분쟁에 관한 시각과 쟁점

### 1) 일본과 서방의 시각과 주장

#### (1) 일본 국제법학회의 관점

1980년, 일본국제법학회가 편찬한 <국제법 사전>에는 ‘尖閣列島(釣魚群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중 양국의 尖閣列島의 귀속문제에 대한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尖閣列島는 중국의 영토였는데, 중일전쟁 패배 후 일본이 청나라와 강압적의 체결한 <馬關조약>에 따라 대만을 할양할 때, 함께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반환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尖閣列島는 沖繩현 관할로서, 1895년 1월 4일 내각회의를 통해 일본영토로 정식 편입하고 현지에 표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 이전에는 국제법상으로 이 지역은 어떤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이었다. 또한 일본의 영토편입과 그 이후의 유효한 통치를 통해 볼 때 국제법상 선점의 논거에 따라 일본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일중 양국간 갈등의 요지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국제법적으로 볼 때, 1895년의 尖閣列島는 중국영토인가 아니면 주인 없는 섬인가? 두 번째, 1895년의 일본의 영토편입과 그 이후의 통치행위는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받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상이 지금까지 보여준 양국의 공식적 입장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UN해양조약>이 발효되고 중일 양국이 각각 비준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우익들은 釣魚島에 등대와 기상시설을 설치하고, 대륙과 대만 어민의 조업활동을 막아줄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영유권 논쟁을 무시하고 일본의 영유권을 확정하려는 정치적 망동이며, 중국정부와 인민들의 엄중한 항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 (2) 미국학자 해리슨(哈里森)의 견해

해리슨은 양국간 釣魚島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尖閣列島(釣魚島) 분쟁은 일촉즉발의 민감한 문제로서, 중일 양국간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

로 대륙붕 자원에 대한 쟁탈전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일본 측의 주장은 1895년 〈馬關 조약〉 체결로 대만을 할양받을 당시 尖閣列島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尖閣列島를 암묵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차대전 이후 미국은 釣魚群島를 琉球열도와 함께 행정관할권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주권을 양도할 때에도 釣魚島를 沖繩현의 일부로 간주하고 반환해주었다. 반면, 중국 측은 釣魚群島(尖閣列島)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5세기 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또한 釣魚島는 원래 무인도였지만 중국에 의해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줄곧 대만의 일부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할 점은 해리슨의 견해는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요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일본이 1894년 釣魚群島를 침략하기 몇 세기 전부터 중국은 釣魚島를 중국의 주권 관할지역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많은 사료와 객관적 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중의 〈카이로 선언〉에서 명확히 규정하듯이, 만주, 대만, 팡호(澎湖)열도 등 일본이 훔쳐간 중국의 영토는 반드시 중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釣魚島는 대만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종전 후 연합군의 釣魚島 점령은 일본본토로 간주해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3조의 '남서군도'(즉 琉球열도 등)에 대해 미군이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는 釣魚島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갈취한 토지'에 해당하며, 중국에 반환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셋째, 미국이 釣魚群島를 일본에 넘겨줄 때, 중국정부 및 대만당국은 이미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 국무성 대변인 마이클 러스키는 '대일 평화조약 제3조의 근거, 미국은 남서제도에 대한 행정권을 갖는다. 이 구절의 의미는 2차대전 종전 후 일본통치하에 있으며, 본 조약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북위 29도 이남의 모든 섬을 지칭한다. 조약중의 이 구절의 의미는 곧 尖閣列島를 포함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향후 중일 관계에서 중요한 갈등요인을 남겨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중국 측의 시각과 주장

### (1) 중국 사료로 증명 : 중국은 釣魚群島의 국가영토 편입과 주권 행사

중국국가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고급기술자 許森安은 중국의 釣魚島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천년 전의 隋 왕조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긴다. 당시 중국의 臺灣과 釣魚島는 琉球라는 독립국가와 이웃하고 있었는데, 隋 煬帝가 사신 朱寬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귀순하게 하였다. 또한 陳楞, 周鎮州 등에게 군대를 이끌고 琉球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행군 도중에 釣魚島를 거쳐 갔다. 明代에 이르러, 1372년 중국인 楊載는 처음으로 釣魚島에 주둔하였다. 1884년이 되어서야 일본인 賀辰四郎은 釣魚島를 발견하였고, 그것은 楊載보다 500

여년이나 뒤의 일이었다. 사실은 이처럼 분명하다. 중국에서는 明代에 이미 釣魚島에 관한 역사문헌 상의 기록이 등장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鞠德源에 따르면, '臺灣에는 釣魚列嶼를 포함한 동북쪽의 여러 섬들이 부속되어 있다. 그 섬들은 '中華海山' 이나 '中華外山' 이라고 불리고, 예부터 중국 역대 왕조가 대대로 물려내려 온 국토이다. 중국인이 최초로 발견하여 최초로 명칭을 붙였으며, 최초로 경영·통할·지배하였다.' 鞠德源은 '일찍이 漢代에 臺灣 주위의 '國' 은 이미 漢 조정에 공물을 바치며 신하로서 복종을 표시하였고, 漢 조정은 '동쪽 끝의 二十國' 이라고 불렀다. 三國時代에 釣魚列嶼 해역은 중국의 官兵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隋代에 이르러, 釣魚島와 그 주위의 섬들은 '高華嶼' 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명칭이다.' 고 소개하였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의 보들리 도서관에는 明代 永樂年間(1403-1424)에 출판된 『順風相送』이라는 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책의 『福建往琉球(針路)』에는 '고대 중국의 隋·唐·宋·元 등에서 明初까지, 福建 연해의 군민(軍民)은 여러 차례 福建과 琉球 사이의 항로를 오갔다. 福建 연해의 크고 작은 섬들과 琉球 연해의 크고 작은 섬들은 모두 중국인이 최초로 발견하여 최초로 명칭을 붙였다. 또한 (이것은) 최초로 중국의 국가와 개인 문헌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었다.'<sup>4)</sup>

『順風相送』의 『福建往琉球(針路)』에는 '釣魚嶼, 赤尾嶼' 등의 명칭과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뒤, 明과 淸의 조정은 모두 '釣魚嶼, 黃尾嶼, 赤嶼'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釣魚島가 沖繩縣의 관할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본의 沖繩縣은 지금부터 125년 전에 독립된 琉球國이었다. 역사적으로 琉球王國(현재 일본 沖繩)은 明初부터 줄곧 明 황제에게 신하로서 복속하였다. 12세기에 琉球群島는 南山, 中山, 北山 등 三國이 출현하였고, 각각 琉球群島의 남부, 중부, 북부에 위치하였다. 1372년, 明 太祖 朱元璋은 琉球의 中山王 察度에게 조서를 내렸고, 그 뒤 琉球의 北山, 中山, 南山 등 三王은 明 조정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琉球는 중국의 변속이 되었다. 1402년, 中山王 尙巴志는 北山과 南山을 정복하였고, 통일된 琉球王國(최초의 尙氏王朝. 고중에 따르면 琉球王國의 尙氏도 중국황제가 하사한 것이었다.)을 형성하였고, 1404년 明 太祖의 冊封使가 琉球를 방문하였다. 그 후의 국왕들은 모두 중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明과 淸 왕조는 琉球로 모두 24회에 걸쳐 冊封使를 파견하였고, 그들은 파견의 경과와 琉球의 상황을 기록한 『使琉球錄』 등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冊封使는 당시 琉球와의 유일한 통로였던 福建省 福州(처음에는 泉州였음)을 출발하여 琉球로 향하였다. 당시의 배는 범선이었는데, 夏至 전후에 부는 서남풍을 이용하여 항해하였다.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 등은 대륙붕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중요한 표지였다. 따라서 『使琉球錄』에는 여러 차례 그 섬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그 기록들 중에서 주의할 만한 것은 赤尾嶼를 지나면 바로 '高米山'

4) 鞠德源, 『日本國竊土源流 釣魚列嶼主權辯』上册,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1, 39쪽.

(현재 久米島)에 도착하고 琉球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1534년 5월, 明朝는 11번째의 冊封使 陳侃을 파견하였다. 뒤에 그는 『使琉球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10일, 남풍이 아주 강하여 배가 나는 듯이 움직였다. (배는) 순풍을 따라 내려갔고 흔들림이 심하지 않았다. 平嘉山(현재 彭佳嶼), 釣魚嶼, 黃毛嶼(현재 黃尾嶼), 赤嶼(현재 赤尾嶼) 등을 지나쳤는데 자세히 볼 겨를이 없었다. 하루 만에 삼일이 걸리는 길을 항해하였다. … 11일 밤, 古米山(현재 久米島)이 보였는데, (그곳은) 琉球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夷인들이 배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도착하였다고 기뻐하였다.’<sup>5)</sup>

古米山은 姑米山(島)라고도 하는데 현재 沖繩의 久米島이고, 위의 夷人이란 당시 배위에 있던 琉球人이다. 인용문은 琉球人들이 古米山을 보고 ‘배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온 기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당시의 琉球人들은 釣魚島를 지나면 곧 久米島에 이르고 집에 돌아온 것으로 여겼다.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다음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古米山에 이르러야 비로소 琉球國에 들어선 것이고 그 앞의 釣魚嶼, 黃毛嶼, 赤嶼 등은 분명 琉球가 아니라 중국의 강역에 속한다. 明代 이래 여러 종류의 중국지도와 문헌들은 모두 釣魚嶼, 黃毛嶼, 赤尾嶼 등을 중국 영토 안에 표시하였고, 釣魚嶼와 관련된 중국지도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아울러 서양 각국이 최초로 출판한 중국지도, 아시아지도, 세계지도 등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영국해도의 Pinnacle Island는 바로 명대 이래 중국지도에서 나타난 檣欖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凸列島’, ‘衆尖島’라고 번역되었고, 그것은 일본의 ‘尖閣群島’, ‘尖頭諸嶼’라고 번역된 것보다 앞선다.<sup>6)</sup> 明, 淸 왕조는 모두 釣魚諸島를 중국 해안방어의 관할범위로 확정하였고, 결코 ‘임자 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특히, 明代에는 왜구와 해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부가 海禁을 실시하였다. 해금이란 사적 무역을 금지하고, 福建과 廣東 연해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遷界令’을 반포하여 연해의 해안방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sup>7)</sup> 연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였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연해의 섬들에는 釣魚嶼, 黃毛嶼, 赤尾嶼 등이 포함되었다. 1556년, 胡宗憲은 浙江省 提督으로 승진하였고, 일곱 省들의 해안방어를 관할하고 갈수록 날뛰던 왜구를 토벌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가 지켰던 곳은 釣魚島, 黃毛嶼, 赤尾嶼 등의 섬들이 포함된 중국 해안지역이었다. 1561년 전후, 胡宗憲의 막료였던 明代 지리학의 창시자 鄭若은 『籌海圖編』을 편찬하였다. 그 책은 왜구를 방어하는 전략 전술, 요새와 초소를 배치하는 방법, 전함과 무기의 제조기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籌海圖編』 卷一 『沿海山沙島』의 ‘福七’에서 ‘福八’에는 鷄籠山, 彭佳山, 釣魚嶼, 黃毛嶼, 赤嶼 등이 표시되어 있다. 『籌海圖編』

5) 陳侃, 『使琉球錄』,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上冊, 27쪽.

6) 鞠德源, 『日本國竊土源流 釣魚列嶼主權辯』 上冊,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1, 41쪽.

7) 중국의 해안방어정책은 다음을 참조. 盧建一, 『閩台海防研究』, 方志出版社, 2003.

卷一에 수록된 『福建沿海圖』와 卷二에 수록된 『福建使往日本針路』는 앞서 서술한 鞠德源, 『日本國竊土源流 釣魚列嶼主權辯』의 下冊에 圖5, 圖6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은 施永圖가 편찬한 『武備秘書』 卷二의 『福建海防圖』(1621-1628)이고, 鞠德源의 저작에는 圖10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뒤, 1562년 冊封使 郭儒霖이 저술한 『重編使琉球錄』에서도 다음 내용이 보인다. ‘윤 5월1일, 釣魚嶼를 지났고, 3일 赤嶼에 도착하였다. 赤嶼는 琉球지역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다시 하루를 항해하여 姑米山(久米島)을 볼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당시 중국이 이미 釣魚島의 열도 중에서 琉球로부터 가장 가까운 赤嶼(현재 赤尾嶼)를 琉球와의 경계로 삼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606년, 冊封使 夏子陽이 저술한 『琉球錄』에서도 久米島가 보이면 琉球人들은 집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서 아주 기뻐하였고, 久米島의 수령은 마중을 나와서 바다소라 몇 마리를 바쳤다.<sup>8)</sup> 清代에 이르러, 중국과 琉球의 경계선은 釣魚島 남쪽의 해협일대라는 것이 중국 항해가 사이의 상식이었다. 1621년 明의 茅元儀가 편찬한 『武備志』에도 釣魚山, 黃毛山, 赤嶼 등의 섬이 보인다. 현재 중국과학원 도서관에 소장된 『武備秘書』 卷二(明末 施永久著)에는 더욱 명확하게 ‘釣魚台’, ‘黃尾山’, ‘赤嶼’ 등의 섬이 그려져 있다.

清朝의 제2차 冊封使 汪楫은 1683년에 琉球에 갔고, 『使琉球雜錄』을 써서 沖繩 해협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였다. 『使琉球雜錄』 卷五에서 汪楫은 釣魚島, 赤尾嶼를 지난 뒤 해상조난을 피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배위의 선원들이 그에게 배가 지나고 있는 해협이 바로 ‘중국과의 경계선’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두어질 무렵 외곽(=沖繩해협)을 지나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고, … 외곽이란 말은 어떻게 쓰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중국과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방금 그 곳이고,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719년, 琉球에 갔던 清朝의 冊封使 徐葆光이 저술한 『中山傳信錄』<sup>9)</sup>은 당시 일본과 琉球에 큰 영향을 끼쳤다. 『中山傳信錄』은 徐葆光이 琉球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것으로 琉球지리학자, 王府執政官 등이 토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공을 들여서 신빙성이 높다. 『中山傳信錄』은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일본인이 琉球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내용에는 冊封使가 琉球로 가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다. 즉, 福州을 출발하여 花瓶, 彭佳, 釣魚 등 섬의 북쪽을 지나고 赤尾嶼를 거쳐 姑米山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姑米山은 ‘琉球의 서남쪽에 있는 鎮山’, 즉 琉球의 변방을 지키는 산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또한 현재의 八重山群島의 ‘與那國島’를 ‘이곳은 琉球의 서남쪽 끝에 있는 경계이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福州 五虎門에서 琉球 姑米山까지 가는데 모두 40차례나 배를 갈아탔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久米島가 중국과 琉球의 경계였다는 것이

8) 夏子陽, 『琉球錄』,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上冊, 425쪽.

9)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中冊, 2000, 36쪽.

분명하다.

周煌의 『琉球國志略』(1756)<sup>10)</sup>에 그려진 『琉球國全圖』는 琉球 남쪽 끝의 ‘由那姑呢’(與那國島)로부터 북쪽 끝의 ‘奇界’(喜界島)까지의 각 섬들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의 36개 섬). 서쪽 끝은 ‘姑米山’인데,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 등 琉球에 속하지 않는 섬들은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다. 琉球의 지리를 소개하는 ‘輿地’ 부분에서 ‘姑米山’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福州로부터 國(=琉球)에 이르는데 반드시 이 산을 지나는 것으로 표준을 삼는다.’<sup>11)</sup>

清朝 乾隆年間의 1756년 全魁, 周煌의 항해일정을 기록한 『琉球入學見聞錄』(潘相,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下冊, 361쪽)의 첫머리에 ‘琉球國全圖’가 있다. 지도 안에는 琉球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두 그려져 있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釣魚嶼는 없다. 『琉球入學見聞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2일, 赤洋(赤尾嶼인듯함)이 보였다. 그날 밤에 해협을 지나면서 바다에 제사를 지냈다. 13일, 姑米山이 보였다. 姑米인들이 산에 올라 햇불로 신호를 보냈다. 배위에서도 햇불을 올려 화답하였다. 14일, 姑米의 두목이 작은 배수 십 척을 이끌고 姑米山の 서쪽으로 인도하여 정박하였다.’ 이 내용은 久米島에 다가갔을 때 琉球쪽으로부터 마중 나온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1764년 潘相은 『琉球入學見聞錄』을 저술하였다. 清朝 同治2年(1863) 『皇朝中外一統輿圖』가 간행되었는데, 책의 卷六, 卷七, 卷八에 실린 중국 福建 臺灣 부분에는 釣魚嶼의 여러 섬들뿐 만 아니라, 주석도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琉球나 일본의 글자는 하나도 없다.

1808년, 清朝 嘉慶年間에 琉球로 파견되었던 사신 齊鯤은 『航海八咏』(北京首都圖書館 소장)을 저술하여 국경을 넘는 상황을 기록하였다. 第七咏에는 『姑米山』이라는 다음의 율시 8구절이 있다. ‘문득 떠다니는 용의 모습이 보이고, 서쪽에서 첫 번째 산이 다가왔네. 한참 동안 봉우리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더니, 여덟 산들로 된 길을 돌아 나왔네. 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는데, 배가 바람에 실려 잠시 가는 듯하였네. 琉球인들이 기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이곳이 바로 경계가 되는 곳이었네.’ 시의 제목에는 원래 ‘이산은 琉球로 들어가는 경계이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이것은 琉球國인들이 琉球國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姑米山에서 시작된다고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姑米山の 서쪽은 중국에 속하였고, 琉球에 속하지 않았다.

清朝는 乾隆年間에 『臺灣通志』를 편수하였다. 그 속에는 ‘臺灣港口’가 열거되어 있는데, ‘釣魚臺島’를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다. 光緒4年(1879) 일본이 琉球를 병탄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清朝는 여전히 釣魚臺島를 우리나라에 속하고 琉球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0) 周煌, 『琉球國志略』,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中冊, 644-645쪽.

11)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匯編』 中冊, 2000, 838쪽.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明代에서 清代까지 중국의 冊封使가 琉球로 갈 때 분명히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 등을 항로의 표지로 삼았고, 琉球의 영역은 久米島에서 시작되었다. 赤尾嶼와 久米島 사이의 해협을 지나면 바로 琉球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나 琉球 양쪽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이었다.

淸 光緒19年(1893) 10월,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慈禧太后(西太后)는 조서를 내려 釣魚島를 郵傳部尙書 盛宣懷에게 상으로 주면서 약초를 캐는 지역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1893년, 慈禧太后는 太常寺正卿 盛宣懷가 바친 류머티즘 치료약으로 큰 효과를 보았고, 그녀는 기뻐하면서 특별히 조서를 내려 약의 원료 산지인 釣魚群島를 盛宣懷에게 내려서 약을 캐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1960년대 후반, 중일 양국이 釣魚島의 주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盛宣懷의 손녀 盛毓眞(뒤에 徐逸로 개명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이 상술한 慈禧太后의 조서 사본을 미국 하와이 주 참의원 鄭友良에게 보냈다. 鄭友良은 1971년 미국 참의원 청문회에서 그것을 읽었고, 미국 제92회 국회 제1차 회의 기록에 실려 있다. (1971년 11월 9일 출판) 그 조서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皇太后慈 상유: 太常寺正卿 盛宣懷가 진상한 약은 아주 효과가 좋았다. 상주한 바에 따르면, 약재는 臺灣에서 떨어진 釣魚臺라는 작은 섬에서 채취하였다고 한다. 바다에서 생산된 영약이 육지에서 아주 뛰어난 효험이 있구나! 듣건대 경의 집안이 대대로 藥局을 개설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고 약을 주었음을 알고 있다. (이는) 아주 가상한 일이다. 釣魚臺, 黃尾嶼, 赤嶼 등 세 개 섬을 盛宣懷에게 상으로 내려 약초를 캐는 곳으로 삼도록 허가한다. 皇太后와 皇上께서 仁德을 널리 펼치려 하시는 깊은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이상. 光緒19年 10月.’<sup>12)</sup>

## (2) 일본측의 釣魚群島 일본소유 공언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 결핍

일본인들은 지속적으로 釣魚群島가 琉球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琉球 쪽 자료에 기록된 琉球의 범위가 어떤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대 琉球 왕국의 치세를 기록한 역사서로 여겨지는, 蔡鐸이 1701년에 편찬하고, 그의 아들인 蔡溫이 1724년에 개정한 <中山世譜>에는 琉球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琉球의 본도는 3부 5주 15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3부는 中頭の 中山府 5주 10군, 島尾의 山南附 15군, 國頭の 山北府 9군과 이외 다른 36개의 섬을 말한다. 즉 ‘명미래 중국인들은 琉球는 세 개의 산과 66개의 섬이라고 칭하였다.’<sup>13)</sup>

다음으로는 일본 방면의 자료에 기재된 琉球국의 범위는 어떤가 보자.

주지하다시피 1768년 林子平은 <三國通覽圖說>(여기서 삼국은 虬夷地, 조선, 琉球를 지

12) <<釣魚臺群島資料>>, 홍콩 <<明報月刊>> 1979년 5월, pp.87.

칭한다)에 〈琉球三省并三十六島之圖〉를 수록하였다. 그 중에서 琉球와 일본, 중국 및 대만은 구별하여 색을 표시하였다. 지도에서 釣魚台, 黃尾山, 赤尾山 및 福建, 浙江은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徳川(どくがわ)막부시기 전국을 통일한 후 正保년 간(1644-1647)에 각 번에 육촌(寸)을 일 리(里)로 하여 각지의 지도를 만들어 전국 지도를 제작할 것을 명령하였다. 薩摩藩의 島津私家에서 보관해온 문서인 薩摩國 지도와 琉球國 지도는 동경대학 사료 편찬소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동경대학사료편찬소 사료집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 13월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이 지도와 크기가 같은 모사품의 공개전람회를 가졌다. 琉球國의 지도는 奄美諸島, 沖繩本島, 先島諸島의 3장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3m에서 6m에 이르는 거대한 수제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先島諸島의 宮古島 북쪽의 산호초를 상세하게 그려 당시의 측량기술의 정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1609년 島津蕃이 琉球를 공격한 이래 琉球國은 중국과 일본양국에 속속되었다. 琉球국과 청국의 경계는 뚜렷하지 못하나 이 지도가 묘사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당시 琉球와 부속 36도이다.<sup>14)</sup> 琉球에 속하는 36개의 도서 중에 釣魚島, 黃尾島 赤尾島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琉球, 중국과 일본의 공동 인식이었다.

마지막으로 釣魚群島의 기록 정황이 어떤지에 관해 일본 사료를 보자.

井上清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명치유신이 시작되기 전 일본과 琉球에서 중국문헌 이외에 釣魚群島를 독자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에서 최초로 조연군도에 관해 기록한 책은 상술한 바와 같이 1785년 林子平이 저술한 〈三國通覽圖說〉의 부속 지도인 '琉球三省 및 三十六島の 지도'이다. 그러나 그 역시 중국 청조 강희제 책봉사인 徐葆光的 〈中山傳信錄〉의 의거하여 해당 지도는 중국의 '釣魚島'를 섬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연군도와 중국 복건, 절강을 동일한 담홍색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久米島는 琉球와 같이 황갈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徐葆光의 말을 인용하여 久米島는 '琉球 서남방 경계선상에 있는 鎮山'이라고 칭하였다. 1719년 일본학자 新井君美가 저술한 〈南島志〉<sup>15)</sup>의 한 책 중에는 琉球의 관할을 36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釣魚島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 문헌 〈琉球地理志〉는 일본정부는 1870년대까지 釣魚島가 琉球 범위에 속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琉球地理志〉의 한 책은 청조주일대사관의 요원이었던 姚文林이 번역하였는데, 일본인의 1870년대 琉球의 지리에 관한 글이다. 그책은 일본 명치 8년인 1875년에 정부가 편찬한 지리서적, 일본 문부성이 편집한 소학교과서를 포괄하고, 일본해군성의 실측지도를 참고하여 琉球군도의 각 섬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는데 '尖閣列島'혹 '釣魚島'는 그 범주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일본 측이 1870년대까지 釣魚島가 琉球범주에 속하는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95년 대만을 점령

13) 蔡溫, 〈〈中山世譜〉〉, 〈國家圖書館藏琉球數據續編〉 下冊, pp.19-20.

14) 동경국립박물관 동경대학사료편찬소: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 2001년.

하기 전 일본국 지도를 간행하였는데 釣魚島를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 온샤(溫莎) 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875년 출판된 <<府縣改正大日本全國>>과 19세기에 출판된 <<大日本地理全圖>>의 琉球부분에서 釣魚群島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1879년 중국 청조의 북양대신 李鴻章과 일본이 琉球의 귀속 담판 때는 중국과 일본 쌍방은 琉球는 3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釣魚群島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琉球왕가의 권위 있는 사서인 向象賢의 <<琉球國中山世鑑>>(1650)은 중국 명나라 책봉사인 陳侃의 기술을 차용하여, 구미도를 琉球영토로 보았고 赤尾도와 그 서측은 비琉球 영토라고 칭하였다. 向象賢은 당시 琉球의 재상이며 최고로 권위 있는 학자로서 그 관점은 자연히 당시 琉球통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 후 琉球학자 程順則은 1708년에 쓴 <<指南廣義>>에서 姑米山(久米島)을 '琉球 서남쪽 경계상의 鎮山' 즉 국가의 경계를 뜻하는 곳이라고 칭하였다. 琉球국이 그 해 강희황제에게 헌정한 <<中山世譜>>의 지도 중에도 釣魚群島는 없었다. 일본의 국제무역촉진협회상임이사인 高橋庄五郎은 고증을 거쳐 釣魚群島의 명칭은 중국이 먼저 정한 것이며 그 중 黃尾嶼와 赤尾嶼 등의 고유 섬 이름은 대만의 부속도서인 -花瓶嶼, 棉花嶼, 彭佳嶼 등과 같이 명확하게 중국의 이름이라고 인식하였다. 일본은 '작은 섬이라는 嶼'를 섬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은 반면에 복건, 澎湖列島, 대만성은 '嶼'를 이름으로 한 섬이 29개이며 중국 고대지도에 훨씬 더 많다. 赤尾嶼는 중국의 고서 상에 赤嶼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섬이 수성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섬의 암석 색깔로 赤嶼 혹은 赤尾嶼라고 칭하였다.

어떤 일본인은 지적하기를 중국이 출판한 지도에도 '尖各列島'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釣魚島를 표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 영토 주권을 이야기한다. 중국역사의 지도책에서 청조 시기는 釣魚島를 일찍이 釣魚臺로 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대만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군이 점령할 시기 중국이 출판한 지도상에 釣魚島는 별수 없이 '尖各列島'로 변경되어 있거나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당시 상해 <<申報>>에서 출판한 중국 <<新地圖>>가 그렇다. 전후 내지 중화인민공화국성립 후에 인쇄된 중국 지도에서는 어떤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中國分省地圖>>는 1956년 1판과 1962년 제2판 공히 지도집 뒤편에 설명을 부가하였는데 항전시기와 해방 전 申報 지도 제작에 근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군 점령시기 중국의 역사가 원인이며, 중국지도에서 釣魚島에 관한 기술이 서로 같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중국이 겪은 반식민지역사의 흔적으로 釣魚島에 대해 일본이 주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15) <<南島志>>는 <<甘雨亭叢書>>에 수록되어 중국과학도서관에 소재하고 있다.

일본은 지도 및 정부 문건 중 중국의 섬 이름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지만 1935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21종의 지도 및 대백과 사전 중 2/3는 ‘尖各列島’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어떤 것은 ‘釣魚島’로 칭하고 있다. 일본 측은 釣魚島에 소속된 각 섬의 명칭에서도 혼란스럽다. 일설에 의하면 일본이 최초로 ‘尖各列島’로 부른 것은 1900년 5월 沖繩師範學校 교사 黒田巖恒이 영국인들이 尖各諸島로 부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변화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한다. 1921년 7월 25일 일본정부가 그 섬을 국유지로 일본 지적에 편입시키려고 할 때 赤尾嶼를 ‘大正島’로 개칭하였으나 장기간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동맹군 사령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의 해도는 중국이 명명한 黃尾嶼와 赤尾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969년 미군 점령하의 琉球정부의 정식 문건과 공고판 역시 黃尾嶼와 赤尾嶼라는 섬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1969년 5월 釣魚島 해역에 석유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沖繩 지방정부는 석유공사의 대규모 탐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 琉球 石垣市 시장 명령에 근거하면, 일본 측은 釣魚島상에 표시물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黃尾嶼를 ‘久場島’로 개칭하고 赤尾嶼를 ‘大正島’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도서의 명칭이 천황의 조령에 의해 명명되지 않아서 1972년 이전 일본정부는 아직 각 섬의 상세한 이름은 거명하지 않은 채 주권만을 강조하여 두루뭉술하게 尖各列島 혹은 尖各群島라고 칭하였다. 지금에도 일본은 이 도서에 관한 일련의 지도에서 중국 명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일본 平凡社에서 출판된 <<世界大地圖帳>>은 분명하게 한자를 사용하여 적시하고 있으며 일본어 발음으로 釣魚島(Uotsurijima), 黃尾嶼(Kobi sho), 赤尾嶼(Sekibi sho)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沖繩縣 지방정부와 일본정부의 정식 문건 중 赤尾嶼, 黃尾嶼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1995년 2월 방위청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방위청 자료’ 중에도 중국의 섬 이름인 黃尾嶼와 赤尾嶼를 사용하고 있다.<sup>16)</sup>

### (3) 釣魚群島가 ‘주인이 없는 땅’은 아니며 일본의 釣魚島 점유는 침략행위

국제법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주권의 관할을 받은 후에는 해당 국가의 영토가 된다. 그 국가가 그 땅을 방기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중복해서 점령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해당 국가의 침략행위가 된다. 사실상 중일간 갑오전쟁 이전에 일본정부는 일찍이 釣魚群島가 중국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1884년 일본 福岡 사람 古賀辰四郎이 발견한 ‘久場島’(黃尾嶼)는 대량으로 알바트로스(albatross, 信天翁)가 서식하고 있었다. 유럽에 그것을 팔기 위해 1885년에 沖繩縣 수에게 개척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섬에 만든 표지에 ‘黃尾島는 古賀가 개간한 것이다.’라고 썼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釣魚島는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불렀으며, 일본인이 먼저 점유한 것이지, 갑오전쟁 때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도서의 영유권 문제의 관건 중의 하나가 ‘주인이 없는 땅’ 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일본 측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와 ‘주인이 있는 땅’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주인 없는 땅’은 같지 않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대해 국제법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에 대한 관할권은 반드시 연속적이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에 관해서 관건은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하는 것이다. 관할권은 특히 해양 기후 상태가 열악하거나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먼 도서 지역에서는 단속적으로 행사되는데 정기적으로 군용선을 파견하여 순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28년 미국과 네덜란드의 ‘팔마스(帕爾馬斯)섬안’의 국제 중재 판결은 이런 항목의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국제상의 보편적 인식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명칭 시기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인 釣魚群島에 중국인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이 그 섬에 대해 주권이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은 어떠한가? 일본정부의 문서인 <<日本外交文書>>의 18권에 의하면 1885년 9월 22일 沖繩 현령 西村은 일본 내무성 명령에 근거해 조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본 현과 청국 福州 사이에 산재해 있는 무인도의 상황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먼저 京本縣 대서기관 森本이 비밀리에 명령을 접수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개략이 다음과 같다. 久米赤島, 久場島 및 釣魚島는 예로부터 본 현이 칭한 지방명이다. … 하나같이 沖繩縣에 예속되는데 어떤 이의도 감히 있을 수 없다. 단 그 섬과 앞서 보고된 大東島(본 현과 小笠原島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세가 같지 않다. 아마 의심할 바 없이 <<中山傳信錄>>에 기록된 釣魚臺, 黃尾嶼, 赤尾嶼 등과 같은 섬이다. 만약 동일한 지방에 속한다면 분명히 청국이 책봉한 中山의 사신배도 알 것이며, 각각 명칭이 붙었을 것이며 琉球 항해의 목표로 삼았을 것이다.’<sup>17)</sup> 이 비밀 조사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明治 정부는 이미 이들 섬에 다다른 것뿐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적어도 중국과 함께 영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단 내무대신 山縣有朋 등은 굴복하지 않고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의 국가 표시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일련의 도서가 비록 <<中山傳信錄>>이 기술한 것과 일치한다하더라도 청국이 이 일련의 도서지역을 향해 방향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어떠한 청국 소유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이다. 섬 이름에 관해서도 일본과 중국이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주된 취지와 관계없다. 이 일련의 무인도는 八重山 군도와 가깝다. 당시 일본은 표면상으로 제출한 琉球 양분 방안이 비록 八中山을 중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찍이 釣魚群島를 확보하려는 다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山縣으로 하여금 경거망동을 하지 못

16) 일본 <<政治經濟總覽>> 1966년, <<前衛>> 5월 임시 중간호, pp.109.

17) <<有關八中山群島, 釣魚島所轄決定>>, <<日本外交文書>> 제23권.

하게 하였다.

1885년 10월 21일 일본 외무대신 井上馨致와 내무대신 山縣有朋이 편지 중에 이르기를 ‘상세한 조사와 오랜 고려를 거친 끝에 해당 도서가 청나라 국경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서 조사를 완성한 大東島와 서로 비교할 때 그 면적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청나라가 각각의 섬에 이름을 붙였다. 가까운 시일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가 대만 부근의 청국 소유의 도서지역을 점거하려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누차에 걸쳐 청나라 정부의 주의를 받고 있다. 이 때 애써 공공연하게 국가의 표식을 만든다면 필시 청나라의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로 당장에는 마땅히 실지조사와 항만 형성, 이후에 중요 산물 등을 개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자. 국가의 표식을 만들고 개발에 착수하는 것 등은 다른 날에 기회를 보아가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다.’<sup>18)</sup> 井上은 山縣에게 일본 측이 비밀 조사한 것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마땅히 암암리에 진행해야 중국 및 국제 사회로부터 이의와 반대를 면할 수 있다고 신신당부하였다. 같은 해 11월 24일 沖繩 현령 西村은 명을 받들어 조사결과를 내무대신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구하였다. ‘국가의 표식을 건립하는 일은 앞의 보고서처럼 청나라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분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다음날 내, 외무대신은 연명하여 명령하기를 ‘일체 보이는 데에 국가의 표식을 만들 수는 없다.’<sup>19)</sup> 당시 일본제국은 서둘러 군비를 확대하고 있었다. 기회를 보아 조선을 병합하고 최종적으로 청국 정부와 자웅을 겨루고 있었기에 미리 ‘숲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893년, 즉 중일 갑오전쟁 일년 전 일본 沖繩縣 지사가 釣魚島 등의 섬을 沖繩縣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할 즈음 일본 내, 외무대신은 일년을 더 끌고 있었다. 심지어 갑오전쟁이 나던 해에도 일본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기에 정부는 ‘그 섬들이 반드시 제국 소속이라는 것이 아직은 불명확하다’ 하여 거절하였다. 그런데 1894년 11월 말 일본군은 旅順 입구를 점령하였다. 청군 북양수사는 威海衛(지금威海市) 내에서 봉쇄되었다. 일본 명치 정부가 청과의 일전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다. 같은 해 12월 27일 일본 내무대신 野村靖은 비밀문건을 외무대신 陸奥宗光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久場島(黃尾嶼)와 釣魚島에서 국가적 표지를 만드는 일에 관해서 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잠시 늦췄지만, ‘지금과 예전의 형세는 이미 달라’ 일련의 이 도서들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까닭에 이 일을 중요하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외무성에서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예정계획에 따라 적당하게 조치’ 할 것을 언급하였다. 1895년 1월 하순부터 威海衛를 공격하는 전투가 개시되었으며, 일본은 일본 육해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8)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외무성기록 1門 정치/4類 국가 및 영역 1항 亞細亞帝國版圖關係雜件.

19) <<日本外交文書>> 제18권 <<雜卷>>을 참고하라.

일본천황정부로서는 이 시기가 釣魚諸島를 탈취하는데 최적의 기회였다. 정부와 大本營의 결정은 수상 伊藤博文의 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1885년에 일본 정부는 釣魚諸島상에서 공개적으로 국가의 표식을 만드는 것이 청나라의 우려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조어제도상에 항로 표식을 만들었으며, 청나라는 항의를 표시할만한 힘이 없었다. 항의를 한다고 해야 형식적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대만을 점령할 작전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강화조약을 이야기할 때에 확실하게 청나라에게 대만을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우 거만스러운 明治정부는 臺灣과 沖繩縣 사이의 釣魚島 형태의 작은 무인도서에 대해 군사점령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沖繩縣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고 항해표식지를 세우는 것이면 족하였다.<sup>20)</sup> 결과적으로 1895년 1월 14일 일본정부는 대등하지 못한 전쟁을 종결하고 조어열도를 沖繩縣 관할로 하고 국가 표식을 세운다는 ‘내각결의’를 편의적으로 통과시켰다.<sup>21)</sup>

1972년 3월 8일 일본 외무성은 <<尖各列島の 영유권에 관한 기본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885년 이래 일본정부는 沖繩縣 지방정부가 尖各列島에 관해 여러 방식으로 재삼 조사하는 것을 통과하였으며 그 곳이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국 정부의 어떠한 관할 흔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한 것을 기초로 1895년 1월 14일 내각회의에서 섬에 항로 표지를 세우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sup>22)</sup>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정부의 이런 주장은 분명히 성립되지 못한다. 沖繩(琉球)의 귀속에 관한한 명치 정부는 본래적으로 청나라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1894-1895년의 전쟁을 통과시켰으며 琉球의 문제까지 동시적으로 해결하였다.

사실은 일본이 대만을 통치했던 시기에 일본은 스스로 釣魚島嶼가 琉球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대만의 부속도서라는 것을 승인하였다. 1940년 일본 점령하의 臺北시 어민과 일본 沖繩縣 어민들 사이에 ‘尖各列島’(釣魚島)의 어업권 문제가 발생하여 다투었는데, 소송을 걸어 동경법정까지 갔다. 법정은 신속하게 판결하였는데 대만이 승소하였고 沖繩縣이 패소하였다. ‘尖各列島’가 臺北州 관할이라는 것이다.

#### (4) 미·일양국간의 어떠한 조약과 협의도 釣魚群島の 법률적 효력 없어

일본정부는 釣魚島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제2조)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3조, 즉 미국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제3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행정권을 이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고

20) 井上清 저, <<“尖閣”列島-釣魚諸島の 역사적 해명>>, 現代評論社(1972.10), pp.119-121.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1970년대 대륙붕의 석유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이 주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주, 대만, 澎湖열도 등 일본이 갈취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반환한다.’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 및 우리가 결정하는 기타 소군도로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이 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갈취한 모든 중국영토를 반환하겠다는 의미이며, 대만의 일부인 釣魚島는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미국이 琉球를 점령한 후, 1946년 1월 29일 발표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67호>에 일본지도상의 범위를 ‘일본의 4개 주요 섬 및 對馬諸島, 북위 30도 이남의 약 1,000개의 인근 소도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여기에도 釣魚島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줄곧, 종전 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어군도에 대한 ‘시정권(施政權)’을 행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950년 6월 당시 周恩來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중국인은 대만과 그에 부속된 일체의 섬을 반드시 수복하겠다고 천명하였다.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된 협약이며, 그해 9월 18일 周恩來 외교부장은 중국정부를 대신해 이 조약은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냉전시대의 도래함에 따라, 미국은 1953년 12월 25일 미국 민정부 제27호령으로 ‘琉球열도의 지리적 경계’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에 따르면, ‘1951년 9월 8일 서명한 조약에 근거, 琉球열도의 지리적 경계를 새롭게 지정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정부와 琉球정부의 관할지역을 북위 24도, 동경 122도 지역 내의 각 섬과 암초 및 해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71년 미-일간에 沖繩현 반환협정(<琉球제도 및 大東諸島の 일미협정>)에서 규정한 일본의 영토 역시 1953년 미국 민정부 제27호령과 완전히 일치한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釣魚島가 沖繩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釣魚島 및 인근 해역을 자위대의 방어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70년대 미국 등 세계 각지의 화인들이 釣魚島 보위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971년 12월 30일 일미 양국간의 釣魚島 반환협정을 중국의 주권에 침범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중국으로의 반환을 촉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1971년 10월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원래 일본으로부터 획득한 이 섬의 행정권을 일본에게 이양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주권침해도 없었음을 밝힌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게 행정권을 이양할 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타 요구자들의 권리가 감소되고 약해질 수 없

21) <<八中山群島, 釣魚島의 관할 결정>>, <<日本外交文書>>, 제23권.

22) <<尖各列島の 영유권에 관한 기본견해>>,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

는 문제임을 밝힌다. … 이 섬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과 요구도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sup>23)</sup> 1992년,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및 인접지역법〉에서 대만 및 釣魚島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를 중국연해지역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1996년 9월 11일 미국 정부 대변인 번스는 ‘미국은 釣魚島의 주권에 대한 어떤 국가의 주장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다.<sup>24)</sup>

## 결론

이상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일본이 尖閣列島라고 칭하는 釣魚島는 원래 중국의 영토였으며, 琉球열도의 일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양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냉정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냉정치 못한 편협한 민족주의나 선동적 애국주의 정서의 호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周恩來와 鄧小平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1972년 周恩來가 일본 공명당 위원장 竹入義勝과 회담할 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尖閣列島 문제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국교정상화와 비교할 때 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최근 竹入 선생은 당시 회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했다. ‘尖閣列島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도 竹入 선생은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석유문제에서, 역사학자들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일본의 井上清 선생은 매우 열심이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sup>25)</sup> 周恩來는 당시 도쿄대 교수 井上清을 이름을 거명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1978년 10월 鄧小平 부총리가 중일우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尖閣列島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鄧小平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번 방일에서 중-일간 우호조약에서도 양국 모두 이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중국인의 지혜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고, 양국관계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모두 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것이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리 세대에서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고려하는 점은 이 문제를 주권논쟁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석유와 같은 자원의 공동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싸우지 말고, 공동개발하고 공동으로 이득을 얻으면 되지 않는가? 이 문제로 자주 담판을 벌일 필요도 없다.’<sup>26)</sup> 그러면서 鄧小平은 세계적

23) 미국참의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 제92기 회의록, 1971년 10월 27일-29일, 제91쪽.

24) 홍콩 〈동방일보〉, 1996년 9월 12일.

으로 많은 분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중일간의 釣魚島 문제 역시 이렇게 해결되어야 할 국제문제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鄧小平이 제기한 ‘논쟁은 접고,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주장의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영토분쟁의 해결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권귀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논쟁을 접어놓을 수도 있다. 논쟁을 접는다는 것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다. 둘째, 공동 개발의 목적은 협작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최종적으로 주권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하자면, 釣魚島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며, 중국은 일본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釣魚島 문제가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和平崛起)에 큰 영향이 없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중일 양국은 과거에 달성한 합의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국내 우익세력이 釣魚島 문제를 빌미로 문제삼는 것을 막아야 하고, 중국도 중국인민들이 釣魚島에 대한 주권문제를 제기하며, ‘대국외교의 큰 형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다.

---

25)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정중명언연구실 자료실, <세계와 일본>, 중일관계 자료집 <http://www.ioc.u-tokyo.ac.jp/~worldjpn/>  
 26) 전계서, “일중관계 기본자료집 1949-1997년”, 霞山會 발행, 제527쪽.

## 국제법이 시험을 받는 尖閣의 귀속

尾崎重義 (일본 二松學舎大學 교수 · 일본인)



尖閣諸島는 일본이 1895년(명치28년)에 영토편입 이후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정부를 포함하여 아예 관심을 기우리지 않고, 또 주변 제국으로부터도 주목되지 않은채, 동지나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로 잊혀져 있었으나, 1968년(소화43년)이래 떠들썩하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동년 가을에, 일본, 중국, 한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조사단이, 동지나해의 해저 지질조사를 하고, 尖閣주변의 해저에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 있다고 발표하고부터의 일이었다.

어쨌든 이 보고가 계기가 돼, 尖閣諸島이 떠들썩하게 인근제국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되었으며, 71년4월에 대만정부가, 이어서 12월에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尖

閣諸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70년대는 이 섬들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나 78년 8월, 일중평화우호조약의 조인 당시 鄧小平 부주석이, “尖閣諸島는 지금의 상태로 2~30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세대는 우리들보다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고 말해, 이 섬들의 영유권문제의 일시 유보를 제창, 일본 측도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후의 사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최근이 특히 금년에 들어서부터, 尖閣諸島의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 중국 측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근년 중국이 동지나해의 자원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먼저 첫째로, 중국인 활동가가 尖閣諸島의 하나인 魚釣島에 상륙,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다. 2004년3월24일, 중국의 애국주의적인 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중국인활동가 7명이 尖閣諸島의 영해를 침범해 魚釣島에 상륙했다. 沖繩縣 경찰은, 7명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나, 기소는 하지 않고, 결국은 출입국관리, 難民認定法에 의거 강제퇴거처분을 내렸다. 중국은 이미 지난 1992년 ‘영해법’을 제정, 그 속에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尖閣諸島를 대만에 부속하는 도서로 그 영유를 명기했다. (제2조). 특히 작년7월1일에 중국은 ‘무인도관리규정’을 시행, 정부에 신청하거를 얻는 것으로 무인도가 민간에 개방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나, 만약, 중국정부에의 신청허가를 받아 尖閣諸島에 상륙하게 되었다면, 중국정부의 주권적 관여라고 봐, 사태는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또 중대한 움직임은, 소위 ‘春曉가스田’ 사건이다. 중국은 70년대부터 활발하게 동지나 해저 자원탐사를 진전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平湖가스田’의 발굴에 착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동 가스전은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의 일-중 중간선보다 훨씬 중국 측으로 5키로 가까운 곳에 있다. 일-중 쌍방 해저의 가스층이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 측의 가스전 채굴에 의해 일본 측의 천연가스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일본이 양국의 EEZ이 중복하는 해역에서는 경계선은 중간선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측은 해저자원에 관하여 ‘자원의 연장’ 론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중국대륙에서 뻗혀지고 있는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에 있는 沖繩海溝(torafu-배 밑바닥모양의 심해분지))까지 중국의 ‘대륙붕’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중간의 해저구역의 경계선은 尖閣諸島를 넘어 트로프의 대륙 쪽의 한계선이 되게 된다.

일본정부는 금년 6월9일에 경제산업 장관이, 6월21일에는 외무장관이, 중국 측

에 공식적으로 春曉가스田 개발이 일본 측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상세한 시굴의 자료를 제공을 요구했다. 중국의 외무장관은 직접적으로 이에 대답하지 않고, ‘의견의 차이를 고려, 공동개발 할 것’을 일본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EEZ의 경계획정에 대한 중간선방식의 제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경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동지나해의 해저자원개발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중 쌍방은 EEZ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치 못하고 있다. 거기에 일본의 주장하는 중간선과 중국이 주장하는 冲繩 토로프 선의 거의 중앙부분에 위치하는 尖閣諸島의 귀속이 미해결인 것이 중첩돼, 문제는 더욱 복잡화하고 있다.

이렇게 尖閣諸島의 영유권문제의 해결이 점점 급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아래, 尖閣諸島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 보고 싶다.

## 尖閣諸島의 국제법상의 지위

일본은, 尖閣諸島를 冲繩縣의 관할로 현지에 標示杭을 건설할 것을 1895년(명치 28년)1월14일의 각의결정으로, 동 제도는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 편입 되었으며, 그 이전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無主地’ 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尖閣諸島는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의 영토였던 것이며, 일-청 전쟁 중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주요한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① 尖閣諸島는 역사적으로 봐서 중국의 영토였던 것인가.

② 일본은 1895년의 영토편입조치와 그 후의 실제적 지배에 의해, 국제법상 유효한 동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취득한 것인가.

①에서는, 확실히, 尖閣諸島는 釣魚嶼(일본 명 魚釣島), 黃尾嶼(일본 명 久長島), 赤尾嶼(일본 명, 久尾赤島, 후에 大正島)의 명칭으로 명, 청시대의 冊封史錄과 그 밖의 중국문헌에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당시 중국에서 琉球로 향하는 航路의 목표로서 이들 섬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 명, 청시대의 외양 항해는 범선에 의한 것으로, 풍력에 의존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매년

정해진 시기에 일정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계절풍에 따라 항로가 발달하게 되었다. 琉球-중국 간의 항로도 그런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항로의 목표가 되는 작은 섬들이나 해상에 돌출한 海角등이 아주 중요시 됐다. 琉球와 중국 간 항로의 거의 중간에 위치, 아주 사람들의 눈에 잘 떨어 수 있는 형태를 한 尖閣諸島는 항해의 목표물로서 제각이었다. 그 때문에 빠른 조류 가운데 고립, 정박도 곤란한 尖閣諸島가 일찍부터 琉球인들이나 중국인들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중국으로부터는 1372년 이래, 琉球왕조의 신 국왕의 즉위 때, 사망한 전 국왕을 기리는, 축서를 내려 정식으로 신 국왕을 책봉하기 위해, 冊封使가 파견되게 되었다. 그 수는 1372년부터 1879년까지 약 500년간에 약 23회(명대가 15회, 청대가 8회)였다. 한편 동 시기에 琉球에서는 조공을 위해 매년(후에는 2년에 1번) 進貢船이 241회, 그 밖에도 接貢, 謝恩, 慶賀使 등 다양한 명목으로 公船이 240회나 파견되고 있으며, 琉球의 배가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琉-中 간의 항로는 琉球人이 숙지하게 되었다. (예컨대, 다음에 말하는 陳侃 등 일행은 왕복의 침로를 전적으로 琉球人들에 부탁하고 있으며, 항로의 물길안내도 琉球人들의 쪽배에 맡겼다)

현재 남아있는 관람가능 한 冊封使의 史錄은 1534년 琉球를 陳侃에 의한 〈使琉球錄〉이래, 청조 때인 1866년의 사록까지 13건이 있으나, 그 가운데 陳侃의 사록 이래 몇 개의 사록 가운데,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 어느 것이나 중국에서 琉球로 가는 뱃길의 표시로, 陳侃의 사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小琉球(지금의 鷄籠嶼), 平佳山(지금 彭佳嶼), 釣魚嶼, 黃毛嶼(黃尾嶼), 赤尾嶼를 지나, “(9월)11일 저녁, 古尾山(久尾島)가 보였다. 이것 즉 琉球에 속하는 섬들이다. 琉球人들은 선상에서 흥분하여 집에 도착한 것을 기뻐했다” 이 기록에서는 久尾島가 琉球領이다(따라서, 중국에서 볼 때 久尾島보다 앞의 섬들은 琉球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 섬이 중국 령이라는 것을 결코 쓰여 있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문헌은 비교적 낡은 것이라도, 영역이나 경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예컨대 張學禮 편찬의 〈使琉球記〉는, ‘是琉球北山與日本交界(琉球의 북쪽에 일본이 있다)’고 기록, 徐葆光 편찬의 〈中山傳信錄〉은 ‘八重山 此琉球極西南界也(八重山諸島는 琉球 서남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각각 기술하고 있다. 또 〈속수대만부지〉(1763년간), 그 밖의 중국의 지방지 등을 보더라도, 〈閩浙交界〉, 〈與廣東交界〉, 〈澎厦分界〉등의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중국이 만약 적미서와 구미도 중간을 중국과 琉球와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표시하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陳侃의 사록보다도 거의 50년 후에(1582년) 명조의 관리 嚴從簡이 편집한 外國志〈殊域周咨錄〉에 의하면 陳侃 등 일행은 久尾島까지 와서〈問知琉球境內〉(그리고, 물어서 거기가 琉球國의 영내인 것을 알았다)이며, 陳侃 등 중국의 책봉사가 赤尾嶼에서 자국 영역이 끝났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당시, 鷄籠嶼도 팽가서도 대만본도도 다같이 중국령이 아니다는 것은 陳侃 등 중국지식인들에게는 명백한 사실로, 그 보다 앞선 尖閣諸島가 중국령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논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久尾島를 가지고 ‘乃屬琉球者’라든지, 다음에 말하는 ‘琉球西南方海上鎮山’이라는 기술이, 행해의 난소중의 난소를 지나 무사히 琉球영역에 들어와, 승선의 琉球인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기술과 꼭 세트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책봉사 선박이 무사히 琉球영내에 도착한 것에 대한 기쁨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결코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琉球국의 국경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郭汝霖使錄(〈重刻使琉球錄〉) 1561년 渡琉)에는 ‘赤嶼者界琉球地方山也’라는 표현이 나타나, 이것도, 赤尾嶼와 琉球地方을 경계로 하는 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뿐으로, 결국 陳侃 이 얻은 지식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초가 파견한 책봉사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徐葆光이 편찬한 〈中山傳信錄〉(1719년도 渡琉. 徐葆光是 부사, 정사는 海寶)에서, 구미를 가지고 ‘琉球서남방계산진산’이라는 설명도 尖閣諸島의 귀속문제에 관한 한, 陳侃, 郭汝霖의 설명과 결국 같은 것이며, 다른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모두 당시 久尾島까지가 琉久領이며, 따라서 尖閣諸島가 琉球領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나, 그러나 그에 앞서 尖閣諸島가 중국령이라는 것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赤尾嶼를 지난 해역을 ‘溝’라고 부르며, 이것을 ‘중외의 계’라든가 ‘閩海와의 界’라고 하는 사록이 몇 가지 발견된다. 이 근처의 해역에서, 선박은 띠 모양을 하고 있는 黑潮의 격류를 횡단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해수의 색깔도 얇은 바다의 청색에서 깊은 바다의 칠흑색으로 변화한다. 그 때문에 ‘黑水구’라든가, 단순히 ‘구’라고 불리, 항해하는 데 어려운 곳으로 위협을 느껴, ‘過溝, 祭海’의 의식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 ‘溝’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赤尾嶼附近的 해역에 대해 ‘구 또는 “중외지계”라는 기술이 있는 것을 가지고, 尖閣諸島를 中國領으로 단정할 수 있는 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 등 중국 측의 섬 이름도, 적어도 陳侃이 동선의 琉球人

에게 물어서 안 琉球 측의 호칭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리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시 중국-琉球 간의 해상교통의 실정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중국 측의 문헌에 기록되고 있는 섬의 이름과, 琉球에서 전해져 온 그들 섬 호칭사이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조재한다. 즉 冊封使錄에 중국 명으로 등장하는 ‘釣魚嶼’, ‘黃尾嶼’에는 확실히 沖繩에서 그보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토착의 호칭(‘이-군’과 ‘쿠바시마’)이 있으며, 그 의미도 거의 같다. 그 경우 중국-琉球 간을 빈번하게 왕래하나, 한자를 알지 못하는 琉球人으로부터, 한자를 아는 중국인 측에 전해져, ‘釣魚嶼’, ‘黃尾嶼’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견해라고 볼 수 있다. 陳侃은 왕로의 배 안에서, 久尾島가 琉球에 속하는 것, 伊平屋島 또 琉球領인 것, 琉球를 경유하여 일본에 이르는 항로가 있다는 것 등을, 하나하나 琉球人의 승무원들에게 물어 지식을 얻고 있다. 이것으로도 용이하게 연상되는 것은, 도중의 ‘釣魚嶼’, ‘黃毛嶼’, ‘赤嶼’ 등에 대해서도 琉球인들 승무원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을 가하는 점이다. 어떻든 당시 중국-琉球의 교통의 문맥에서 볼 때, 문제의 섬이, 중국 측 문헌에 중국 명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그들 섬이 중국인들에 있어 자국 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또 하나, 섬 이름에 관련하여 책봉사록에서 중요한 시사가 얻어질 수 있다. 徐?光의 <中山傳言錄>에는 那霸港에 의해 중국의 福州로 향하는 책봉사의 귀로의 조항에, ‘古米山竝 姑巴甚麻山’을 거쳐 중국의 溫州의 南杞山에 이르는 항로가 나타나고 있다. 이 ‘姑巴甚麻山’은 분명히 尖閣諸島 중의 黃尾嶼의 琉球명 ‘구바지마(久場島)’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1719년이라는 이른 시기 중국 측의 공식 사료에서 尖閣諸島 가운데 한 섬에 대해서 ‘구지시마’라고 하는 琉球名이 명기되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록으로부터도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즉 최후의 책봉사 조신의 사록 <속琉球국지략>(1866년)은 그 전 1838년 때 針路와 1866년의 針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38년5월4일, 五虎門에서 바다로 나가, 5일 未刻 半架山을 남쪽으로 본다. 6일 未刻 釣魚山으로 진로를 정하고, 申刻 久場島로 진로를 취한다. 7일 여명, 久尾赤島(赤尾嶼의 당시 琉球 명칭)로 진로를 정한다. 8일 여명 고미도로 향 한다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1866년의 항로에 대해서는 6월9일 外洋에 나간다. 10일 申刻 半架山을 지나, 11일 酉刻 釣魚山을 지난다. 戌刻 久場島를 지나, 12일 未刻 久尾赤島를 지난다. 15일 辰刻 姑米山을 본다고 했다. 이 두 가지 針

路의 기술에서는 黃尾嶼, 赤尾嶼가, ‘久場島’, ‘久尾赤島’라고 琉球 쪽의 호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렇게, 중국정부(청조)가 파견하는 책봉사의 공식 기록에 尖閣諸島의 섬에 대해서 ‘久場島’, ‘久尾赤島’라고 하는 琉球의 명칭이 명기돼, 姑米山, 摩齒山, 那霸港이라는 명확히 琉球의 지명과 어떤 구별을 하지 않고 병기하는 것은 당시 중국이 이들 두 섬에 대해서 중국령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중국령에 편입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는 사실로 중요하다.

다음으로 명대의 海防史料인 <籌海圖編>(1563년) 첫 권의 <沿海山沙圖>에는 福建省의 羅源縣, 寧德縣의 연해의 도서로, 尖閣諸島가 중합 쪽에 그려져 있다. 이 사실은 尖閣諸島가 福建 연해의 중국령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동 <圖編>1 제4권에는 <福建沿海總圖>가 있으나, 거기에는 澎湖島가 기재되고 있는 이외는 대만, 대만북동의 基隆嶼, 彭佳嶼나 尖閣諸島는 어느 것도 기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관제의 地方志인 <羅源縣志>(명대1614년) 등을 보면, 尖閣諸島가 당시 福建省의 이들 현의 행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관제의 <重纂福建縣志>(청대 1838년)의 첫 권에 있는 <福建海防全圖>에도, 尖閣諸島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명대는 尖閣諸島는 물론, 대만의 북부(基隆)이나 대만북동의 彭佳嶼, 花柄嶼, 錦花嶼 등에 중국의 지배는 미치지 않고, 중국은 그들 섬에 대해서 영유의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籌海圖編>의 <沿海山沙圖>에, 이들 도서가 그려져 있는 사실의 해석으로서는, 이들 도서가 왜구가 내습할 때의 진로에 대해, 본토방위상 주의해야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리라.

최후로 尖閣諸島는 명대 및 청대의 중국의 행정범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가. 명, 청대의 복건성의 지방지를 봐서도, 또 청대의 대만부의 지방지에서도, 또 청대의 대만부의 지방지에서도, 尖閣諸島가 당시 福建省 또는 대만부에 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1684년에 청조정부에 있어 편수된 <福建通志>를 볼 때, 尖閣諸島가 당시 복건성의 행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 후의 <重纂福建省通志>에서도, 복건성의 지방지 <羅源縣志>, <寧德縣志>, <廈門志>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다. 청대에 들어, 1684년에 대만도가 중국의 판도에 들어, 대만부가 설치되었다. 대만부에 있어 최초의 <臺灣府志>(1686)이후 여러 가지 府志가 간행되었으나, 이들 부지에서는 어느 것이나 대만의 북단은 鷓隆嶼(지금 基隆嶼)이며, 尖閣諸島는 물론, 그것보다도 대만 쪽의 花瓶嶼, 錦花嶼, 彭佳嶼 등도 대만부의

행정범위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명대 및 청대의 중국에서 尖閣諸島는 중국영토로서 인정되지 않고, 이에 관련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되었다. 즉 중국은 그 당시 尖閣諸島에 대해서 영유의 의사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봐 尖閣諸島는 분명히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이들 제도는 분명히 琉球의 영토이지도 않았다. 이상에 의해, 尖閣諸島는 1895년1월에 일본정부가 소위 영토편입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법상의 無主地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결론이다.

② 의 일본의 영유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어떤가. 일본은 국제법상 ‘先占’ 이라는 하는 행위에 의해 尖閣諸島에 대한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점’ 이란 귀속미정의 지역에 국가가 지배권을 파급, 이것을 취득하는 것이다.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가지고, 無主地를 실제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1895년 당시, 尖閣諸島가 국제법상의 無主地이었던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확실히 중국의 사료(특히 명대의 冊封史料와 海防史料)에, 尖閣諸島에의 언급이 나타나나, 그것은 범선에 의한 항해의 표시로서, 또 왜구의 내습하는 진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중국에 의한 영유의사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또 1895년까지의 시기에, 중국을 포함하여 제 외국이 尖閣諸島에 대한 영토적 주장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런 것으로 일본은 1895년에, 아주 평온하게 영토편입조치를 하게 된다. 즉 일본은 1885년 이후 沖繩縣 당국을 통해,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삼 현지조사를 행한 뒤에, 1895년1월14일, 현지에 표식을 건설할 의사를 각의 결정하고, 尖閣諸島를 정식으로 일본영토로서, 沖繩縣에 편입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의 영유의사는 명확히 표명되었다. 尖閣諸島는 그 후 沖繩縣 八重山郡의 일부로서, 지적도 부여돼, 이 이후 일관하여 이 지위에 변경이 없었다. 尖閣諸島는 먼저 국유지에 지정돼, 국유지대장에도 기재되었다. 그 후 민간인에게 대여돼, 민간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 세금을 납입한 시기도 있다. 특히 이들 섬은 정부에 의해 민간인들에게 유료로 불하되었다. 특히 1895년 이후의 일본 정부에 의한 동 제도에 대한 국가권능의 행사는 영토편입조치가 정식을 행해져, 또 외국에 의한 경합적인 영토주장이 없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효적으로 점유라고 하는 현행국제법상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895년 시점에서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75년간에 걸쳐 그 행동을 통해, 일본에 의한 영유 사실을 인정해 왔다. 일례를 들면 중국은 1945년8월의

일본항복과 동시에, 대만의 점수에 착수, 동년 10월에는, <대만, 澎湖島>의 중국반환을 완료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일본통치하의 대만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계한 것으로, 尖閣諸島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차대전 이후도 동 제도의 지위에는 변경이 없었다. 미국의 점령아래 놓여진 沖繩의 범위에 동 제도는 분명히 포함되었으며, 미국의 점령 권은 몇 가지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동 제도에 유효하게 미치고 있었다. 특히 尖閣諸島는 무주지선 점이라는 일본의 행위에 의해, 또 중국을 포함한 제 외국에 의한 그 수용을 통해, 국제법상 유효하게 일본으로 귀속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이, 일본이 尖閣諸島를 국제법적으로 봐서, 평온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유해 온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영유의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공식문헌에서 尖閣諸島가 거론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리고 尖閣諸島의 문제는 동지나해의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EEZ의 경계책정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며, 처리를 강행하면 단순한 일본의 행동에 의해서도 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①尖閣諸島에 대해서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일-중간의 외교교섭에 의해 합의에 의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1978년 鄧小平의 발언도 포함, 일-중평화우호조약(동년)에 따라, 평등호혜의 기초위에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무력 및 위협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제1조)해야 한다. 일-중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공평한 사법적 해결에 맡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②尖閣諸島의 영유권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봐서, 일본 측에 단연히 권리가 있음은 명확하다. 중국에는, 여기는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창출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양보가 요청된다. ③실질적으로 쌍방에 의해 보다 중요한 이해를 포함, 대륙붕 및 EEZ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지 않을 가. 대륙붕에 관해서는 尖閣諸島는 그 고유의 대륙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尖閣諸島자체가 중국대륙에서 뻗혀 나오고 있는 대륙붕의 봉기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EEZ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尖閣諸島 가운데, 적어도 조어도와 久場島는 분

명히 국제법상의 섬이며, EEZ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섬은 오래 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정주자도 없기 때문에, 중국과 EEZ의 경계구획에서 尖閣諸島에 완전효과(200카이리)를 부여하여 동제도와 중국과의 사이에 중간선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상당히 의문이 있다. 반분효과(중국 측은 200해리, 尖閣諸島의 EEZ는 그 반)이라는 취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안내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 일본의 민족문제

■ 주요 목차 ·

- 일본의 민족상황
- 일본민족의 형성
- 일본민족론의 전개
- 재일외국인 정책
- 재외일본인 정책
- 일본의 민족적 과제
-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 북방4도 반환문제

丹波實 (전 주러시아 일본대사)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정이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北方四島'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북방4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후의 전후처리'는 현 일본에서의 가장 긴급한 현안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일본에서 이문제에 대해 가장 정통한 전 주 러시아 일본대사였던 丹波實에게 들어본 '북방4도 반환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편집자)

### 전후처리 최후의 과제

**Q** 북방영토문제는 제2차대전의 전후처리에 원인이 있다. 북방영토문제를 생각할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출발점이나, 러시아는 알타협정을 근거로 독단으로 '千島列島'를 지배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A** 일본은 1951년9월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臺灣과 千島列島, 南樺太등을 포기 당했다. 이것은 일본이 패전 후,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불한 희생이며,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千島列島 혹은 남樺太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포기당한 千島列島가 어디에 귀속되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그로미코대표를 파견하여 참가는 하고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千島列島에 대해서 '러시아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 이들 지역

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해야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어 불만을 표명,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千島列島를 포기는 했으나, 그 속에는 적어도 齒舞, 國後, 擇捉의 북방4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4도는 일본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주장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1855년에 일-러통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서는 千島列島는 우루프도 이북의 18島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1875년, 일-러 간 樺太 千島 교환조약을 체결했으나, 이 조약에서도 千島列島는 우루프 이북의 18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들 사실은, 齒舞, 色丹, 國後, 擇捉島는 千島列島(The Kuril Islands)와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방4도를 지배해 오고 있으나,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4도는 포기한 千島列島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 이들 4도를 반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방영토문제의 본질이다.

**Q** 1956년, 구산-흐루시초프 간에 일소공동선언이 성립, 일소의 국교가 회복한다. 북방영토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A**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별도로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일소교섭은 1955년부터 56년에 걸쳐 이뤄졌으나, 이 교섭을 통해서 일본은 소련이 점거하고 있는 齒舞, 色丹, 國後, 擇捉4島の 반환을 요구를 계속했으나, 齒舞群島, 色丹島를 제외한 영토문제에 일소 간에 의견이 일치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영토문제를 포함,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은 일본과 소련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재개된 후에 계속된다고 하는 합의를 만들어, 어쨌든 국교를 회복키 위한 교섭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하여 1956년 10월, 일소공동선언이 서명된 것이다. 당시의 객관적 상황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최대의 이유는 國後島, 擇捉島에 대한 의견이 일소 간에 대립했기 때문이다. 일소공동선언은 평화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일소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회복된 후, 평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교섭을 계속키로 하고, 계속하여 齒舞群島, 色丹島에 대해 논의, 소련은 일본의 요망에 따라, 또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齒舞群島 및 色丹島를 일본에 인도할 것에 동의한다. 단지 이들 섬은 일소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현실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항)

이러한 평화조약의 체결교섭은 외교관계회복 후에 계속될 것으로 돼있다. 평화

조약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일소공동선언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영토문제 즉 國後, 擇捉 양도문제 뿐이었다. 따라서 이 國後, 擇捉 양도의 우리나라에의 반환문제자체가, 평화조약 체결교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전체의 교섭 경위에서 보더라도, 또 일소공동선언의 내용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Q** 60년의 일미안보조약 개정 후, 소련은 대일태도를 경화시켜, ‘영토문제는 해결을 마쳤다’고 하는 태도를 취해, 73년의 일소수뇌회담에서 일소간의 ‘미해결 문제’가 존재한다고, 드디어 유연화 한다. 이 유연화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 1973년의 일소수뇌회담이라는 것은, 73년10월에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서 행해진 田中-브네즈네프 회담을 말한다. 확실히 이 회담에서 일소간의 ‘미해결 문제’라고 하는 것은, 齒舞群島, 色丹島, 國後島, 擇捉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양 수뇌간의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영토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반복하여 주장해온 소련의 커다란 변화였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격화되어 가던 중국과 소련간의 이른바 중소대립, 혹은 시베리아, 극동개발에서의 일본에의 협력기대 등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후자는 지금의 러시아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Q** 그 후 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영토문제는 해결됐다.’고 후퇴, 다시 겨울을 맞이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시대가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A** 1985년3월 취임이래, 고르바초프공산당서기장은 일련의 ‘신사고외교’를 전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해서도 86년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 그리고 88년9월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등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8년간 중단되고 있던 외상간의 정기협회가 86년1월에 재개, 일-소간의 정치대화는 차차 확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88년, 일-소간에, 외무차관 레벨의 평화조약작업 그룹이 상설됐다. 또 89년에는 宇野외상이 방소, 제9회 일-소외상간의 정기협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 측에서, 영토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중요과제로서, 일-소 관계 전체를 균형을 취한 형태로 확대시킨다고 하는 ‘확대균형’의 생각

을 제시, 소련 측의 기본적인 양해를 얻었다.

그러나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것으로, 세바르드나 제 외상은 ‘남쪽 부분을 포함한 쿠릴제도의 소련에의 복속은, 국제법상, 역사상, 지리상, 확실한 것이다’ 고 하는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91년4월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내일, 海部총리와와의 사이에 상당히 본격적인 북방영토교섭이 있었으나, 돌파구가 열렸다고는 볼 수 없다.

**Q** 93년10월의 동경선언에서, 옐친 대통령이 56년 일-소공동선언의 이의를 재평가했다. 문제의 재설정(이)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에서 이 동경선언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일-러 관계의 신시대(의)의 계기로서 생각해도 좋을가.

**A** 93년10월에 옐친 대통령의 방일이 실현됐다. 이 방일의 결과, 細川총리와 옐친 대통령과의 사이에, 유명한 동경선언이 서명되었다. 이 동경선언의 영토조항인 제2항은, 일-러 간의 영토문제라는 것은 齒舞, 色丹, 國後, 擇捉의 4섬의 문제라고 명기, 이 4섬의 귀속에 관한 영토문제의 해결의 기반으로, 첫째로 역사적, 법적사실, 둘째로 양국 사이에서 합의로 작성된 제 문서, 셋째로 법과 정의의 원칙이 제시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고르바초프시대를 포함, 전후사에서, 일-소, 일-러 간의 영토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원칙이 이처럼 분명하게 문서화된 적이 없었으며, 이것은 소련시대와 신생 러시아의 차이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거기에는 냉전이 종언, 소련에서 러시아로 변화,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러 관계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는 옐친 대통령의 예리한 역사 감각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동경선언의 제2항이, 그 후 일-러 간의 영토교섭의 커다란 지침이 된 것은 예컨대 97년11월의, 그 소위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가 ‘동경선언에 근거,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전력을 다한다.’ 고 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하다. 동경선언은 지금도, 일-러 간의 영토문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은, 푸틴대통령과 森喜朗총리, 그리고 小泉총리와의 사이에도 확인되어온 것이다.

**Q** 1997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橋本총리와 옐친 대통령이 “‘東京선언’에 근거, 2000년까지 평화조약체결에 전력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98년, 伊東市川奈에

서 행해진 橋本-옌친 간의 일-러 수뇌회담에서는, 소위 川奈提案이 일본 측에서 제안되었다. 현대사에 남는 최대의 일-러 교섭의 장이 되었으나, 이 제안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거부되었다. 일본이 최대의 양보를 하여, 유일의 해결안이라는 최대의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거부했다. 거부의 이유는?

**A** 1998년4월의 소위 川奈提案은 千島列島の 최남단 섬인 우룻프 섬과, 그리고 擇捉島와의 사이의 국경선을 확정하나, 당분간은 현상을 변경치 않는다고 보도되어 온 제안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합의나 川奈提案은 근년의 일-러 교섭의 최대의 전기였다.

2000년9월, 동경에서 푸틴대통령은 森총리와 회담했다. 이때, 푸틴대통령은 ‘川奈提案은 용기 있는,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고 적극적으로 이를 평가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나 川奈提案이 ‘산’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옌친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그 당시 러시아가 내포하고 있던 금융위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 조금 보충하면, 98년8월의 러시아는 금융위기에 빠져, 옌친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옌친 대통령 주변에 늘 붙어 있었던 세프첸코 의전장이나 야스톨젠프스키 보도관에 의하면, 옌친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뒀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옌친 시대의 종기에는 그가 자기의 생각을 현실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힘은 이미 당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러 관계에 있어 불행한 일이었다.

## 푸틴의 과제

**Q** 푸틴정권은 2004년3월 이후 5년째에 접어드나, 푸틴 러시아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

**A** 옌친 대통령은 러시아에 나름대로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가져다 준 인물로서 러시아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한편 옌친 시대 8년간 국내는 분열되고, 불안정화하고, GDP도 반감하는 지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 푸틴시대의 제1기, 4년간을 보면, GDP는 30%이상이나 성장, 국내정치상황도, 크레믈린에서는 두마를 억압, 지방을 통제하여 중앙집권을 확립, 올리가르흐라고 불리는 신흥재벌

에게도 연결을 강화하고,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에도 영향력을 미쳐, 체첸 문제는 아직 결착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는 남아 있으나, 전체로서 러시아의 안정을 가져왔다. 지금 국내에 푸틴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가는 없는 일인천하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Q** 푸틴의 강력한 대통령인가.

**A** 이 4년간, 푸틴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70%대였다. 당초 최근 약간 하락했다고 하는 숫자도 있기는 하나, 푸틴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유럽제국으로부터는 최근의 푸틴대통령의 정치양태는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려오나, 러시아인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희구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러시아의 헌법상, 대통령은 2기 8년 밖에 재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의 푸틴대통령은 이미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것이다.

**Q** 푸틴대통령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혹은 일-러 관계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가.

**A** 러시아에서 볼 때 일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 한대로다. 여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 측은 입을 열면, ‘러시아의 여론, 러시아의 여론’라고 떠들어 댄다. 여론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이나, 여론만을 추종하는 정치는 지나치게 평범한 정치로, 진정한 정치라는 것은 설득에 의해 여론을 이끌어 가는 정치를 말한다. 최근 러시아외교의 예를 보더라도, 2001년 9.11동시다발테러사건 후 푸틴대통령의 눈에 띄는 대미접근외교는 러시아여론의 상당한 저항을 봉쇄, 푸틴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여론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小泉총리로부터 푸틴 대통령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외무심의관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소위 차관 급 레벨의 대리 교섭을 한 경험과, 99년부터 3년간 주 러시아대사로서 일-러 교섭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말하면, 북방영토교섭은 사무레벨의 교섭은 물론, 외무장관 레벨에서도, 아무리 여러 번 회담을 해도 전진할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푸틴대통령

령과 직접 담판을 짓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틴대통령을 상대로 가능한 것은 소천총리, 또는 일본의 그 다음의 총리 대신이다. 내가 북방영토교섭은 소천총리밖에 가능치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다. 일본의 총리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문제만은 총리가 아랫사람들에게 문제를 이양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도 푸틴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인 지금 부터의 4년간이 최대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다.

**Q** 일본은 앞으로 영토교섭에 어떤 입장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까?

**A** 앞으로 북방영토교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는 러시아자체가 일-러 간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2000년7월에 발표되었다. 푸틴대통령도 승인하고 있는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일-러 간에 국경 획정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91년의 옐친 대통령의 ‘러시아국에의 편지’ 가운데서다.

2002년3월, 이바노프외무장관(당시)도, 두마에서의 발언에서, ‘일-러 간의 국경은 아직 법적으로 획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일-러 간의 교섭은 현재는 ‘러시아영토’가 되어 있는 특정의 섬들을, 일본이 ‘되찾는다.’, ‘반환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국경선을 긋고, 그 국경선이 동경선언의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법적사실, 양 국간에 합의하에 작성된 제 문서, 법과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우룻푸 섬과 擇捉島와의 사이에 국경획정의 선이 그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러시아로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 있는 것을, ‘인도 한다’든가, 혹은 ‘양도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헌법상의 문제도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은 장래 북방영토문제가 위와 같은 새로이 선을 긋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 설명될 수 있는 유일의 설득적인 설명일 것이다.

이것에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가끔 ‘일본에 북방영토를 반환하면, 제3국과의 문제로 파급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푸틴대통령도 그러한 제3국파급론을 쉰 총리에 말한 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 영토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해결되고 있다. 즉 중-러 간의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98년11월에, 江澤民 주석이 방러 때, 국경획정에 관한 공

동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또 과거 핀란드 영이었던 카렐리야 지방에 대해서는, 75년의 헬싱키선언으로 국경불가침이 확립되고 있다. 또 과거 독일 영이었던 칼리닌그라드에 관해서는, 독일정부는 타국에 어떤 영토의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 발트3국과의 국경선문제에 대해서는 조약이 작성돼,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99년에 비준된 조약으로 문제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관계로, 충분한 이야기가 완료되고 있다. 따라서 북방영토문제의 제3국 파급론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Q** 이사갈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이 인접국과, 쌍방에 오해 없이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로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A**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4대국이, 어떤 관계를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맥 속에서, 이 4개국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다. 이것은 일-러 쌍방에 있어 결코 국익이 되지 않는다.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나, 러시아에 있어서나 다같이 국익이 될 것이다. 장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경우, 중국과의 균형을 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일-러 쌍방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과 러시아의 거리를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외교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평화조약의 미체결이라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러 간에는 평화조약을 제외하고, 대립할 문제는 전혀 없다.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일본식 붐, 스시 붐이 일어나 일식집 앞에는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다. 혹은 일본 문학이 주목되어, 일본 작가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프랑스, 독일, 미국에 이어, 러시아인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일찍 司馬遼太郎가 “소련에는 시베리아가 있다. 그 옆에 일본의 섬들이 널려 있다. 일본은 이사 가는 것이 불가능한 한, 이 이웃사람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이 나라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사이 좋게 지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자료〉 ①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일본의 공동선언문\*

1956년 10월 19일 체결된 본 공동선언문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외교관계의 정상화 및 상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쿠릴열도의 일본에의 반환의 기초를 본 공동선언문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섬들의 반환은 평화조약의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2004년 10월 중순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종결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5년에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쿠릴 섬들의 반환도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1956년 10월 13일에서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일본의 대표들 간에 회담이 성립되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측을 대표하여 소연방 국무회의 의장 불가닌, 소연방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임원 흐루시초프, 소연방 국무회의 제1부위원장 미코얀, 소연방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 소연방 외무부 차관 페도렌코가 회담에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수상 하토야마 이치로, 농림부장관 코노 이치로, 국회의원 마쭈모토 슈니치가 참석하였다. 상호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을 통하여 소연방과 일본 간의 상호관계의 문제들과 관련된 의견이 폭넓고 솔직하게 교환되었다. 소연방과 일본은 양국간 외교관계의 회복이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국 정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합의하였다.

소연방과 일본 대표들 간의 회담의 결과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1. 당 선언문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소연방과 일본간의 전쟁상태는 종식되며, 양국간에는 평화와 우호선린의 관계가 회복된다.

2. 소연방과 일본간에는 영사업무를 포함한 외교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 정부는 즉시 대사급의 외교대표를 교환한다는 것인데, 소연방과 일본 각각의 영토에서의 영사관 설치에 대한 문제는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3. 소연방과 일본은 양자관계에 있어 유연 현장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현장 제2조에 명시된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a) 국제적 분쟁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

b)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을 사용한 위협을 자제할 것, 즉, 여하한 정부의 영토적 일체성이나

\* 원문은 러시아어. 원제 -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Японии.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할 것.

소련방과 일본은 유엔헌장 51조에 의거하여 각국은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자기방어의 불가분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소련방과 일본은 경제, 정치, 이념적 성격의 여하한 동기에 의해서도 상대국의 내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하지 않을 상호 의무를 지닌다.

4. 소련방은 일본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

5. 당 공동선언문이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소련방 내 수감되어 있는 모든 일본 시민들은 석방될 것이며, 일본으로 이송될 것이다.

소련방은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일본인들의 행방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6. 소련방은 일본에 대한 모든 변상 요구를 철회한다.

소련과 일본은 공히 1945년 8월 9일 이후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일방의 정부와 조직 그리고 시민이 타방의 정부, 조직, 시민들에 대한 모든 요구를 철회한다.

7. 소련방과 일본은 무역과 상선의 항해 그리고 여타의 상업적인 상호관계의 영역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견고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건설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회담을 가질 것에 합의한다.

8. 1956년 5월 14일 체결된 소련방과 일본 사이의 태평양 서북부의 공해상에서의 어업협정과 해상에서의 조난자 구조를 위한 협력에 관한 소련방과 일본 간의 협정은 당 공동선언문의 효력발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어업자원과 여타의 수산자원들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있어서의 소련방과 일본의 관심을 고려할 때, 소련방과 일본은 어업자원의 보존과 발전 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의 어업의 통제와 제한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다.

9. 소련방과 일본은 양자간 외교관계의 정상화 이후에 평화조약의 체결에 대한 회담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소련방은 일본의 희망에 부합하여 또한 일본정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보마이섬과 시코탄섬을 일본에 양도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도는 소련방과 일본간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다.

10. 당 공동선언문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선언문의 효력은 비준장의 교환일 발생한다. 비준장의 교환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당 공동선언문에 아래의 전권대표가 서명하였다.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두 부의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양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소련방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전권대표	일본 정부의 전권대표
불가닌 세필로프	하도야마 이치로 코노 이치로 마쥬모토 슈니치

모스크바, 1956년 10월 19일

1956년 12월 8일 소련방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의해, 1956년 12월 8일 일본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음.

1956년 12월 12일 도쿄에서 비준장이 교환되었음.

〈관련자료〉 ②

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

슈밀리나 T. (두마 편집장)

러시아 두마의 공산당 원내그룹 공식지 “두마” 편집장인 슈밀리나에 의해 작성된 이 기사는 두마의원 콜로메이체프의 주장과 사할린 오블라스찌의 의회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러시아연방의 출범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쿠릴 열도의 반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비공개성, 비밀주의가 비판되고 있으며, 막대한 부존자원과 어업자원의 상실, 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 함대 활동의 축소 등의 군사적인 문제, 모스크바 방문 직후 이루어진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거론하면서 쿠릴 열도의 반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집자)

2002년 3월 13일 국가두마의 대행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쿠릴열도의 섬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인 이바노프가 소환된 바 있었다. 그의 소환은 공산당 의원인 콜로메이체프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중에 2002년 17, 18호의 우리 잡지(“두마”를 일컬음 - 역주)에 실린 기사 “남쿠릴열도와 러시아의 영토적 일체성”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헌법상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적 일체성의 보장자이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권력기구들의 실제 행태를 살펴보면, 1990년 열린에 의해 시작되었던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른바 “단계적” 프로그램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붙여진 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정황을 통해 볼 때 이 프로그램의 네 번째 단계, 즉 섬들의 “공동통제”로의 전환과 평화조약체결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현대적 대안인 이른바 “2001 의정서”가 존재한다는 정보가 출현하였다.

2002년 3월 13일 대행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외무장관 이바노프를 불렀던 국가두마의 주의깊은 의원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 정보였다. 그리고 3월 18일 “남쿠릴: 정치, 경제, 안보의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정보는 극동의 국경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입증하였다.

1) 원제명: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и. (출처: “두마”, 2003년 2월 5일자)

이바노프 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가득차 있었다: “평화조약에 대한 회담에서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런 저런 섬들의 이양과 관련된 협상은 전혀 없다”, “그런 계획(엘친의 계획을 염두에 둠-원주)은 회담의 테이블에 전혀 없었으며, 없다” 등등. 장관은 “국경선 재구획의 문제”가 존재함을 시인하였으나, 비밀회담이 병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함으로써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만일 일본과 모종의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 협정은 국가두마에 상정될 것이고, 의원들은 이 협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현재의 러시아 의회가 정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듯이) 전체적으로 이바노프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회피하였으며, “국경 재구획”의 의미를 밝히지 않았고, 또한 러-일간 회담의 주제에 대해서도 함구하였다.

의회청문회에서 외무부 차관인 로슈코프 역시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합당할 지도 모른다”고 밝히면서, 남쿠릴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였다. 두마의원 자도르노프가 남쿠릴의 섬들을 이양한 후에, 러시아에 일본의 황금의 비가 쏟아질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러시아 지도부가 실제로 지니고 있는 의도를 알면서,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의 발전과 1956년 선언의 실행에 대해 찬성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문회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사할린 측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대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통령과 외무부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폐쇄성으로 인해 우리는 남쿠릴을 일본에 이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러시아 행정부와 고위관료들, 그리고 여타의 관계자들이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지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섬들이 러시아에 높은 수준의 경제, 안보상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정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대다수 러시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섬들의 양도는 8천500 평방 킬로미터의 영토, 21만 평방 킬로미터의 대륙붕, 연간 30만 톤의 어획고, 석유, 가스, 금, 은 등 2.5~3조 달러의 자연자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동부 방어전선의 붕괴와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 함대의 활동이 어렵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제법상 폐쇄되어 있지만, 일본에 섬들이 이양될 경우 폐쇄가 해제될 오토츠크 해에 대한 통제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초래될 가장 중요한 위험은 법률적인 절차가 보다 효과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대체되고, 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의전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이 조치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쇠약해진 사자는 심지어 당나귀한테서 발길질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다. 남쿠릴에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훼손되자마자,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요구가 점증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카네기 재단을 통해 토오쿄오에 충고를 전달한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4개 섬뿐만 아니라, 쿠릴의 모든 섬과 사할린을 획득하도록 일본을 자극하여야 한다”.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국경뿐 아니라, “새로운” 국경들(CIS 국가들과의 국경들)을 포함한 만4천5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의 육지상의 국경선을 변경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례이다.

두마의원 콜로메이체프가 그저 단순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과 일본 수상 고이즈미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수상적계도 언론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할린 오블라스찌 의회의 발표가 나오면서 분명해졌다. 이하는 발표문의 전문이다.

#### ◆ 2003년 1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러-일간 실행계획”과 관련된 사할린 오블라스찌 의회의 발표문

2003년 1월 10일 “러-일간 실행계획”의 채택에 대해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었다.

이 발표문에서 양측은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 하보만 섬의 귀속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조약의 체결의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1956년 소연방과 일본의 공동선언문을 포함한 현 시점까지의 합의에 기반하여 양국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회담을 가질 것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였다.

공동실행계획의 확인된 일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평화조약체결 문제에 대한 러일간 공동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이 복잡한 과제의 준비를 위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양국의 국민들에게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설명할 일단의 대책이 현실화되었다”.

공동실행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956년 공동선언과 1993~2001년의 여타의 일련의 합의들이 섬들의 귀속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이런 방식으로 양국간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평화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회담의 기반이 되며, 이에서 출발하여, 양국은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회담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평화조약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홍보에 진력할 것이며, 1998년 해양생물자원산업분야에서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 및 일본정부간 협정에 명시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제2부).”

러시아 대통령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그는 일본의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나 요구를 금지하였던 국제법 질서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다. 이 질서는 알타회담과 포츠담 선언, 1945년의 일본의 무조건 항복,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해 성립된 바 있다.

- 그는 대외관계에 있어 고르바초프와 었친의 영토적 양보노선을 이어받고 있다.

- 그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목소리들을 무시하고 있다: 2000년 12월 7일, 2001년 4월 19일, 2001년 6월 29일의 사할린 오블라스찌 의회의 성명, 그리고 2001년 5월 18일의 “극동 및 바이칼 동부” 의회연합회의 성명, 2001년 9월 12-13일 사할린 오블라스찌 두마에 의해 진행된 “1956년 소-일 공동선언과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문제”를 주제로 한 의회청문회의 제안, 2002년 5월 13일의 러시아연방 의회의 연방소비에트(상원·각주) 의장인 미로노프의 견해 및 연방소비에트의 국제분과위원회의 결정 등.

이상의 문서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안보와 영토적 일체성의 강화라는 원칙적 노선에 입각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영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남쿠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재고찰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 러시아 외무부

가 “국경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양국간 쌍무적 관계발전의 필요성과 현실을 반영한 총체적인 (포괄적인)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논의를 (러시아와 일본간의 평화는 이미 1956년에 회복되었고, 이런 점에서 추가적인 평화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할 것.”

위에 언급한 문서에는 1998년 체결된 해양생물자원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연방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협정의 효력을 연장하지 말 것이 제안되었다. 이 협정은 영해 일부와 러시아연방의 경제구역 일부를 러시아의 관할권으로부터 빼내감으로써 러시아 어부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할 점은, 이른바 “평화조약체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한편으로는 지도상에서의 일본의 팽창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한 정보의 왜곡이라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2003년 남사할린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던 일본 외무성의 출판물 꾸러미가 세관원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이 출판물에도 쿠릴열도의 절반이 일본영토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2002년 5월 24일 유사한 지도들이 정부간행의 “로시스카야 가제타 (제91호)”에 게재된 적이 있다. 2003년 1월 10일에는 러시아 대중 방송사가 공동실행계획의 서명이 있던 날, 이른바 평화조약 체결의 불가피성을 선동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모스크바에서의 정상회담으로부터 돌아오자마자 일본수상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신사에는 도쿄 국제전범재판소의 선고로 사형 집행된 14명의 전범을 포함하여 “항제를 위해 죽어간” 군인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명패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 일은 남북한으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는데, 이는 전쟁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일본군국주의의 주요한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일본 수상은 사형선고를 받았던 14명의 선조들과 영토확장정책에 대한 정신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본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훈장을 받았던 60만의 소비에트 병사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이상을 고려할 때, 사할린 오블라스찌의 의원들은 영토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른바 평화조약의 준비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의 왜곡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러시아국민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피가 흘러내리는 러시아의 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에 가름하여 러시아연방헌법 3조 4항을 인용하고자 한다. “러시아연방은 자신의 영토의 일체성과 불가침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도록 허락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 아무르강 국경 획정을 둘러싼 갈등

윤 영 미 (고려대 연구교수 · 한국인)



### 새로운 역사의 시작

1989년 5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덩소평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40여 년간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국경분쟁 해결에 획기적인 외교성과를 구축하였다. 수 차례의 상호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협상 과정 속에서 양국의 지역적 연대감이 조성되었고 국경선 재획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을 명확히 명시함에 목표를 두었다.<sup>1)</sup> 양국 국경선 인근 지역에서의 상호 경제 교류협력 강화는 증진되었고 중-소 국경지역의 신뢰구축 합의에 기초하여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국경분쟁 종

1) Roy Medvedev, *China and the Superpower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pp.48-9; Robert H. Donaldson and Joseph L. Noguee, *The Foreign Policy of Russia: Changing Systems, Enduring Interest Armonk*, New York: M.E.Sharpe, 1998, p.239.

식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상호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시베리아 및 러시아극동 지방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국경 무역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연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sup>2)</sup> 1990년 초 양국간 무비자 방문은 경제교류 및 상호방문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수십 년 간 폐쇄되었던 국경선은 1992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서명한 무역과 경제 협력 협정 체결로 더욱 공식화 되었다. 양국간 최혜국 보장과 통관 규정 완화도 포함되었다.<sup>3)</sup> 한편으로는 1990년 초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중국인 상인과 불법노동자들의 이주 급증은 정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sup>4)</sup> 1991년 5월 중-러 동부 국경 지역에 관한 협정에 이어 1994년 9월에는 서부 국경 지역에 관한 협정이 서명되었다.<sup>5)</sup> 따라서 양국은 1991년과 1994년 사이 전체 국경선의 98%에 이르는 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을 통해 과거 중-소 및 중-러 간에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에 기초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2004년 10월 말 계속해서 양국간의 분쟁의 소지로 남았던 하바로보스크 지역의 국경까지 포함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었다. 따라서 두 나라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오랜 분쟁의 대상이었던 국경분쟁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고르바초프에서 옐친과 푸틴에 이어지는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중국 관계는 양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상호방문을 통해서 양국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신뢰가 형성되었고, 양국간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중-러 국경선 재획정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 내의 상이한 여론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국경선 재획정이 21세기 양국 관계 진전에 미치는 시사점과 전망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주변의 중-소 국경 논쟁의 역사적 배경과 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냉전시대와 탈

2) Yurii Tsyganov, The General Framework of Sino-Russian Relations, *Russian and Euro-Asian Bulletin*, Vol. 7, No. 6, 1998, 6, pp. 1-8.

3) SUPAR Report, No. 13, 1992, 7, p. 39; *Izvestiya*, 1992, 3. 9, p. 4; Trade, Economic Agreement Signed, Tass, 1992, 5.5.

4) Vladimir S. Miasnikov, Present Issues between Russia and China: Realities and Prospects, *Sino-Soviet Affairs*, Vol. 18, No. 2, 1994 여름호, p. 34.

5) Disagreement Over Russo-Chinese Border Territories Noted, *Kommersant-Daily*, 1995.1.17, p. 4; 서부국경선 협정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Li Jingjie의 The Progress of Chinese-Russian relations: From Friendship to Strategic Partnership 참고; *Far Eastern Affairs*, No. 3, 1997, p. 35; Vladimir Miasnikov, Russia and China: Prospects for Partner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21st Century, *Far Eastern Affairs*, No. 6, 1998, p. 19.

냉전 시대 전환기의 중-러 국경분쟁을 조명한다. 셋째, 1991년 중-러 국경선 협정에 대한 러시아 연방 내의 여론과 극동지역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국경선 확정이 미치는 시사점과 전망을 고찰한다.

## 중-소 국경선 획정 논쟁의 역사적 배경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설립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우호적인 관계는 1960년까지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중-소 국경선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두고자 한다. 제정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전략은 1858년 5월 아이훈 조약(Aigun)을 통해서 아무르강 지역과 1860년 11월 베이징(Beijing) 조약을 통해서 우수리강 지역의 획득을 가능케 하였다. 아이훈 조약은 중국과 제정러시아의 국경선을 아이훈강에서 아무르강을 지나 동해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185,000 평방 마일을 러시아에 양도한 관계로, 이는 최초의 중-러 간 불평등 조약이었다.<sup>6)</sup> 니콜라이 이간츠예브(Nikolay Igantsev) 장군이 서명한 베이징 조약에 따르면 중국은 우수리강과 동해 사이 40,000 평방 마일의 추가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해야 했다.<sup>7)</sup> 중-러-북한의 국경지역인 현 러시아 연방의 핫산 지역(Khasanskiy rayon)은 러시아에 편입되었고 새로운 국경선이 설정되었다. 양국간 국경선 설정은 두 조약에 근거하며 1989년 국경선 재획정 논의까지 변동이 없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소련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지역의 모든 섬들을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일부 영토의 병합에 따른 국경선 설정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sup>8)</sup>

1963년 중국은 극동지역의 국경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sup>9)</sup> 중-소 국경선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과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바람. 중-소 국경분쟁은 1969년 3월 우수리강 지역 섬 영유권을 놓고 대규모 무력충돌로

6) Peter S. H. Tang, *Russian Expansion into the Maritime Province: The Contemporary Soviet and Chinese Communist View*, Washington, DC: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2, pp. 29-32; R.K.I. *Sino-Russian Relations: A Short History* Sydney: George Allen & Unwin, 1984, p. 74.

7) P. P. Kara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Journal of Geography*, Vol. 63, No. 5, 1964, pp. 216-22; Tsien-hua Tsui,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in the 1970s*, Ontario: Mosaic Press, 1983, p. 25.

8) Russo-Chinese Border Conflict Detailed, *Sevodnya*, 1995, 2. 17, p. 3, FBIS-Sov-95-041, 1995.3.2, p.1에서 재인용.

대립하였다. <그림-1 참조>. 가장 극심했던 분쟁지역은 우수리강의 다만스키(Damanski) 섬이다:

1991년과 1994년 사이 전체 국경선의 98%에 이르는 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을 통해 대부분의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련과 중국의 국경선 보초들 간의 유혈 충돌로 상당한 수의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다. 이 전투는 우수리강에서 1969년 3월 2일, 그리고 3월 15일에 발생하였으며 1.5마일의 0.5 마일 크기의 작은 무인도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다만스키(Damanski) 섬으로, 중국인들에게는 전바오(珍寶)섬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바로보스크(Khabarovsk)와는 남쪽으로 110 마일,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는 북쪽으로 250 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다.<sup>10)</sup>

이러한 유혈충돌로 양국 국민들간의 불신 조성과 국가간 교류의 단절을 초래하였다.<sup>11)</sup>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촉, 이주, 경제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sup>12)</sup> 탈냉전 시기 전까지 동 지역은 외부와 고립된 채 중-소 근경부근에는 병력 증강이 뒤따랐다.<sup>13)</sup>

## 냉전에서 탈냉전기의 국경선 재획정 과정과 성과

중-러 국경분쟁 관련 협상은 동부와 서부 국경 지역으로 분리되어 수년 간의 협상 끝에 달성된 외교적인 성과이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 1987년 8월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기하였다. 중국과의 국경논쟁 지역에서의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접근으로 1987년 말에는 중-소는 주요항해수로 (Thalweg)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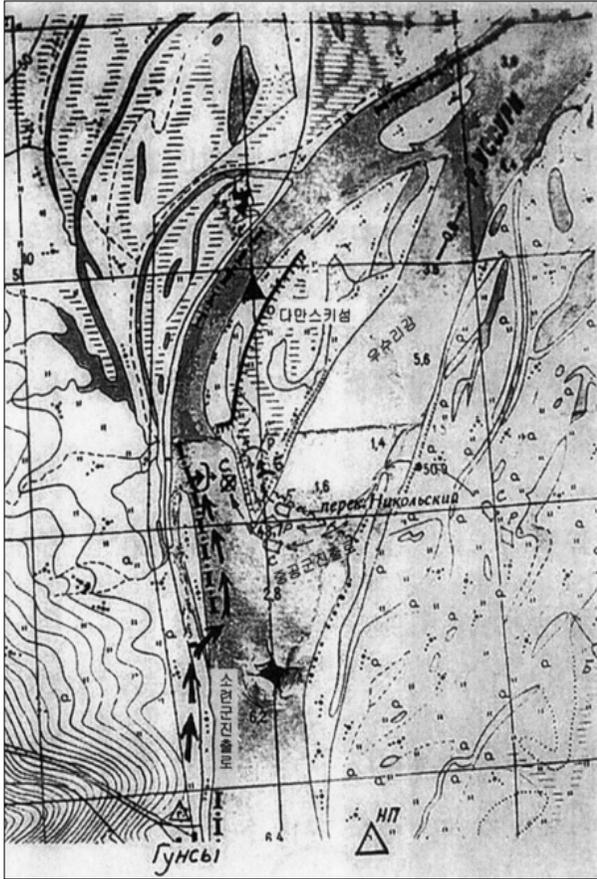
9) 1960년 이래로 중국 군인과 민간인은 소련 국경선을 정기적으로 침범하였다. 1963년에는 약 3,000건 이상의 중국인 불법 침입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 해 동안 10만 명이 연루되는 4,000건 이상의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George Ginsburgs, *The End of the Sino-Russian Territorial Disputes*을 참고 바람.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No. 7. Vol. 1, 1993, pp. 261-320.

10) Alan J. Day, *China and the Soviet Union 1949-84*, London: Longman, 1985, p. 92.

11) Moscow and Beijing Try to Clarify Who Owns Islands in Amur and Ussuri, *Izvesti*, April 1994, 4. 26. *CDPSP*, Vol. XLVI, No. 17, 1994, p. 20.

12) James Clay Moltz, *Russo-Chinese Normalis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ping with the Pressures of Change*, Tsuneo Akaha .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n Far East: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 London: Routledge, 1997, p. 187.

13) Gerald Segal, *The Soviet Union and the Pacific*,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0, pp. 88-9.



▲ 그림1 ) 우수리강 다만스키섬의 중러 국경분쟁 지도.

월 국제현안과 경제협력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sup>14)</sup> 연해주(Primorskii)의 약 1,500 헥타르와 두만강의 일부분이 중국에 양도되어야 하며 이로써 중국이 동해로 접근하

다.<sup>14)</sup> 1988년 10월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서부 국경 지역을 포함한 국경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조사단이 구성되었다.<sup>15)</sup>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방문 이후 양국간 국경선 협정이 서명되었다.<sup>16)</sup> 동협정에는 몽골,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아무르 주, 하바로보스크, 연해주 지역까지 이르는 국경선이 포함되었다. 국경선의 총길이 4,300km이고 강을 따라 3,700km 가 포함된다.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중국의 국경선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이었다.<sup>17)</sup>

양국은 1991년 5월 중순 동부 극동지역 국경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sup>18)</sup> 합의문 10항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 하원의 비준은 동년 11

14) 1987년 중-소 국경선 문제에 관한 두번째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서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은 국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합의했다. 국제법에 의하면 국경선은 항해 가능한 강, 즉,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의 해협을 지나야 한다. 다시 말해 새 국경선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중심을 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조사단을 결성하여 동부 지역 국경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3, 1987, pp. 20-21; no. 4, 1987, pp. 25-26; *Border Agreement Ratified, Tass*, 1992, 2. 13.  
 15) *Vestnik*, no. 16, 1988, p. 30; No. 22, 1988, p. 22.  
 16) 양국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상호 자문과 이해를 통해 동부와 서부 국경선 문제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Vestnik*, no. 9, 1989, p. 30.  
 17) *Tikhookeanskaya Zvezda*, 1993, 3. p. 1, *RA Report*, No. 15, 1993, 7. p. 57.  
 18) *Vestnik Ministerstva inostrannykh del SSSR*, no. 7, 1991, pp. 38-39.

는 것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sup>20)</sup> 중국은 Khankai 지역에서 300 헥타르의 들판을, 우수리 지역에서 960 헥타르의 삼나무숲, 하산지역의 두만강을 따라 330 헥타르의 땅을 양도 받게 되었다.<sup>21)</sup> 그러나 하바로프스크의 볼쇼이 우스리스크 (Bolshoy Ussuriyskiy) 와 타라바라이(Tarabarovski) 지역의 총면적 350km<sup>2</sup> 근방의 두 섬과 아무르강 (이 지역의 총면적은 58km<sup>2</sup>) 상부의 볼쇼이(Bolshoy) 섬은 포함되지 않았다.<sup>22)</sup> 코즈레브(Andrei Kozyrev) 외무부 장관은 이들 섬 영유권 논쟁은 차후 회담을 통해서 재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23)</sup>

1992년 2월 13일 러시아 연방의 상원은 1991년 5월의 중-러 동부 국경선 협정을<sup>24)</sup> 찬성 170표와 반대 0표, 기권 6표로 승인하였다. 중-러 양국간 새 국경선 공식화 되었다.<sup>25)</sup> 1992년 2월 말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서도 이 협정을 승인하였고,<sup>26)</sup> 1992년 3월 베이징 방문시 코즈레브는 Qian Qichen 중국 외무부 장관과 협정 승인 문서를 교환하였다.<sup>27)</sup> 1992년 12월 옌친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간 정기적인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협력 범위를 확대 발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연방은 중국으로 양도하게 될 섬을 공동 경제 개발 지역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영토 이양 관련 절차는 1993년 봄에 시작하여 1997년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28)</sup> 1999년 12월 중-러 국경조약 의정서가 양국간에 교환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공화국들과 중국과의 국경 획정 대한 협상은 1990년에 시작했다. 1992년 12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공동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1991년에 체결한 중-러 협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동하였다.<sup>29)</sup>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1994년 9월 모스크바 방문으로 양국

19) Kozyrev Presents Sino-Soviet Border Treaty, *Moscow Russian Television Network*, 1992, 2. 13.

20) *Vladivostok News*, 1996년 4월 17일, No. 6, p. 1.

21) Yeltsin Representative Warns Against Ceding Land to China, *Interfax*, 1995년 2월 8일, *FBIS-Sov-95-026*, 1995년 2월 8일, p. 6에서 재인용.

22) Commentary on History of Chinese Border Accord, *Radio Moscow*, 1992년 2월 19일.

23) Russia, China Border Demarcation Problems, *Tass*, 1994년 4월 13일.

24) 러시아 연방은 계속하여 소련 시기에 완성한 국제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Diplomaticeskii vestnik*, 1992년, no. 4-5, 1992년, pp. 72-3; Kozyrev Presents Sino-Soviet Border Treaty, *Moscow TV*, 2월 13일.

25) Genrikh Kireev, Strategic Partnership and a Stable Border, *Far Eastern Affairs*, No. 4, 1997년, p. 17.

26) Leszek Buszynski,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Westport: Praeger, 1996년, p. 191.

27) Minister Kozyrev Interviewed on PRC Visit, *Moscow Teleradiokompaniya Ostankino Television First Programme Network*, 1992, 3.16, *Beijing Review*, No. 13, 1992, p. 12.

28) PRC Border Issues Resolved; Status Quo Until 1997, *Tass*, 1993, 10. 1.

은 몽골지방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55km 상당의 서부 국경지역 협정에 서명하였다.<sup>30)</sup> 또한 1996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표들이 5개국 공동 국경선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군사협력강화 협정에 서명하였다.<sup>31)</sup> 따라서 7,500km에 이르는 동-서 국경선의 98%가 확정되었고 이는 연해주의 아무르강, 우수리강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까지 이른다.<sup>32)</sup>

이와 같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오랜 현안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양국 국경지역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테러에 대한 공동대처 협력에도 기여하였다. 1996년 4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중앙아시아 3개국인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상해 5개국 협의기구가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국경선 획정 및 국경지대 안정화 방안 모색 등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는 위의 5개국 정상들이 비슈켄트 정상회담에서 국경분쟁 해결,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상해 5개국 이외에 추가로 우즈베키스탄이 가담하여 상해 6개국의 협의기구로 확대 발전하였다. 2001년 상해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출범하여 2002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테러 연계망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기구 수립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 6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은 상호투자와 지역협력 확대에 대한 친선우호 협력을 논의하였다.

## 중-러 국경선 재획정 협정에 대한 러시아 내의 여론

1991년 국경선 협정은 러시아연방 일부 하원들의 반대와 러시아극동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각하였다.<sup>33)</sup> 극동지역 주지사와 의원들은 1991년 중-러 국경 협정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중국에 러시아 본토를 양도하고 있다<sup>34)</sup>고 반박하였다. 신문과

29) *RA Report*, No. 14, 1993, 1, p. 35.

30) *Chinese Leader Arrives in Moscow*, *Tass*, 1994, 9, 2.

31) *Diplomaticheskii vestnik*, no. 5, 1996, p. 17; Grigory Karasin, Long-Term Strategy for Russian-Chinese Partnership, *Far Eastern Affairs*, No. 2, 1997, p. 27.

32) *Envoy to PRC on Remaining Border Issue*, *Izvestiya*, 1992, 4, 22, p. 6.

33) *Official Warns Against Abrogating Treaty With China*, *Interfax*, 1995, 2, 7.

34) Vladimir Shlapentokh, Russia, China and the Far East: Old Geopolitics or a New Peaceful Cooper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28, No.3, 1995, 9, p.310.

TV언론은 국경문제에 대한 기사와 논평으로 가득했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35)</sup> 몰츠(Moltz)는 극동 정치가들과 언론의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에 관하여 러시아인들은 중국 상품의 질과 중국 무역상들의 행동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극동지역내의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또다른 형태의 정치이슈가 되었다.

주 논쟁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중국에 양도 하게 될 섬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러시아인들의 방목지이자 어업 중심지역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였고 따라서 아무르강 연안의 중국 선박 진입은 국가적 좌절감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예를 들면 국경을 통해서 몰려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극동지역의 정치가들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었다.<sup>37)</sup>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중국 상인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었다.<sup>38)</sup> 러시아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불만은 다음과 같다:

- a. 중국인들에 의한 사기업 확대와 부동산 투자
- b. 급증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아파트 부족 현상
- c. 중국 사업가들과 러시아 관료와 연계한 부패 사례 증가
- d. 저가에 구입해가는 러시아의 원자재
- e. 러시아 내 값싼 중국산 화학비료, 장비와 소비재의 판매 증가
- f. 중국인 이주와 불법 이주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 g. 희귀 동물과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판매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대두
- h. 불법 중국인 노동자 및 상인들의 대거 유입과 불법 중-러 합작 투자의 증가<sup>39)</sup>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밀고 당기는 (push-pull) 방식의 경제로 표현했으며 특히 중국인들의 유입에 의한 인구급증은 양국의 국경 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 하였다. 장기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에 관하

35) Commentary on Border Agreement, *Moscow Voice of Russia World Service*, 1995, 2. 25, FBIS-Sov-95-038, 1995.2.27, pp.5-6에서 재인용.

36) James Clay Moltz, Regional Tensions in the Russo-Chinese Rapprochement, *Asian Survey*, Vol. 35, No. 6, 1995.6, p.517.

37) Yeltsin's Forgotten Compatriots Curse Their Lot, *Guardian*, 1996.4.30, p.9.

38) Yeltsin's Chance to Rattle the West, *Guardian*, 1996, 4. 22, p. 8.

39) *Shlapentokh*, Russia, China, and the Far East, p.315; *China and Russia Uneasy Partners*, *Vladivostok New*, No. 171, 1998.7.10, p. 1.

여 우려하였다.<sup>40)</sup> 러시아인들은 중국 상품의 질과 중국 무역상들의 행동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극동지역내의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또다른 형태의 정치이슈가 되었다.<sup>41)</sup>

중-러 국경선 재획정 협정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장도 각양각색이었다. 하원의원, 군부, 다른 지역 의원들도 협정에 반대하였다.<sup>42)</sup> 그 당시 국경협정에 관한 다양한 기사에 의하면 러시아연방이 중국에게 양도할 영토는 극동정부와 대표자들의 자문 없이 중앙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43)</sup> 지방정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 대표들은 모스크바의 결정에 상당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동부 국경선에 대한 중-러 협정에 제재를 가하였다.<sup>44)</sup> 1993년 말 중앙 연방과 극동지방 정부간의 충돌은 러시아연방 국경선 설정 위원회에서 중국으로 섬을 양도한다는 발표가 있자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극동지방 일부 대표들의 중국 방문이 취소되었다.<sup>45)</sup>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 체제 하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국경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협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피력하였다. 이들은 계속해서 모스크바 연방정부를 겨냥하여 항의를 했고 1991년 국경 협정의 무효를 요구하였다.<sup>46)</sup> 그들은 1969년 국경 부근의 유혈 충돌로 수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우수리 강의 다만스키섬의 반환을 중국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sup>47)</sup> 대표적으로 하바로프스크와 연해주 주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동협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1993년 9월 말, 하바로프스크 주지사 이사예프(Viktor Ishaev)는 중국 선박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항해를 가능케 했던 조약문 제8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48)</sup> 다음은 이사예브가 체르노미르딘(Viktor Chernomyrdin) 국무총리에게 보낸 항의문에 담긴 주요 골자이다:

40) Eric Hyer, Dreams and Nightmares: Chinese Trade and Im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 No. 2, 1996 여름/가을호, p. 295.

41) Illegals' on the Banks of the Amur, *Rossiiskie vesti*, 1997.5.6.

42) *South China Morning Post*, 1992.3.17, p.10.

43) Moltz, Russo-Chinese Normalisation, pp. 516-17.

44) Rozov Criticises Lukin's Remarks on Russian-Chinese Border, *Interfax*, 1995.3.9. FBIS-Sov-95-050, 1995.3.15, p. 17에서 재인용.

45) Official Visit Border Areas Ceded to China, *Interfax*, 1995.3.7, FBIS-Sov-95-045, 1995.3.8, p.13에서 재인용.

46) Alexander Lukin The Image of China in Russian Border Region, *Asian Survey*, Vol. 38, No.9, 1998.9. pp.826-28.

47) Russian Governor Upsets China Accord, *Financial Times*, 1995, 3.1: Yeltsin's Chance to Rattle the West, *Guardian*, 1996.4.22. p. 8.

48) Buszynski, *Russian Foreign Policy*, p.196.

1992년 가을 이래로 중국의 군함은 강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이는 러시아의 내수면을 침입하면서 하바로프스크 시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안보 뿐만 아니라 어업과 다른 권리들에까지 침범하고 있었다. 협정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하바로프스크로의 이주를 허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지방정부의 자문 없이 중국과 합의한 연방정부를 비난하였다. 국경의 경제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그는 1991년 국경선 협정 무효화를 요청하였다.<sup>49)</sup>

또한 연해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Nazdratenko)는 국경선 설정이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협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비준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였다. 나즈드라텐코는 연해주의 15km<sup>2</sup>의 영토가 중국으로 양도해야 되며, 여기에는 두만강의 일부 지역도 포함하고 있어서 동해로의 진입이 용이해졌음을 언급하였다. 중국정부는 기존의 러시아극동 지역의 항구와 경쟁하게 될 항구를 건설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피력하였다.<sup>50)</sup> 그는 아울러 우리는 중국에게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sup>51)</sup>고 제기하였다.

국경선 협정은 정치적 논쟁의 핵심으로 일부 연방의 지도자들과 다른 지방의 주지사들 또한 나즈드라텐코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연해주에 파견된 열친 대통령 수석 대표인 이그나텐코 (Vladimir Ignatenko)도 Interfax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860년의 베이징 조약을 검토하면서 현 지도와 100년 이전의 지도를 비교해 보았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땅을 양보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건잡을 수도 없이 많은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영토를 요구할 것이다.<sup>52)</sup>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연방회의의 부의장 돌로아프테프(Anatoliy Doloaptev)는 연해주 국경 지역을 방문하고 1991년 국경 협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53)</sup> 1995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정부는 열친 대통령이 모든 중-러 국경 협정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열친 대통령이 연해주와 관

49) Khabarovsk Asks Chernomyrdin to Stop Chinese Ship's Access, *Radio Rossii Network*, 1993, 9, 29.

50) Pavel Grachev Creating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Sevodnya*, 1995, 5, 17, p. 2,

51) Maritime Kray's Nadratenko on PRC Border, Trade Issues, *Obshchaya Gazeta*, 1995, 5, 11-17, No. 19, p. 8.

52) China Helps Build Bridge Over Amur River, *Tass*, 1995년3월7일.

53) Border Dispute Could Explode our Relations with China, *Izvestiya*, 1995.2.10. p.3.

런된 국경 협정을 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레베디네츠 (Igor Levedinets) 하원 의장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이 급선무이며 중국에 부당하게 영토를 양보하는 것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sup>54)</sup>

계속되는 이러한 논쟁과 성명,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1년 중-러 국경 협정 이행 절차는 진행되었다. 1994년 9월 장쩌민 주석과의 모스크바 정상 회담에서 옐친 대통령은 동부 국경선의 핵심 지역인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55)</sup>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노력이 중국과 러시아간 관계에 신뢰 구축의 근원이 될 것이며 동시에 1991년 동부 국경 협정 재검토는 옳지 못하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득하는 것으로 Hangkai 구역에서 중국 정부도 러시아에 약 80 헥타르의 영토를 양도하는 내용을 재강조했다. 국경선 재확정은 양국의 영토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해주의 대표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했고 오히려 국경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반론하였다.<sup>56)</sup>

아울러 일부 하원 의원들과 극동의 주지사와 대표들은 국경 지역의 팽배한 긴장감이 향후 중-러 관계 정상화에 미칠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경선 협정 이행은 러시아연방의 대중국 관계 증진에 최우선 하는 정책의 하나임을 거듭 강조하였다.<sup>57)</sup>

1995년 3월 코즈레브(Kozyrev) 외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고 부총리이자 외무부장관인 Qian Qichen과의 회담에서 1991년 동부국경선 협정 이행에 대한 연방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동부국경선과 관련한 1994년 양국협정이 하원의 승인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sup>58)</sup> 그의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1991년 동부 국경선 협정 이행을 통해서 양국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sup>59)</sup>

54) Primorskii Duma Protests Concession, *Tass*, 1995.2.22.

55) Yeltsin Comments on Relations, *Tass*, 1994.9.3 ; 당시 양국은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고, 상대방에게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나 상대방가를 핵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도 아울러 상호 확인하였다.

56) Diplomat Against Review of Sino-Russian Border Agreement, *Interfax*, 1995.2.8, *FBIS-Sov-95-027*, 1995.2.9, p.8 에서 재인용.

57) Commentary on Border Agreement, *Moscow Voice of Russia World Service*, 1995년2월25일, *FBIS-Sov-95-038*, 1995.2.27, pp.5-6에서 재인용.

58) Optimistic Note in Kozyrev Beijing Talks, *Izvestiya*, 1995.3.3. p.3.

59) PRC Official Commends Border Talks With Kozyrev, *Tass*, 1995.3.2.

그의 중국 방문은 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경선 재획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sup>60)</sup>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리펑(Li Peng)과 옐친 대통령은 1995년 6월 모스크바에서 또 한차례의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명실공히 1991년 중-러 동부 국경선 협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sup>61)</sup> 1995년 7월에는 국경선과 관련한 중-러 6차 회담이 진행되었다. 양국 대표들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을 포함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국경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서들을 논의하고 승인하였다.<sup>62)</sup> 1996년 4월 옐친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함께 다시 한 번 1991년 국경선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63)</sup> 아울러 중-러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할 것이며 옐친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거듭 확인하였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과 경제 및 외교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14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국경분쟁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서방 공조의를 피력하였다. 1997년 1월 프리마코프(Primakov) 외무부 장관은 1991년 중-러 국경선 협정을 1997년 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64)</sup>

동년 4월 말 강택민 주석의 방러로 양국은 국경병력감축협정에 조인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1960년 말 중-소 분쟁 이후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sup>65)</sup> 오랜 협상 끝에 1997년 11월 옐친은 중국과의 국경선 설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sup>66)</sup> 국경선 확정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극동지역과 언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지역은 중-러 공동국경성명서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모색하게 되었다.

60) Referendum on Demarcation of Russian-Chinese Border Proposed, *Sevodnya*, 1995.3.25, p. 2.

61) Communique Issued, *Tass*, 1995.6.27.

62) Joint PRC Commission Begins Border Demarcation, *Tass*, 1995.7.20.

63) Yeltsin Frightens Chinese Communists with Russian Communists, *Kommersant-Daily*, 1996.4.6, p.3. Yeltsin's Visit Heralds Pacts with China, *Financial Times*, 1996.4.25, p.4.

64) Harada, *Russia and Northeast Asia*, p. 42.

65) 아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세계의 다극화 경향과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에 주안점을 두었고 초점을 두고NATO의 동유럽 지역으로의 팽창에 의한 군사 블록화에 경계를 표명하였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강대국의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함을 역력히 보여 주었다.

66) *Diplomaticheskii vestnik*, no. 12, 1997, pp. 9-10; Yeltsin to Clinch Deal with China on Land Border, *The Times*, 1997.11.10, p.15.

## 21세기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양상과 전망

2001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향후 20년 동안 도모해 나갈 중·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국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모색,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경지역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유지 협력,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등이다.

이러한 조약에 의한 양국의 협력 공고화 관계는 2004년 10월 중순 중-러 수교 55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된 중-러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가 공식화되었다. 양국이 발표한 7개항의 연합 성명서의 골자는 앞서 살펴본 2001년에 서명한 중·러 우호협력조약에 기초하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양국이 실천해 나가야 할 부문별 협력 방안으로 액션플랜(행동계획)이다. 두드러진 양상은 경제 분야의 전면적인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세계 2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 개발 합작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교역 증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국가지위 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공고화도 담겨있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대 테러에 대한 연계망 구축과 유엔과 안보리의 공조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sup>67)</sup>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간 경제 및 정치 협력의 강화를 전제로 한 21세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중-러 국경선 획정에 있다. 특히, 국경선 관련해서는 “러-중 동부국경에 대한 부속협정”을 포함한 국경선 재획정에 대한 문서에 서명하는 한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채택된 부속협정은 헤이룽(黑龍)강 중류의 헤이사쯔섬을 비롯한 중국 동북부 지방의 하중도와 삼각주 등 일부 미해결 지역에 대한 경계 문제 해결이다. 1949년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4300km에 달하는 1964년부터 분쟁이 심화된 된 국경지역 섬 영유권 문제의 해결이며 40여 년 동안 지속된 중-러 국경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국경선 재획정 문서에 서명

67) 「中俄聯合聲明」: <http://www.china.com.cn/chinese/PI-c/680635.htm>.

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

중-러 관계 증진은 중국인의 투자증대에 따른  
합작회사 및 중국인 사기업의 급증 및 중국의  
대러시아 국경무역의 확대와 국경 지역인 연해  
주를 중심으로 중국상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  
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은 300여년의 양국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sup>68)</sup>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국은 1991년 아무르강 일대의 국경을 획정할 때 미해결 지역이었던 이 섬들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그림 2). 2004년 10월 중순 합의에 의하면 러시아 동부 하바로프스크 인근 아무르강(헤이룽강, 黑龍江)에 있는 타라바라이 섬(중국명 인룽·銀龍) 전체와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의 일부를 중국으로 귀속이 된다.<sup>69)</sup>

그 동안 동 지역은 러시아연방의 영토였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로 지도에 표시해 오고 있었던 중-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귀속 문제는 러시아연방 내에서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지역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과 1858년 아이훈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로 확정되었다. 일반적인 논쟁은 340년 동안 중국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이 1991년 국경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국경선은 중국측 강변에서 러시아극동의 아무르강 수로 쪽에 근접하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아무르강 수역의 절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볼쇼이 우수리섬과 타라바로프섬의 총면적은 서울의 절반이 넘는 337km<sup>2</sup>로 비옥한 농지로 인해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러시아 농민들이 국경경비대의 경호를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지역경제공동체 극동 및 바이칼 동부의 이사회 고문인 경제학 박사 유리 예피멘코에 표현에 의하면, 동 지역은 하바로프스크의 목줄기를 겨누고 있는 단점으로 긴장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곳이며, 러시아극동 연방의 수도인 하바로프스크의 쿠릴섬으로 간주되는 극동지역의 절반인 남부지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68) 「中俄國界東段的補充協定, 簽署邊界線全部確定」: (2004.10.16): <http://www.china.com.cn/chinese/PI-c/680709.htm>.

69) 중앙일보, 2004.10.22.

70) 중국과의 영토 재획정에 대한 푸틴의 혼동 КитайскаяконфузияПутина 유리 크루프노프, 로스발트, 2004.10.21.

중요한 논쟁은 러시아극동지역에 대한 푸틴과 연방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태도이다. 모스크바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극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 국익을 위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토를 중국에 양도할 수 있는가?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하원은 최종적으로 비준을 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영토를 양도할 수도 있는 여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인가? 중국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의 중국 연결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이 러시아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한 대가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던 영토를 주기로 조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강하다.

### 중-러 국경선 재확정의 시사점과 전망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 국가는 1969년 우수리강에서의 무력충돌 이후 군사적 긴장감 속에 정치적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식적인 관계 증진이 약 40년간 차단되었다. 고르바초프는 1980년대 중반 구소련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마찰이 심했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모색을 추진하였다. 그의 외교적 접근은 1989년 5월 베이징 방문으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 국경에 배치된 병력 감소와 국경 분쟁의 해결책 모색에 대한 초안을 잡기 시작했다. 체제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옐친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초 양국의 국경 개방은 러시아연방과 극동지역에서의 불법 중국인 체류자 증가와 저임금 중국 노동자들의 이주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국경 재확정 과정에서 반대 여론과 언론과 일부 정치가들에 의한 반박 성명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중-러 관계 증진은 중국인의 투자 증대에 따른 합작회사 및 중국인 사기업의 급증 및 중국의 대러시아 국경무역의 확대와 국경 지역인 연해주를 중심으로 중국 상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4년 10월 중순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협력을 매개로 국제사회의 다극화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시베리아 송유관의 중국노선인 다칭 경유 노선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대신에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서명했다. 러시아 입장은 시베리아 송유관은 앙가르스크~나훗카 일본 노선을 고수하지만 중국의 다칭 지선을 연결하는

방안과 송유관 대신 철도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한 석유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양국간 교역 규모를 2010년까지 3



▲ (그림 2) 러-중간 영토협정에 의한 새로운 국경선

배 이상에 도달을 하기 위해 경제 협력 확대에도 합의를 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자원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대러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2004년 예상 석유 소비량이 2억4000만t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소비대국으로 수요의 4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낙후한 국경지대 및 서부지대의 발전을 촉진 및 1993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과 개발 참여 확대가 대러시아 외교의 핵심인 셈이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양국은 국경지역 안보 구축, 에너지 및 자원 공급과 개발, 무역, 투자와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전방위 외교가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양국은 21세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저는 국경지대의 안정화와 경제적 상호이익의 추구에 공동 협력 대응으로 전략적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양국간 국경선 재획정을 통해서 국경지대의 안정화와 안보 구축에 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소련 및 러시아연방과 중국 사이에는 국경선이 길어 분쟁 지역이 많았다. 지난 1989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속적인 정상회담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국경분쟁의 종식이라는 성공적인 외교 사례를 도출하였다.

물론 러시아연방 내 섬 영유권을 둘러싼 직면한 반대의 여론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양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위협이 되었던 국경분쟁 요인의 종식은 국경지역 안정과 경제발전을 추진 및 변경지역의 안정화를 꾀하는 성과를 낳았다. 더욱이 체첸의 분리독립과 신장-위그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공동 대처 모색과 테러 억제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 지역의 안보 구축에 바탕을 둔 경제적 상호 이익 추구 즉 경제발전에 국익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 종식을 통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협력하는 대신 중국이 시베리아 및 극동개발 지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러시아 경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연결 및 WTO가입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 구축에 대한 보장책의 일환이다. 양국간 국경분쟁 종식 및 국경선의 재획정은 동북아 지역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며 경제협력 추진의 중요한 기저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반테러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신뢰와 평화구축의 공고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도서안내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 현대정치학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 〈관련 자료〉 - ①

##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간 부속협정\*

• • •

본 협정은 2004년 10월 14일 푸틴과 후진타오 간에 조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양국간 국경분쟁의 대상이었던 우수리강과 부속섬들에 대한 영토구획을 확정지게 되었다. 본 협정은 1991년 5월 체결된 '소-중간 동부국경선에 대한 협정'의 부속협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 협정의 체결로 1991년 당시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던 양국간 국경획정문제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으며, 현재는 비준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중화국 (이하-조약당사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되었고, 1991년 5월 16일 러시아연방 상원과 중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해 비준된 러시아-중국 동부국경에 대한 협정에 기초하여, 러-중간 동부국경의 7번 국경지점에서 8번 국경지점까지 그리고 10번 국경지점에서 11번 국경지점까지의 두 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1991년 5월 16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간 협정 제2조에 의해 기술된 7번 국경지점과 8번 국경지점 사이의 러-중간 국경선은 다음의 지점들을 통과한다.

7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프로르바강(중국지도상 - 하일라르강)의 상류 쪽으로 강폭의 중간지점 즉 본류의 중간지점을 통과하는데, 전체적으로 남남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르군강(중국지도상 - 무명)의 강폭의 중간 혹은 본류의 중간으로부터 프로르바강의 강폭의 중간 즉 본류의 중간지점이 만나는 곳을 통과한 이후, 하류 쪽으로 아르군강의 흐름을 따라, 강폭의 중간 즉 본류의 중간지점을 통과하는데, 전체적으로 북북동으로 7/1번 국경지점까지 이어진다. 이 국경지점은 아르군강의 강폭의 중간지점 즉 본류의 중간지점에 놓여있는데, 대략적인 좌표는  $x=5,490,500$   $y=20,564,000$ 이다.

7/1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볼쇼이섬(중국지도상-아바가이투 초우추섬)을 통과하여 정북향으로, 7/2번 국경지점까지 이어진다. 이 국경지점은 프로르바강의 강폭의 중간지점 즉 본류의 중간지점에 놓여있는데, 대략적인 좌표는  $x=5,496,160$   $y=20,564,380$ 이다.

7/2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프로르바강(중국지도상-에르구나헤강)의 하

\* 원문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음. 원제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на ее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류쪽으로, 강폭의 중간지점 즉 분류의 중간지점을 따라서, 대체적으로 동북동 방향으로 8번 국경지점까지 이어진다.

1991년 5월 16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간 협정 제2조에 의해 기술된 10번 국경지점과 11번 국경지점 사이의 러-중간 국경선은 다음의 지점들을 통과한다.

10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아무르강(중국지도상 - 헤일룬짚강)의 상류 쪽으로 향한 수로 본줄기를 따라 대체적으로 동쪽 방향으로 10/1번 국경지점까지 이어진다. 이 국경지점은 아무르강(중국지도상 - 헤일룬짚강)의 수로 본줄기 중간지점과, 10/2번 국경지점의 강변으로부터 수직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10/1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위에 언급한 수직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통과하여 남쪽 방향으로 10/2번 국경지점까지 이어진다. 이 국경지점은 볼쇼이 우수리섬(중국지도상 - 헤이샤츠이다오섬)에 놓여있는데, 대략적인 좌표는  $x=5,358,650$   $y=23,482,570$ 이다.

10/2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남남동 정방향으로 볼쇼이 우수리섬(중국지도상 - 헤이샤츠이다오섬)을 통과하여 10/3번 국경지점으로 향한다. 이 국경지점의 대략적인 좌표는  $x=5,358,300$   $y=23,482,740$ 이다.

10/3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남남서 정방향으로 볼쇼이 우수리섬(중국지도상 - 헤이샤츠이다오섬)을 통과하여 10/4번 국경지점으로 향한다. 이 국경지점의 대략적인 좌표는  $x=5,349,820$   $y=23,479,010$ 이다.

10/4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남동 정방향으로 볼쇼이 우수리섬(중국지도상 - 헤이샤츠이다오섬)을 통과하여 10/5번 국경지점으로 향한다. 이 국경지점의 대략적인 좌표는  $x=5,349,790$   $y=23,479,040$ 이다.

10/5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남동 정방향으로 볼쇼이 우수리섬(중국지도상 - 헤이샤츠이다오섬)을 통과하여 10/6번 국경지점으로 향한다. 이 국경지점의 대략적인 좌표는  $x=5,349,650$   $y=23,479,140$ 이다.

10/6번 국경지점으로부터 러-중간 국경선은 남쪽 정방향으로 11번 국경지점으로 향한다.

위에 묘사된 러-중간 국경선은 1:100,000 축적의 구소연방 지도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들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 러-중 국경선의 묘사에 이용된 좌표는 이들 지도에 따라 측정된다. 러-중간 국경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위의 지도들은 당추가협정에 첨부되며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제 2 조

당협정 제1조에 지시되어 있는 러-중간 국경선의 구획설정을 위하여, 조약 당사국들은 동등성의 원칙에 입각한 공동 영토구획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에 국경 구획설정 완수의 임무를 부여한다: 국경선상의 강들에 수로본줄기, 강의 중앙지점, 혹은 강의 분류의 정확한 상태를 규정한다. 현행 부속협정 제 3 조에 합당하게 경계선상의 강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규정한다. 국경의 표지판들을 설치한다. 국경설정에 대한 서류들의 계획서들

을 준비한다. 상세한 국경구획지도들을 작성한다. 또한 상술한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 제 3 조

현행 부속협정 제1조에 기술된 중-러간 국경선은 항해가능한 강의 수로 본줄기의 중간 지점을 지나며, 항해불가능한 강에서는 강의 중간지점 즉 강의 본류의 중간지점을 지난다. 국경선으로 채택된 수로 본줄기의 중간지점, 강의 중간지점 즉 강의 본류의 중간지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이에 따른 섬들의 영유권은 중-러간 국경선의 구획에 즈음하여 명확히 규정되어진다.

수로 본줄기의 규정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으로서는 강폭과 회전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수로의 깊이를 취한다. 수로 본줄기의 중간지점은 수로 본줄기에 있는 두 개의 상응하는 등심선 사이에 있는 수면 지역의 중간을 의미하는 선이다.

강의 본류의 규정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으로서는 중간 수준의 수량을 취한다.

### 제 4 조

지점이 구획된 러-중간 국경선은 수직방향으로 영공과 지하의 영토 역시 구분짓는다.

### 제 5 조

국경선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여하한 자연적인 변화도 조약 당사국들의 별도의 동의 없이 현행 부속협정 제1조에 명시된 지점들에 있어서 구획된 러-중간 국경선에 대한 규정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국경선의 구획 이후 국경선상의 강들위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은 러-중간 국경선 구획의 규정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진다. 한편, 구획된 국경선상에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은 섬들의 영유권은 조약 당사국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 제 6 조

당 부속협정은 1991년 5월 16일 소-중간 동부국경선에 대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간 협정에 대한 부속협정이다.

### 제 7 조

당 부속협정은 비준을 요하며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비준장을 교환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장의 교환은 근시일내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다.

2004년 10월 14일 베이징에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협정서는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작성되었는데, 두 문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관련 자료〉 - ②

## 중국에서의 푸틴의 혼동\*

유리 크루프노프

◆ ◆ ◆

본 기사의 저자는 2004년 10월 14일 체결된 러-중간 영토협정이 러시아 외교정책의 파탄이라 주장하고 있다. 볼쇼이 우수리섬과 타라바로프섬은 1651년부터 러시아의 영토였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섬들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너무 쉽게 이 섬들을 중국에 '양도' 하였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게다가 이 섬들은 하바로프스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섬들을 양도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극동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의견이 완전히 무시당함으로써 분리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하나의 선례로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일체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모든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닥칠 러시아의 찬란한 미래의 평화에 대해 상상할 때면, 숨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쿠릴열도의 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영토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들 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독일 일부 하원 의원들 일단이 호기롭게 칼리닌그라드를 '신' 프러시아의 일부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평화의 전장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쿠릴의 섬들은 일본에, 칼리닌그라드 오블라스찌는 독일에 넘겨주는 것만 남은 것 같다.

이득은 분명하다. 상호신뢰가 증대할 것이고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질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물류이동이 수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의 물결이 러시아로 흘러 넘치도록 유입될 것이다.

수상교통과 자연자원활용, 자연보존 및 경제행위 등의 발전과 관련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이 넓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간 관계의 발전과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훌륭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원제: Китайская "конфузия" Путина (출처: 로스발트, 2004년 10월 21일자)

이상의 논리는 아직은 환상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 논리는 2004년 10월 14일 베이징에 서의 결정들에서 보이는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위 단락의 마지막 구절은 중국 공식 방문 첫날, 푸틴과 후진타오가 “러-중 국경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간 부속 협정”에 서명한 직후 가진 프레스 회견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행한 연설을 꾸밈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곰소물까”는 10월 15일 ‘러시아는 중국에게 섬의 절반을 양도하였다. 하바로프스키 끄라이는 337 평당 킬로미터만큼 축소되었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협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양도하였다. 바로 그렇다. 볼쇼이 우수리 섬의 많은 부분과 타라바로프(중국명 인룽 銀龍? 역주) 섬을 중국인들에게 넘긴 것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게 섬을 넘겼다면 ‘획득했다’ 라고 말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 ‘양도하였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상적인 입장의 변경일 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주장처럼 “양국 정부간 국경문제에 중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대한 일보를 내디뎠다……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고,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덧붙여, “러-중간 관계의 역사를 통해 최초로 양국간 국경 전체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었고 국경은 마땅한 장소에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명확하게 규정된 국경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러시아에 단지 나쁜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지경이다. 그리고 우리(러시아 - 역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러난 것은 현명함이 아니라 국가외교정책의 파탄이다.

국경을 적소에 법률적으로 획정하고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이 일이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 요구하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경의 획정은 정치적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이다.

언제나 정치적 문제는 국경의 설정 그 자체가 아니라, 설정의 방법, 득실 문제, 목적 및 결과 등과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국경이 설정되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러시아 정부가 자랑스럽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주장하는 국경문제의 해결이 사실은 엄청난 패배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양도한 것은 무엇이며, 왜 패배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섬들의 귀속 문제는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분쟁의 종식을 위해 선물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섬들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에 더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가로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에게 섬들을 남겨주는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섬들을 양도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러시아 상원과 비교해 봤을 때 왜소하기 그지없는 키르기즈 상원이 2002년 우젠기-쿠우쉬의 27만 헥타르가 넘는 영토분쟁지역과 관련하여, 이 땅은 “처음부터 키르기즈의 것”이라며, 중국과 체결된 국경에 대한 부속 협정의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비슷한 말을 할 생각조차 안 한 것 아닌가?

둘째, 볼쇼이 우수리섬과 타라바로프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섬들은 무인도나 무용한 섬이 결코 아니다. 두 섬 중에서 볼쇼이 우수리섬만 가지고 따져 보아도 그 면적이 현재의 하바로프스크의 영토와 비견할 만 하다. 지역경제공동체 “극동 및 바이칼 동부”의 이사회 고문인 경제학 박사 유리 예피멘코의 적절히 표현한 바에 따르면, 이 섬들은 “하바로프스크의 목줄기를 겨누고 있는 단검”이며, 따라서, 하바로프스크 사람인 예피멘코의 또 한 번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자면, 이 두 섬은 말 그대로 “하바로프스크의 쿠릴섬”이다.

사실, 이 두 섬의 통제는, 유사시, 극동연방구의 수도인 하바로프스크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긴장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바로프스크가 연방구 수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극동의 절반인 남부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셋째, 이 섬들은 1651년부터 러시아 영토였으며, 1858년 아이군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 섬들은 1991년에 이르기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러시아 영토였다. 1991년이 되어서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소평과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따라 국경선은 중국측 강변으로부터 물러나서 우리 측 강변 아무르강 수로 쪽에 가깝게 이동하였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고르바초프로부터 아무르강 수역의 절반을 선물로 받았다. 중국인들이 3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고르바초프는 단 며칠 만에 해냈다. 중국 사람들로서는 그저 쾌재를 부를 일이었다.

그 당시 등소평은 중국풍의 기발한 구호를 고르바초프에게 제안하였다: “과거는 닫고, 미래를 열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등소평이 염두에 둔 미래가 과연 누구의 것이고, 또한 과연 누가 닫힌 과거 속에 남겨 되었는가를 해명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2004년 10월 14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상 허장성세였으며 중국에는 황천포로 빠져버렸던 고르바초프 정책노선의 지속이라는 점에 있다.

우리의 “실용주의자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고르바초프의 선물이 있는 직후 중국인들은 곧바로 중국측 강변과 볼쇼이 우수리섬을 잇는 카자케비체프 수로에 모래를 실은 바자선들을 침몰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로, 즉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러시아 측의 강변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섬들을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바자선들의 주변으로 느리지만 확연하게 모래들이 씻겨져 나오고 있으며 수로는 점차로 지협(地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국경 문제가 10여 년 후에 갑자기 다시 출현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우리 측에 남아있는 섬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토 내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경선의 기준이 되는 강의 수로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위력적이며 까탈스러운 아무르 강의 수로라는 것은) 사실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수로는 이미 중국의 섬이 된 볼쇼이 우수리와 하바로프스크 사이에 생성될 수도 있다.

넷째, 섬들의 이양으로 인한 “중대한” 대가는 바로 “중국이 러시아를 WTO에 들어가게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신문의 한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러시아 연방을 지정학적인 무덤으로 곧바로 이끄는 통로로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Пусть к себе”를 참조할 것.)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영토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와 주민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극동지역민들에 대한 태도에 있다. 만일 이유가 분명하다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영토를 양도할 수도 있다. 이번 경우에 있어, 벌어진 일들과 관련하여, 동쪽의 위대한 이웃을 자신의 넓은 아량으로 감동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외에 딱히 다른 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나라와 극동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극동지역의 주민들이라면, 엘리트가 되었건 평범한 시민이 되었건 간에 이 사태와 연방 중앙정부의 여타의 아량에 대해 한결 같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이해하는 사태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극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을 팔거나 양도하는 것은 하사라도 가능하며, 이러한 일은 심지어 예고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 애국주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향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월 10일 치러진 사할린 오블라스찌 의회 선거에서 심지어 “단일러시아당”조차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정치블록 “우리의 조국 - 사할린과 쿠릴”의 지도자중 한 사람이자 사업가인 안드레이 잘핀의 다음과 같은 말을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는 러시아에 퍼져있는 우울증을 몰아낸다”.

이 애향운동을 분리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분리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지만, 애향운동가들은 연방정부가 그들을 “독립”으로 내몰 때,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배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단일러시아당”이 더 많이 나올수록, 러시아에서의 단일성은 더 줄어든다.

이외에 다른 식의 표현은 있을 수 없다. 국가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대신에, 연방정부는 국외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승리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 확실한 것은 모스크바에 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고, 그 대신에 순서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에 달라붙으려는 경향만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가 좀 더 선물하고 양도하여, 우리의 파트너들을 즐겁게 하자.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 보다는 우리가 타국의 “반사적인” 힘을 어떻게든 단지 조금이라도 획득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항

에 대한 핑계로 역할 하는 것은 국제 정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환상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반한 투향이 바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간 국경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블라지미르 푸틴은 2004년 10월 13일 중국의 일간지들 및 중앙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저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의 외무부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그리고 강도 높게 작업하여왔다. 그들은 마땅한 포상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선린의 원칙에 기반하여, 또한, 만약에 이 표현이 적절하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측의 지역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작업하여 왔다”.

저자들 중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고문으로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세르게이 프리호지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양된 섬들에 “국경선상에 있는 자그마한 꼬리들”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63년부터 40년간 중국은 체계적으로 소연방의 지도부(다만스키섬에서의 전투를 상기 하자)와 러시아연방의 지도부에 압력을 가해 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주 조금씩 또한 한 걸음씩 한걸음씩 전에 원했던 것을 전부 차지하였으며, 러시아는 중국이 이전에 요구했던 것을 모두 양도하였다.

40년이란 기간은 우리의 40년이 아니라 중국의 40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엘리트들은 1945년 9월 2일 요시프 스탈린이 일본에 대한 승리를 경축하면서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에서 말한 “연로한 세대인 우리는 이 날을 4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말을 반복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 말은 알타회담이 끝났으며, 우리가 당시 1945년 5월의 승리를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는 향후 러시아에 유리한 세계 분할이 지속될 것이며, 45년 9월에 있을 승리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대외환경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였다: 블라지미르 푸틴은 결과적으로 섬들의 이양과 관련하여 “우리는 40년간 지속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40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통령은 입장의 전환을 통한 투향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말인가?

외무부의 관료들이 작년에 2004-2008년에 걸친 프리아무르의 러시아 귀속 150주년 축하 행사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사한 경축행사는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해롭다고까지 대답한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의 40년간의 계획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적절한 것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혹은 전쟁 없이 이루어진 러시아의 위대한 영토획득을 경축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한” 행위가 되는 셈이다.

현재의 러시아연방 외무부를 중국의무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표현으로는 부족한가? 중국 정부에 ‘하바로프스크를 겨누고 있는 단검’을 선물한 후에 이 정부기구가 또 어떠한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인가?

어쩌면, 투만나야 강의 왼쪽 연안의 늪지대에 연해있는 블라디보스톡 주변의 그리 크지 않은 영토들을 획득한다는 중국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일 지도 모른다. 꼭 근거가 있어야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토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에 걸쳐 있는 이 때에, 그러한 소택지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중국측의 우호에 대한 약속이나 투자가 일의 성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소택지로 인해 중국은 동해로 나아가는 마지막 방해물을 치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수심이 깊은 항구의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극동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항만들은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투만나야강”과 심지어 한국의 “두만강”과 같은 단어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될 것이고, “투멘쯔잔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투루프와 쉬고탄과 같은 단어를 타국어로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것은 칼리닌그라드 대신 “퀸스베르그”를 실수없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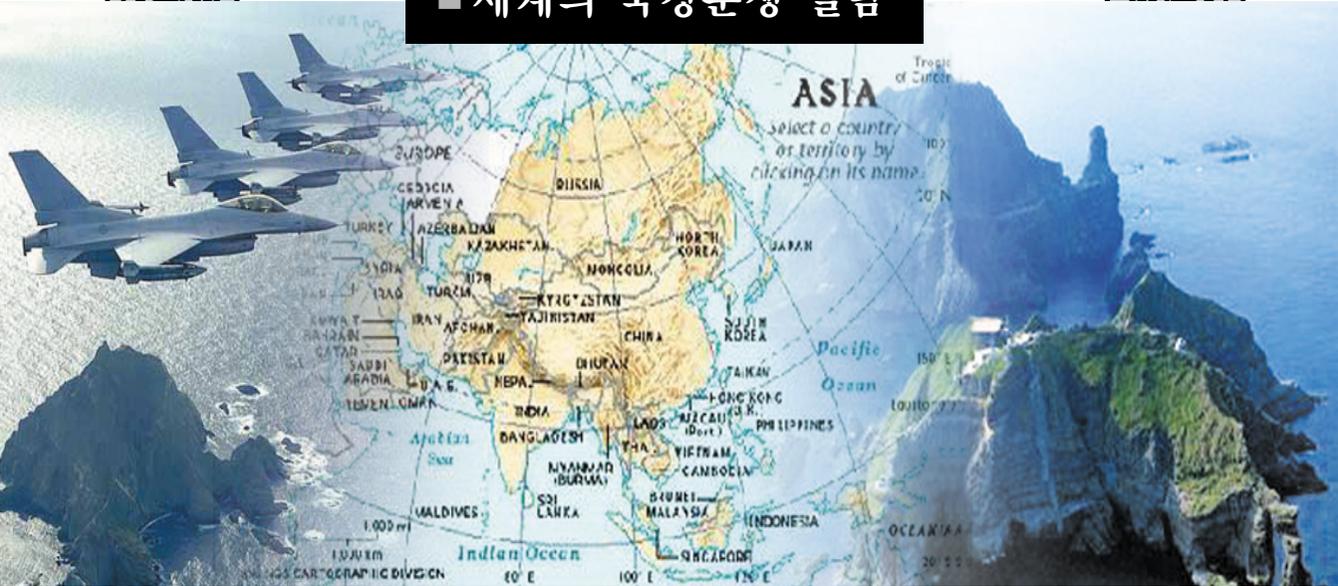
2004년 10월 15일 중국의 시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방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블라지미르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사시켰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등소평의 현명한 표현을 통해 말하자면, “지난 날의 문제들을 닫는 것(해결하는 것 - 역주)”에 성공하였다. 국경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크레믈린에서는 문제들을 닫는 법을 벌써 완전히 터득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역사를 닫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 특집 부록

- 아시아의 국경분쟁
- 세계의 국경분쟁 일람



# 국경으로 읽는 아시아 분쟁

< 편집실 >

## ■ 인도-파키스탄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카시미르 국경



▲ 인도-파키스탄 카시미르분쟁지도.

지도를 보면 남아시아의 최북단,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카시미르지방이 위치하고 있다. 카시미르지방은 그 카스미아모직으로 유명한 장소로, 최고급 브루 사파이어가 산출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이 일대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반세기도 넘는 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쟁의 원인은 카시미어나 사파이어 등이 아니라, '종교'다.

계기는 1947년, 18세기부터 인도 일대를 식민지로서 통치해온 영국이 남아시아로부터 철수, 인도가 독립을 달성하게 된 때다. 철수 때, 영국은 인도가 독립하는 것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인도영토로부터 새롭게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는 것도 인정했던 것이다. 영국이 파키스탄의 분리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이슬람교도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신봉하고 있는 종교도 지역에

1971년에 제3차 인-파전쟁이 발발, 현재의 정전라인에 이르고 있다. 이 인-파전쟁에 뛰어든 것이 중국이다. 1962년에 인도와 국경분쟁을 일으켜, 카시미르지방의 일부를 중국지배지역으로, 아악사인 첸이라고 명명하고 말았다.

따라 다르다. 전인구의 8할을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도로, 그 밖에도 이슬람교, 시쿠교, 조로아스타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신봉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사정 속에, 영국은 동인도일대에 살고 있는 7천만 내지 8천만으로 알려진 이슬람교도를 중시했다. 종교의 차이가 민족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것을 걱정한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인정함께 동시에, 이슬람 교도가 많은 동인도일대를 인도와는 별도로 파키스탄으로 독립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독립당시, 카시미르지방은 영국이 간접통치하는 소국이었으나, 영국이 藩主國에 대해서, 인도나 파키스탄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 것을 요구했다. 귀속 선에 대해서는 그 번주국이 지리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느 곳에 가까운가, 그리고 주민의 다수파의 종교는 무엇인가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있어 균열이 생기고 만 것이 카시미르 藩主國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상에 위치하는 카시미르는 주민의 8할이 이슬람교도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의 귀속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다수파와는 달리, 힌두교도였던 藩主는 인도에의 귀속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납득하지 않았던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무력개입을 시작했다. 藩主는 인도의 지원을 얻어 귀속문서에 조인, 이것을 빌미로 인도가 카시미르지방에 군대를 파견. 이렇게 하여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싸움은 인-파 전쟁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로부터 제3차까지, 카시미르지방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은 세 차례에 걸쳐 싸움을 반복했다.

1947년에 시작한 것이 제1차 인-파전쟁이었다. 총돌은 1년 4개월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결착을 보지 못하고, UN이 조정애 뛰어들었다. 그 결과, 카시미르를 분단하는 정전라인이 그어지게 되었다. 이 정전라인은 카시미르지방을 분할, 약 6할에 해당하는 동측을 자무 카시밀주로서 인도의 지배지역으로, 나머지 4할의 서측지역을 아자드 카시미르로서 파키스탄이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UN의 조정안에 납득했던 것은 아니다. 그 후도 영유권을 둘러

싼 양국간의 분쟁을 계속, 1965년에 제2차, 1971년에 제3차 인-파전쟁이 발발, 현재의 정전라인에 이르고 있다. 이 인-파전쟁에 뛰어든 것이 중국이다. 1962년에 인도와 국경분쟁을 일으켜, 카시미르지방의 일부를 중국지배지역으로, 아악사인 첸이라고 명명하고 말았다. 인도는 카시미르지방을 둘러싸고, 파키스탄과 중국 양국과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도가, 왜 카시미르지방의 영유권에 관해 반세기나 싸움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는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인도 주내의 이슬람교도가, 카시미르에 이어 분리,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슬람교도뿐 아니라, 힌두교도 이외의 종파나 소수민족이 차례차례 독립을 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자, 인도로서는 수습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카시미르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1984년에는 파키스탄과의 국경근처에 위치하는 판잡 주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크교도들이 운동을 과격하게 전개, 진압하려 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 당시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를 암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의 나라를 분단시키고 만 카시미르지방의 사람들은 과연 인-파 어느 쪽에 귀속을 바라고 있었을가.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국인 파키스탄에의 귀속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인도에의 귀속되고 만 잠 카시미르의 사람들의 심정은 파키스탄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잠 카시미르 사람들 사이에서, 파키스탄에의 귀속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일은 없었다. 파키스탄의 정정불안이 그 이유다. 파키스탄에서는 독립 후에 쿠데타가 발발,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인도와의 분쟁에 더해 내전이 끊이지 않고, 1971년에는 동 파키스탄이 독립을 요구하는 전쟁을 시작, 방글라데시로서 독립하고 만다. 심정적으로는 파키스탄이 기울기는 했으나, 오직이 횡행하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귀속하는 것을 카시미르 사람들은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잠 카시미르 사람들이 인도의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7년에 귀속문제를 결착할 때, 번 주는 인도에도 파키스탄에도 속하지 않고, 카시미르는 독자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카시미르 사람들에게 독립의 꿈을 서로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藩內에서 일어난 이슬람교도들의 폭동을 구실로 파키스탄이 무력

개입하고, 1974년에 제1차 인도-파키스탄전쟁이 발발. 이렇게 하여 카시미르는 인-파분쟁에 휘말려 들어갔던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카시미르의 주민들로부터는 인도에도 파키스탄에도 속하지 않고, 분리, 독립해야한다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 가운데는 무력투쟁도 불사한다는 테러조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에 귀속한 잠 카시미르지방에서는 인도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 이슬람교도의 테러조직이 차례차례 탄생해 갔다. 대표적인 그룹으로, 1965년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잠 카시미르해방전선(JKLF)나, 1989년에 결성된 파키스탄에의 귀속을 요구하는 무자히딘 당 등이 있다. 잠 카시미르 주 내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투쟁은, 1990년대에 들어 더욱 격렬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파간의 분쟁이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폐쇄감이 생겨난 것이 관계하고 있다.

제3차 인-파전쟁 후의 정전협정 '시무라 협정'에서 양 국은 미해결의 문제는 2개국간에 해결한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킨 인도가, UN을 비롯한 제3자에 개입돼, 파키스탄에 기운 중재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적어도 1949년의 제1차 인-파전쟁 종결 때에, UN이 결의한 '잠 카시미르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집착. 국제사회의 중재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양 국간의 교섭이 평행선을 그린 것은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해 갔다. 국제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인도가 1998년 핵실험을 단행하자, 파키스탄도 이에 지지 않고 곧 실험을 하는 등, 불온한 공기가 떠돌게 되었다.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은 인-파항쟁이 잠 카시미르주민 자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기운을 높여가고 있었다.

동시에, 주내에도 오직이 횡행하고 있고, 분쟁에 의해 산업이 활성화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실업자가 증가, 잠 카시미르 주는 경제적으로 열악해 갔다. 그들이 그것의 돌파구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활로를 무장투장에서 찾은 것도, 독립운동의 기운이 크게 된 것의 한 원인이다.

잠 카시미르 주내의 이슬람교도 가운데서부터, 과격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그룹이 차례차례 대두해, 폭파 테러를 비롯한 테러활동을 전개해 갔다. 2000년이 되어서도 테러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1월부터 겨우 8개월간에 7건의 테러사건이 발생, 1백 명이 넘는 사상사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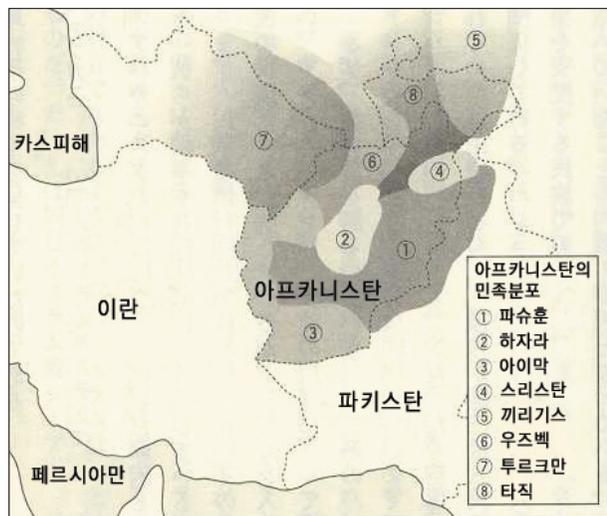
그들 중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에 촉발돼, 특히 과격한 행동을 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일부는 '성전' (지하드)을 내세워, 잠 카시미르 주

내에서도 테러를 자행했다. 동시다발 테러 이후도, 잠 카시미릴 주의 주도 스리나갈 주회의 의사당에서 시민 40명의 사망자를 내는 폭파테러를 실행하는 등, 과격함은 더욱 증대하고 있었다. 과거는 같은 이슬람교도로서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있었던 파키스탄정부도, 이것을 테러행위라고 명확하게 비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였다.

다 함께 핵을 보유하는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립관계에 더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더해진 카시미르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과연 해결될 날이 찾아올 것인가.

### ■ 아프카니스탄 내전의 원인은 국경을 뛰어넘은 민족분포

2001년9월11일에,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DC등에서 동시에 발생한 다발테러를



▲ 아프카니스탄 내전지도.

계기로 하여, 아프카니스탄에서의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아프카니스탄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달리반 정권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격파. 그 모양은 연일 뉴스 등으로 세계로 방영돼, 달리반정권이 강력한 군사력 앞에 패주해가는 모양이 전해지고 있었다.

아프카니스탄은 새로운 구조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설치, 세계 각국 및 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단계이며, 달리반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아프카니스탄의 분쟁에는 일정의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한편, 아프카니스탄에서 30년을 넘는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과, 그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부터는 아프카니스탄에 평화가 진정으로 찾아올 것인 가하고 의문시하는 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아프카니스탄의 국민들이 피로 피를 씻는 내전을 반복해온 배경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복잡한 민족문제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소련군에 대해서, 나약한 무기밖에 없었던 아프칸 군은 간단하게 격파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산악지대가 많은 국경부근의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릴라전이 대국 소련을 고전으로 끌고 갔다.

이해를 나누고 있는 대국의 간섭 등, 다양한 원인이 내포되고 있다. 이 문제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프카니스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의 내전이 빈발하는 요인은 1978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아프카니스탄 인민민주당이 정권의 중심을 차지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신정권의 배후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획책한 구 소연방의 지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 아래 아프카니스탄 인민민주당이 추진한 정책 속에, 이슬람 사회인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회상식을 일탈하는 농지 사유제한도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권은 소련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생각대로 아프칸 정부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소련은 대국의 군사력을 고무하는 것으로 복종시키려 실력행사에 나선다. 그것이 79년에 시작된 아프칸 침공이었다. 침공에 수반하여, 소련은 아프카니스탄에 괴뢰정권인 칼말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이것에 승복치 않는 아프칸 국내의 불만분자는 소련과 정부군에 대해서 철저저항을 도발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소련군에 대해서, 나약한 무기밖에 없었던 아프칸 군은 간단하게 격파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산악지대가 많은 국경부근의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릴라전이 대국 소련을 고전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아프칸 군의 선전의 배경에는 소련을 적으로 여기는 타국의 지원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소련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미국은, 아프칸 군을 전면적으로 백업했다. 소련이 침공을 그만두고, 철수를 개시한 88년까지 미국이 백업체제는 계속되었다. 소위 아프칸에서의 정부군과 반정부군과의 싸움은 미-소의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아프칸 내전이 장기화한 원인으로는 복잡하게 민족들이 뒤섞여 있는 민족사정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사정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민족사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이 ‘아프칸은 아프칸 인이 주류민족이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아프칸 인이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아프칸에는 많은 민족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최대수를 자랑하는 것이

2001년 9월 11일 미국동시다발 테러 발생을 받아, 미국은 주모자를 빈 라덴으로 지목, 보복공격을 아프칸 전국에서 전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슬람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데 실패, 달리반정권이 붕괴해 갔던 것은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있는바와 같다.

파키스탄계의 파슈툰 인. 아프칸 전체 인구의 38%를 점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복공격을 받기까지 아프카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던 다리반의 멤버도, 이 파슈툰인이었다. 공폭이 개시될 때까지는 달리반이 국내에서 지지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국내최대민족인 파슈툰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파슈툰인은 최대의 인구를 자랑할 뿐 아니라, 국내의 주요한 무역산업을 지배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이러한 파슈툰인 지배에 대해서, 다른 민족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도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 면에서, 다음으로 많은 것이 25%를 점하는 페르시아계 타지크인들이다. 이어 몽골계의 하자라인이 19%, 터키계의 우즈베크인이 6%. 이렇듯 주요민족 이외도 많은 민족들이 혼재하고 있는 점이, 아프칸의 민족구성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같은 파슈툰인이 파키스탄에도 다수 생활하고 있는 등, 각 주요민족들이 국경을 넘어 분포하고 있는 점이다. 그 때문에, 아프칸 정세에 주변국의 걱정과 이해가 연결되어 있다. 파키스탄이 달리반 정권을 승인한 많지 않은 국가였음도, 같은 파슈툰인에 이해를 나타낸 것도, 그것에 수반된 이익을 아프칸으로부터 얻기 위해서였다.

종교에 대해서는 아프칸이 이슬람국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체인구의 8할은 이슬람교의 순니파가 점하고 있으나, 하자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외에도, 순니파의 일파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인 워하브파, 이슬람신비주의 스피파의 사람들도 있다. 후에 말하는 이라크와 이란의 싸움이 순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기도 한 것과 같이, 같은 이슬람교도라고 하더라도, 종파의 차이가 대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이란이 하자라인을 지원, 내전을 장기화시키는 한 원인이 된 것도 그 한 예다.

“아프칸 국경선을 모두 철조망으로 둘러치면, 내전을 종결한다.” UN 브라히미 특사가 과거 한 말이다. 물론 공수 등의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 주변제국에서 무기나 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사의 말은 공상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타국의 이해관계를 배제한다고 하는 비유로서 특사의 말을 해석하면, 아프

칸 내전을 해결로 유도하는 힌트가 숨어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민족과 종교사정에 의해, 소련철수이후의 아프칸은 내전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반 소련을 표방하고 결집한 무자히딘이 이번에는 민족간의 불협화음을 반영한 내부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무자하딘의 세력도는 라바니가 이끄는 타지크인 주체의 이슬람 원리주의파 이슬람협회, 구 아프칸 정부군의 두즈담 장군이 이끄는 우즈베크인 주체의 민족이슬람운동, 헤쿠마추알을 중심으로 결집한 파슈툰인 주체의 이슬람당, 하리리사가 통솔하는 하자라인 주체의 이슬람통일당 등이 군웅 활거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 카블을 제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으로, 각파는 카블 공략을 목적으로 격렬한 싸움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항쟁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난 것이, 이슬람협회였다. 92년에는 라바니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나, 파슈툰인의 유력자를 비롯한 반대세력의 저항을 억제할 수 없었다. 94년에는 반대세력이 도발해오는 등, 아프칸에 평온한 날이 찾아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돌연 나타난 것이 달리반이었다. 달리반은 94년에 파키스탄에 도망해 있던 신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슬람원리주의의 그룹이다. 그들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장노파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해 갔다. 96년에는 라바니를 내고 수도 카블을 제압. 국토의 9할까지를 제압하기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달리반은 엄격한 이슬람원리주의를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알려져, 남성은 수염을 기르는 것, 여성은 취업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자유주의 사회로부터는 악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기 이전, 그들은 파슈툰인이 주력이었던 점, 치안을 안정시켰던 일 등으로부터, 국민의 지지가 낮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달리반 세력의 선택미스라고 할 수 있을까.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 테러조직 알카이다와의 관계를 깊이 했다. 달리반도 반 이슬람의 상징으로 미국을 적대시, 경제적 원조 등을 받아 알카이다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동시폭파사건에 오사마 빈 라덴이 관여했다며, 그를 옹호하는 아프칸에 미군이 미사일을 퍼붓는 등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동시타발 테러 발생을 받아, 미국은 주모자를 빈 라덴으로 지목, 보복공격을 아프칸 전국에서 전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슬람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데 실패, 달리반정권이 붕괴해 갔던 것은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다.

달리반 붕괴 후는 UN등의 주도로 달리반 후의 정권의 구조가 협의되고 있다. 각 민족을 배려한 각료직을 배분하여 신중하게 국가의 재건을 도모하려하고 있으나,

다스담 장군이 불만을 표명하는 등, 일찍부터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외에 피난한 사람들의 난민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그 판단은 조금 더 정세를 관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

## ■ 티베트, 新疆위글자치구의 독립이 관련된 중국 ‘국내국경’문제

동아시아 최대의 면적을 가진 인도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광대한 면적을 자랑하



▲ 중국 티베트-신강 국내국경.

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그만큼 국경을 접하는 나라도 많아, 도합 14개국과 대륙을 나누고 있다. 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 수많은 자치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지역인구의 규모에 의해 5개의 自治區, 30개의 自治州, 121개의 自治縣으로 나눠 통치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 국내의 국경에 관해 문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중국은 1949년 毛澤東이 공산주의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한 이래, 인민해방군을 국경부근에 주둔시켜,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 독립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던 지역이나 타국에 속하고 있던 지역 등을 자국으로 편입해 갔다. 56개의 민족이 존재하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인구의 9할 이상을 점하는 한족과 그 밖의 소수민족이라는 극단적인 인구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최대부족인 한민족이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더러는 협조하고, 더러는 대립하는 역사를 오래전부터 반복해 왔다. 한의 光武帝 시대에 영토를 넓혀가던 몽골과의 국경선부근, 청조시대에 통치아래 있던 티베트국경부근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일대를, 중국이 차례로 편

입해 갔던 것이다. 이때 중국은 ‘영역내의 각 민족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수립, 제국주의에서 자국민족을 지키고, 중국의 대가족주의에 귀속시키려 했다. 동시에, 민족의 자치권이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협약을 체결해갔다. 이러한 소수민족주체의 자치구가, 중국 국내에 생겨났다.

그러나 평등이나 자치권은 이름뿐으로, 실제로는 한민족에의 동화정책을 취한데 지나지 않아, 자치라는 것은 중국정부의 관리의 범위 내에서의 자치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관리아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중앙과 같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자치구 속에는 불만을 누적한 區가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다. 또 소수민족들이 생활하는 자치구에, 한민족이 이주하는 정책도 진전되었다. 평등이라는 이름아래의 동화정책이었으나, 이 정책에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 소수민족도 있다. 그들 불만이 자치구의 독립운동을 발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5개 자치구 가운데, 특히 독립운동의 불을 가열시킨 것이 티베트자치구와, 신강 위글자치구였다. 둘 모두 민족의 종교적인 배경이 중국의 중심부와 다른 것이 독립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티베트자치구, 밀교계의 불교인 라마교에 의한 종교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의 문화를 키워온 지역이다. 중국전체의 1/8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을 자랑, 인구밀도는 낮다. 崑崙山脈과 히마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비경이며, 7세기부터 라마교의 지도자 주도의 국가체제가 설립되어온 지역이다.

제2차대전 종료 시까지, 티베트는 라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14세의 지도아래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1950년에 정교일치의 봉건국가에서의 해방을 명목으로 동 티베트에 진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17조로 이루어진 티베트의 평화해방에 관한 협정, 통칭 ‘티베트 협정’을 체결, 티베트전역을 지배하고 말았다. 그 후, 한민족에 의한 지배체제가 구축돼, 라마교에 대해서 종교탄압이 행해졌다. 이에 반발하여 달라이 라마와 승려 일부, 그리고 농노 주들 약 2만 명은 1959년에 독립을 제창 반란을 일으키나 4일 만에 제압돼,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사라로 망명. 거기서 망명정부를 수립한다. 이 망명정부를 인도에서 일으킨 것으로, 드디어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개입하지 않고, 라마교 넘버2의 판찬 라마10세를 전인대상무부위원장의 자리에 앉혀, 티베트의 라마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의 분단을 획책했다. 그리고 1965년에 티베트자치구인민대표회의를 개최. 티베트가 중국의 자치구가 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한편 중국북서부에 위치하는 신강위글 지구는 터키계의 위글 인이 많고, 이슬람교가 주류인 지역이다.

중국은 1949년 毛澤東이 공산주의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한 이래, 인민해방군을 국경부근에 주둔시켜, 제2차세계대전전까지 독립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던 지역이나 타국에 속하고 있던 지역 등을 자국으로 편입해 갔다.

18세기에는 청조의 지배아래 있었으며, 1944년에는 위글 족은 카자프 족과 손을 잡고 동투르크스탄공화국을 수립. 새로운 국경선을 긋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동투르크스탄공화국은 해산당하게 되었다. 55년에는 우루무치를 區都로 하는 중국의 자치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 티베트자치구와 같이 민족의 평등이라는 명분아래,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엄격한 탄압이 가해지게 되고, 중국 각지로부터의 한민족의 이주도 추진되었다. 그 결과 자치구성립당시에는 전체의 7%정도밖에 거주자가 없었던 위글 지구의 한민족은 오늘날에는 4할을 넘어, 구내의 최대민족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이대로는 한민족에 이슬람 대대의 토지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이 위글 자치구의 이슬람교도 사이에 높아져 갔다. 그 결과 중국의 자치구로서가 아니라, 다시 동투르크스탄공화국으로서 분리 독립, 자국의 국경선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 내지는 신강위글 자치구 어느 하나의 독립을 인정하고 말면, 한민족주도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다른 민족 집단들이 일제히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자치구독립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양 자치구 이외에도, 몽골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몽골자치구로서의 몽골과 국경을 분단시키고 만 자치구 등, 중국의 중앙정부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진 소수민족에 자극을 주는 일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독립을 허락하면 자국의 영토가 좁아지고 마는 리스크도 있다. 티베트자치구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자치구의 대부분은 인구밀도가 낮은 대신에 영토는 넓다. 그 때문에 자치구를 잃고 말면, 넓은 국토의 중국이 슬림화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국사상과 모순된다. 그때문에, 티베트자치구에서 망명한 달라이 라마14세가 평화활동을 평가받아, 1988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제적인 여론이 중국에 비판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도, 중국은 자치구를 견지한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달라이 라마14세의 활약에 자극된 듯, 티베트자치구에 남아있던 라마교도들은

가끔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89년에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 '티베트동란'의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1만 명 규모의 폭동이 발생, 이것을 진압하려고 하는 중국 공안부대와 충돌, 다수의 사상자가 나는 소요로 발전, 이후, 1년 2개월에 걸쳐 계엄령을 발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 신장 위글 자치구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교도 가운데서부터 과격한 테러행위도 불사하는 그룹이 출현, 97년에는 북경의 변화가에서 버스의 폭파테러를 일으킨 것을 비롯, 구도 위글에서의 연속폭파테러 등에 관여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신세기를 맞이해서도 소멸하지 않으며, 무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면, 세계 각국에서 비난을 받는다. 북경에서 올림픽개최권을 얻어낸 북경으로서는 평화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다. 자치구의 독립운동이 중국정부에 있어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 ■ 달라이 라마4세의 망명이 계기가 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의 '국내국경분쟁'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티베트 자치구나 신장위글 자치구의 문제는, 중국국내의 문제로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각국과의 사이에, 국경을 둘러싼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와의 사이에 일어난 국경분쟁도, 그 계기는 중국의 자치구인 티베트

의 독립운동이 계기가 되어 나타났다고 해도 좋다. 접하는 국경선이 긴 양국으로서는, 그 이전부터 국경을 둘러싼 문제는 수없이 지적되어와, 양국의 현안사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상태로까지 이 문제가 발전한 것은 중국이 국내문제라고 세계

적으로 주장하는 티베트자치구의 문제가 관계되고 있다.

이미 소개한 것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은 라마교의 최고권위 달라이 라마를 수장으로 하는 독립국이었던 티베트를,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했다. 1956년에, 달라이 라마를 위원장으로, 중국공산당에서 부위원장이 취임하는 형태로 자치구의 운영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실태는 인사권에서 정책결정까지가 중국의 중앙정부의 콘트롤 아래 있는 괴뢰정권이었다.

특히 달라이 라마가, 이것도 라마불교의 지도자인 판친 라마와 함께 인도에서 개최된 ‘석가탄생2500년제’에 참가하기 위해 티베트를 떠난 것을 계기로, 개혁의 지체를 이유로 군대를 대폭 증원하여 중국주도에 의한 개혁을 강제하게 되었다. 개혁의 내용 속에는 티베트민족이 신공하고 있던 라마교를 탄압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티베트민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앞에서 소개한 대로다.

1959년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도망, 거기서 망명정부를 수립한다. 이 망명정부를 용인한 것이 불교의 탄생지기도 한 인도였다. 이것을 계기로 국경을 둘러싼 축적되어 있던 감정에 불을 지피, 양 국의 국경에서 군사충돌이 발발하고 만 것이다. 당초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은 공식적인 합의아래 획정된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국경이거나, 관습을 이어 애매한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도를 열어,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을 확인하면, 국경은 티베트, 신강위글, 네팔, 부탄, 시킴, 카시밀까지 미치고 있다. 쌍방에 있어,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아주 먼,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특히 왕국인 네팔이나 부탄 등, 국경부근에는 특수한 지역이 펼쳐져 있으며, 이들 다양한 이유로, 명확한 국경선이 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이렇게 애매한 국경선이, 양 국이 군사충돌을 할 정도로 쟁점이 된 것은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의 일. 중국은 티베트자치구를 비롯한 인도와의 국경에 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인도도 오래 계속된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지배에서 탈피, 독립을 쟁취하고 있었으며, 애매하면서도 영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지역으로 자부하는 인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지역까지 침해하는 중국의 국경선 구획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국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티베트국경부근 뿐 아니다. 크게 나누면, 서부, 중부, 동부의 3지점으로 볼 수 있다. 각 지점별로 분쟁의 중심내용을 살펴보자.

서부에서는 중국의 신강위글자치구의 남측에 펼쳐진 3만 평방키로의 일대의 국

달라이 라마가, 이것도 라마불교의 지도자인 판친 라마와 함께 인도에서 개최된 ‘석가탄생 2500년제’에 참가하기 위해 티베트를 떠난 것을 계기로, 개혁의 지체를 이유로 군대를 대폭 증원하여 중국주도에 의한 개혁을 강제하게 되었다.

경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이 일대를 중국이 아쿠사이첸, 인도가 라다구지구로 각각 다르게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도, 쌍방의 대립의 구도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국경은 미확정이라고, 아쿠사이첸 지구는 모두 중국 측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도도 라다크 지구는 모두 인도영토라고 양보하지 않는다. 즉 같은 영토를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서,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부는 잠무 카사밀 지방의 동남부에 해당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어진 7~8천미터 급의 약 13만 평방키로의 지역이다. 서부와 동부는 인도로서는 파키스탄과의 항쟁을 계속하는 카시미르지방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분쟁에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될 사정이다. 동부국경에 관해서는, 국경을 정한 마쿠마혼 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1914년에, 영국, 중국, 인도의 대표가 시무라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 히마라야 산맥에 접한 국경라인을 정한 협정 ‘시무라협정’에 의한 것이다. 영국 대표였던 헨리 마쿠마혼 경의 이름을 딴 국경라인이나, 인도는 동부-중부 일대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이 마쿠마혼 라인이 국경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마쿠마혼 라인을 부정, 인도가 자국의 영토로 하고 있는 브라후마프트라 강의 북쪽이 국경선이라고 주장. 이 일대에 관해서는 양자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정해진 국경선이기 때문에, 인도 측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쿠마혼 라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부인하는 이유에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시무라협정이 체결될 당시, 중국은 신해명후의 중화민국이 성립, 아직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로, 국내의 기반설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중화민국이 인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체결된 조약이 공평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특히 마쿠마혼 라인에 의하면, 인도 측에 속하는 아삼지방의 일부가 되는 사부몬탄이라는 일대는 소수민족 나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들의 종족에서 비롯된 종교, 풍습, 사회기구 등은 모두 티베트계였다. 마쿠마혼 라인이 설정될 당시는 티

베트는 중국의 자치구가 아니었으며, 티베트와 관계가 깊은 나가족이 사는 지역은 당시 독립국인 티베트에 속해야 할 지역이며, 티베트가 그 후에 중국에 편입된 것을 생각하면, 그 일대는 중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마쿠마혼 라인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 그어진 국경선은 아니다. 소위 대국의 대표들이 편의적으로 그은 국경선이며, 그 결과로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티베트동란을 계기로, 1959년에 인도와 중국 양군은 국경을 둘러싸고 대결. 동부와 서부의 2개소에서 전투가 개시되었다. 싸움은 약 8개월간으로 중국 측의 승리로 끝났고, 그 후 61년, 62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 결과는 언제나 중국군의 승리로 끝나, 인도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사태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62년11월, 돌연 종전을 제안한다. 그 내용은 정전하던 날, 동부에서는 마쿠마혼 라인을 넘어 침입하고 있던 중국군이 후퇴할 것. 서부에서는 실제의 지배선에서 20키로 후퇴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인도측은 서부에 대해서는, 62년에 중국이 대규모적인 진격을 개시하기 이전의 선까지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중국 측의 제안을 거부.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후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전상태가 결과되게 되었다. 중국은 국경의 새로운 경계를 국제적인 대화의 장소에서 행할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 흐름을 받아, 세이론 (현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랍연합, 비르마 (현 미얀마), 인도네시아, 가나의 6개국이 모요, 콜롬보에서 조정안을 만들었다. 이 회의에 합의된 조정안은 3개의 지역별로 정리되었다.

먼저, 서부에 관해서는 분쟁 전에 존재하고 있던 실제의 지배 선에서 중국은 20키로 후퇴, 인도군은 중국이 점령한 거점을 점거하지 않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보기까지 비무장화한다고 하는 제안이었다. 중부는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으로, 동부는 양 국이 출입하지 않는 지점을 설정, 마쿠마혼 라인을 정전 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인도는 이 조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수락을 결정했다. 중국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문제가 남아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도, 이 이상은 전쟁에 뛰어들기 싶지 않았던지 원칙적으로 수락할 방침을 택했다. 상당기간 양 국간에 긴장관계는 계속되었으나, 69년, 인도의 간디수상이 중국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화해무드가 형성됐다. 그리고 76년에는 대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인도관계의 정상화가 실현됐다. 77년에는 무역관계를 체결하는 등, 국경을 둘러싼 대화도 드디

어 재개할 상태가 시작되었다. 96년에는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이 방인 하는 등, 우호관계가 강화, 국경을 획정할 협의회도 몇 차례나 개최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도 양 국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둘러싼 문제다. 2000년에 活佛 칼마파2세가 자치구를 탈출,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사라에 도착,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달라이 라마14세는 인도정부에 체제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인도정부는 중국외무성이 요구한 신중한 대응의 요청을 무시하여 난민자격을 승인했다. 인도의 나라나센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칼마파 17세에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국을 위로하는 외교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이에 의해서는 다시 중국이 태도를 경화시킬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 ■ 미확정 국경이 엄청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분쟁에서 정전을 제안한 것은 앞에서 소개한대로나, 중국에 대해서는 대 인도전에 전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현재는 과거의 흔적이 없어졌지만, 당시는 북방에 대국 소련이 인접하고 있고, 그 국경선을 둘러싸고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소련. 다같이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국들이나, 동쪽은 동해의 우라지보스톡 부근에서, 남북으로 접하면서 유라시아대륙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 국경선은 우스리 강에서 아물 강변을 따라 늘어져 있고, 특히 몽골의 고비사막을 서쪽으로 횡단하게 펼쳐져 있다. 소련시대에는 국경의 서쪽이 중앙아시아 고원까지이며, 7천키로도 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양국간의 국경선이었다. 이 긴 국경선을 둘러싸고, 두 사회주의 강대국끼리 수천 번이 넘는 충돌을 반복해 온 것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국간에 이렇게 국경충돌이 많은 것은 물론 양국간에 아무런 협정도 없는 미확정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양국에 있어, 국경이라는 생각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국경부근의 분쟁에서도, 일정 지역에서 일어난 세력다툼이라고 생각, 양 국의 수뇌들 사이에 국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장을 만들려는 기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국가레벨에서 국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은, 청조와 제정러시아시대인 1689년의 네르친스크조약이 최초다. 단지 이것도, 흑룡강 부근에

양국간에 이렇게 국경충돌이 많은 것은 물론 양국간에 아무런 협정도 없는 미확정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양국에 있어, 국경이라는 생각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진출하려는 러시아군을 군사력으로 물리친 청조가 일대의 영토권을 지키는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경에 대한 명확한 선이 획정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제국은 이 조약의 불비를 틈타, 1858년, 아편전쟁의 패배 등으로 세력이 약해진 청조와 愛輝條約을 체결. 이것은 흑룡강 부근의 영유권을 확보, 청조 내에 흐르는 강에 러시아 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해 할 수 있는 등, 러시아 측에 유리한 내용이였다. 청조는 일단은 이 결정을 인정했으면서도, 그 후 다시 이를 부인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러시아는 청조의 부인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청조와의 공동관리지역을 새롭게 러시아령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 이것이 청-러 간의 北京條約이다. 특히 청령이었던 신강위글지구에서의 이슬람교도의 반란을 계기로, 이리조약을 체결 이리지방의 일부는 손에 넣는다. 이렇게 하여 청조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을 차례차례 체결함으로써 러시아는 중국 영토를 손에 넣 어갔다. 그러나 청조에 이어 중화민족이 탄생한 이후 중국에 대해, 러시아혁명에서 제정이 붕괴한 러시아는, 일방적인 조약에 의해 얻은 영토의 기득권익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중화민국과의 원활한 외교관계를 중시한다. 1924년에 중소국교회복조약을 체결, 그때까지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파기했던 것이다.

중국 측으로 보면, 중소 국교회복조약은 나쁘지 않은 조약이였다. 그러나 이 조약의 체결로 중국과 소련의 국경이라는 문제는 다시 애매한 체 계속되게 되었다. 그것도 일단 영토를 빼앗아 자국의 것으로 한 소련 측으로는 영토를 반환하는 것에 의 한 불만이, 중국 측에는 자국의 영토를 침략 당했다고 하는 굴욕이 마음깊이 남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후일 양국의 국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자,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과 동맹관계를 체결. 모택동과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대는 양 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배려로부터 국경문제에 대해 분쟁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밀월관계였던 양국에, 험악한 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국가로서 발전방향의 차이가 생겨 나게 된 것이다.

1956년, 소련방은 제20차 공산당대회를 개최, 유명한 스탈린 비판을 행하고, 자

국의 사회주의정책이 방향전환을 할 것을 국내외에 선언한다. 이 스탈린 비판을, 소련이 수정주의에의 제1보를 내딛는 것으로 중국은 파악, 경계감을 품게 된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일어난 후인 66년에는, 소련을 '사회주의제국' 이라고 규정, 철저히 투쟁해 갈 것을 제11차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했다. 그것에 대해서 소련도 중국을 '반 레닌주의의 대국주의' 라고 비판. 같은 사회주의국가끼리면서도, 반목이 높아갔던 것이다.

이 양국 간의 대립 가운데 재 부상한 문제가, 국경을 둘러싼 문제였다. 중국이 과거에 체결한 조약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소개한 청조가 러시아제국과 체결한 조약 등은, 러시아가 무력에 의해 강요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한편 소련은 역사적인 경위에 따라 성문화되어 정해진 국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북방영토반환요구에 대한 역대 소련 수뇌 진들이 취한 반응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경을 둘러싸고 전혀 의견을 달리하는 양국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봐도 좋았다. 사실 69년3월에 중소국경을 흐르는 우스리 강에 떠 있는 다만스키 섬이라는 작은 섬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던 다만스키 섬에 중소의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쏘며, 흰 백설에 붉은 피를 물들였던 것이다. 중소 양국 모두 상대가 자국의 영토 내에 침입하려 했다고, 제지를 하려하자 상대가 먼저 발포했기 때문에 이에 응사했다고 발표. 전혀 상반된 주장을 반복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국경을 둘러싼 양 국가간의 적개심이 축적되어 갔던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무르 강의 골진스키 섬 사건, 서부유민지구사건 등, 양국의 충돌사건은 연이어 발생했다. 작은 충돌까지 포함하면, 국경을 둘러싼 양국의 충돌은 수천 건이 넘었다.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국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여 교섭의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여러 번 있긴 했다. 그러나 교섭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복잡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는가.

먼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과거에 체결한 영토에 관한 조약은 불평등조약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소련 측의 주장의 대립이 있다. 또 하나는 평화적 해결을 곤란하게 했으나, 국경분쟁지구의 병력에 대한 양국의 생각의 차이였다. 중국 측은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분쟁지구로부터 병력을 철수할 것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국경에는 수 만 평방키로가 넘는 분쟁지구가 있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병력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의 장에서도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드리려 하지 않았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 등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분쟁이 없는 자국의 영토에, 병력을 주둔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소련이 정할 일로, 해외로부터 간섭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면, 영토 문제의 대화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영토의 반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것은 소련 측에 있어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드리기는커녕, 반대로 비난을 시작하였다. 군대를 철수하는 것으로, 소련시민을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 중국이 분쟁지역이라고 말하는 일대를 공략, 자국의 영토로 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양국의 평화적인 해결은 커녕, 해결을 향해 한층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갔다.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양국의 국경문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소련방공포가, 양국의 국경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 광대한 영토를 획득, 강대한 힘을 과시하고 있던 소련방도 경제 파탄으로 붕괴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종언을 맞이해,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차례차례 독립을 선언했다. 특히 체첸을 비롯,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도 왕성하게 되어 갔다. 이러한 독립문제의 대응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러시아는 중국국경 부근에서의 병력배치에 관해, 경제적여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부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국경문제에 관해 중국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측도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만드는 정책을 결정하여 움직임을 시작했다. 96년 4월에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강택민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가 거듭되어 갔다. 그 결과, 분쟁이 다발하고 있던 국경선일대에 관해서도, 양국간에 합의가 형성, 차례로 국경선이 확정되게 되었다.

과거 존재하지 않던 양호한 관계가 양국간에 구축되어 갔으나, 이 배경에는 국경을 접하는 대국끼리 분쟁을 일으켜 국력을 피폐시킴으로써, 미국의 일국지배체제가 조장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국경부근 사람들은, 과거에 반복되어 온 흥망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불평등조약에 의해, 차례차례로 영토를 빼앗아 갔던 러시아에 대한 원망은 중국에서 간단히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중국이, 보다 넓은 영토를

찾아, 언제 국경을 넘어 시베리아 부근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경계심을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심리가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경계심을 자극,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영토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파트너십을 체결한 양국이긴 하나, 다시 국경문제로부터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은 분명 아니다.

## ■ 6개국간 분쟁-스푸라토리제도의 행방



▲ 스푸라토리 제도.

스푸라토리 제도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브루나이섬, 필리핀, 특히 대만이나 중국이라는 각국에 둘러싸인 남중국해 속에서, 최남단에 위치하는 섬들이다. 크고 작은 96개의 섬들과 암초로 형성되어 있으나, 최대의 太平島에서 마저 0.5평방키로, 보통공원 정도의 너비밖에 없다. 대부분은 만조 때는 바다에 가려버릴 정도의 암초

이며, 수심도 200미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으로 가까이 가면 좌초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좁고, 작은 섬들을 둘러싸고,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6개국 사이에 격렬한 대립관계가 생기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남지나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 1974년에는 베트남과의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정도다.

그 정도로 스푸라토리 제도에 고집할 이유는 무엇인가, 고개를 기웃 등 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유의 하나로, 스푸라토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주변해역은 필리핀북부와 중국 동남부를 연결하는 바시 해협이나, 마라카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고 있는 등, 해상수송을 할 때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섬을 영유함으로써, 주변해역의 영해권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와의 무역관계를 전개할 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스푸라토리 제도 주변의 남중국해역 일대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100억 톤-200억 톤 등으로 예측되는 석유가 매장되고 있다고 알려져, 각국 모두 이권에서 보면 손을 뻗히게 되었다. 이미 개발된 유전에서는 양질의 경질유가 산출돼, 이곳으로부터는 휘발유를 비롯한 각종 기름이 많아 채굴되고 판매가도 높다. 미개발의 해저유전에도 같은 경질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풍부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가운데, 이들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수출도 가능한 것은 일국의 경제에 있어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를 제압하는 나라는 21세기를 제압한다.’ 각 국은 이 키워드에 뜨거운 시선을 스푸라토리 제도에도 향하고 있으나, 각 국이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스푸라토리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를 둘러싸고는, 6개국이 서로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영유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역사적 경위에서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권을 고찰하면, 실은 일본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오늘날과 같은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 구조를 만들어 낸 장본인은 일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스푸라토리 제도에 눈을 뜬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결말을 향하고 있던 1918년경이었다. 남방으로의 진출을 의식하기 시작하던 일본은 스푸라토리 제도로부터 철광석이 산출되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스푸라토리 제도에 진출. 일본기업이 채굴을 시작시켰다. 제1차대전 후에 남양 진출을 도모했던 일도 있어, 남중국해는 일본에 있어 매력적인 진출지역의 하나였던 것이다.

38년에는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를 선언, 섬 이름을 新南群島라고 명명했다. 그 이후 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기까지, 스푸라토리 제도를 계속 자국의 영토 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군도에 있는 태평도는 일본이 개발한 섬이며, 지금도 섬에는 수도시설이나 관음당이 남아있을 정도로, 일본이 영유한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패전에 의해 일본은 이들 섬의 영유권을 포기한다. 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영유권을 포기는 정식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때, 섬의 귀속국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후일 이 제도의 영유권문제를 복잡하게 하게 된다.

귀속국의 결정에는 일본은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영유권

개발된 유전에서는 양질의 경질유가 산출돼, 이곳으로부터는 휘발유를 비롯한 각종 기름이 많아 채굴되고 판매가도 높다. 미개발의 해저유전에도 같은 경질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문제에 일본은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다음해 52년, 당시 일본정부의 외상 岡崎勝男은 일본의 어떤 출판사가 만든 지도를, 처음부터 일본이 정식으로 인정한 지도인 것처럼 서명했다. 그 지도의 남중국해 일대는 모두 중국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정부고관들은 이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 중국에 영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중국의 영유를 동의했다고 중국은 주장. 강기외상의 서명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던 것이다. 부주의한 서명이 국경문제를 더욱 복잡한 문제화 하고 말았던 점은 일본도 책임의 일단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현재 영유권을 주장하는 6개국이 각각의 주장에 근거, 40개 이상의 섬이나 암초를 점령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 어느 것이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의 국경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 각 국에서 보다더 경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동향이다. 92년에는 영해법을 제정,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를 명기하는 등, 일관되게 제도는 모두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석유회사에 베트남 만에서의 석유개발의 권리를 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외에도, 92년에 스푸라토리 제도의 암초를 무력점거하기도, 제도의 동쪽 끝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의 건조물을 강화하는 등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ASEAN제국은 중국의 남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타국이 제도의 일부를 영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중국은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 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서, 해결의 구실을 찾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ASEAN제국으로부터 경계되고 있는 것을 의식, 동남아시아제국 전체를 적으로 하기보다는, 2국간의 협의에 뛰어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미스치프 암초의 건조물 강화에, 보다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이다. 필리핀도 79년에 사실상, 스푸라트로리 제도의 영유를 선언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EEZ)등을 기본으로 국경의 구획을 생각, 8개의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EEZ라는 것은 영해(해안으로부터 12카이리=약22키로이 내)의 바깥쪽에, 200카이리(약370키로)까지 설정할 수 있는 해역이다. UN해양법 조약에 의해, 연안의 국가는 경제자원의 탐사나 개발의 권리가 보장돼, 인공 섬의 설치나 이용을 할 관할권도 인정된다.

필리핀이 중국의 미스치브 암초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스치프 암초가 필리핀의 국토인 파라윈 섬에서 겨우 215키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조물이 군사시설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방상의 문제가 된다. 필리핀 정부는 ‘우리나라에 들어대고 있는 칼’이라고 중국의 행동을 비난, 세계 주요 회의 등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동이용을 제안하는 등, 2국간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살핀 바데로다. 한편 중국 측은 필리핀이 스푸라토리 제도 서북부에 위치하는 파구아사 섬에 공군의 활주로를 부설한 이외에도, 병사나 어민들을 살게 한데 대해서, 자국의 영토주권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양 국은 정면으로 대립한 상태가 되고 있다. 중국과 88년에 무력충돌하기까지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권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이다. 베트남도 EEZ등을 기본으로 20시상의 암초를 점거, 거기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명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스푸라토리 제도 최대의 섬인 태평도와 南沙島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 대만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후, 중화민국의 국민당정부가 접수한 시기가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에의 귀속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자세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렇게 어느 나라로부터도 제도의 섬들과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보물섬을 눈앞에 두고, 국경을 양보 싶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있어 군사력을 삭감한 것을 계기로, 군사충돌도 불사하는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힘의 공백이 생겨나고 만 보물섬 스푸라토리 제도, 과연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 앞날은 지금도 여전히 투명치 못하다.

## ■ 21km<sup>2</sup>나 되는 지역에 하나의 표시도 없던 중국-베트남 국경

스푸라토리 제도의 영유권 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은 본토의 국경선을 둘러싸고도 대립관계를 오래 계속해 왔다. 1979년에는 中-越전쟁을 일으키기까지 악화,



▲ 중국-베트남 국경분쟁.

대화는 19세기에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조와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사이에 행해졌다. 그때까지는 양국 정부사이에 명확한 국경선을 확정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청조와 프랑스의 국경선 확정의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후 양국간의 국경을 나타내는 표시가, 합계 70개 정도밖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미 소개한 것과 같이, 양국간의 국경은 1500키로나 되기 때문에, 평균 약 21키로에 하나씩 표시밖에 없었던 계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 의해 귀속의 판정이 어려운 지형이 있기 마련이다. 청조와 프랑스와의 대화 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정도의 대규모적인 분쟁에로의 발전은 되지 않았으나,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분쟁의 소지를 가진 여러 곳이 존재해왔다. 당초 베트남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은 건국이래, 몇 번이나 중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비애를 맛봤던 것이다. 베트남 국내에 화교가 진출, 그 결과 경제적으로 화교가 지배권을 가지게 된 것도, 베트남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 베트남으로서는, 중일전쟁 전까지 중국과 결정적인 마찰을 하지 않은 것은 베트남 전쟁 때에는 중국이 구 소연방과 함께, 전면적인 지원체제를 취한 것이 관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945년의 독립선언이후, 사회주의세력의 지원을 받은 북

그 후도 베트남영토 내에까지 침공한 중국군에 대해서, 베트남정부가 완전철수를 요구하는 등, 냉랭한 관계가 계속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은 산악지역에 1500키로나 뻗혀있다. 이 국경을 둘러싼 경계구획이 역사적으로도 애매했기 때문에, 분쟁을 복잡화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경선에 대해서 최초의

베트남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은 건국 이래, 몇 번이나 중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비애를 맛봤던 것이다.

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과의 사이의 대립관계가 생겨났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북 베트남은 반미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분쟁관계에 있던 국경지대의 문제도 불문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물자가 차례차례 운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이 교착 중에 있던 1972년에, 사태의 타개를 위해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국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닉슨을 맞이했다. 이것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은 관계회복을 도모하게 되었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베트남은 불신감을 키워갔던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75년에 종결,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한 베트남은 다음해 76년에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를 통일한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국가이나,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보다 소연방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을 선명하게 했다. 78년에는 소련 소-월 우호조약을 조인. 이 조약 속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제국의 일원인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소련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한편,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층 악화해 갔다. 역사적인 경위에 유래하는 증오감에 더해, 베트남과 대립관계에 있던 캄보디아에 대해서 중국이 원조의 손을 내민데 대해, 베트남 전쟁 시에는 ‘대형’이라고 부르고 있던 중국을 ‘가장 위험한 북쪽의 적인 “北族”’이라고 부르면서 경계하게 되었다. 또 국경문제도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북부의 국경선 근처에 사는 30가까운 소수민족들의 동향에, 베트남은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경을 넘은 중국 운남성 등에 친척들을 가지고, 중국에 편향되게 활발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신국가로서의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베트남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물자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70년대 초반부터 국경의 조정을 위한 대화의 장을 요구한데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 베트남은, 이어 강제적인 대책을 취해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부유층인 화교들의 추방이었다. 100만 명, 2백만 명으로 알려진 베트남에 살고 있는 화교는, 전통적인 야

미상법이나 투기활동을 계속하여 재산을 증식해 왔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합당치 않은 일면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78년부터 중국인가를 엄격하게 단속하기도, 통화개혁을 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해 갔다. 베트남 국내에서 화교들이 경제적인 실권을 빼앗는 것을 경계한 중국은, 베트남에의 원조를 일부 차단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해 간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측도 반발. 책임이 모두 중국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본래는 공포된 적이 없는 양국간의 각서를 공포. 외교 레벨에서도,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중국 측도 베트남을 경계할 이유는 존재했다. 이미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은 경계해야할 국가가 되어갔다. 인도네시아반도에서 영향력을 높여 간다고 하는 염려하던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을 지원할 소련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과의 관계를 심화시켜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실, 소련의 후원으로 군사력을 근대화시키고 있던 베트남은 44년은 겨우 34명이었던 인민군도, 80년대 전반에는 약 170만이 되고, 동남아시아 제1의 군사국가에로 성장했다. 이러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소련에의 경계심에 더해, 국경에 관한 문제가 중첩돼 있고,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그 괴리가 깊어가는 상태였다. 그래서 79년,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 침공한 행위를 제재할 명목으로, 양국이 군사충돌을 일으켜 중국과 월남전쟁으로 발전하고 말게 된다.

중월전쟁에 의해 극도로 악화되고 만 중국과 베트남관계이나, 80년대 후반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도되어간다.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베트남 쪽이었다. 소련 편향의 자세가 고립화를 심화시킨 것, 소련의 힘이 급격하게 쇠퇴될 것을 우려한 베트남정부는 그때까지의 소련 의존 형 외교에서 전방위외교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 가운데 적대국이었던 미국이나 중국도 포함되었다.

91년에는 도 무오이 공산당서기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중국도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태도를 연화, 93년부터는 국경에 관한 대화에도 응하게 됐다. 그리고 95년, 베트남은 ASEAN에도 가맹. 보다 근린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외교정책을 취해 갔다. 이에 따라, 중국도 국경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해, 육지에서의 국경획정에 관해서는 99년에 국경획정조약에 조인하기까지 이르렀다. 특히 2000년 12월에는 베트남대통령이 방중, 강택민 국가주석과 회담. 영토문제에서 최대의 문제였던 동킹 만의 영해획정에도 합의하는 등, 국경문제는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양국은 77년에 국경 획정문제를 교섭하기 시작한 이래, 23년 만에 문제가 전면적으로 해결했다고 가슴을 펴고 있다. 그러나 스푸라토리 제도 등 남중국해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대상 외로 취급하는 등, 국경에 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실정이다.

## ■ 새로운 국경이 탄생할 것인가, 동티모르문제



▲ 동티모르 국경분쟁.

후 아시아로의 진출에 의욕을 보인 네덜란드와의 사이에 분쟁이 되었으나, 1859년에 리스본조약을 체결, 티모르섬을 양국이 분할하여 지배하는 것을 결정했다. 섬 원주민인 메라네시아 계 주민들은 서측의 섬주민은 네덜란드영의 주민으로서, 동측의 섬 주민들은 포르투갈 영의 주민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제2차대전 중에 일본이 점령한 시대를 제외하고, 2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드디어 티모르 섬의 식민지 지배는 동서에서 크게 운명을 달리해 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 영이었던 서 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가담, 신 국가에 참가해 갔다. 한편 동티모르에서는 전쟁 전과 변화하지 않고 포르투갈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어 갔다.

1974년, 동측을 지배해온 포르투갈 본국에서 신 정권이 탄생, 동티모르에 관한 오랜 식민지 지배를 포기한다고 선언. 이것에 따라, 다음해인 75년에는 동티모르에서 즉시 완전독립을 호소했다.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이 결성돼, 동티모르국가로서의

대국에 있어 섬을 양분시켜, 다른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비극은 파파뉴기니아의 섬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기니아 섬의 남서에 위치, 자바 섬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방향으로 향해 이어져 있는 소순다 섬 동쪽의 티모르 섬도, 오랜 식민지 지배와 대국의 우려에 의해 섬을 양분당하고 말았다.

먼저,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이 티모르 섬에 진출. 그

동티모르를 합병한 인도네시아는 섬사람들의 대량학살 이외에도 약탈이나 고문, 투옥 등을 반복했다. 특히 자바 섬 섬사람들의 동티모르에의 이민을 촉진. 지방의 섬사람들로부터 탈취한 땅을 공여하는 등의 편의를 행했다.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 독립을 결코 승인하려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이미 서티모르를 자국의 영토로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다.

76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수하르트는 동티모르에 침공 무력합병하고 만다. 그리고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의 주인 동누사둔가 주로 할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경선이 획정되게 되었다. 동티모르에 투입된 인도네시아의 국군은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그룹들을 철저히 탄압한다. 그 결과 사망자를 포함 20만 명을 넘는 동티모르인들이 희생케 된다.

통상적으로는, 세계의 열강들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고압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강압적인 무력합병에 대해서, 소리높이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출현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수하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정부 수뇌진의 교묘한 정치수완이 관계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취한 작전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은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존재였던 후렛티리니를 커뮤니스트 군단이라고 인상지운 정보전이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정세는, 라오스에서 공산주의정권이 탄생,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 폴 포트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전쟁에서 자유주의 연합에 속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하는 등, 공산주의 대두가 현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주의국가로서는 이 이상 동남아시아에 사회주의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꺾어 보듯, 인도네시아정부는 ‘브레티린은 위험한 코뮤니스트집단이다’는 렛델을 붙이는 정보조작을 행했던 것이다.

브레니린의 멤버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나, 이 선전이 영향을 미쳤다. 동티모르를 합병한 인도네시아는 섬사람들의 대량학살 이외에도 약탈이나 고문, 투옥 등을 반복했다. 특히 자바섬 사람들의 동티모르에의 이민을 촉진. 지방의 섬사람들로부터 탈취한 땅을 공여하는 등의 편의를 행했다.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이 강제되는 등, 비인도적인 억압을 가한 것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은 항의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자본 투자대상으로, 혹은 자원공

동티모르는 2002년의 연내에 독립할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티모르 내에는 여전히 독립을 저지하려는 그룹이 암약하고 있으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될 위험분자가 되고 있다.

급원으로 중시하기도 해, 동티모르 사람들의 공상을 도우는 움직임에 나서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 후 인도네시아의 강경자세에 대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있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일본은 항의의 소리를 인도네시아에 제기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 인도네시아의 횡폭 한 정책에 눈을 감는 태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논조가 나날이 증가되어 갔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탄압에 의해, 활동이 강요당한 브레틴린을 비롯한 반정부세력이었으나, 군사행동도 불사하는 그룹은 산중으로 도망, 게릴라전으로 저항했다. 한편 대변인으로 활동, 인도네시아정부의 비겁한 행동을 세계에 어필 할 것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유도하려 한 그룹도 있어, 인도네시아군의 침공이래, 적극적인 역할을 행해 갔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활동을 나타낸 것은, 동티모르민족저항평화회의의 부의장 죠지 라모스 올다 나, 카로로스 시메오스 페로사 교 등이었다. 올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계속,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그다지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던 동티모르의 공핍상을 호소했다. 페로사 교도,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동티모르로부터 UN이나 로마법왕 등에 서한을 계속 보냈다.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압정에 주목하게 돼, 인도네시아정부를 압박하게 되었다. 즉 두 사람은 이러한 활동이 평가돼, 96년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은 국제여론의 비난이 높아지는데도, ‘동티모르문제는 국내문제’ 라고 내정간섭을 거부하는 강경한 제세를 버리지 않았다. 동티모르는 동의 광맥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가 동티모르에 계속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하나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합병하고 있는 서티모르의 질서가 혼란할 사태를 피하고 싶다고 하는 점이다. 서티모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각지에 존재하는 지역분리주의를 제창하는 그룹이 세를 얻어, 중앙집권적인 정부기구의 힘을 떨어트리고 말 것을 염려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의 운동은 전도가 없다는 걱정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의 인도네시아정부의 강경자세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98년이였다. 이 해, 32년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정재계를 장악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 퇴진당하고 만다. 대신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하비비대통령은 일전하여 동티모르의 독립을 승인할 자세를 나타냈다. 그 배경에는 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 인도네시아도 경제의 회복을 우선과제로 뛰어난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원이 없는 동티모르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득이라고 보고, 나라의 이미지업이 되기도 할 것이라는 판단했던 것이다. 하비비대통령은 섬사람들의 진의를 묻기 위해, 다음해 99년 주민투표를 행했다. 동티모르의 섬사람들은 100%가 독립찬성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바 섬 등에서 이민해 온 말레 계 주민들에 있어서는 언어와 종교가 다른 동티모르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국경은 위협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립반대파는 인도네시아의 국군들과 함께 주민투표를 저지해야하고, 무력전개를 하지 않는 저항은 했다. 그러나 UN으로부터 감시역의 동티모르파견단(UNAMET)의 파견으로 주민투표는 무사하게 끝나게 되었다. 결과는 78.5%의 섬사람들이 독립을 지지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정부는 76년의 무력합병의 무효를 결의. 23년간 걸친 동티모르통치를 종료할 것을 내외에 선언케 되었다.

동티모르는 2002년의 연내에 독립할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티모르 내에는 여전히 독립을 저지하려는 그룹이 암약하고 있으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될 위험분자가 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수하르트의 딸 메가와티가 선출돼, 그녀는 동티모르독립을 선택한 주민투표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등, 분리독립운동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후 동티모르의 독립문제에 관해,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독립으로 향한 정세는 지금도 불온한 부분이 남아있다.

## ■ 일본이 내포한 국경문제

### 〈일-러〉북방영토문제

일본이 반환을 열망하는 영토문제가 북방영토문제다. 제2차세계대전후 그때까지 일본 영토였던 千島列島에 위치하는 國後島(구나시리), 擇捉島(에도로후), 色丹島(시코단), 齒舞諸島(하바마이) 등의 북방4도를 구 소연방에 점령당했다. 이 4섬을



▲ 일-러 북방영토문제.

반환할 것을 요구, 일본은 재삼재사 역대 소련의 지도 자들과 교섭을 계속해 왔다.

천도부근의 이들 섬들은 江戸시대부터 일본의 영토로 여겨져 왔다. 북방4도에는 당시부터 일본인들이 살아왔고, 松前藩이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의 제 외국들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동방의 이 향이며, 국경선을 따질 움직임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 비에 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 오던 북방4점의 정세가 풍운을 맞이한 것은 1853년의 미국 페리함대가 浦賀에 나타나, 쇄국정책을 취해오던 일본에게 개국을 압박한데 있다. 그것을 안 북방의 대국 러시아가 樺太남부에 진주, 일본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북방영토를 지키려한 德川幕府는 55년에 일-러 통상조약을 체결, 국경선도 양국간의 대화에 의해 획정시켰다. 기성사실에 더해,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擇捉島 이남의 북방 4개 섬을 정식으로 일본고유의 영토로 획정했던 것이다. 그 후도 남하를 지향했던 러시아와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으나, 북방4도의 영유권이 옮겨지는 일은 없었다.

그런 상황이 일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 무조건항복을 당한 1945년이다. 승전국이 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수뇌 진들에 의해 교환된 얄타협정에 의해, 소련이 급거 연합국 측에 참전한 대상으로서, 북방 4섬을 소련이 전유한다고 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동시에, 포츠담선언 속에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 및 연합국이 결정한 小島에 한정 당 했다. 그리고 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에서 일본은 千島列島와 樺太, 그것에 접근하는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섬에서 대대로 살아온 섬사람들에게 섬으로부터 추방되게 되었다. 이후, 전후 부흥을 이뤄가는 가운데, 일본이 반환을 염원, 국경선을 북으로 넓히려 요

구하면서 소련과의 대화를 거듭해 갔다.

일본 측은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여 빼앗은 토지는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카이로선언에 근거로, 북방4도는 예부터 일본의 영유하고 있던 섬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도, 명기된 천도에는 북방4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소련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련은 알타협정을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상황의 타개를 위해 일본정부는, 55년에 鳩山내각이 일-소간의 국교회복에 착수. 일-소 공동선언을 채택, 국교정상화를 실현했다. 그 속에, 鳩山내각은 영토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교섭의 계속을 소련 측에 확인시켰다. 국교회복에 의해, 북방영토반환문제는 그 후의 진전이 기대됐다. 그러나 국교가 회복한 후 반세기가 경과된 현재도, 鳩山내각이 체결한 내용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일본의 역대수상은 수차 러시아 측과 회담의 기회를 가지고,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교섭을 계속 한다' 라고 하는 정도의 합의에 그친 것이 전부였다.

### 〈한-일〉 독도문제



▲ 한-일 독도 지도.

2002년에 한일공동으로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빙무드가 진전되고 있는 듯한 한일관계이기는 하나, 국경선을 둘러싸고 서로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獨島(일본 측은 竹島)문제다. 죽도는 島根縣의 隱岐島 북서 약 150키로에 위치하는 日比谷公園 정도 크기의 작은 섬이다. 10여개의 암초로 구성, 17세기부터 어민들

이 일본과 한국(당시 조선)에서 이곳을 찾아 어업기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죽도의 영유권에 일찍 뛰어든 것은 일본정부였다. 1905년 즉 명치 38년에는 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도, 명기된 천도에는 북방4섬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소련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련은 알타협정을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의에서 죽도를 島根縣에 편입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 후에 일본에 병합되는 등, 당시는 외교권이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이었다고 반발하는 공기가 강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 한국은 독립한 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 보였다. 52년에 이승만대통령이, '이승만 라인' 이라고 불리는 국경선을 설정. 죽도를 한국영 안에 설정하는 라인을 설정, 한국영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한국은 54년부터 등대나 무선교신소를 죽도에 설치.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죽도의 영유를 내외에 과시하게 되었다.

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져, 이 때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게 되나, 죽도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한참 동안 조용하던 죽도문제였으나, 96년에 다시 주목을 띄었다. UN해양법조약의 비준에 수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죽도를 자국의 영토하면, 그만큼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와 함께, 어업등에 의한 수산자원이 중요한 산업인 양국은 죽도의 영유권을 다시 소리 높여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96년에 총선거에서, 선거공약 속에 죽도가 자국의 영토인 것을 명기. 이에 반발한 한국 측이, 접안공사를 예정보다도 앞당겨 97년에 행하는 등, 서로 양보 없는 자세를 보였다. 그 후, 한일어업교섭 등의 자리에서, 서로 타협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죽도문제는 해결의 길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죽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있다.

## ■ 석유를 둘러싼 일-중-대만 간의 尖閣列島 분쟁

沖繩本도의 남서약 300키로에 펼쳐있는 1헥타르 정도의 암초. 이것이 침각열도다. 일본지도상에서 보더라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침각열도는 누구에게 주목되지도 않은 채 시간을 이어왔다. 영유권에 관해서는 일본이 1895년에 당시 명치정부가 沖繩縣에 편입할 것을 결정. 이후 일본의 영토 화되었다. 그 후 제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배, 점령해온 각지의 영토를 잃게 되었으나, 이 열도는 51년 샌프란시스코 평



▲ 아프카니스탄 내전지도

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신탁 통치하에 두게 됐다. 조약에는 琉球列島를 비롯한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 등은 미국이 施政權者가 되는 것이 명기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 포함된 첨각열도도 미국이 施政權 아래 둔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72년, 현안이었던 沖繩 諸島의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반환이 실현된다. 이때 충승과 함께 첨각열도도

일본의 영유권으로 되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일미 영정부의 경해이기도 했다. 이 판단에, 과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던 중국과 대만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각각 자국에게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계기는 68년의 해저학술 조사로 첨각제도 주변에 세계유수의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카스가 매장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다. 중국과 대만은 함께 71년에 영유권을 정식으로 주장. 3국간에 정치문제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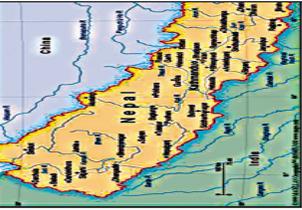
96년에는 일본의 우익정치단체 멤버들이, 국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첨각제도에 상륙. 등대를 설치하고, 암초에 일본 국기를 페인팅 했으나, 중국, 홍콩, 대만을 자극하고 말았다. 전전의 일본제국에 의한 지배를 연상하게 말았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의하고, 섬에 상륙하는 활동가도 출현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순시선을 보내 경계하는 등 긴장감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에서 일치. 영유권문제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오일문제가 걸려있는 영유권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여기서 긴장상황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세계 국경분쟁 일람

심오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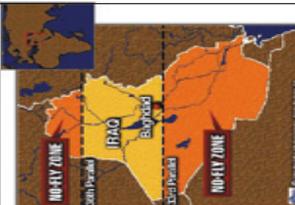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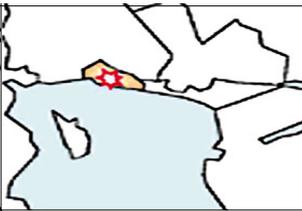
- |               |              |                  |               |            |                 |
|---------------|--------------|------------------|---------------|------------|-----------------|
| [아시아]         | [서남 아시아]     | [중동]             | [CIS-중앙아시아]   | [미주]       | W: 르완다 내전       |
| A: 남북한 대립     | F: 미국-아프간 전쟁 | J: 이란 내분         | O: 러시아-체첸 분쟁  | S: 콜롬비아 내전 | X: 우간다 분쟁       |
| B: 미얀마 분쟁     | G: 방글라데시 내분  | K: 미국-이라크 전쟁     | [유럽]          | [아프리카]     | Y: DR-콩고(자이르)분쟁 |
| C: 티베트 내분     | H: 스리랑카 내전   | L: 팔레스타인 분쟁      | P: 마케도니아 내분   | T: 수단 내전   | Z: 케냐 부족 분규     |
| D: 인도네시아 분리운동 | I: 인도-블리 운동  | M: 타기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 Q: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 U: 알제리 내분  | AA: 소말리아 내전     |
| E: 팔린핀 내전     |              | N: 에머논 내전        | R: 코소보 독립분쟁   | V: 차드분쟁    |                 |
- (참고 : 한국국방연구원)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아시아	남북한대립 A	45.8 일본의 2차대전 항복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목적으로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입후 서로 다른 정부수립. 남북한은 50.6한국전쟁을 거쳐면서 냉전 전기간 중 각각 미·소 동맹하에서 전분야에 걸쳐 체제경쟁 지속.	남북한	미국 중국 UN 러시아	영토 이념 통일	중공군 1백만, 민간인 1백만, /남북한군 각 50만, 미군 및 UN군 5.3만 명	보통(북한의 구제적 지원 및 화보 곤란 및 국내사정 불 투명으로 진 면전 가능성 은 낮음	높음 : 동 북아 지역 평화의 진 략요충	협상(정상 회담) 압력 제재, 평화 유지	
	미얀마 분쟁 B	49년 독립 이래 미얀마-동부 국경지역(중국, 라오스, 태국)에서 다수의 반군세력(카렌, 카친, 샨진 등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무장투쟁 지속.	미얀마 VS 반군 세력	서방권 (88.10 군사 정부 등장 이래 인권 탄압 관련 경제제재)	민족/ 분리/ 전쟁/ 마약	1만5천(48- 88), 2천명 이하(92) 사 망, 태국, 48 이후 난민 10만 수용	게릴라-국지전	반군 및 난민의 인정국 영향	협상	
	네팔 내분 C	96년 모택동주의를 신봉하는 좌익세력은 왕정에 대해 권력 분점을 요구하며 '인민 전쟁'을 선포; 96무장봉기 이래 좌익세력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팔 국토의 1/4을 사실상 장악, 독자적인 행정기구 운영, 경찰군과 반군간의 교전으로 매년 300명 내외의 사망자 발생.	네팔 정부 VS 모택동 주의 반군 CPN- Maoist	정쟁 이념	96~2001 1800명 사망	충돌중	미미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아시아	인도네시아 분리운동 D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아체(수마트라), 이리안 자야(서파푸아) 등 3개 지역에서 분리운동 진행. 99.10 동티모르 독립으로 2개 분리운동지역 잔존. 66년 군부쿠테타로 집권한 수하르트는 국가통합을 명분으로 분리운동을 탄압. 이 과정에서 PKI공산당원 및 연루자 약 1백만 처형.	인도네시아 VS 파푸아(OPM) / 수마트라(Aceh)	포르투갈(75, 단교선인), UN(75인), UN군 철수결의, 99 UNPKO 파견, 화란/케나다(91, 원조중지)	분리 / 이념 / 종교 / 식민유산	동티모르 10여만 사망(75-99), 아체 5만 사망(76-01)	충돌중(동티모르 독립은 타지역 분리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인니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	인니 정부의 비인도적 가혹행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	협상, 제소 호소(동티모르 사태의 국제화)	
	필리핀 내전 E	46.7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지형적 특수성과 자치, 종교, 이념 지역 경제 불균형 등 복잡한 분쟁요인으로 60년대 말부터 내전 지속. 모로이스람 해방전선(MILF),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은 여전히 지속. 98.6 에스트라다 정부는 반군과의 협상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99-2000 기간중 협상은 답보 상태.	정부 VS 교회 반군(MILF, 공산계 반군(NPA))	라비아 등 강경교회파(MNLF 무기, 자금지원)	종교 / 이념 / 민족 / 분리	총 15만 이상 사망: 3만(69-00, 필-NPA 간), 12만(70-00, 필-MNLF 간)	충돌중(반군 세력의 계획라진 및 테러 활동 지속)	지역 안정 및 회교권에 영향	협상, 회교권국가(라비아, 말레이시아)의 중재노력	
서남아시아	미국-이란 전쟁 F	2001.9/11 오사마 빈 라덴의 국제테러조직(알카에다)이 미국 본토에서 대량학살테러를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이 자위권 발동 지원에서 빈 라덴 비호세력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해 보복 공격으로 대응한 신중 국제무력분쟁.	미국 VS 아프가니스탄(탈레반 정권) / 오사마 빈 라덴 국제테러조직	반테러국제연대(미국의 테러지원정당 조국가)	이념 / 종교(반미 이슬람주의) / 자위권의 합법성에 대한 대응(보복)	5465명(테러 희생자 최종 집계), 수천명(탈레반 추정, 아프가니스탄 100만명(전쟁발발 이후))	충돌중	세계전략/경제적 파급, 난민 발생, 지역안보구도 재편	평화강제(명화유지) / 군 파견 가능성, 대체정권 수립, 경제제재, 구호원조, 재판,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내분	47.8 독립이후 파키스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부의 인도 유입을 차단하기위해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지원함. 한편 71.12 인도의 개입으로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후 비하리스 지역 거주 파키스탄 난민(25만)이, 방글라 국적취득을 거부.	방글라데시 VS 동남부 지역 (Chittagong Hill) 반 JSS/SB	없음	종교 / 민족 / 분리 / 식민유산	5천명이상 사망(75-91), 난민 수백만인도로 이동	높음(02년 들이 충돌보도도 없으나 테러 발생 가능성 상존)	미안마 및 파키스탄 난민의 자치요구	협상, 압력 제재, 구조 원조	
	스리랑카 내전	스리랑카는 48.2 영연방 자치령 시일론으로 독립하였으나, 다수 불교계 싱할라족(74%) 정부와 차별정책에 반발하여 소수 힌두계 타밀족(18%)은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 88.7 타밀족 대학살(천명)이후무력투쟁본격화. 85.9 반군 본거지인 자프나 반도에 대한 정부군의 공격으로 50만명의 난민 발생.	스리랑카(정부) VS타밀 일람해방호랑이(LTTE)	인도(87.6 인도 군 IPKF 파견: 2500 사망)	영토 / 종교 / 민족 / 분리 / 식민유산	8만명이상 사망(83-02), 95.9 난민 50만, 96.7 난민 20만, 총난민 160만이상	충돌중(지속적인 소규모 충돌과 간헐적인 대규모 작전)	대량 사상자 발생, 인도내 타밀족 테러활동 연계	협상, 제소 호소, 압력 제재, 중재 (노르웨이, EU, 미국)	
	인도 분리 운동	아쌌(Assam)지역은 보도 해방호랑이(Bodo Liberation Tigers),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지역은 좌익 인민전쟁그룹(People's War Group, 비하르(Bihar)지나가족(Nagas), 비하르(Bihar)지역은 모택동주의자(Maoists), 펀잡(Punjab)지역은 시크족(Sikhs), 전 트리푸라호랑이군(ATIF) 등 분리운동 진행중.	인도 VS 지역 반군 세력 (아쌌, 안드라, 비하르, 펀잡 지역 등)	회교권회의 기구(OIC)	종교 / 분리 / 식민유산 / 종족	2.5만 사망(81-92, 펀잡), 1만(82-02, 아쌌), 2.5만(47-01, 나가랜드)	충돌중(나가랜드, 아쌌지역, 북동(펀잡 지역))	주변국과 과잉의 갈등, 사회, 인권 및 지방자치의 인권탄압 비난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중 동	이란 내분	이란 내전은 41년부터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서구식 세력과 이슬람세력이 반발하면서 잉태됨. 양측 세력은 근대화=친서방주의 및 반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근대화지연'이라는 도식적 개념에서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함.	이란 정부 VS 반체제 세력(무자헤딘 할크 등) 및 소수 민족(쿠르드족 등)	이라크(반무자헤딘 할크 세력 지원)	종교 / 이념 / 경쟁 / 민족	1971년까지 내전에서 12만명 희생, 1978년부터 10년 동안 2~3만명 희생	충돌중	이란 정정 불안시 원유 공급에 악영향, 난민 발생, 지역적 테러 활동지구	협상	
	미국-이라크 전쟁	미국의 걸프전쟁 이후 시담 후세인 정권과의 지속적인 갈등. 특히, 9.11테러 이후 후세인이 이라크 정권에 대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사찰 등 지속적인 정치, 경제적 압력, 결국 2003년 전쟁 발생.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쟁 이유중의 하나였던 대량 살상무기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이라크 정부 VS 미국	UN	미국의 패권	최대 민간인 20만명	충돌중	지역 안정 및 회교권에 영향	회교권 국가의 중재 노력	
	팔레스타인 분쟁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대인들이 1948년 팔레스타인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면서 비롯됨. 아랍측과 이스라엘측은 그 후 네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서안 등을 점령하였음.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Non-PLO)	미국(이스라엘 간접 지원), 아랍국가 (PLO 지지)	민족 / 영토 / 종교 / 분리 / 식민유산	1948-92년간 12,300 이상 사망, 2000년 9월 시작된 충돌로 팔레스타인 1,943명과 이스라엘인 637명 등 총 2,629명 사망 (2002현재)	충돌중	서방 및 아랍권의 이해상충, 중화 동맹, 화의의 관건, 산유국 불안, 난민 해결	중재 협상, 구조 조정, 평화 유지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중 동	터키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M	1922년 최초의 봉기 이래 30년과 32년 반란을 일으킨 84년부터는 '쿠르드노동자당'(PKK) 중심 무장투쟁이 전개됨. 2002년, 터키와 PKK간의 충돌이 지속되나 강도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듦. 터키는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	터키 VS 쿠르드족 세력(이라크/시리아/이란)	이라크/이람/시리아(PKK 지원) UN(91.3대 쿠르드 원조계사)	민족/분리/식민유산	터키-쿠르드 양측 84-9371간 6,200명 사망, 87-98간 25,600명 사망, 전체 희생자 37,000 (1984-2001)	충돌중(분리 독립 보장 없는 한 대립 해소 곤란)	인명 피해 및 난민 발생 증가,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 야기, 유엔 개입 가능	협상, 제소, 호소, 중재, 조정, 구호, 원조, 평화 유지, 평화 강제	
	레바논 내전 N	1943년 레바논의 독립이래 기독교세력과 이슬람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발생함. 1958년 기독교세력 정부의 친서방정책에 이슬람세력이 국민통일전선을 결성,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최초의 내전 발발.	레바논 정부 VS 이슬람 반군 세력(헤즈볼라 및 PLO 등); 이스라엘	미국(58.7), 이스라엘(78.3/82.6), 시리아(76.4), 프랑스 등 11개국(1978), 이란	종교/전쟁/민족/식민유산/개입	15만 사망(75-90); 1978-1999, 남부 레바논 지역에서 총 227 UN군 사망	충돌중(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절적 공격)	중동 지역 불안정 조성, 난민 발생, 유엔 개입	협상, 중재, 조정, 유지	
C I S - 중앙아시아	러시아 - 체첸 분쟁 O	체첸이 소연방 해체기에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하자, 체첸의 탈러시아를 개입할 수 없는 러시아연방이 체첸 2차 전쟁은 99년 4월 체첸 반군이 다게스탄 영내를 침입, 체첸-다게스탄 공화국의 건설을 공포한 이후 9월 5일 체첸 국경지역의 반군 거점에 대한 러시아 공군의 무차별 공습.	러시아 연방 VS 체첸 공화국	없음	분리/종교/탈방진	차전: 8-10만명 사망, 추정 9412-96,081; 2차 전(00.11월 현재) 라군 2,500사망 (병사/어머니/회 6,000), 민간인 1,300 사망; 반군 14,000 사망 (러 주장), 난민 25-30만	충돌중	카스피해/카프카즈의 유전물 리산 [러] vs 미/서반 경쟁으로 증대 전망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유럽	마케도니아 내분	2001년 3월 마케도니아 내 알바니아계 반군이(NLA)이 2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구성을 위한 헌법제정과 소수 알바니아 민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마케도니아 정 부간에 발생한 분쟁임.	마케도니아 내 알바니아계 반군 VS 마케도니아 정부	코스보 지역 알바니아계 반군(NATO(무기회수작전))	민중 / 탈병진 / 정권 / 니아정 부의 차별에 대한 알바니아의 반발		중재협상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충돌들 중(분리독립 보장 없는 한 대립 해소 곤란)	발칸반도의 정세에 영향 높음	중재조정	
	북아일랜드 분리 운동	영국과 북아일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구교도 사에서 발생한 분쟁임. 1921년 아일랜드 독립후에도 북아일랜드 영국령, 이에 영국에 잔류한 아일랜드 지역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으나, 1998년 북아일랜드 독립을 희망하는 구교도간의 갈등의 원인이 됨.	영국(정부군) VS 아일랜드 공화국(IRA) : PIRA / INLA: 북아일랜드 신교계	아일랜드 (IRA지원)	분리 / 종교 / 민족	69-94: 3165명 사망 ; 36,000여명 부상	낮음(98.4. 평화협정 타결). 잠재위험 상존	영국의 국토분할 시도. 진략적 경제적 영향. 주민간 테러피해	협상, 중재 조정	
	코스보 독립 분쟁	코스보는 구유고연방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권이 주어졌으나(45년), 89년 자치권이 박탈되었음. 이에 코스보는 알바니아와의 합병을 주장하면서 자체 총선(92.5)을 실시하는 등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 코스보 해방군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에 나선.	유고연방 VS 코스보 자치주	UN, NATO, 러시아(영화유지군 참여)	민중 / 분리 / 탈병진	알바니아계 2,000명 이상 사망, 세르비아인 500명 사망 추정. 120만 이상 난민 발생	코스보 평화유지군 진주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 국제 분쟁으로 비화	협상, 평화강제(NATO 군사개입)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가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미주	콜롬비아 내전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 빈 부격차, 불평 등에 기인하여 우익을 표방한 정부 및 극우 단체와 이에 대항하는 좌익계급과 단체간의 내전. 주요 계급간 단체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1964년 결성된 민족해방군(ELN), 1966년 결성된 콜롬비아 혁명군(FARC)과 1973년 결성된 자생적 사회주의의 M-19임.	콜롬비아 VS좌익 반군 세력 (FARC, ELN): 우익 반군 세력 (AUC)	미국(콜롬비아 정부 지원)	전쟁 / 이념	78-89:10만 사상, 80-92:1.1만 사망, 7,300명(91-92)사망, 난민 100만(98), 98년2216명, 99년2945명 남치, 89-99 한 해 평균 26,000명 사망, 난민 80만(99)	충돌중	마약 및 좌익 계급간의 인접국 영향, 난민 발생	협상, 구호 원조	
	수단 내전	20-30년대 이래의 남부지역 차별/소외가 '56 독립이후에도 지속되자 남부세력(기독교 계열)이 차별철폐, 민주화, 급기야 자치/독립을 요구하면서 수단인민해방군(SPLA)을 조직, 대립해 온 분쟁; 양측은 72.6 에티오피아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휴전조건을 놓고 SPLA와 이슬람세력 자체에 내분이 발생, 무위로 돌아감.	수단 이슬람 원정부 VS SPLA 등(원시 종교, 기독교, 반정부 세력)	에티오피아/리비아: SPLA 지원, 이집트: 수단 정부 지원, 이란, 우간다	민족 / 종교 / 전쟁 / 분타 / 식민유산 / 이념	1983-93간 50만, 83-98년간 150만명 사망, 난민 450만명 이상 (1983-90간 40만명) 발생	평화적 협상 노력 의견차이로 별무성과, 반정부세력의 연대화	지역적 불안정 조성, 원유매장, 난민 발생 증가 영국의 국토분할 시 전략적 영향, 주민간 테러피해	중재, 구호, 협상, 조정, 원조, 유지	
아프리카	알제리 내분	프랑스 식민 통치 하에서 1954.11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 지도하에 무장독립투쟁을 전개, 62.7 독립. 시민들은 이슬람원리주의 정당 이슬람구국전선(FIS)을 지지, 90.6 지방선거에서 FIS가 지방의회와 과반수를 차지함. 그런 상황에서 91.6 총선거 직전 FIS 지지자 91만부대간 대규모 충돌이 발생, 비상사태가 선언됨.	알제리 정부 (FLN) VS 이슬람원리주의 세력 (FIS/무장 세력)	이란(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지원 협), 98.3 단	종교 / 이념 / 전쟁 / 민족 / 분타 / 탈냉전	1992.1부터 시작된 무력충돌로 8만 여명 희생	중동 (FIS/GIA 등) 이슬람원리주의 세력 소외로 대정부 무장투쟁 강화	석유/가스의 중요성 산구, 인접국 파급(이집트/리비아 등)	협상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총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아프리카	차드 분쟁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정권 쟁탈을 위해 남부 기독교 세력과 북, 동부의 이슬람 세력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어 이후 정권을 획득한 북부 파벌간의 내분으로 변화. 1966년 북부세력이 FROLINAT을 구축, 남부 정부군과 무력투쟁 개시.	북부 이슬람파 VS 남부 기독교파 > 이슬람내 브레파: 구쿠나 파: 데비 파	리비아/ 수단/OAU/ 미국/ 프랑스	전쟁 / 종교 / 민족 / 식민유산	1978-82: 1,000여명 사망, 난민7만78 - 89:10만 사망, 80-92:11만 사망, 7,300명(91-92)사망, 난민100만(98, 98년2, 216명, 99년2,945명 남치, 89-99:26,000명 사망, 난민80만	총돌중(소규모)	전략적, 경제적 영향 미미	협상/전쟁 패퇴/양력 제재	
	르완다 내전	'소수파 지배층인 투치족과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임. 벨기에의 식민통치하에서 소수파 투치족을 우대하였고, 독립후에도 같은 구조가 지속되어, 후투족이 이에 반발하여 양부족간 학살이 지속되어 왔음.	르완다 (후투족) VS 반군 (투치족) <중심> 다트와 다트 <핵심> RPF -> 투치정부군 <후투 반군(94 이후)	UN/OAU/ 프랑스/우간다/자이르/ 미국	민족 / 전쟁 / 식민유산	1963 - 65: 10.5만; 1972 내전: 15만 사망; 1990-94: 약 150만 사망, 240만 난민	소규모 산발 총돌: 완전한 난민 위생소 망	대량 학살 및 난민 발생: 주변국으로의 난민 유입 등	협상/중재 조정/양력 제재/평화 유지	
	우간다 분쟁	1982년 독립과 함께 정부의 형태 및 대통령의 권한 등 권력 쟁취를 둘러싸고 악화된 부족간 분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분열. 1971년 아민이 쿠데타로 오모테를 축출하고 집권하면서 8년간 독재정치를 통해 최악의 인권 유린 자행됨. 민중항군(NRA)과 내전 개시됨.	1986년 이후 무세네니 대통령이 NRA와 NRA, A.D.F., W.N.B.F., U.N.R.F.2 등	탄자니아/수단/콩고민주공(구 자이레)	민족 / 전쟁 / 종교 / 이념 / 정쟁 / 민족 / 분리 / 탈방진	1971-80: 40-30만 살해; 1981-89: 군6천+, 민10만 사망; 난민27.8만(1977-86) 1992.1부터 시작된 무력충돌로 8만여명 희생	총돌중 (1986년 이후 LRA, ADF 반군의 게릴라전 지속됨)	총돌 악화 시 대량 학살 가능으로 변국으로 화전 가능	중재조정/ 평화유지	

지역	분쟁명칭	개황	당사자	개입세력	원인	인명피해	충돌위험	국제영향	해결방법	지역지도
아프리카	DR 콩고(자이르) 분쟁	32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해 온 모부즈 정권과 이에 대항해 온 카빌라 반군 세력간에 정권쟁탈을 둘러싼 분쟁. 1994년 르완다 내전으로 유인된 후투족 중심의 구르완다 정부군과 후투족 민병을 이용하여 동부지역의 투치족 계의 반나물랑게족을 탄압함. 1996년 이에 반발한 범반정부 조직인 ADF가 결성되어 모부즈 정권 무력충돌을 개시함.	모부투 독재정부 VS 카빌라 반정부 세력	벨기에/프랑스/미국/영국/타랑다/니아/우간다/유엔/수단	정리/분리/민족/식민유산/개입	2000년 5월 이후 110만명의 난민 발생. 1978-82: 1000여명 사망, 난민 7만 78-89: 10만 사망, 난민 100만 명, 80-92: 1만 7300명(91-92 사망, 난민 100만 명), 98: 98만 2216명(98년 2045명 남지), 89-99: 26000명 사망, 난민 80만	충돌중(* 카빌라 정권과 반군 및 르완다 투치족) 충돌중(소규모)	中	중재조정/압력제재/평화강제	
	케냐 정치/부족분규	1978년 모이 집권후 부족간 정권 장악을 둘러싸고 발생하기 시작한 분쟁임. 모이 대통령은 여당 케냐아프리카인민족동맹(KANU)에 의한 일당지배 체제를 확립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	모이대통령파 VS 주세력 카렌진족 : 키쿠족, 오루족, 이아축	미국/영국/IMF/세계은행/EU	민족/전쟁	1992-98 기간 중 수천명 사망	높음	中	압력제재/중재조정/협상/중재조정/압력제재/평화유지	
	소말리아 내전 AA	1969년 이후 집권한 Barre 군 사정권 타도를 위해 결성된 통일소말리아회의(USC)가 1991년 쿠데타 성공후, 정권 쟁탈을 위해 3대 무장군벌인 아이디드, 모하메드(Mohammed), 아도 등이 추축이 되어 시작된 내전.	마데한 VS 아이디드: 모하메드(Madi 파), 아도 파 (USC): 6개 부족	UN/미국/소련/이디오피아/이집트	전쟁/민족/종교/식민유산	수십만 사상, 수백만 난민; 1992년만 40만 기아사망; '91, 6주동안 2만명 사상	보통	대량난민/전략적 중요성	중재조정/압력제재/평화유지/평화강제	



## 근대화가 결과한 인간학적 과제\*

曹 泰 勳 (충북대학교 교수, 철학)

### 머리말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문법체계로서의 ‘근대성’은 서구에서 처음 형성돼 그곳의 특수한 담론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오늘의 생활세계 및 미래사회와의 직접적 관련 하에서는 전 세계적이며 전 인류적 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흔히 운위하는 근대성의 위기, 이른바 포스트모던적 현상 또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들, 이를테면 생태계의 훼손, 자원고갈, 남북 간의 빈부격차, 삶의 질 저하 등을 위시하여 마르크스적 의미의 ‘인간소외’, 베버가 말하는 합리화의 역설·의미 상실·자유 상실, 루카치가 지적하는 ‘사물화’ 등은 모두가 근대화의 범주로 수렴되는 것들이다. 현대 사회철학의 역사적 배후에는 근대화라는 대사변이 자리해 있다. 따라서 현행의 삶의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사를 추동시켜온 근대화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만이 미래를 향한 처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화는 어떻게 진척되었던가?

이 글은 근대화가 결과한 과제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성) 혹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이른바 인간학적 과제들을 점검해 보는데 목적을 둔다. 탈 근대적 자아 정체성의 문제,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불신, 도덕적 합의에 대한 거부 등 ‘탈 근대적 병리현상들’로 지칭되고 있는 현실을 초래시킨 그간의 사상사적 맥락을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여기서는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근대와 현대가 시간상 원근의 차이 외에 달리 질적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라는 대비적 개념 구도 대신에 근대와 탈근대의 구분법을 선택,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들 양자는 물론 동일선상의 전후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근대화’는 합리화·산업화·자본주의화의 길을 밟아온 역사적 도정의 진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성’은 근대화의 과정이 결과한 시대적 특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대와 탈근대의 연속적 논의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탈 근대화를 포괄하는 근대화에 대한 논의’로 한정시키기로 한다.

## 근대화와 그 병리적 현상들

우선 ‘근대화’의 의미 또는 성격부터 살펴보자. 아렌트<sup>1)</sup>는 일반 역사적 시각에서 “근대와 그 특성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①아메리카의 발견과 뒤이은 전 지구에 대한 탐사, ②교회 및 수도원 소유를 몰수함으로써 개인적 점유와 사회적 부의 축적이라는 2중 과정을 출현시킨 종교개혁, ③망원경의 발명과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우주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본성을 살피게 된 것”을 든다.

파슨스<sup>2)</sup>는 서구의 근대화 현상을 구조적 분화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근대사회의 연속적 발달은 ①산업혁명, ②민주혁명, ③교육혁명 등 세 가지의 혁명적 구조변경을 포함하였다. 근대로의 이행과 근대사회들의 발전에 관한 파슨스의 실질적 설명은<sup>3)</sup> 베버의 ‘서양문화의 합리화’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슨스는 생활세계의 합리화와 체계분화 과정을 동일시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근대사회의 발전은 ①조정능력, 매체에 의해 조정되는 하위체계의 분화, 포용성, 가치의 일반화를 포괄하는 내적 복잡성의 증대와 ②사회통합의 보편적 양식들 및 비강제적 방식으로 제도화된 개인주의를 결과하였다.<sup>4)</sup>

기든스<sup>5)</sup>는 근대사회와 전통사회를 구분 짓는 준거를 들어 근대의 특성을 들어내

1)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248

2) T. Parsons and M. Platt, *The American University*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73), p.1

3) 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 J. : Englewood Cliffs, 1971)

4) Ibid, pp.114~115

5)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55~59

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이들 구분의 준거로는 ①변화의 속도, ②변화의 범위, ③근대의 제도들이 지닌 고유한 본성(예컨대, 국민국가라는 정치제도, 생산이 무생물적 힘의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생산과 임금노동의 철저한 상품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근대성의 제도적 차원으로 ①자본주의(경쟁적인 노동 및 시장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자본축적) ②산업주의(자연의 변형과 창조된 환경의 발달) ③감시체계(정보통제와 사회적 감시) ④군사력(전쟁 산업이라는 맥락 하에서 폭력 수단을 통제하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자본주의화로 인하여 ①자본주의 기업의 강력한 경쟁적 및 확장적 성격 때문에 기술적 쇠퇴가 부단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속된다. ②경제가 다른 사회영역들로부터 분리되고, 경제영역의 혁신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경제관계가 다른 제도들을 지배한다. ③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현재해짐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 ④국가가 자본축적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이 제약 받는다.

근대화가 지니는 특성들에 대한 위의 지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아렌트는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 개인적 소유와 사회적 부의 축적,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이 세계 및 이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그러한 인간의 지배력의 증대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거리, 즉 '세계소외'<sup>6)</sup>를 증대시켰다고 결론짓는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증대될수록 세계는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세계, 즉 지구가 도구화됨을 말한다. 아렌트에 있어 근대화는 세계, 즉 지구의 도구화를 촉진시켰다.

파슨스에 있어서는 근대화가 곧 합리화와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든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는 ①기술의 진보가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의 손상에 대한 관심, 즉 '지구보호'의 요망이 고조되고 있으며, ②활용가능한 자원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고, ③감시감독의 강화는 전체주의와 근대성의 연관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도록 하며, ④군사력, 즉 전쟁 산업의 발달은 핵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같은 근대화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중심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를 발전적으로 계승, 지양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이다. 이제 우리는 베버 및 프랑크푸르트 학파의대표적 논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화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6) H. Arendt, 앞의 책, p.252.

## 베버의 ‘합리화’ 론

막스 베버에 따르면 근대화라는 세계사의 과정은 진보적 합리화의 과정이다. ‘합리화’란 말 그대로 합리성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버는 주요맥락에 있어 아직 계몽사상 전통의 후예인데, 계몽적 전통에 있어 역사는 이성을 향한 진보이다. 베버가 근대로의 이행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은 계몽사상 및 19세기의 자신의 선행자들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그가 진보적 합리화의 제도적 구현들, 예컨대 자본주의 경제, 관료주의, 전문화된 경험과학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합리화가 어떤 유토피아적 기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인을 새로운 종류의 비인간화된 체계 속으로 점차 예측시키게 된다고 보는 점에서 그의 앞 사람들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루카치의 말을 따르자면 합리화가 ‘사물화’의 증대로 인도 한다<sup>7)</sup>는 것이다. 합리화가 해방과 사물화라는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한다는 역설은 베버이론에 있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역설이다. 반면에 베버의 ‘합리화’ 개념은 아직 규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합리화 개념은 그 용도에 있어 유럽의 전통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인간적 기본조건과 과제, 즉 인간화의 요건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근대과학과 근대법의 출현, 세속화된 도구적 또는 전략적 행위체계의 등장, ‘객관적’ 의미체계의 파손 등은 그가 세계의 ‘탈 주술 화<sup>8)</sup>’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합리성에 대한 형식적 견해와 근대유럽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의 견해 및 규범적 이성 개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

세계의 ‘탈 주술 화’는 역사적 개념으로서 베버에 있어 유럽역사 특유의 합리화 과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또한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인식상의 성취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명명되는 바의 경제가 새롭게 규정된다. 따라서 세계의 탈 주술 화는 각별히 근대적 합리성 개념을 뒷받침 해주며 근대과학의 출현, ‘합법성’과 ‘도덕성’의 분리에 기초한 법의 합리화, 종교적 및 실천적 관심이라는 맥락에서 예술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준 그러한 인식구조들을 상기시킨 역사적 과정이

7) Georg Luka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 by Rodney Livingstone,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68), pp.83~110

8) M. Weber, *Economy and Society*, 3vols., ed., by G. Roth and Wittich (New York : Bedminster Press, 1968), p.1401

다. 베버에게는 아직 합리화와 계몽, 혹은 형식적 합리성과 (진실한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규범적 이념으로서의 합리성 사이에는 내재적 관계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베버의 이론에 있어 합리화의 ‘역설’을 말할 수 있다.<sup>9)</sup> 인류가 합리적으로 됨으로써 역사적 과정을 촉진시켜, 사회적 관계를 비인간화 시키고, 상징적 의사소통을 건조하게 하며, 인간의 삶을 합리화되고 익명화된 관리체계의 비인격적 논리에 예속시키게 된다.<sup>10)</sup> 간단히 말해 합리화는 인간의 삶을 기계화되고 부자유하고 무의미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버의 근대적 합리화 이론에는 염세적인 역사철학이 내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

베버에 따르면 사회조직의 합리화 과정은 기술과 계산, 조직과 관리 등의 ‘목적 합리성’의 주도권이 증진되는 과정이다. 이성의 승리는 자유의 왕국을 도래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할권을 벗어나 있는 경제의 힘과 관료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행정을 강화시키고,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철창을 결과하였다.

###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도구적 이성비판

베버의 합리화 이론, 루카치의 ‘사물화’에 대한 논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의해 이루어진 ‘도구적 이성’ 비판 사이에는 연결이 뚜렷하다. 이들이 합리화의 특성에 부여하는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서구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경향 하에는 합리화의 확장이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베버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는 근대문화에서 목적 합리적 행위에 대한 우선성의 부여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의미의 상실, 자유의 약화를 결과한다고 주장한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는 베버로부터 진보가 지닌 부정의 변증법을 계승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베버의 형식적 및 도구적 합리성 개념을, 베버로 하여금 강력한 이성관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조직의 가능성마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완전(불구화된)’ 이성관이라고 비판한다. 강력한 이성관은 자유·정의·행복의 이념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20세기 사회들이 내재적 조직에 있어 합리성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그러한 유리한 입지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사고방식이 베버에 있어서는 불가능 했다. 베버에 있어 탈 주술화된

9) Albrecht Wellmer, “Reason, Utopia, and Enlightenment” in *Habermas and Modernity*, ed. by Richard J. Bernstein,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91), p.43

10) Ibid., p.43

세계에서는 규범·가치·사회조직형태들에 대한 여하한 합리적 정당화도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전체 사회의 합리적 조직이라는 이념이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가들은,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sup>11)</sup> ①그들은 이성적 요구의 실현은, 근대 산업사회의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이 이 같은 가능성을 파악할 때, 역사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②그들은 근대사회의 발전의 논리, 베버의 의미에 있어 합리화 과정의 논리는 도구적 이성의 폐쇄적 체계, 즉 사물화와 억압체계의 확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비록 야만주의의 위협이 증대됨과 더불어 자유의 가능성도 늘어나긴 하였지만,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의 가능성의 확대와 더불어 야만주의의 위협이 거의 무제한적일 정도로까지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근대적 합리화 과정이 지닌 일차원적 성격과 사물화 및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내재적 경향과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사물화 및 도구적 이성으로의 성향은 개념적 사유 자체에, 즉 상징적으로 매개된 인식과 행위에 내재한다. 달리 말해서, 무모순을 및 개념적 사유가 지닌 일반적이며 자기 동화적인 본성은 합리화 과정의 궁극적 근원을 이루며, 그것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이성을 형식적이며 도구적인 이성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완전히 합리화된 지배체계의 확립으로, 그리고 자율적 주체의 일소로 종결된다.<sup>12)</sup> 계몽된 세계에는 더 이상 이성의 이념을 위한 장소가 없다. 이성의 이념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근대세계의 거짓된 합리성이 이성이념을 단순한 환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통일·체계·정합성의 확립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일차원적 합리성의 경향은 근대세계의 합리화 및 관료주의화 과정에만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즉 세계의 증대되는 과학적 객관화 및 자본주의적 교환 원리의 보편화 현상에만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이성의 이념, 따라서 해방의 이념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의식의 점진적 사물화에도 들어난다.

이 같은 문제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한 것이 아도르노의 『미학이

11) Albrecht Wellmer, 위의 논문, p.46

12) M. Horkheimer and Theodor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 by John Cumming, (NY : The Seabury Press, 1972), pp.3~42

론』<sup>13)</sup>이다. 그에게 있어, 사실상 합리화된 세계에서 이성의 마지막 잉여로 되는 것은 예술작품, 즉 참되고 고양된 예술작품이다. 예술은 억압적 형태의 논리나 사유의 특성인 ‘동일화하는’ 종합과는 현저하게 다른 유형의 논리와 종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이룩되는 예술적 종합은 그것이 특수, 피억압자, 비동일자 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 개념적 사유의 그것과는 다르다. 아도르노에 있어 예술작품이 사물화 되지 않는 인식의 탁월한 매체로 되고, 동시에 요소들을 비 억압적으로 하나의 총체어로 통합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14)</sup>

비판이론은 마르크스를 좇아 근대사회를 규범적으로 정초된 ‘해방된 사회’의 이념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양자는 근대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분석과 그들의 이론이 지닌 유토피아적 지평과를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sup>15)</sup> 그렇게 볼 때 양자는 근대적 합리화 과정이 지닌 모순적이며 또한 애매한 성격을 참되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분화를 용납지 않는 범주적 틀에 의탁하였다. 이러한 범주적 틀은 궁극적으로는 단지 도구적 이성애에 대한 무비판적 긍정(마르크스)과 철저한 부정(비판이론)사이의 선택을 남겨주었다. 마르크스와 비판이론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판적이며 유토피아적인 충동은 일차원적 합리성 개념에 맞춰져 있는 개념적 틀 안에서는 적절하게 표명될 수 없었다. 그러한 구조 안에서는 해방적 관점이 단지 형식적이며 기술적인 합리화 경향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거나(마르크스) 아니면 역사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합리성 양식들을 추상적으로 부정하는(비판이론)형태로만 표명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 하의 비판이론 내에서 개념적 수정을 이룩하여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이론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버마스의 장점이다.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근대성의 병리’와 ‘역사에 있어 이성의 기형적 실현’<sup>16)</sup>에 대해 말할 수 있기 위

13) Theodor W. Adorno,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Verlag, 1970),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1)

14) 보다 중요한 것은 ‘동화적’ 사유가 지닌 ‘억압적’ 성격에 대한 그의 이해로 인해서 예술작품이 갖는 심미적 합리성이 그에게 있어 대안적 형태의 합리성을 위한 유일한 모델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안적 형태의 합리성에 있어 도구적 합리성은 단지 지양된 한 계기로만 보존될 것이다. Albrecht Wellmer, 앞의 논문, pp.48~49 참조.

15) Albrecht Wellmer, 위의 논문, pp.50~51

16)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이하 TCA로 약칭), II trans., by Thomas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1987), 특히 pp.303~331, 385~396

해서는 무엇이 병리적이고 또 무엇이 기형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규범적 기준을 전제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는 아직 보편적인 규범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궁극적 규범들이란 자의적이며 그것은 합리적 보증가능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라고 보는 상대주의, 결단론, 혹은 이모티비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버마스에 있어 우선적 관계였다. 이 과제의 해결을 추구해 가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따라 근대화 또는 근대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아울러 추적해 보자.

(1)하버마스는 비판사회이론의 기획을 인식과 행위의 주-객 모델에 맞춰진 의식철학의 개념적 틀로부터 언어이론 및 소통 행위론 이라는 개념적 틀로 번역하였다. 이 같은 기본적 변화를 통하여 그는 합리성 유형 및 행위 유형들을, 특히 도구적 합리성과 도구적 행위 및 소통적 합리성과 소통적 행위 간을 범주적으로 구별 지을 수 있었다. 이는 마르크스, 베버,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2)하버마스의 특성은 우선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통하여 밝혀볼 수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인간의 언표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근대사회에 있어서 최소한 유능한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합리성의 기본기준을 의미한다. 간단히 표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화자가 인정해야 하는 합리성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화자는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과의 내재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고 수용하는 것)을 다루는 양식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통하여 무모순율은 명제들(및 행위들) 간의 논리적 관계라는 일차원적 공간으로부터 서로 다른 화자들 간의 대화적 관계라는 두 차원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또한 각 개인들이 타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도 취하게 되는 특수한 태도 및 상이한 개인들 간의 상호인정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또한 어떤 타당성 주장도 원칙상 가능한 비판적 음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상징적 의사소통의 견해를 가리킨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반성하는 견해인데, 이에 따르면 타당성 주장들은 오로지 의사소통영역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담론영역에서만 보완될 수 있다. 타당성 영역은 인간의 언표영역과 개념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언표영역을 벗어나 있는 타당

성의 외재적 원천이란 불가능하다. 모든 타당성 주장의 준거점으로서 인간의 언표에 대해 이같이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 진리, 규범적 정당성, 주관적 진실성, 또는 하버마스가 후일 제시한 바와 같은<sup>17)</sup> 객관적 사실의 세계, 사회적 규범세계, 내적 체험의 세계 등의 타당성 차원들이 명백하게 서로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결국 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탈주술화된’ 세계에서의 인간의 인식적 및 도덕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3)하버마스의 근대성 논의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사회통합과 체계적 통합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sup>19)</sup> 이들은 서로 다른 행위주장 메카니즘이다. 사회적 통합이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행위 ‘지향’을 조정하는 작용인데 반하여, 체계적 통합은 개별적 행위자의 행위지향과는 ‘독립적으로’ 화폐와 권력 같은 조정매체를 통하여 작용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사회에 와서 사회적 통합과 체계적 통합이 서로 분리되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있어 경제적 및 행정적 행위체계의 등장과 더불어 발생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근대 초에 일어난 세계관의 ‘탈 중심화’<sup>20)</sup> 이후에, 즉 담론이 갖는 세 개의 서로 구별되는 타당성 차원이 상호 분화되고 그에 상응하여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분화된 후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보다 단순화시켜 보면, 베버의 의미에 있어 합리화된 경제체계와 행정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법의 합리화는 도덕적 논의와 도덕적 지향으로부터 형식적 법의 영역의 분화를 전제하였으며, 또한 이 같은 합법성과 도덕성의 분화는 베버가 ‘세계의 탈 주술 화’로 그리고 하버마스가 ‘세계관의 탈 중심화’라고 명명한 바를 전제한다. 한편의 체계적 합리화(경제적 및 관료주의적 합리화) 및 체계적 분화와 다른 한편의 의사소통적 합리화는 상보적으로 근대세계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서로를 제약하고 또 서로를 요구한다는 뜻에서 상보적 가능성이었다.

(4)산업사회의 지배적 경향들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은 지금까지 베버,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합리화의 역설’<sup>21)</sup>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한다. 그는 이 역설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구별에 의거하여

17) J. Haberma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이하 MCCA로 약칭), trans., by Christian, Lenhardt and Shierry Weber NicholSEN,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95), pp.136~137

18) 전통사회에서 종교의 권위나 혹은 전통의 권위가 보장해 주었던 바를 이제는 상호주관적 합의를 조성해 주는 수단으로서 논증이 중요역할을 맡게되었다. 소통행위와 논증의 양식이 행위, 사회통합, 상징적 재생산에 대한 다른 조정 메카니즘을 대신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합리화’(또는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19) J. Habermas, TCA. II. pp.114~115, 186~187

20) J. Habermas, TCA. I, pp.69~70

21) J. Habermas, TCA, I, pp.342,362

재정리한다. 합리화의 역설이란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전제와 출발점으로 하여 결과된 체계의 합리화 및 분화과정이 생활세계에서 구현되는 규범적 제약으로부터 점점 더 자율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체계의 명령이 생활세계를 도구화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생활세계를 파괴하고자 위협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의 실제적 발전 과정에서 보면 체계의 합리화와 체계의 분화의 힘이 소통적 합리화의 힘을 압도해 왔다. 지금까지 생활세계로부터 사회운동 형태로 들어난 견제력, 예컨대 19C의 노동운동 같은 것이 점차 더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병합경향을 뒤집을 수 없었다. 오늘날 생활세계의 구조는 체계의 분화와 합리화의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생활세계의 ‘식민지화’<sup>22)</sup>가 진척되고 있다.

(5)베버 뿐만 아니라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도 반대하는 하버마스의 기본 명제는 근대 유럽역사에 있어 탈 전통적 합리성 양식이 출현함으로써, 근대세계에서 합리화 과정이 취한 실제적 도정은 일련의 서로 다른 가능한 길들 중의 오직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위에서 말한 ‘합리화의 역설’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선별적’ 합리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이 과정이 지닌 선별적 성격은 경제적 조건과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역동성에 의해 소통적 합리화에 가해지는 특이한 제약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근대세계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모든 가능한 짜임관계가 탈 전통적 합리성 양식을 자체의 토대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합리화된 생활세계가 체계적 합리화 과정을 조정하게 되는 그러한 짜임관계만이 근대의 합리성 이념에 순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해방된 사회’ 개념을 재해석한다. 해방된 사회의 생활세계는 오히려 체계의 메카니즘을 결사체를 이룩해 있는 개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마르크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의존성, 즉 체계에 대한 생활세계의 의존성이 종결될 것이다.

하버마스는 나아가 역사에 있어 이성의 실현<sup>24)</sup>을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갈등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운동들은 소통적 이성이 생활세계를 재정복하고, 그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규범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한 경향들이 현존하는 사회제도들을 변형시켜 줄 해방의 약속을 어느 정도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22) J. Habermas, TCA, II, pp.367~373

23) J. Habermas, TCA, II, p.485

24) J. Habermas "The Dialectics of Rationalization : An Interview with Jürgen Habermas", *Telos*, 49(Fall, 1981), p.7

우선 방어적으로, 식민화의 증대로부터 생활세계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생태학적 운동 및 반핵운동이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것들은 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다양한 양식의 공통관계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충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운동들을 추진시키는 잠재력이 무엇이든 간에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 간을 이어주는 일들이 장래 할 사회운동들의 지속적 출발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근대화론의 문제와 더불어 지금은 ‘탈 근대화’ 또는 ‘후기근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탈근대화의 주요 논점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 탈근대화

경제, 문화, 정치의 변화가 일정한 양식으로 결합하여 세계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하여 베버와 다니엘 벨에 이르기 까지, 근대화이론의 중심적 주장이었다. 물론 어느 때의 어느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주요흐름은 개괄적으로 예측가능하다. 변화과정이 시작되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사회적 변화의 정확한 과정을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일단 일정한 과정이 비롯되면 연이어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래는 전망해 볼 수 있는 법이다. 예컨대, 산업화는 도시화의 증대, 직업적 전문화의 강화, 공식적 교육수준의 향상과 같은 현상을 결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중의 정치참여 수준이 제고되고 선진산업 사회에서는 남녀간의 성적 역할 차이가 줄어들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근대화’가 결과한 ‘탈 근대화’ 개념을 음미해볼 수 있다.

## 탈근대하의 개념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는 근대화에 관한 연구가 사회과학의 중심주제였다. 근대화론<sup>25)</sup>은 그것이 지닌 예견의 능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어느 사회가 일단 산업화의 궤도를 밟기 시작하면 낮은

출생률에서부터 정부권력의 보다 많은 간여, 평균수명의 연장, 대중의 증대된 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유형의 문화적·정치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화론의 중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 과 베버의 '문화결정론' 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적 활동이 근육체계, 혈액순환체계, 신경체계, 호흡체계 따위의 복합적 기능에 의거하듯 근대화 또는 사회변동 역시 정치, 경제, 문화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거한다고 봐야 한다. 경제결정론, 문화결정론, 정치결정론은 모두가 일면적이다. 또한 프로테스탄티즘 중심의 이론이나 서구 중심의 이론 역시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서구적 현상이지만 목표달성의 합리성추구는 서구적인 것만은 아니다. 산업화가 서구에서 비롯하긴 했지만 서구의 발전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같이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 전개된 근대화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주도적인 발전방향을 수정하였는데, 이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탈 근대화' 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 개념은 대체로 몇 가지의 의미를 두루 함축하고 있다. (1)그 중의 하나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결정론에 근접해 간다. 이 입장에 따르면 문화가 인간의 체험을 거의 전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2) '근대화' 로 알려져 있는 과정이 더 이상 최 일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사회적 변화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3) '탈 근대화' 는 '근대화' 의 특성을 이뤄온 경제적 효율성, 관료주의적 권위, 과학적 합리성 등에 대한 강조로부터 개인의 자율성·다양성·자기표현 등을 강조하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 근대화' 라는 말은 사회변화가 근대화에 중심적이었던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면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지닌다고 보겠다. 산업사회가 문화적·제도적인 면에 있어 광범한 다양성을 지니긴 했지만 그것들의 공통된 특성 또한 뚜렷하였다.

예컨대 산업사회는 예외 없이 고도의 도시화·산업화·직업적 전문화, 과학과 기술의 활용, 관료주의화, 법률적·합리적 권위에의 의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 귀속적 지위보다는 성취한 사회적 지위 강조, 높은 수준의 공교육, 성적 역할 전문화의 약화, 물질적 복지수준의 제고, 보다 향상된 생활수준 등이 특성을 이루었

25) 여기서의 '근대화론' 및 '탈 근대화' 개념은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chapter1에 의거하였음.

다. 이에 비해 탈 근대화는 주관적 지각과 문화가치가 지닌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탈 근대적 사회’는 심미적 및 인간적 고려에다 무게를 두며, 과거의 요소들을 새로운 맥락 속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결핍의 시기 동안 산업사회를 지배하였던 일률적 기능주의 및 과학과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 탈 근대적 가치로의 이행

탈근대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sup>26)</sup>

(1)탈 근대화는 근대성, 즉 합리성, 권위, 기술 및 과학을 거부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합리성, 권위, 기술, 과학을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탈 근대화는 서구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근대화와 서구화를 등치시키는 것은 유용한 추구방법이 아니다. 근대화의 실질적 내용은 도시화, 과학과 기술의 응용, 직업적 전문화의 급속한 증대, 관료주의화의 강화, 교육수준의 제고 등 산업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변화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정들의 배후에서 동기부여의 힘으로 작용한 다른 한 가지는 산업화가 부에 이르는 길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보건데 근대화에 대한 탈 근대적 비판은 압도적으로 서구사회들 안으로부터 빚어진 것이다.

(2)탈 근대화는 전통가치를 복원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류가 있다. 근대화가 전통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 하였기 때문에 근대화의 종언은 전통가치 회복으로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 근대 초기에는 과학과 산업의 놀라운 성취가 진보의 신화를 낳고 전통을 철저히 불신하였다. ‘새로운 것’이 사실상 ‘좋은 것’과 동의어로 되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이르러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이 그 위력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전통이 그 지위를 회복하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새로이 정당화하는 신화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다. 탈 근대적 세계관에 있어서 전통, 특히 비서구적 전통들이 다시금 적극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3)탈 근대화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진작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새로운 가치의 흥기에 대한 최선의 사례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물질중심의 가치우선으로부터 탈 물질중심의 가치우선으로 이행하는 세대 간의 차이이다.<sup>27)</sup> 이는 생존가치로부터 행복가치에로 크게 이동해가는 것이라고

26) Ibid, pp.22~25

27)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7), pp.77~90

평가할 수 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몰입하는 동안은 보다 먼 곳의 관심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탈근대 사회는 삶의 질 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며, 이전의 사람들과는 지향과 강조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다. 이전의 사람들이 개인적 생존에 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면 탈근대 사회의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 이 같은 탈 물질중심의 가치의 등장은 단지 선진 산업사회의 공중들 속에 권위, 종교, 사회, 정치, 성의 역할, 성적 규범 등에 대한 방향을 재형성시켜 주고 있는 보다 광범한 문화변동 과정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대중들에서는 생존 혹은 생활의 안전으로부터 삶의 의의(의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한때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었던 근대적 세계관이, 근대성의 중심을 이루었던 위계와 순응성 대신에 인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탈 근대적 가치들로 점차 이행해 가고 있다. 선진 산업사회들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측면, 즉 ①가치체계와 ②제도적 구조에서 사회정치적 진로를 변경시키고 있다.<sup>28)</sup> 먼저 가치체계의 면에서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강조가 결정적 변화요인들 중의 하나였다. 경제성장이 진보와 동일시되고 또한 경제성장은 성공적인 사회의 징표로 보여 졌다. 이제 탈 근대적 사회에서는 최고의 우선성을 지니는 것으로서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강조가 점차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의 주요부분에 있어 기울화 되고, 자기 제약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산업사회의 규범들은 점차 생활양식의 개인적 선택 및 개인의 자기표현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도적 구조의 면에서는 근대사회의 출현과 발전을 지원하였던 위계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조직체가 발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목격한다. 근대화의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관료주의적 국가, 기울 화되고 또 과두제적인 정당, 대중 생산적 작업의 연관배치, 전통적 노선의 노동조합, 위계적 통합 등은 대중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조직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였다. 그것들은 산업혁명과 근대국가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것들은 ①효율성에 있어서, 그리고 ②대중적 수용가능성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계급갈등으로부터 환경보호, 여성 및 성적 소수자의 지위와 같은 문제들에 입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행하였다.

28)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 Postmodernization*, p.28

근대적 가치로부터 탈 근대적 가치로의 이행<sup>29)</sup>은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사회의 주요한 제도들 중의 많은 부분들을 잠식해 가고 있다. 먼저 정치영역에 있어, 탈 근대적 가치의 흥기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고 참여와 자기표현을 점차 증대시킨다. 이들 경향은 권위주의 사회들은 민주화로, 이미 민주화된 사회들은 보다 참여적이고 과제지향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추동시킨다.

경제영역에서는 생존의 안전감이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데로 이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주관적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경제 성장에 우선한다. 근대화의 중심목표들인 경제성장 및 경제적 성취는 아직 적극적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의 노동 동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수입과 직업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으로부터 점차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성행위, 출산, 가정의 영역에서는 이전의 엄격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지속된다. 효율적인 출산 조절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번영 및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이 영역에 있어서의 전통적 규범들의 기능적 토대를 침식하였다. 성행위에 있어 개인적 선택을 위한 유연성이 증대하고, 동성애의 수용이 극적으로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궁극적 가치영역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동시에 현격한 변화를 본다. 근대화와 연결된 주요 경향들 중의 하나는 '세속화'였다. 기존의 종교제도들과 관련되는 곳에서는 이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발전된 산업사회들의 대중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또한 조직화된 종교를 덜 강조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정신적인 관심사가 소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지속적이며 초국가적인 경향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나아가고 있다.

### 탈 근대적 가치로의 이행요인

“특히 세대 간의 교체과정을 통해서 사회변동이 가치변동으로, 가치변동이 정치

29) Ibid., pp.43~45

적 태도와 행위변동으로 진행된다는 모델을 우리는 지지한다. ... 종교적 가치가 약화되고 탈 물질중심의 가치가 강화되어 최근 수십 년간 서구 민주주의의 문화적 구성을 변형시켰다.”<sup>30)</sup>

이 같은 시작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기적과 복지국가의 출현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이뤘으며, 궁극적으로는 탈 근대적 가치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 동안에 선진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진 성장과 더불어 퍼스넬리티를 형성시키는 체험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는 가치체계의 변혁을 촉진시켰다.

선진 산업사회에서 전후에 출생한 세대는 이전 세대를 형성시켰던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정 하에서 성장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 시켜 보면, ① 전후의 경제기적은 인류 역사에 있어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번영을 이룩하였으며, ② 번영의 영향은 복지국가의 출현이라는 제2의 요소와 상호작용하였다. 번영에 따른 실존적 안전감이 결정적 변수로 되고, 복지국가는 안전감을 도모해 줄 수 있을 경제적 성장을 강화시켰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느낌과 더불어 대중의 취득 몫이 증대하였다.

이로써 세대 간의 가치변동이 이뤄져 선진 산업사회의 정치 문화적 규범들을 점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경제 및 물리적 안전에 최 우선성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자기표현 및 삶의 질에 최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의 관심과 평가의 이행이다. 물질중심의 우선성으로부터 탈 물질중심의 우선성으로의 이행은 1770년대 이래, 일련의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다.<sup>31)</sup>

새로운 사회적 목표가 산업혁명 이래 서구사회를 지배하였던 목표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가고 있다. 이 같은 동기 부여에서의 변화는 생존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자란 사람들과 자신의 물질적 생존은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자라는 사람들 간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근대화의 결과들

인간이 원만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생존과 더불어 도덕적 지향을 필요

30) M. Kaase and K. Newton, *Beliefs in Government* (Oxford : Oxford Uni., Press, 1995), p.63

31)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 Princeton Uni., Press, 1990)

로 한다. 근대화 과정은 이들 중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질 토대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의 도덕적 차원에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을 결과하였다. 후자의 배경 이해를 위하여 ‘근대성’을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진보’의 관점이 그 하나인데, 여기에는 기술적 진보와 인간 해방의 진보라는 양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근대화는 기술적 진보로 정도되어 기술적·기계적 합리화 또는 기능적·도구적 합리화를 강화시키는 한편, 인간 해방의 진보 차원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여 실천적 합리화 또는 인격적·윤리적 합리화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과학주의, 실증주의, 시장 지배적 이성이 주도하는 삶의 세계에서 인격적 성숙, 즉 인간의 자율과 책임능력이 약화 또는 퇴행하는 현실을 빚게 된 것이다.

근대화·합리화 과정은 이성의 분화·독립의 과정이기에 이성의 일면성이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sup>32)</sup>, 이성의 부식이나 생활세계의 잠식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은 ‘자본주의 근대화의 선별적 유형’이나 ‘합리성 잠재력의 선별적 착취’<sup>33)</sup>에 근거하고 있다.

(2) 분화와 체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도구적 합리성·목적 합리성이 강화되는 반면에 상징적 재생산을 주도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약화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탈 언어화된 매체인 권력과 화폐가 주도하는 체계 및 하위체계의 분화와 작동이 심화되고, 상호작용 및 담론의존의 생활세계가 위축되는 것이다. 물질적 재생산 양식이 문화적 창조, 사회적 통합, 개인의 사회화 등을 이끌어 가는 상징적 재생산 영역에 까지 침범하여,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초래됨으로써<sup>34)</sup> 상징적 재생산의 위기, 인간의 자아정체성의 위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3) 정보화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탈 근대적 현상’의 하나로도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의 주요인으로 신자유주의 및 그 물질적 토대로서의 정보화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화는 지식·정보를 유용성과 효율성의 시각에서 평가하도록 유도하면서 지식·정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상업성, 따라서 유용성이 없는 지식·정보는 외면당한다. 사실상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는 끝없는 자본축적, 초국가적 교역망의 강화, 광속의 상품교역 등의 현상을 수반하면서 윌러스틴이 지적하듯<sup>35)</sup>

32) J. Habermas, TCA, II, p.397

33) Ibid., p.400

34) 참고,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 테제」, 『국민윤리연구』, 제44호, 2000. 7, pp.235~260 참고.

①빈부격차, ②자원고갈, ③생태계의 위기, ④삶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진리가 기능으로 대체되고 진리의 상대주의화가 촉진된다. 이 현상은 회의주의 또는 허무주의로 이끈다. 더 나아가 탈근대사회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1)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도로 생존이 안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산업사회의 주민들은 점차 위기를 느껴가고 있다. 오히려 백은 이를 '위기사회'로 특성화한다.<sup>36)</sup> 이 진단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화'(재산, 수입, 직업 따위)에 대한 분배적 갈등은 핵기술의 위협, 유전자 탐구의 위협, 환경훼손의 위협과 같은 '악'의 분배에 따르는 갈등으로 이행해 왔다. 산업화는 생존의 안전감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탈근대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삶의 위기들이 늘어나고, 또한 위기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2)갈등의 종류와 질이 달라지고 있다. 두드러진 실례로 이전의 사회적 갈등에 바탕을 둔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제는 문화적 쟁점들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사에 바탕을 둔 갈등으로 전환하였다. 오늘날에도 경제적 갈등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것이 일체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찰자들이 사실상 경제를 모든 갈등의 모체로 간주하곤 하였다.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한 세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논쟁점들이 종래의 경제적 갈등과 같은 수준이나 혹은 보다 심각한 차원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보호, 낙태, 인간복제의 문제, 민족적 갈등, 여성의 권리, 게이와 레즈비언의 권리 등이 오늘날의 주요 현안들로 부상하고 있다. 발전과 변혁은 촉진되고 있으나 가치판단의 준거와 인류의 장래에 대한 지혜의 안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3)탈근대성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의 구성요소는 지속이 가능한 반면 일부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탈근대성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주요 난제들 중의 하나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인간중심주의 및 이성 중심주의를 배격함으로써 합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탈근대성이 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은 자체의 수명단축을 재촉하는 처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류의 출현이래, 인간이 자연과 투쟁하는데 있어 이성이 중추적 기능자였다. 이성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산업사회의 특성을 이뤘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강조로부터, 인간의 행복추구와 자기표현이 주요 구성요소로 되는, 기능적 합리성과 궁극적 목적에 대한 새로

35) I. Wallerstein,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1999), pp.80~83

36) Ulrich Beck,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 Sage, 1992).

은 관심과의 보다 균형 잡힌 종합으로 발전해 가는 일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 근대적 담론은 근대성과 탈근대성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다고 주장한다. 탈근대성은 이전과의 변동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대성으로부터 성장해 나온다. 산업적 및 기술적 하부구조의 변형 없이 탈 근대적 가치가 지속되기란 어렵다.

(4)탈근대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거부하고 궁극적 목적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탈 근대적 사상가들은 보편적 도덕에 관한 합의 요청을 포기한다. 특히 푸코나 리오타르<sup>37)</sup> 등에 있어 도덕규칙들은 단순히 지배적 엘리트의 이해관심을 반영하는 인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철학자들의 과업은 현상적 도덕체계를 폭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 맺는 말

(1)근대화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근대화는 “세계, 즉 지구의 도구화를 촉진시켰(아렌트)으며, 합리화와 분화를 가속화” (파슨스)시키고, “환경훼손, 자원의 한계 노정, 인간에 대한 잠시 감독의 강화, 전쟁 산업의 발달로 인한 핵 갈등” (기든스)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 즉 사회조직의 합리화 과정은 기술과 계산, 조직과 관리 등 ‘목적합리성’의 주도권이 증진되는 과정이었으며, 이성의 승리는 자유의 왕국을 도래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경제의 힘과 관료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행정을 강화시키고,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철창을 결과하였다(베버).

근대사회의 발전의 논리는 도구적 이성의 폐쇄적 체계 즉 사물화와 억압체계의 확립으로 유도하였다(호르크하이머와 마도르노). 근대의 선별적 합리화 과정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결과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살려내고 아울러 체계와 생활세계를 이어줄 사회운동을 통하여 생활세계의 복원을 기약하도록 해야 한다(하버마스).

(2)근대화가 결과한 과제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적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학적 주요 과제에만 주목하고자 하는데, 인간학적 주요과제 역시 사회적 위기관리의 문제 및 갈등의 심화로부터 인간성 혹은 자아정체성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

37) 대표적인 사례로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1999)를 들 수 있다.

지로 부각되고 있다. 발전과 변화는 촉진되고 있으나 가치판단의 준거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지혜의 안목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합리성의 위기와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이 주제만을 ‘보편적 도덕 기준의 타당 화’ 개념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탈 근대적사상가들은 보편적 도덕 기준을 타당 화 시켜줄 수 있는 여하한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신도 마르크스도 죽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대안을 지지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도덕규범들이란 사회적 협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협약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에 의거하여 사회적 관계들이 잘 조직되어, 모든 규범의 타당성이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도달되는 합의에 의존하게 될 때, 집단생활을 위한 합리적 기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규칙들이란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관할 하에 있는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탈 근대론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여 하버마스는 단순하게 지배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닌 도덕적 합의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담론윤리학’에서 이 주제가 소상히 다루어지고 있다.<sup>38)</sup>

(3)하버마스의 접근법은 바람직하긴 하나 지나치게 인지주의의 입장으로 경도될 우려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두 가지의 경쟁적 대안도 아울러 고려하고자 한다.<sup>39)</sup>

하나는 생태계 보존운동의 이데올로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시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객관적 준거로서의 외재적 자연 및 우리 안의 자연성을 좇는 것은 선이라는 주장이다. 대상에 대한 정서적 느낌과 타인에 대한 자연스런 심정적 배려 역시 선이다. 과격한 생태학은, 자연적인 것은 진화적 및 생태학적 평형상태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은 무엇이든 옳다”고 평가한다. 이 같은 생태학적 시각은 또한 보편성이라는 이점도 갖고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넘어선다. 우리에게서 하나의 어머니로서의 대지가 있을 뿐이라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의 주요 대안은 전통적 종교들까지를 포함하여 전통 일반을 재흥시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전통적 규범은 어린시기 때부터 친숙해져 있으며,

38) J. Habermas, MCCA 중의 “Discourse Ethics”에 관한 논의 (pp.43~45) 및 줄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43호, 2000. 2, pp.345~360 참고.

39)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p.340~341

또한 자신들의 선대들에서도 친밀하였던 것이다. 전통은 또한 불리한 점도 지니고 있다. 전통적 종교의 신화는 유목시대와 농경사회 때 출현한 고대적 상징의 옷을 입고 있어, '선한 목자'로서의 신의 이미지는 일상적으로 소나 양보다는 컴퓨터와 훨씬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 시대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전통적 종교는 점차 세계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위협스러울 정도로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전통적 종교는 어떤 특정문화의 전통적 규범체계를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 신념체계의 완고성은 병적인 비관용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탈 근대적 사회에 있어 종교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관점을 취하고 또 탈 근대적 사회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학의 지적 유산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sup>40)</sup> 전통적 종교와 과학의 융화는 인간의 이해를 크게 넘어서 있는 하나의 진리에 지속적 접근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이로써 오늘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전통을 고려하고 수용하는 합리적 담론이 요청된다. 근대화가 결과한 이 밖의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들은 어느 것이든 모두가 우리의 구체적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지속적 탐구를 요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앤소니 기든스, 올리히 백, 스콧 래머 지음, 임현진·정일준 옮김, 『성찰적 근대화』, 서울 : 한울, 1998
- 조태훈,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학'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3호, 2000. 2.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의 식민화' 테제」,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 44호, 2000. 7
- 하버마스 저, 한상진 편,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서울 : 나남, 1996
- Adorno, Theodor W. *A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Verlag, 1970), 홍승용 옮김, 『미학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1)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Beck, Ulrich. *Risk Society :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 Sage, 1992)
- Bernstein, Richard J. ed., *Habermas and Modernity*,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91)
- Charden, Teilhard de. *The Phenomenon of Man*, trans., by Bernard Wall

40) 대표적인 사례로, 우주는 인간사회 및 신과 더불어 아직 구성 중에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면서, 인류는 무능한 인형이 아니라 스토리 전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샤르탱(Teilhard de Chardin)을 들 수 있다. 특히 Teilhard de Chardin, *The Phenomenon of Man*, trans, by Bernard Wall,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1959), 참고.

- (NY : Harper and Brothers, 1959)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II, trans., by Thomas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1984, 1987).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s., by Lenhardt and Sierry Weber Nicholzen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95)
- Horkheimer M. and Adorno, Theodor W.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 by John Cumming (NY : The Seabury Press, 1972)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The Silent Revolution :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Kaase M. and Newton, K. *Belief in Govern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Lukacs, Georg.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 by Rodney Livingstone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68)
- Ly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 A Report on Knowledge*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Parsons, T.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Jersey : Englewood Cliffs, 1971)
- Parsons, T. and Platt, M. *The American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73)
- Wallerstein, I.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Weber, M. *Economy and Society*, 3 vol, ed., by G. Roth and Wittich (NY : Bedminister Press, 1968)
- Telos, 49 (Fall, 1981)



# 미국대선(2004년)의 쟁점과 논리

George W. Bush



John Forbe Kerry

정리 / 송 종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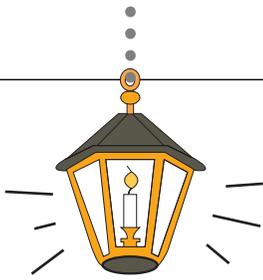
공화당	당	민주당
사업가	이력	변호사
텍사스주지사 대통령	경력	매사추세츠주 부지사, 상원의원(매사추세츠 주)
딕 체니	부대통령	존 에드워즈
1946년 7월 06일	생일	1943년 12월 11일
<a href="http://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a>	홈페이지	<a href="http://www.johnkerry.com">http://www.johnkerry.com</a>
BushCheney04@GeorgeWBush.com	E-mail	info@johnkerry.com
공화당 대통령. 1기에서는 9.11테러와 이라크전쟁. 기업의 부정사건(엔론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시련에 직면.	배경	민주당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고 베트남전쟁에 참전. 미국을 '외국의 위협과 과욕에 넘치는 특별이익단체로부터 지킨다'는 것을 약속.
이전의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정책에 관한 지적을 재선에 활용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중요과제	이라크전쟁을 지지하였지만 외교적인 결정을 비판함. 자신의 군대경험을 강조하면서 또한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중단할 예정.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번영과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일과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2004.9.2 공화당대통령후보수락연설 中 -뉴욕-	선거운동 발언	“미국이 고립된 지금의 국제정책은 틀렸다. 나는 우리의 나라를 틀린 방향으로 이끈 부시대통령에 이의를 제기한다.  2004.7.29 민주당대통령후보수락연설 中 -보스톤-

George W. Bush	대선 쟁점·논리	John Forbe Kerry
<p>양자대화를 거부하고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고수.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 개념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북핵 해체과정에서 대북 에너지 등 유형 지원에는 참여치 않음. 핵문제를 해결한 후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미사일, 테러지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 전략.</p> <p>9월 30일-1차 TV토론 “김정일은 우리의 동맹국 연합을 와해하려고 한다.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는 순간 김정일 뜻대로 6자 회담은 와해된다”</p> <p>10월8일-2차 TV토론 “케리 후보의 양자회담 주장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6자회담이 이미 진행 중이며 성과를 거둘 것이다”</p>	<p>북한 핵 문제</p>	<p>6자회담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양자협상에 더 무게중심. 이라크 대신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우선 대처 정책. 6자회담을 유지하더라도 북미 양자협상을 병행, 북미 양자협상의 의제로 핵문제외에 ‘한반도 감군, 정전협정 대체, 남북통일 문제’ 까지 포괄 협상.</p> <p>9월28일-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데 아무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관된 정책을 보이지 못한 실패를 감추려는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평양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실수이다. 나는 당선되면 즉시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할 것이며 6자회담도 병행할 것이다”</p> <p>10월 8일-2차 TV토론 “한국에서 병력을 빼내는 대신 효과적 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해 그 전 만큼 병력이 필요하지 않다”</p>
<p>전후 폭력사태 및 포로 학대 스캔들로 이라크 공격 지지 여론이 동요. 하지만 부시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 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테러리스트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므로 이라크 전쟁은 정당했다고 주장.</p> <p>8월 9일-노던 버지니아 전문대연설 “이라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내가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해 6자 회담을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60개국, 이라크 전에 약 30개국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p> <p>9월 30일-1차TV토론 “사담 후세인이 없어져 세상은 더 안전해졌다”</p> <p>10월 8일-2차 TV토론 “전쟁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아무도 우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p>	<p>이라크 문제</p>	<p>이라크 공격과 추가 파병은 지지. 미국 주도의 나토군이 이라크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부시를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과장한 혐의로 고발.</p> <p>9월 30일-1차 TV토론 “9.11 테러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카에다를 먼저 소탕 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잘못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맹국들의 협조속에 대(對)테러전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의 중심지역이 아니었던 이라크를 공격하는 등 ‘총체적인 판단 실책’을 범했다”</p> <p>9월 29일-2차 TV토론 전날 기자들과 “지구상에서 부시와 체니 두 사람 만이 이라크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p>

George W. Bush	대선 쟁점·논리	John Forbe Kerry
<p>11월 4일-재선 성공 뒤 첫 기자회견 “이라크에서 우리는 알라위 정부와 협력해 우리의 목표인 선거를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안정으로 가는 길에 있고, (이라크) 군대를 계속 훈련시킬 것이다. 우리 지휘관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것이다”</p>	<p>이라크 문제</p>	<p>10월 8일-2차 TV토론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라크 전을 ‘대량사기무기’로 이용하고 있다”</p>
<p>국토안전부 창설. 안보 예산을 세배로 확대하고 2001년 애국자 법을 추진. 이는 공권력이 시민을 감시하고 테러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함.</p> <p>9월30일-1차 TV토론 “국제사회에서 인기 있는 일이라도 미국의 최고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다”</p> <p>11월 4일-재선 성공 뒤 첫 기자회견 “우선 우리는 테러조직을 계속 추격할 것이다. 세계 90개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범을 색출하며 그들을 사법처리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나는 테러범을 숨겨주는 나라도 테러범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나는 탈레반이 이 독트린을 위반했을 때 탈레반을 제거했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세계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 최선의 방법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회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p>	<p>대테러전</p>	<p>방위군이 본토 안보를 책임지도록 국내 정보기구를 개편. 구금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애국자법의 개정 희망. 아프카니스탄에 재 초점을 맞춤.</p> <p>5월 26일-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던 워싱턴주(州) 시애틀의 제62부두에서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p> <p>“우리는 국토 안보를 사건을 찍는 기회나 선거운동을 위한 언급의 기회로 만들지 않는 미국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테러공격의 가능성이 ‘만일’이라는 가정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종종 말해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화학 시설이나 핵 발전소 등의 대규모 시설들을 보호하거나 미국 항구들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해 미국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잠재적 피해와 위협을 갖고 있는 가장 논리적인 장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다”</p> <p>7월29일-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미국은 국제사회의 등대 아래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한다.”</p>
<p>의회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로 제한한다고 정의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 각 주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허가하는 법의 통과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p>	<p>동성 결혼</p>	<p>부시가 제기하는 헌법 수정에는 반대. 동성 결혼 또한 반대. 하지만, 주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있다고 언급.</p>

George W. Bush	대선 쟁점·논리	John Forbe Kerry
<p>강간이나 근친상간,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에 반대.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안에 사인</p> <p>10월8일-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워싱턴 대학에서 벌어진 2차 토론</p> <p>“어린이는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에 찬성하는 태도</p>	<p>낙태</p>	<p>여성의 낙태 선택권 지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임신 마지막 3개월동안의 낙태는 반대. 임신중절 합법화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지명할 계획.</p> <p>10월8일-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워싱턴 대학에서 벌어진 2차 토론</p> <p>“개인적으로 낙태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이를 법률로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p>
<p>교토 지구 온난화 협약을 경멸. 하지만 수소연료 기술을 사용을 늘일 것을 원함. 북극 국가 야생동물 보호지 안의 “환경에 과민한” 석유 탐사를 지지.</p> <p>4월 22일-지구의 날 주례 라디오 연설</p> <p>“오는 24일 환경오염 대책으로 디젤유에서 황(黃)을 제거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발전소의 수은 배출을 규제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다. 디젤유에서 황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성안 단계이며” 지난 70년대 휘발유에서 납을 제거토록 한 조치가 공기오염을 줄인 것처럼 탈황(脫黃) 디젤유는 디젤유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트랙터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 사상 처음으로 발전설비의 수은 배출도 규제할 방침으로 이 새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수은 배출이 약 70% 줄어들 것이다”</p>	<p>환경</p>	<p>온실가스 방출을 금지하는 교토 협약 재서명 희망. 수소 에너지 기술과 에탄올을 포함한 무공해 재생 연료에 투자 공약.</p> <p>4월20일-지구의날을 앞두고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환경운동 자원봉사자들과 만나.</p> <p>“조지 부시 대통령의 환경정책은 물과 공기의 질을 악화시켰다. 우리는 일자리를 갖는 것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양립할 수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쓰레기 처리공장 건설이나 해안 오염물질 방류통제 등을 위한 자금을 삭감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부시 대통령이 30년간의 환경 문제 진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그들은 만일 강력한 경제를 원하면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없다는 그 낡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바닷가 감시프로그램, 해안 오염물질 방류통제 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환경정화 노력을 위한 지출을 증가시키겠다”</p>
<p>건강보험을 취득한 저소득자들을 위한 세금 공제 공약. 노년층의 처방약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 도입.</p> <p>10월 13일-애리조나주 탬피 애리조나 대학에서 벌어진 미 대선 후보 3차 토론</p>	<p>보험·보건 정책</p>	<p>기존의 연방정부 직원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 또한 주정부가 비보험 아동수를 줄이도록 자금 지원할 계획</p> <p>10월 13일-애리조나주 탬피 애리조나 대학에서 벌어진 미 대선 후보 3차 토론</p>

George W. Bush	대선 쟁점·논리	John Forbe Kerry
<p>“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무보험자가 증가한 것은 행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또 건강 및 보건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p>	<p><b>보험·보건 정책</b></p>	<p><b>부시의 주장에 반론</b>                      “캐나다로부터 값싼 의약품 수입을 거부하는 등 부시가 보건정책에 실패했다. 건강정책은 주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앞으로 연방정부 주도의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겠다. 부시의 보험정책에 역시 지난 3년 반 동안 500만 명이 보험을 잃었으며 캐나다에서 값싼 약품의 수입 문제가 이슈가 될 정도로 현 정부의 보건정책이 전반적으로 망가졌다”</p>
<p>미정부는 2000년 흑자 재정이었지만 현재는 대규모 적자상태. 부시는 2010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시키는 조치를 제안.</p> <p>10월8일-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워싱턴 대학에서 벌어진 2차 토론</p> <p>세금인상 계획에 대한 케리답변에 반론</p> <p>“20년 동안 상원의원 시절에 90차례가 넘는 세금인상안에 찬성했다며 케리의 이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성장 중심적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과도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선택적 세율 억제와 경기 부양을 통해 적자를 해소할 것이며, 미국 경제는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세입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p> <p><b>경제문제-케리에 반론</b>                      “재정적자는 전쟁과 경기후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격의 예봉을 피하고 현재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직업 창출도 계속 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이 역사상 가장 높다”</p>	<p><b>경제문제 : 예산·세금 실업·무역</b></p>	<p>부시의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폐지 재정적자를 줄이고,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를 국사, 안보,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을 공약.</p> <p>10월8일-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워싱턴 대학에서 벌어진 2차 토론</p> <p>세금인상 계획에 대한 답변</p> <p>“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는 결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2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도 클린턴행정부 당시 세율로 환원하는 정도로 그치겠다. 이렇게 되면 98%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 감면정책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p> <p><b>경제문제 토론에서 케리</b>                      “부시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남겨진 엄청난 잉여 재정을 3년 반만에 완전히 적자로 뒤바꿔 놓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부시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p> <p><b>경제문제 부시에 재반론</b>                      “부시 행정부 아래서 16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 이는 지난 72년 동안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다”</p>



## 시대의 논리 · 민족연구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고품격 국제정보지 『시대의 논리』와 민족문제 전문지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 절차

1.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서>에서 정기구독 희망 잡지를 <구독희망>란에 표시(○)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 연 락 처

<저널 편집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 교양사회

구분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잡 지	시대의 논리	계 간	4권(1년분)	₩ 40,000		
			8권(2년분)	₩ 70,000		
	민족연구	반년간 (연2회)	4권(2년분)	₩ 40,000		
			8권(4년분)	₩ 70,000		
구 독 자	구독자명(기관)				E-mail	
	주 소	우편번호			전화	

<절취선>

# 시대의 논리

ISSN 1739-1679-06

값 10,000원

# ☏ 교양사회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발 행 인 : 교양사회 (대표 최철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02-725-0936)

편 집 인 : 조정남(☎010-4716-3616)

발 행 일 : 2004년 12월 1일

발 행 처 : 교양사회(☎02-725-0936)

등록번호 : 문화 바 03029 / 등록일자 2004.3.3

